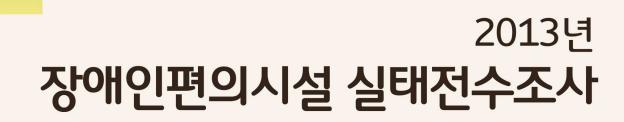
통계승인번호 제11735호



2013.11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054-13



201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3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 11. 29





| | ĺ |
|---|---|
| - | • |

| | Brook Brown Bro |
|----------|---|
| 1 | |
| 2. | 4 |
| 1) | |
| (1) 1998 | |
| (2) 2003 | |
| (3) 2008 | |
| (4) 2013 | |
| 2) | |
| (1) | |
| (2) | |
| (3) | |
| (4) | |
| 3. | 11 |
| 1) | 11 |
| 2) 2013 | |
| 4. | |

| 1. | |
|----|--|
| 1) | |
| 2) | |
| 3) | |

| 2. | | | |
|-----|----|----|--|
| 1) | | | |
| (1 | 1) | | |
| (2 | 2) | | |
| (3 | 3) | | |
| (4 | 4) | | |
| (5 | 5) | | |
| 2) | | | |
| 3. | | | |
| 1) | 1 | | |
| 2) | 2 | | |
| 3) | | | |
| 4) | | 68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21) | | | |
| 22) | | | |



| 4. | |
|---------|------|
| 1) | |
| 2) | |
| 3) | |
| 4) | |
| 5) | |
| 5.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1) | |
| 2) | |
| 3) | |
| 4) | |
| 5) | |
| | |
| 7. 2008 | 2013 |
| 1) | |
| 2) | |
| 3) | |
| 4) | |
| 5) | |
| 8. 2008 | |
| 1) | |
| 2) | |
| 3) | |
| 4) | |
| 5) | |

| 1 | [|
|-------|---|
| 2 | [|
| 3 | [|
| 4 | [|
| 5 | [|



| < | 0-1-1> | | 4 |
|---|-------------|------|----|
| < | 0-2-1> | (22 |)4 |
| < | 0-3-1> | | |
| < | 0-4-1> | | |
| < | 0-5-1> | | |
| < | 0-6-1> | | |
| < | 0-7-1> 2008 | • | |
| < | 1-2-1> | | |
| < | 1-2-2> | | |
| < | 1-2-3> | | |
| < | 1-2-4> | | |
| < | 1-3-1> | | 11 |
| < | 1-3-2> 2008 | 2013 | |
| < | 1-3-3> 2013 | 2008 | |
| < | 1-4-1> | | |
| < | 2-1-1> | | |
| < | 2-1-2> 2008 | 2013 | |
| < | 2-1-3> 2008 | • | |
| < | 2-1-4> 2013 | | |
| < | 2-2-1> | | |
| < | 2-2-2> | | |
| < | 2-2-3> | | |
| < | 2-2-4> | | |
| < | 2-2-5> | | |
| < | 2-2-6> | | |
| < | 2-2-7> | | |
| < | 2-2-8> | | |
| < | 2-2-9> | | |
| < | 2-2-10> | | |
| < | 2-2-11> | | |
| < | 2-2-12> | | |
| < | 2-2-13> | | |
| < | 2-2-14> | | |
| < | 2-2-15> | | |
| < | 2-2-16> | | |

| < | 2-2-17> | |
|---|----------|-------|
| < | 2-2-18> | |
| < | 2-2-19> | |
| < | 2-2-20> | |
| < | 2-2-21> | |
| < | 2-2-22> | |
| < | 2-2-23> | |
| < | 2-2-24> | |
| < | 2-2-25> | |
| < | 2-2-26> | |
| < | 2-2-27> | |
| < | 2-2-28> | |
| < | 2-2-29> | |
| < | 2-2-30> | |
| < | 2-2-31> | |
| < | 2-3-1> | (22) |
| < | 2-3-3> 1 | |
| < | 2-3-4> 1 | |
| < | 2-3-5> 2 | |
| < | 2-3-6> 2 | |
| < | 2-3-7> | |
| < | 2-3-8> | |
| < | 2-3-9> | |
| < | 2-3-10> | |
| < | 2-3-11> | |
| < | 2-3-12> | |
| < | 2-3-13> | |
| < | 2-3-14> | |
| < | 2-3-15> | |
| < | 2-3-16> | |
| < | 2-3-17> | |
| < | 2-3-18> | |
| < | 2-3-19> | |
| < | 2-3-20> | |
| < | 2-3-21> | |
| < | 2-3-22> | |
| | | |



| < | 2-3-23> | |
|---|---------|--|
| < | 2-3-24> | |
| < | 2-3-25> | |
| < | 2-3-26> | |
| < | 2-3-27> | |
| < | 2-3-28> | |
| < | 2-3-29> | |
| < | 2-3-30> | |
| < | 2-3-33> | |
| < | 2-3-34> | |
| < | 2-3-35> | |
| < | 2-3-36> | |
| < | 2-3-37> | |
| < | 2-3-38> | |
| < | 2-3-39> | |
| < | 2-3-40> | |
| < | 2-3-41> | |
| < | 2-3-42> | |
| < | 2-3-45> | |
| < | 2-3-46> | |
| < | 2-3-47> | |
| < | 2-3-48> | |
| < | 2-3-49> | |
| < | 2-3-50> | |
| < | 2-4-1> | |
| < | 2-4-2> | |
| < | 2-4-3> | |
| < | 2-4-4> | |
| < | 2-4-5> | |
| < | 2-4-6> | |
| < | 2-5-1> | |
| < | 2-5-2> | |
| < | 2-5-3> | |
| < | 2-5-4> | |
| < | 2-5-5> | |
| < | 2-5-6> | |

| < | 2-5-7> | 111 |
|---|-------------|---------|
| < | 2-5-8> | 112 |
| < | 2-6-1> | 114 |
| < | 2-6-2> | 115 |
| < | 2-6-3> | 116 |
| < | 2-6-4> | 116 |
| < | 2-6-5> | 118 |
| < | 2-6-6> | 120 |
| < | 2-6-7> | 122 |
| < | 2-6-8> | 124 |
| < | 2-7-1> | 125 |
| < | 2-7-2> | 126 |
| < | 2-7-3> | 127 |
| < | 2-7-4> | 128 |
| < | 2-7-5> | 130 |
| < | 2-7-6> | 131 |
| < | 2-8-1> 2008 | 133 |
| < | 2-8-2> 2008 | 134 |
| < | 2-8-3> 2008 | 135 |
| < | 2-8-4> 2008 | 136 |
| < | 2-8-5> 2008 | 137 |
| < | 2-8-6> 2008 | 138 |
| | | |



| 4 | 1) 1998 | (|
|--------------|---------|---|
| | 2) 2003 | (|
| | 3) | (|
| (2008 2013) | 4) | (|
| | 5) | (|
| | | |

| : | | 2-3-1> 1 | < |
|-------|---|----------|---|
| : | | 2-3-2> 1 | < |
| : | | 2-3-3> 1 | < |
| : | | 2-3-4> 1 | < |
| : | | 2-3-5> 1 | < |
| : | | 2-3-6> 2 | < |
| : | | 2-3-7> 2 | < |
| : | | 2-3-8> | < |
| : | | 2-3-9> | < |
| : | | 2-3-10> | < |
| : | | 2-3-11> | < |
| : | | 2-3-12> | < |
| | : | 2-3-13> | < |
| | : | 2-3-14> | < |
| | : | 2-3-15> | < |
| | : | 2-3-16> | < |
| | : | 2-3-17> | < |
| | : | 2-3-18> | < |
| | : | 2-3-19> | < |
| | : | 2-3-20> | < |
| | : | 2-3-21> | < |
| : | | 2-3-22> | < |
| : | | 2-3-23> | < |
| : | | 2-3-24> | < |
| : | | 2-3-25> | < |
| : | | 2-3-26> | < |
| : | | 2-3-27> | < |
| : | | 2-3-28> | < |
| : | | 2-3-29> | < |
| : | | 2-3-30> | < |
| : | | 2-3-31> | < |
| | : | 2-3-32> | < |
| | : | 2-3-33> | < |
| | : | 2-3-34> | < |
| | : | 2-3-35> | < |
| | | | |



| < | 2-3-36> | : |
|---|---------|---|
| < | 2-3-37> | : |
| < | 2-3-38> | : |
| < | 2-3-39> | : |
| < | 2-3-40> | : |
| < | 2-3-41> | : |
| < | 2-3-42> | : |
| < | 2-3-43> | : |
| < | 2-3-44> | : |
| < | 2-3-45> | : |
| < | 2-3-46> | : |
| < | 2-3-47> | : |
| < | 2-3-48> | : |
| < | 2-3-49> | : |
| < | 2-3-50> | : |
| < | 2-3-51> | : |
| < | 2-3-52> | : |
| < | 2-3-53> | : |
| < | 2-3-54> | : |
| < | 2-3-55> | : |
| < | 2-3-56> | : |
| < | 2-3-57> | : |
| < | 2-3-58> | : |
| < | 2-3-59> | : |
| < | 2-3-60> | : |
| < | 2-3-61> | : |
| < | 2-3-62> | : |
| < | 2-3-63> | : |
| < | 2-3-64> | : |
| < | 2-3-65> | : |
| < | 2-3-66> | : |
| < | 2-3-67> | : |
| < | 2-3-68> | : |
| < | 2-3-69> | : |
| < | 2-3-70> | : |
| < | 2-3-71> | : |

| < | 2-3-72> | | : | |
|---|-------------|---|---|-------|
| < | 2-3-73> | | : | |
| < | 2-3-74> | | : | |
| < | 2-3-75> | | : | |
| < | 2-3-76> | | : | |
| < | 2-3-77> | | : | |
| < | 2-3-78> | | : | |
| < | 2-3-79> | | : | |
| < | 2-5-1> | | : | |
| < | 2-5-2> | | : | |
| < | 2-5-3> | | : | |
| < | 2-5-4> | | : | |
| < | 2-5-5> | | : | |
| < | 2-5-6> | | : | |
| < | 2-5-7> | | : | |
| < | 2-5-8> | | : | |
| < | 2-5-9> | | : | |
| < | 2-5-10> | | : | |
| < | 2-5-11> | | : | |
| < | 2-5-12> | | : | |
| < | 2-5-13> | | : | |
| < | 2-5-14> | | : | |
| < | 2-5-15> | | : | |
| < | 2-5-16> | | : | |
| < | 2-5-17> | | : | |
| < | 2-5-18> | | : | |
| < | 2-5-19> | | : | |
| < | 2-5-20> | | : | |
| < | 2-5-21> | | : | |
| < | 2-5-22> | | : | |
| < | 2-5-23> | | : | |
| < | 2-8-1> 2008 | | | : |
| < | 2-8-2> 2008 | | | : |
| < | 2-8-3> 2008 | | | : 231 |
| < | 2-8-4> 2008 | | | : |
| < | 2-8-5> 2008 | • | | : |
| | | | | |



| < | 2-8-6> 2008 | |
|---|--------------|-------------------------------------|
| < | 2-8-7> 2008 | |
| < | 2-8-8> 2008 | |
| < | 2-8-9> 2008 | |
| < | 2-8-10> 2008 | · · · · · · · · · · · · · 234 |
| < | 2-8-11> 2008 | : |
| < | 2-8-12> 2008 | : |
| < | 2-8-13> 2008 | : |
| < | 2-8-14> 2008 | |
| < | 2-8-15> 2008 | |
| < | 2-8-16> 2008 | • • • 237 |
| < | 2-8-17> 2008 | • • • 237 |
| < | 2-8-18> 2008 | • • • 238 |
| < | 2-8-19> 2008 | · : |
| | | |
| < | 2-8-20> 2008 | : · · · · · · · · · · · · 239 |
| < | 2-8-21> 2008 | : · · · · · · · · · · · · · · · 240 |
| < | 2-8-22> 2008 | : · · · · · · · · · · · · · · · 240 |
| < | 2-8-23> 2008 | · · · · · · · · · · · 241 |
| < | 4-1-1> | : |
| < | 4-1-2> | : |
| < | 4-1-3> | : |
| < | 4-1-4> | : |
| < | 4-1-5> | : |
| < | 4-1-6> | : |
| < | 4-1-7> | : |
| < | 4-1-8> | : |
| < | 4-1-9> | : |
| | | |







T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의 가장 기본적 목적은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현황과 건물유형별 및 지역별 설치율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또한 장기적으로는 편의시설 설치실태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등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이 되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대상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 시설에 대한 설치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임.

편이시설 설치대사 시설으 펴이주지번 제7조(대사시설) 및 도번 시해려 제3조(대삭시서)에 - 의거 1998. 4.11 이후 건축적 행위가 있었던 시설과 정비대상시설을 자치단체별로 파악하여 총 141,573개 시설을 72종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함.

시·군·구에서 선발한 1,003명의 조사원(장애인 194명 포함)이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각 편의시설별로 실측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함.

조사항목은 2008년도의 항목을 설치기준별로 세분화하여 최대 조사항목은 160개로 실제 조사내용은 건물유형에 따라 다르나 편의시설 설치수준은 종전의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단순화하여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13년도 편의시설 설치율은 67.9%, 적정설치율은 60.2%로 2008년의 설치율 77.5%, 적정 설치율 55.8%와 비교시 설치율은 낮아지고 적정설치율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편의시설 설치율이 2008년도 조사결과보다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2013년도 조사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매개시설이나 내부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자블록 관련 세부항목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지 실제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진 것은 아님. 편의시설 종별 설치율은 다음 <표 0-1-1>과 같음

| 편의시설 종류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 매개시설 | 2,729,583 | 1,897,877 | 69.5% | 1,706,129 | 62.5% | | |
| 내부시설 | 1,929,421 | 1,555,422 | 80.6% | 1,392,127 | 72.2% | | |
| 위생시설 | 1,250,126 | 583,869 | 46.7% | 478,392 | 38.3% | | |
| 안내시설 | 195,730 | 82,643 | 42.2% | 70,711 | 36.1% | | |
| 기타시설 | 200,514 | 163,868 | 81.7% | 147,789 | 73.7% | | |
| 계 | 6,305,374 | 4,283,679 | 67.9% | 3,795,148 | 60.2% | | |

<표 0-1-1>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설치기준항목수란 건물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항목을 모두 합한 것임.

2013년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에서는 대상시설의 건물군을 22종, 72개 유형으로 분류 하였으며, 유형별 설치율은 다음 <표 0-2-1>과 같음.

<표 0-2-1> 건물유형별(22개 건물군) 편의시설 설치율

| – H | 대상 | 대상편의 | 설치· | 수 및 | 적정설 | 치수 및 | | |
|-----------|--------|-----------|---------|-------|---------|-----------|--|--|
| 구 분 | 건물수 | 시설수 | 설치· | 율(%) | 적정설치 | 적정설치율 (%) | | |
| 1종 근린생활시설 | 27,050 | 1,001,853 | 701,339 | 70.0% | 612,251 | 61.1% | | |
| 2종 근린생활시설 | 10,190 | 301,604 | 199,605 | 66.2% | 181,666 | 60.2% | | |
| 문화·집회시설 | 1,563 | 98,369 | 74,073 | 75.3% | 65,840 | 66.9% | | |
| 종교시설 | 4,669 | 142,909 | 100,510 | 70.3% | 89,431 | 62.6% | | |
| 판매시설 | 1,526 | 79,737 | 58,500 | 73.4% | 52,750 | 66.2% | | |
| 의료시설 | 2,537 | 179,940 | 134,855 | 74.9% | 118,955 | 66.1% | | |
| 교육연구시설 | 14,765 | 925,477 | 653,449 | 70.6% | 573,285 | 61.9% | | |
| 노유자시설 | 19,698 | 1,158,246 | 691,116 | 59.7% | 606,439 | 52.4% | | |
| 수련시설 | 424 | 32,997 | 24,256 | 73.5% | 20,930 | 63.4% | | |
| 운동시설 | 1,317 | 46,605 | 32,880 | 70.6% | 29,982 | 64.3% | | |

Ι

| 구 분 | 대상 건물수 | | | | | |
|---------|-----------|-----------|-----------|-------|-----------|-------|
| 업무시설 | 9,706 | 563,796 | 404,033 | 71.7% | 355,133 | 63.0% |
| 숙박시설 | 4,335 | 212,873 | 149,000 | 70.0% | 132,230 | 62.1% |
| 공장 | 5,483 | 263,260 | 138,490 | 52.6% | 124,925 | 47.5% |
| 자동차관련시설 | 1,501 | 35,931 | 25,087 | 69.8% | 22,541 | 62.7% |
| 방송통신시설 | 205 | 9,763 | 7,246 | 74.2% | 6,373 | 65.3% |
| 교정시설 | 36 | 1,998 | 1,559 | 78.0% | 1,303 | 65.2% |
| 묘지관련시설 | 98 | 4,199 | 2,731 | 65.0% | 2,426 | 57.8% |
| 관광휴게시설 | 235 | 10,289 | 8,310 | 80.8% | 7,492 | 72.8% |
| 장례식장 | 298 | 19,869 | 13,500 | 67.9% | 11,468 | 57.7% |
| 공원 | 1,418 | 27,656 | 15,307 | 55.3% | 13,557 | 49.0% |
| 공동주택 | 34,099 | 1,161,272 | 830,279 | 71.5% | 750,881 | 64.7% |
| 기숙사 | 420 | 26,731 | 17,554 | 65.7% | 15,290 | 57.2% |
| 계 | 141,573 | 6,305,374 | 4,283,679 | 67.9% | 3,795,148 | 60.2% |

전수조사는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분석시에는 세종시를 충남에 합하여 16개시·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가 72.2%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다음 <표 0-3-1>과 같이 지역별 설치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구 분 | 대상건물수 | 대상편의 시설수 | 설치수 및 4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서울 | 18,529 | 698,539 | 469,537 | 67.2% | 423,987 | 60.7% | |
| 부산 | 9,672 | 445,606 | 318,466 | 71.5% | 293,709 | 65.9% | |
| 대구 | 7,002 | 236,084 | 170,423 | 72.2% | 152,237 | 64.5% | |
| 인천 | 10,450 | 415,069 | 277,264 | 66.8% | 247,923 | 59.7% | |
| 광주 | 5,052 | 229,268 | 161,775 | 70.6% | 140,738 | 61.4% | |
| 대전 | 3,535 | 109,913 | 78,329 | 71.3% | 70,351 | 64.0% | |
| 울산 | 3,606 | 173,880 | 122,601 | 70.5% | 116,142 | 66.8% | |
| 경기 | 29,541 | 1,326,389 | 923,628 | 69.6% | 827,777 | 62.4% | |
| 강원 | 4,467 | 157,822 | 112,669 | 71.4% | 101,542 | 64.3% | |
| 충북 | 4,927 | 252,523 | 152,183 | 60.3% | 133,251 | 52.8% | |
| 충남(세종) | 7,538 | 367,452 | 237,977 | 64.8% | 201,350 | 54.8% | |
| 전북 | 7,159 | 333,595 | 227,433 | 68.2% | 202,147 | 60.6% | |
| 전남 | 7,553 | 404,951 | 260,484 | 64.3% | 209,999 | 51.9% | |
| 경북 | 10,270 | 515,110 | 334,029 | 64.8% | 286,019 | 55.5% | |
| 경남 | 9,351 | 493,597 | 333,975 | 67.7% | 293,858 | 59.5% | |
| 제주 | 2,921 | 145,576 | 102,906 | 70.7% | 94,118 | 64.7% | |
| 계 | 141,573 | 6,305,374 | 4,283,679 | 67.9% | 3,795,148 | 60.2% | |

<표 0-3-1>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율

72개 건물유형을 공공 및 민간시설로 구분하여 파악한 설치율은 다음 <표 0-4-1>와 같음.

| 시설주체 | 대상건물수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 공공시설 | 11,973 | 733,461 | 539,767 | 73.6% | 456,772 | 62.3% |
| 민간시설 | 129,600 | 5,571,913 | 3,743,912 | 67.2% | 3,338,376 | 59.9% |
| 계 | 141,573 | 6,305,374 | 4,283,679 | 67.9% | 3,795,148 | 60.2% |

<표 0-4-1>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율

기준만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설치율은 72.9%(적정설치율은 62.9% + 미흡설치율 10%)로 전체설치율(67.9%)보다 5%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설치율이 낮게 나타난 점자블록 등이 핵심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편의시설 종류별 핵심항목기준 설치율은 다음 <표 0-5-1>과 같음.

| 편의시설 종류 | 핵심세부항목수 및 전체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미흡설치수 및 미흡설치율(%) |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
| 매개시설 | 317,504 | 100.0% | 208,725 | 65.7% | 45,853 | 14.4% | 62,926 | 19.8% |
| 내부시설 | 207,046 | 100.0% | 169,972 | 82.1% | 10,106 | 4.9% | 26,968 | 13.0% |
| 위생시설 | 188,214 | 100.0% | 82,452 | 43.8% | 14,351 | 7.6% | 91,411 | 48.6% |
| 안내시설 | 76,128 | 100.0% | 33,794 | 44.4% | 8,298 | 10.9% | 34,036 | 44.7% |
| 기타시설 | 24,841 | 100.0% | 16,895 | 68.0% | 2,823 | 11.4% | 5,123 | 20.6% |
| 계 | 813,733 | 100.0% | 511,838 | 62.9% | 81,431 | 10.0 | 220,464 | 27.1 |

<표 0-5-1> 핵심항목기준 편의시설 설치율

2008년도와 2013년에도 공통적으로 조사된 세부항목에 한정하여 산정한 2008년도의 설치율은 77<u>.8%, 적정설치율은 57.6%인 반면</u>, 2013년도의 설치율은 78.2%, 적정설치율은 68.6%로 나타났음. 설치율 증가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2008년 이전 건물임에도 2008년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2013년 조사에 포함된 건물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적정 설치율이 대폭 상승한 이유는 2008년도와는 달리 조사문항을 세부설치기준별로 함으로써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없앴기 때문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은 다음 <표 0-6-1>와 같음

| 편의 | | 20 | 08년도 | | | 2013년도 | | | | | | |
|----------|-------------|-----------|-------|-----------|---------------------|-----------|-----------------|-------|---------------------|-------|--|--|
| 시설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매개 시설 | 1,342,840 | 1,035,594 | 77.1% | 754,353 | 56.2% | 1,455,010 | 1,202,226 | 82.6% | 1,063,331 | 73.1% | | |
| 내부 시설 | 1,406,739 | 1,231,281 | 87.5% | 959,834 | 68.2% | 1,030,043 | 969,146 | 94.1% | 867,051 | 84.2% | | |
| 위생 시설 | 512,965 | 286,607 | 55.9% | 183,238 | 35.7% | 808,790 | 414,059 | 51.2% | 336,763 | 41.6% | | |
| 안내 시설 | 28,994 | 14,350 | 49.5% | 7,498 | 25.9% | 77,309 | 43,077 | 55.7% | 35,019 | 45.3% | | |
| 기타 시설 | 79,394 | 54,811 | 69.0% | 38,173 | 48.1% | 115,273 | 97,619 | 84.7% | 89,304 | 77.5% | | |
| 계 | 3,370,932 | 2,622,643 | 77.8% | 1,943,096 | 57.6% | 3,486,425 | 2,726,127 | 78.2% | 2,391,468 | 68.6% | | |

<표 0-6-1> 연도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2013년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에서 조사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을 2008년 이전·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08년 이전 대상건물의 설치율은 66.5%, 적정설치율은 58.5%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8년 이후 대상건물의 설치율은 71.6%, 적정설치율은 64.7%인 것으로 나타났음.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은 다음 <표 0-7-1>와 같음.

| 편의시설 | | 2008년 도 | 이전 | 건물 | | | 2008년 5 | E 이후 | 건물 | |
|------|-------------|------------|-------|--------------|-------|-------------|------------|-------|--------------|-------|
|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매개시설 | 1,708,267 | 1,162,906 | 68.1% | 1,037,337 | 60.7% | 747,465 | 538,608 | 72.1% | 491,690 | 65.8% |
| 내부시설 | 1,195,036 | 950,725 | 79.6% | 845,250 | 70.7% | 517,316 | 428,569 | 82.8% | 390,617 | 75.5% |
| 위생시설 | 748,238 | 329,764 | 44.1% | 263,667 | 35.2% | 322,617 | 174,608 | 54.1% | 148,756 | 46.1% |
| 안내시설 | 124,199 | 50,099 | 40.3% | 41,994 | 33.8% | 45,653 | 21,534 | 47.2% | 19,082 | 41.8% |
| 기타시설 | 133,438 | 108,048 | 81.0% | 97,311 | 72.9% | 48,574. | | | | |

이번 조사결과에 기반한 편의시설 현황은 편의시설종류별, 건물유형별 설치율 분석외에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 2008년과 2013년에 동일하게 조사한 항목을 비교한 설치율,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설치율 및 핵심항목기준 설치율 등 다양한 분석내용을 제시하여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였음

설치율 종류가 많아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본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분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번 조사를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2013년도 조사대상시설수는 08년도보다는 30%이상 증가하였지만 2003년도에 조사한 시설수와 비슷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조사대상임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첫째,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가 설치율 조사에 그치지 않고, 동 조사결과가 장애인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물의 용도별로 편의시설 설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즉, 동 조사결과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건물단위별로 설치 현황을 분석하고, 설치율의 정도가 장애인등에게 얼마만큼의 편의정도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기준 또는 등급 등의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별로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장애인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함

둘째, 이번 분석대상 시설 약 14만개는 2008년도보다 약 30%나 증가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2003년도에도 약 14만개를 조사하였던 것과 비교시에는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시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앞서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보다 현실성 있게 실현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셋째, 현재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건물의 용도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한,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를 특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물용도도 중요하지만 용도와 관계없이 규모별 편의시설 설치항목을 차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시설주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넷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국민의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에 변<u>하가 있고, 또 적도회체어 버그 하사 두 편이시서 관련 하격이 변체된 전 두오 고려하 때</u> 현재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즉, 최소한의 설치기준을 최적의 설치기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시설이용상의 편의수준과 시설주의 의무이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관련 세부설치기준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각 시설주관기관에서는 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관내 대상시설중 장애인 화장실, 접근로 단차제거 등의 시설이 미설치된 건물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T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시설주관기관은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1998년, 2003년, 2008년)하여 왔다. 그동안 3회의 전수조사는 매번 조사내용과 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조사되었으나 설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한 설치여부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적정 하게 설치되는 비율은 설치율과 다소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로 인하여 시설 이용자의 체감도는 설치율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3년도까지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와 감독 책임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접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08년부터는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의 가장 기본적 목적은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현황과 건물유형별 및 지역별 설치율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편의시설 설치실태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등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이 되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대상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 시설에 대한 설치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이번 실태조사결과는 각 자치단체별로 보고서 뿐만 아니라 시설별 원데이터(raw data)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정책수립 및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수립시 목표설정을 위한 명확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함이다.

1) 그동안 조사개요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총 4회에 걸쳐 실시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1998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① 전수조사표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종류별로 설치여부를 'O' 또는 '×'로만 표기 하도록 하였고,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적인 편의시설(2013년 조사의 중분류 수준)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예컨대, 매개시설의 주출입구 접근로에는 유효폭, 재질과 마감, 이음새, 단차높이, 기울기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주출입구 접근로라는 포괄적인 단 한 항목 으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하는 조사표에 의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 실시

조사대상 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대상시설 중에는 현재 시점에는 편의증진법 대상시설에 속하지 않은 시설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여객터미널 등의 시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는 시설주관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였으며, 대부분 편의시설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200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① 전수조사표

2003년의 전수조사는 1998년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와 조사방법을 거의 동일하게 적용

| . 대상/ | 실 현황 | 뢃 | | 1 | | | . · · · · | | |
|------------------------|-----------------|-----------------|------------------------------|-------------|--------|---------|-----------|-----------|-----|
| 시설 | 경 | | | | | | 대 표 자 | 8.1 | |
| 소 재 : | Z] | | | | ÷ | | 전화번호 | | |
| 시설규. | 로 층 | 수 | - | | 바닥면 | 전의 | 합계 | | m² |
| 2. 편의/ | 실 설키 | | | | | | | | |
| | 시설 종류 | Ť . | 설치여부 (0,×) | | | 비 또는 | 부적정 | 고 사유 등 | 기재) |
| 매개 장 시설 주 주 | 애인전 차구 | 에 아 마 | | | | | | | |
| 내부 | 입 구(| | | - | | | 2 | | |
| 시설 제 | 단·승경 | 도 카기 | | | | × | . 7 | | |
| 위생 시설 ^{화:} | 장실(대보 | 17]) | | | | | | | |
| 안내 시설 점 | 자 불 | 时 | | | | 1 | | | |
| 기타 접 | 宁 | 데]1) | | | | | | | |
| 시설 열 | · · | 석 ²⁾ | | | | | - | | |
| 참고 💥 | 에는 용도 주1) 공공 | 에 따라 도서관 | 가 1000㎡대 + "공공업적 은 접수대 | -시설- 비해당 |), "도서 | 판용" | | | |

(그림 1) 1998년도 전수조사표



하였고, 전수조사표의 양식 또한 1998년의 전수조사와 거의 비슷한 형식인 편의시설별로 설치여부를 'O' 또는 '×'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②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 실시

조사대상 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전국적으로 총 227,655개소를 조사하였다. 이 대상시설 중에는 횡단보도(82,664 개소), 지하도·육교(2,835개소), 여객터미널(739개소) 등 현재는 편의증진법 대상시설에 속하지 않은 시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교통시설과 관련된 유형의 개소를 제외하면 조사대상 시설은 141,417개소였다. 2003년도 조사 또한 1998년 전수 조사와 마찬가지로 시설주관기관인 각 지방자치 단체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였다.

| 시 · | 설 명↓ | لم | 대 표 자 + | ц. | | | |
|-----------|-----------------------------------|---|-------------------|---------------|--|--|--|
| 소 | 재지 | Ļ | 전화번호+ + | | | | |
| 시설 | 규모₊ 충 수 | ل ال | 바닥면적의 합계 | uî 🚚 🗸 | | | |
| Ą | 1의시설 종류↓ 주 출 입 구↓ | ل (×, ۵) | 비 | | | | |
| _ | 의시설 설치현 | 설치여부 🌙 | | .स च्रान्ध | | | |
| 매개. 시설 | 접 근 로. 장애인전용. 주 차 구 역. | | له | | | | |
| | · ┬ ↗ ㅜ ㅋ↓ 주 출 입 구↓ 높이차이제거↓ | | ل | | | | |
| 내분 | 출 입 구(문)↓ | (e) | لو | | | | |
| | 복 도. | لو ا | لم | | | | |
| cazri | 계단· 승강기+ | لو ا | له <mark>ا</mark> | | | | |
| 위생. 시설 | 화장실(대변기) | له ما | لم | | | | |
| | ※ 겸로당은 조사대 | গ্ৰহণ হয় | | | | | |

T

(3)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그림 2) 2003년도 전수조사표

① 전수조사표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규정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수조사는 각 시설별 설치여부를 단순 파악하는 조사표를 사용하여 해당 편의시설의 설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원(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2006년도에 개발한 표준조사표를 기반으로 전수조사 목적에 맞도록 조사표를 재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조사용 조사표의 형식도 'O' 또는 '×'가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수준을 4등급(적정, 보통, 미흡, 미설치)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 객관화, 척도화 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②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 실시

편의증진법 제7조(대상시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에 의거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시설은 전국적으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총 107,730개소 였으며, 1,941명의 조사원들이 대상시설에 직접 방문해 각 편의시설별로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에 조사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전 전수조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 전수조사에서는 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한 조사원을 선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425명(22%)이 직접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당사자의 입장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① 전수조사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8년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3회에 걸쳐 진행된 전수조사에서는 각각 다른 조사표를 사용하였는데, 1998년 조사 및 2003년 조사에서는 설치와 미설치를 단순 분리하는 '○'또는 '×'형 조사표가 적용되었고, 2008년 조사에서는 설치수준을 4등급으로 구분했었다. 2013년 전수조사에서는 기존 4등급을 3등급(적정, 미흡, 미설치)으로 하여 주관적 판단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조사항목도 2008년도 조사항목을 보다 세분화였다. 즉, 2008년도 에는 한 문항에 수개 이상의 설치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했는데 2013년도에는 세부설치기준 별로 조사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②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 실시

조사대상 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141,573개소¹⁾이며, 조사원 1,003명이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각 편의시설별로 실측조사(각도기, 줄자 등)를 실시하였으며, 설치수준의 등급(적정, 미흡, 미설치)을 별도 기록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 방법

(1) 조사대상시설 선정

편이시선 선치대사 시선으 펴이주지버 제7조(대사시선) 및 두번 시해려 제3조(대삭시서)에 - 의거 1998. 4.11 이후 건축적 행위가 있었던 시설과 정비대상시설을 자치단체별로 파악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비대상시설이란 시설의 규모나 신축시기에 관계없이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후 2년 내에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¹⁾ 당초 163,776개를 조사대상으로 파악하였으나 실제 조사후 분석대상은 141,573개소로 확정

| | FIL | | a I | ۲۸ | | | 키티 |
|--------------------------|--------|--------|-------|----|--------|-------|--|
| | 대 | 상 | 시 | 설 | | | 기타 |
| | | | | | | | 보건지소는 보건소로 분류 - 경찰지구대는 경찰관파출소로 분류 |
| 5개 이상의 대변기를 | 를 설치하는 | 공중화 | 장실 | | | | |
| 장애인복지시설, 노 | 인복지시설 | (경로당 : | 제 외) | | |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u>, 노</u> 인복지법에 <u>의한 복지시설에 의한 복지</u> 시설을 말함 |
| 종합병원 | | | | | | | |
| 장애인특수학교 | | | | |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 이는 바닥면적의 합 | | | | | 안에서 당해 | 용도에 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대 상 시 설 | 바닥면적 | 대상시설수 |
|---------------|--|------------------------------|---------|
| 교육연구시설 |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 학교 기타 각종 학교) | | 10,364 |
| | 교육원(연수원 등)·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500㎡ 이상 | 4,071 |
| | 도서관 | 1,000㎡ 이상 | 330 |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 8,630 |
|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 10,165 |
|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 903 |
|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 텔) | | 276 |
| |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 | 148 |
| 운동시설 | 체육관 | 500㎡ 이상 | 510 |
| |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 트・승마・사격・궁도・골프)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500㎡ 이상 | 807 |
|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 제외) | 1,000㎡ 이상 | 2,797 |
|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 500 ^{m²} 이상 | 6,795 |
|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 로복지공단 및 지사 | 1,000㎡ 이상 | 114 |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객실수가 30실 이상인 호텔 및 여관) | | 3,762 |
|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 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 573 |
| 공 장 |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 물로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 (50인이상) | 5,483 |
| 자 동 차 관련시설 | 주차장 | | 1,346 |
| | | | 155 |
| 교정시설 | 교도소 및 구치소 | | 36 |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1,000 ^{m²} 이상 | 205 |
|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 | 25 |
|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73 |
| 관 광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1,000㎡ 이상 | 28 |
| 휴게시설 | · 휴게소 | 300㎡ 이상 | 207 |
| 장례식장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 | 500 ^{m²} 이상 | 298 |
| 공동주택 | 아파트 | | 12,784 |
| | 연립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 | | 3,221 |
| | 다세대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 | | 18,094 |
| 공원 | 도시공원(생활권공원, 주제공원) | | 1,079 |
| |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 | 339 |
| 기숙사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공장에 부설된 시설 | 30인 이상 기숙 | 420 |
| 계 | | | 141,573 |



(2)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조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선발하였으며, 가능한 한 편의시설관련 실태조사 등 관련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등 조사요원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 객관적이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을 9개 권역 (서울권, 경기권, 인천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대전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기본교육과 현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기본교육은 전수조사 담당공무원과 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장에서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했고, 현장교육은 기본교육 이후에 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의 지도하에 하루동안 실제 조사대상 시설을 조사하면서 조사방법을 직접 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조사원 1,003명중 장애인 194명(19.3%)이 직접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당사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하였다.

| | | | 현장조사원(명) | |
|-----|-----------|-------|----------|-------|
| 시·도 | 조사대상시설(개) | 조사원 | 장애인 | 장애인비율 |
| 서울 | 18,529 | 83 | 10 | 12.0% |
| 부산 | 9,672 | 70 | 9 | 12.9% |
| 대구 | 7,002 | 43 | 0 | 0.0% |
| 인천 | 10,450 | 119 | 2 | 1.7% |
| 광주 | 5,052 | 38 | 9 | 23.7% |
| 대전 | 3,535 | 28 | 3 | 10.7% |
| 울산 | 3,606 | 26 | 0 | 0.0% |
| 세종 | 159 | 2 | 1 | 50.0% |
| 경기 | 29,539 | 177 | 61 | 34.5% |
| 강원 | 4,467 | 47 | 23 | 48.9% |
| 충북 | 4,927 | 42 | 5 | 11.9% |
| 충남 | 7,379 | 61 | 23 | 37.7% |
| 전북 | 7,159 | 52 | 5 | 9.6% |
| 전남 | 7,553 | 30 | 4 | 13.3% |
| 경북 | 10,272 | 115 | 23 | 20.0% |
| 경남 | 9,351 | 54 | 13 | 24.1% |
| 제주 | 2,921 | 16 | 3 | 18.8% |
| 계 | 141,573 | 1,003 | 194 | 19.3% |

<표 1-2-3> 전수조사 조사원 현황

| 구분 | 소요시 | 이간 | 과 목 | 내 용 |
|----------------|------------------|-----|--|--|
| | 13:00 ~ 13:20 | 20분 | 보건복지부 | •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한 주의및 행정사항 등 |
| | 13:20 ~ 14:00 | 40분 | 전수조사 조사표 작성방법 |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 설의 정의와 각 시설벌 세부시설의 구성에 대한 개요 |
| 1. 기본 교육 | 14:10 ~ 15:00 | 50분 | 전수조사 조사표 항목별 이해 (매개시설, 내부시설) | · 각 편의시설별 전수조사표 작성에 관한 세부적 인 작성방법 안내 · 현장조사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 는 조사표 작성방법 |
| ╨퓩 | 15:10 ~ 16:00 | 50분 | 전수조사 조사표 항목별 이해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 각 편의시설별 전수조사표 작성에 관한 세부적 인 작성방법 안내 현장조사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 는 조사표 작성방법 |
| | 16:00 ~ 16:10 | 10분 | 질의응답 | · 전수조사 조사표 항목별 이해에 대한 문의사항 청취 및 답변 |
| 2. | 16:20 ~ 17:20 | 1시간 | 전수조사 조사표 현장작성실습 | 교육장 또는 교육장 인근 시설 현장에서 전수조 사표를 실제 작성하는 실습 |
| 현장 교육 | 17:20 ~ 17:30 | 10분 | 질의응답 | 조사원의 현장조사 및 전수조사표 작성관련 문 의사항 청취 및 답변 |

<표 1-2-4> 조사원 교육 내용

(3) 설치실태 조사

조사원들에게 조사원증과 각도기, 줄자 등의 조사도구를 배분한 후, 원칙적으로 2인1조로 이루어진 조사원들이 직접 조사대상 시설을 방문하여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사항은 조사용 기록지에 항목별 설치수준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를 마친 후 조사 결과 기록지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 및 시·군·구 센터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후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수집한 조사결과 기록지를 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한 후 지원센터별 개별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 입력(업로드)하여 장애인개발원에 전송 되도록 하였다.

(4) 조사결과 모니터링

조사요원에 대한 조사방법 교육 등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어느정도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후 본 조사의 연구진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 센터직원 등이 직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Ι

1) 조사표 변화 고찰

1998년 이후 3회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는 각 조사별로 각각 다른 조사표를 사용하였다.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 시행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는 편의시설이 법적으로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설치율 위주의 조사'였다. 조사결과를 'O' 또는 '×'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 세부적인 기준적용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08년 전수조사에서는 이러한 설치여부만 묻는 기존의 조사방법 및 내용을 탈피하여 세부항목을 개발하여 조사함으로써 세부항목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세부항목별 설치수준을 4등급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통'과 '미흡'을 구분하는데 있어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도 판단에 혼동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을 설치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자가 조사대상시설별 유형(A1~V1, 72종)의 양식을 이용하여 대상시설 유형별로 조사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각 세부항목별 조사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함으로써 각 대상시설별 유형에 따른 문제점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 분 | 1998년 및 2003년 조사표 | 2008년 전수조사표 | 2013년 전수조사표 |
|-----|--|--|---------------------------------|
| 특징 | ·편의시설의 설치유무만 선택 하게 함 | ·2-3개의 설치기준을 하나의 조사항목으로 하고, 각 항목마 다 4단계(적정, 보통, 미흡, 미 설치)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 | |
| 단 점 | ·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설치 유무가 결정될 수 있고, 정보를 거 의 제공 못함 | ·질문항목이 복잡하고, 조사결 과 의미 분석 곤란 | ·조사항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조사 및 분석에 어려움 |
| 장 점 | ·조사 및 조사분석이 간단하고 용이 | ·약간은 구체화된 항목별로 구 체적 설치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시도를 하였음 | ·세부설치기준 항목별 설치수 준을 파악할 수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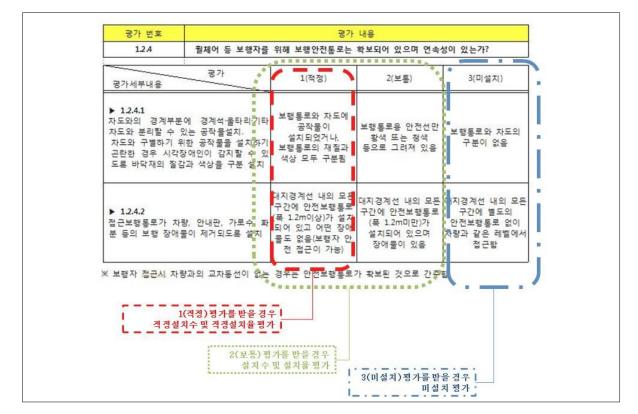
<표 1-3-1> 전수조사표의 특징 비교

2) 2013년도 조사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의 조사표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개발되었다.

설치수준 파악은 기존 4등급을 3등급으로 단순화하면서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표의 '1(적정)'은 편의증진법의 법적 기준에 적정한 수준을 의미하며, '2(미홉)'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설치수준이 적정에 미치지 못한 수준을 의미한다. '3(미설치)'은 편의시설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이용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는 수준이거나 편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조사항목도 2008년도와 달리 설치기준 단위로 세분화를 하였다. 즉,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표의 경우 단일항목에 대한 질의에서 다수의 결과를 도출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사자가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었으나 2013년 전수조사 표에서는 조사자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단일항목에서 2개 이상의 중복문항을 설치기준에 맞추어 세분화하였다. 그 예로 (그림 4)와 같이 계단의 형태 및 손잡이의 높이 등 중복되어 있는 단일항목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항목을 세분화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표의 변화로 인해 조사자의 시설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그림 3) 설치율 산정항목

| 6 | · 한국장애인개발원 |
|-------------------|------------|
| 2 | // |
| www.koddi.or.kr , | |
| v.kod | |
| ww | |

Ι

| 평가 번호 | | | 평가 내용 | | |
|--|---|--|--|---|--|
| 2.3.1.1 | 계단의 유효폭, 휴식 | 참, 난간의 굵기 및 높이 등은 | 은 적절한가 ? (8.8) | | |
| 공가세부내용 | 점수 | 4(적정) | 3(보통) | 2(日音) | 1(미설치) |
| 는 0.28m이상, 챌면의 | ISI어 있으며 디딜판의 너비 니 높이는 018mDI하로 설치 니 끝부분에는 목발이나 발끝 1 | | 일부계단에 챌면 미설치 및 디딤판 0.28m이상, 챌면 0.18m이하 | 모든 계단에 챌면 설치 및 디딤판 0.28m미만, 또는 철면 0.18m초과 | 일부 계단에는 챌면 미설치 및 디딤판이 0.28m미만, 챌면 0.18m조과 |
| | ·3.8cm, 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또한, m이상 수평손잡이를 연장실 | 높이는 0.8~0.9m, 굵기는 3.2~3.8cm, 한쪽이상 연속 설치, 끝부분 0.3m이상 수 평손잡이 설치 | 기는 3.2~3.8cm, 한쪽이상 | 높이는 0.8m미만, 0.9m초 과, 굵기는 3.8cm초과, 한쪽이상 설치, 끝부분 수평손잡이 미설치 | 손잡이 미설치 |
| ▶ 2.3.1.14 계단의 시작과 펼지점(중간 참 포함) 0.3m에 계단 의 폭만큼 점형분록을 설치하고, 손잡이에 점자표 기 | |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만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 및 점자표기 설치 |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계 단의 일부 폭 만큼 점형불 록 설치 |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점자표기만 설치 | 모두 미설치 |

| 24.2 계단의 유효폭, 휴식참, 난간의 굵기 및 높이 등은 적절한가? | | | | | | |
|---|---------------------------------|----------------------------------|------------------------------|--|--|--|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급) | 3(미설치) | | | |
| ▶ 24.2.1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 일부 계단 및 참의 유효폭 0.9m~1.2m미만 | 모든계단 및 참의 유효폭 0.9m미만 | | | |
| ▶ 24.2.2 계단에는 철면이 설치되어 있음 | 모든 계단에 잴면 설치 | | 일부계단에 잴면 미설치 | | | |
| ▶ 24.2.3 철면의 높이 0.18m이하로 설치, 디딤판의 너비는 0.28m이상 설치 | | 챌면, 디딤판, 계단코 3개의 기준 중 1~2개 적합 | 챌면, 디딤판, 계단코 3개의 기준 모두 미흡 | | | |
| ▶ 24.24 계단측면에 손잡이 굵기 0.032~0.038m사이 설치 | 굵기는 0.032~0.038m | 굵기는 0.032m미만 또는 0.038m이상 | 미설치 | | | |
| ▶ 24.25 계단측면에 높이 0.8~0.9m에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지 | 높이는 0.8~0.9m | 높이는 0.8m미만 또는 0.9m조과 | 미설치 | | | |
| ▶ 24.2.6 손잡이 끝부분에 0.3m이상 수평손잡이를 연장설치 | 끝부분 0.3m이상 수평손잡이 설 치 | 끝부분 0.3m미만 수평손잡이 설 치 | 미설치 | | | |
| ▶ 24.27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중간 참 포함) 0.3m에 계단의 폭만룷 점형북록을 설치 |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 계단의 일부 폭만큼 점형불록 설 치 | 미설치 | | | |
| ▶ 1 | 모든 중 설치 | 일부 중 설치 | 그! 설치! | | | |
| | | | | | | |

(그림 4) 세부항목 비교표 (2008년 대비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의 세부조사항목은 각 세부편의시설 항목마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2008년 전수조사 89개의 세부항목보다 2배 가까이 많아진 160개 세부항목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표의 세부조사항목들은 <표 1-3-3>과 같다.

| | 항목구분 | <u>1</u> - | 2008년 | 2013년 | 증감 |
|---------|-------------------------------------|---------------|-------|-------|----|
| | 1.1 주출입구 접근로 | | 7 | 7 | - |
| 1. 매개시설 | 1.2 장애인전 | 용 주차구역 | 5 | 6 | 1 |
| | 1.3 주출입구 | 높이차이제거 | 2 | 9 | 7 |
| | 2.1 출입구(문 | .) | 8 | 11 | 3 |
| 2. 내부시설 | 2.2 복 도 | | 3 | 6 | 3 |
| | 2.3 계단 또는 | - 승강기 | 13 | 30 | 17 |
| | | 3.1 대변기 | 10 | 15 | 5 |
| | 화장실 | 3.2 소변기 | 2 | 5 | 3 |
| 3. 위생시설 | | 3.3 세면대 | 2 | 3 | 1 |
| | 3.4 욕 실 | | 6 | 8 | 2 |
| | 3.5 샤워실 및 탈의실 | | 6 | 7 | 1 |
| | 4.1 점자블록 | | 2 | 3 | 1 |
| 4. 안내시설 | 4.2 유도 및 안내설비 4.3 경보 및 피난설비 | | 2 | 7 | 5 |
| | | | 2 | 2 | - |
| | 5.1 객실·침실 5.2 관람석·열람석 | | 10 | 23 | 13 |
| | | | 2 | 4 | 2 |
| 5. 기타시설 | 5.3 접수대・작업대 | | 2 | 4 | 2 |
| |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3 | 10 | 7 |
| | 5.5 임산부등 | 을위한 휴게시설 | - | _ | _ |
| | 계 | | | 160 | 73 |

<표 1-3-2> 2008년도 2013년도 전수조사 세부항목별 개소수 비교표

※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만을 기준으로 정리함.

<표 1-3-3> 2013년도 기준 2008년 전수조사의 조사내용별 세부항목 비교표

| | 구 | 분 | 내용 | 2008년도와 비교 |
|-------------|------------------------|---------|---|---------------|
| | | 1.1.1.1 | 주출입구 접근로 해당여부 | - |
| | | 1.1.2.1 |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 |
| | | 1.1.2.2 | 보도블록 등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 | • |
| | 1.1 주출입 구 접근로 | 1.1.2.3 |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며,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2cm 이하 | • |
| | | 1.1.3.1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 | • |
| 1. 매 | | 1.1.3.2 | 보도 등의 진행방향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 | • |
| 개 시 설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경계석 · 울타리 ·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설치.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분 설치 | • |
| | | 1.1.4.2 | 접근보행통로가 차량, 안내판, 가로수, 화분 등의 보행 장애물이 제거되도록 설치 | • |
| | 1.2 | 1.2.1.1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여부 | _ |
| | 장애인 | 1.2.2.1 | 대상시설 총 주차대수 (서술식) | _ |
| | 전용 | 1.2.2.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총 주차 대수 (서술식) | _ |
| | 주차구 | 1.2.2.3 | 장애인전용주착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 | • |

Ι



| | 구 | 분 | 내 용 | 2008년도와 비교 |
|-------------------|--|---------------------------|---|---------------|
| | | 1.2.2.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 • |
| | 역 | 1.2.2.5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길이 5m 이상(평행주차인 경우 폭 2m이상, 길이 6m 이상)의 규정에 적합한 주차공간의 확보 | • |
| | | 1.2.2.6 | 주차공간 바닥마감의 적정성 | 0 |
| | | 1.2.3.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에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 • |
| | | 1.2.3.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안전통행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m 이상 | • |
| | | 1.3.1.1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의 설치형태 | - |
| | | 1.3.2.1 | 해당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는 2cm이하가 되고 주출입문까지의 휠체어 등의 접근 가능여부 | • |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이 1.2m이상 설치 여부 | • |
| | | 1.3.2.3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여부 | 0 |
| | 1.3 주출입 - 구 높이차 ⁻ 이제거 | 1.3.2.4 |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여부 | O |
| | | 1.3.2.5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여부 | Ø |
| | | 1.3.2.6 |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양측면에 손잡이의 연속 설치 | 0 |
| | | 1.3.2.7 |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손잡이의 높이 적정여부 | O |
| | | 1.3.2.8 |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손잡이의 굵기 적정여부 | 0 |
| | | 1.3.3.1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에 점자블록이 설치여부 | - |
| | | <u>1.3.4.1</u> 1.3.4.2 | 점자블록 형태 점자블록 설치위치 | 0 |
| | - | 1.3.4.2 | 점자블록 실지되지 점자블록 시공방법 | 0 |
| | | 2.1.1.1 | 주출입문의 높이차이 여부 | 0 |
| | - | 2.1.1.2 | 주출입문 통과유효폭의 0.8m이상 확보 여부 | • |
| | | 2.1.1.2 | 주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m이상 확보 | |
| | | 2.1.1.4 | 주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설치 | • |
| | - | 2.1.1.5 | 주출입문 손잡이 형태 | 0 |
| | 0.1 | 2.1.2.1 | 주출입문에 점자블록이 설치여부 | 0 |
| | 2.1 * 0.7 | 2.1.3.1 | 주출입문 점자블록 형태 | 0 |
| | 출입구 - | 2.1.3.2 | 주출입문 점자블록 설치위치 | 0 |
| | (문) - | 2.1.4.1 | 출입문턱의 높이 차이 | |
| | | 2.1.4.2 |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이상 확보 여부 | |
| | | 2.1.4.3 |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m이상 확보 | |
| 2. 내 부 시 | | 2.1.4.4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의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설치여부 | • |
| | | 2.1.4.5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의 출입문에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O |
| | | 2.2.1.1 |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함 | • |
| 설 | ᇬᇦᆮ | 2.2.1.2 | 복도 바닥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 • |
| | 2.2 복도- | 2.2.1.3 |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였는지 그리고 2.1m 이내 장애물 있는 경우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여부 | • |

| 구 | 분 | 내용 | 2008년 5 비교 |
|--------|----------|--|---------------|
| | 2.2.2.1 | 대상시설별 장애인전용시설 여부 | - |
| | 2.2.3.1 | 복도 측면에 손잡이 연속설치 여부 | 0 |
| _ | 2.2.3.2 | 손잡이 지름 ().032~().038m사이 설치 | 0 |
| - | 2.2.3.3 | | |
| | 2.2.3.3 | 손잡이 설치높이 0.8~0.9m사이 설치 | 0 |
| 2.3 층수 | 2.3.1.1 | 대상시설이 1층 이거나 2층 이상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직이동 설비의 조사 가능 여부 | - |
| - | 2.4.1.1 | 대상시설에 설치된 수직이동 수단으로 설치된 설비 항목 | - |
| - | 2.4.2.1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 이상 확보 | • |
| - | 2.4.2.2 | 계단에는 챌면이 설치되어 있음 | • |
| - | 2.4.2.3 | 챌면의 높이 0.18m이하로 설치, 디딤판의 너비는 0.28m이상 설치 | • |
| | 2.4.2.4 | 계단측면에 손잡이 굵기 0.032~0.038m사이 설치 | • |
| | 2.4.2.5 | 계단측면에 높이 0.8~0.9m에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 0 |
| - | 2.4.2.6 | 손잡이 끝부분에 0.3m이상 수평손잡이를 연장설치 | 0 |
| | 2.4.2.7 |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중간 참 포함) 0.3m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 | 0 |
| | 2.4.2.8 | 손잡이에 점자표기 | 0 |
| | 2.4.3.1 |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 |
| | 2.4.3.2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 |
| _ | 2.4.3.3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설치 | |
| | 2.4.3.4 |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 |
| | 2.4.3.5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0 |
| | 2.4.3.6 |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양측면에 손잡이의 연속 설치 | 0 |
| | 2.4.3.7 |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손잡이의 높이 적정여부 | 0 |
| 2.4 | 2.4.3.8 |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손잡이의 굵기 적정여부 | 0 |
| 계단 | 2.4.4.1 |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 |
| 또는 | 2.4.4.2 | 대상시설 신축연도 2008년 1월 1일 이후 여부 | - |
| 승강기 - | 2.4.4.3 | (2008.1.1 이전)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 | • |
| _ | 2.4.4.4 | (2008.1.1 이후)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이상, | • |
| - | 2.4.4.5 | 깊이 1.35m이상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 |
| - | 2.4.4.6 | 가로형으로 설치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 조작반의 높이는 | 0 |
| _ | | 바닥면으로부터 0.85내외로 설치 | |
| - | 2.4.4.7 | 승강기 내부의 일반조작반은 조작설비는 버튼식으로 설치 승강기 내부의 일반조작반은 일반조작반·층수·통화장치 등에 | 0 |
| | 2.4.4.8 | 점자표지 부착 | 0 |
| | 2.4.4.9 | 점자블록 형태 | 0 |
| Γ | 2.4.4.10 | 점자블록 설치위치 | 0 |
| | 2.4.4.11 | 승강기 외부에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등, 엘리베이터 도착음 동작 | 0 |
| | 2.4.4.12 | 승강기 내부에 도착층, 운행상황을 표기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토글 (문개폐, 층정보, 운행방향) 설치 | Ø |
| | 2.4.5.1 |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m×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 0 |
| | 2.4.5.2 |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1.2m이상 | 0 |
| | 2.4.5.3 | 호출벨, 작동설명서, 비상정지장치, 과속제한장치, 내부잠금장치, 지정장소 보관의 경우 0.6m이내 돌출 | 0 |

| 구 분 | 분 | 내 용 | 2008년도와 비교 |
|-----|-----------|--|---------------|
| | 3.1.1.1 |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여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 설치 | • |
| | 3.1.1.2 | 일반화장실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설비 유무 | • |
| 3.1 | 3.1.1.3 |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 |
| 일반사 | 3.1.1.4 |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칸의 단차포함)가 2㎝이하 | 0 |
| 항 | 3.1.1.5 |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여부 | \odot |
| | 3.1.2.1 | 화장실에 점자블록 설치여부 | 0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Ô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0 |
| | 3.2.1.1 | 휠체어사용자 이용가능 화장실 설치여부 | - |
| | 3.2.2.1 |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형태 | • |
| | 3.2.2.2 |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 • |
| | 3.2.2.3 | 대상시설 2005년 12월 30일 이후 허가 신청된 신축건축물 여부 | - |
| | 3.2.2.4 | (2005.12.29 이전 기존 건축물인 경우) 바닥면 크기가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확보 | • |
| | 2,247,504 | | |

6212(3)

3.2 대변기

3. 위 생 시

설

| 구 분 | 내 용 | 2008년도와 비교 |
|-----|-----|---------------|
| | | |

및



| 구 | 분 | 내 용 | 2008년5 비교 |
|--------------------|---------------------------|---|--------------|
| | 5.1.4.9 | 대변기의 한쪽옆에는 수직손잡이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 • |
| | 5.1.4.10 | 다른 쪽 손잡이의 회전식으로 설치 여부 | 0 |
| | | 대변기세정장치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 |
| | 5.1.4.11 | 쉬운 형태로 설치 | O |
| | 5.1.4.12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 O |
| | | 하단 높이가 0.65m이상으로 설치 | |
| | 5.1.4.13 |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확보 | 0 |
| | 5.1.4.14 | 모든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설치 및 점자표시 | Ø |
| | 5.1.4.15 |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 0 |
| | | 욕실에는 비상용 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용 벨은 욕조로부터 | |
| | 5.1.4.16 | 사용가능한 위치 | 0 |
| | 5.1.4.17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 O |
| | | 형태의 설치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에 설치된 | |
| | 5.1.5.1 | 경에인종 색질 또는 점질에 질지된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 |
| | 0111011 | 0.8~1.2m로 설치 | |
| | |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화장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 _ |
| | 5.1.5.2 |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이 설치, 장애인용 객실에는 건축물 전체의 비사거리사스테고 여겨된 처가자에이용 거리서비 서치 | |
| | 5.2.1.1 |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 설치 관람석·열람석 해당여부 | _ |
| | | 관람적 또는 열람석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 |
| ΕO | 5.2.2.1 | 있도록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 |
| 5.2 관람석 | 5.2.2.2 | 휠체어사용자용 관람석인 경우에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이 | |
| 또는 | 5.2.2.2 | 0.9m이상, 깊이 1.3m이상으로 설치 | • |
| 열람석 | 5.2.2.3 |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이며, 하단은 높이가 0.65m이하이며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 |
| | 0.2.2.0 |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 • |
| | 5.2.2.4 | 관람석, 열람석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설치비율 | 0 |
| | 5.3.1.1 | | - |
| 5.3 | |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 |
| 3.3 접수대 | 5.3.2.1 | 있도록 설치 | • |
| 또는 | 5.3.2.2 |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 • |
| ~ 작업대 | |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로 설치 하단은 높이가 0.65m이상 | |
| | <u>5.3.2.3</u> 5.3.2.4 | 하던는 높이가 0.05m이상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 0 |
| | 5.4.1.1 | · 물체에 물건하게 물어물 수 있고 이 아이가 이상의 이신을 먹고 매표소·판매대·음표대 해당여부 | - |
| | 5.4.2.1 | 대상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매표소, 판매대, 음료대 모두 체크 | - |
| | 5.4.3.1 |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매표소의 높이는 | |
| | | 0.7~0.9m이하에 설치 | |
| 5.4 | 5.4.3.2 | 하부는 바닥면으로 부터 0.65m이상에 설치 | 0 |
| 매표소 | 5.4.3.3 |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등은 동전투 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 0 |
| • | 5.4.3.4 | 등이 0.4~1.2m의 범위에 설치 | |
| 판매기 | 5.4.3.5 | 조작버튼은 시각장애인이 알기 쉽도록 점자가 표시 | 0 |
| • • = = = = = = | 5.4.3.6 | 누름버튼식 등으로 설치 | 0 |
| 음료대 | 5.4.3.7 |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0.8m로 설치 | |
| | 5.4.3.8 |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으로 설치 | 0 |
| | 5.4.4.1 | 점자블록 설치여부 점자블록 형태 | - |
| | <u>5.4.5.1</u> 5.4.5.2 | · 검사글록 영대 설치위치 | |

| | 구 | 분 | 내용 | 2008년도와 비교 |
|---------|-------------|---------------------------------|--|---------------|
| | | 읍·면·동 사무소 |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 • |
| | 제1종 근린생 | 우체국 |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 • |
| | 활시설 | 전신전화 국 |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 • |
| | | 공공도서 관 |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 • |
| | 문화 및 | 공연장 |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 |
| | 군와 호 집회시 | 관람장 |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 • |
| | 설 | 전시장 | 휠체어, 점자전시안내책자 | • |
| | | 동·식물 원 | 휠체어, 점자전시안내책자 | • |
| 6. 비 | 판매 시설 | 1천 [㎡] 이상인 도·소매점 | 음성계산기 | • |
| え | | | 저시력용 독서기 | |
| 용 | 교육 | | 음성지원 컴퓨터 | |
| 품 | 연구 | 도서관 | 보청기기 | • |
| | 시설 | | 점자프린터 | |
| | | |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 | • |
| | | | 점자업무안내책자 (시·군·구청에 한한다) | |
| | | | 휠체어 | |
| | | 국가 | 8배율 이상의 확대경 | • |
| | 업무 | 또는 | 공중모사전송기 | |
| | 시설 | 지방자치 단체의 | 보청기기 | • |
| | | - 전세 - 기 청 사 | 점자업무안내책자 | • |
| | | Q. I | 편의시설안내지도 | |
| | | |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 | |
| | 숙박 시설 | 관광숙박 시설 | 점자관광안내책자 | • |

● : 08년도와 동일한 조사항목

◎ : 13년도 신규조사항목

○ : 13년도에 분리된 항목

- :08년도와 비교대상항목이 아닌 것

Ι

한편, 편의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규정이 새로 적용되는 경우, 적용시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구성하였다.

| 평가 번호 | | | 평가 내용 | |
|---|----------------------------|--|--|---------------------------|
| 2.4.4 | 승강기는 유효한 바딕 | ·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 이용에 적정한가? | |
| 평가 평가세부내용 |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2441 -강기전면에는 1.4m×1 | 4m이장의 활동공간 확보 | 전면 1.4×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로 | 전면 1.2×1.2m~1.4×1.4m 미만의 활동공간 확로 | 전면 1.2×1.2m 미만의 활동공간 |
| ▶ 2.4.4.2 배상시설 신축연도 2008 ⁾ | 년 1월 1일 이후 여부 | 2008.1.1 이전 신축 (1) (→ 2.4.4.3 다음 항목으로) | 2008.1.1 이후 신축 (2) (→ 24.4.4 항목으로) | <u> </u> |
| ▶ 2.4.4.3 (2008.1.1 이종 동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35m이상 | 전) 면적은 푹 1.1m이상, 깊이 | 폭 1.1m이상이며 깊이 1.35m이상 | 폭1.1m미만이거나 또는 깊이 1.35m미만, | 폭 1.1m미만이며 깊이 1.35m미만, |
| ▶ 2444 (2008.11 이 동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35m이상 | 후) 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 폭 1.6m이상이며 깊이 1.35m이상 | 폭 1.6m미만이거나 또는 깊이 1.35m미만 | 폭 1.6m미만이며 깊이 1.35m미만 |
| ▶ 24.4.5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시 위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 | +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기 | 두글면에 가로형 노작반 물지(승 ⁴ 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이상인 경우 좌 우측 구분안함) | | 미설치 |
| ▶ 244.6 동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 비는 바닥면으로부터 0.8 | ·용자용 가로형 조작반의 높 5내외로 설치 | 0.8~0.9m에 설치 | 0.8m미만 또는 0.9m초과 | 미설치 |
| ▶ 24.4.7 등장기 내부의 일반조작법 설치 | 반은 조작설비는 버튼식으로 | 조작설비는 누를 버튼식 | 버튼식이 아닌 경우 | |
| ▶ 2448 승강기 내부의 일반조작 당치 등에 점자표지 부착 | 반은 일반조작반.충수.통화 | 일반조작반 점자표지부착 (병행포함) | | 일반조작반 점자표지 미부착 |

(그림 5)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점에 따른 조사표 양식의 예시

조사대상시설의 유형분류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관련 별표1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50개 유형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50개 유형의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의무'항목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 72종류의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의 유형은 44종으로 의료시설, 학교 등 시설의 세부 용도별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3년 전수조사의 유형을 72종으로 확대 적용하여 용도별 세부분류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72종의 유형으로 분류된 조사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다음의 <표 1-4-1>과 같다.

| | | | | | 매가 시설 | | | 내누 시설 | | | | 위생 시설 | | | | 안내 시설 | | | | 기티 시설 | - | | 비 고 |
|--------|-----------|----------|-----------------------------|------------|-----------|----|----------------|----------|---------|------------------|--------------------|----------|----|-------------------|------|-----------|---------|--------|----------|----------|----|-----------------|-----------|
| 연 번 | 저 大 珃 야 쪙 | ş | <u> 중</u> 도구분 | 주출 입구접 근 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출입 구 (문) | | 계단또는승강기 | 호 대 변 기 | · 사장성 선 기 | | 여니 | · · 야 실 · · 탈 이 실 | 점자븰록 | [야더라아다 지절 | 경보교피난설비 | 객실 ·침실 | 관람석 .열람석 | | | 임산부니?이에 한 휴게 시설 | <u>+</u> |
| | | 대분류 | 소분류 | 11 | 12 | 13 | 21 | 22 | 23 | 31 | 32 | 33 | 34 | 35 | 41 | 42 | 43 | 51 | 52 | 53 | 54 | 55 | \square |
| 1 | A1 | 1종근린생활시설 |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 • | | • | • | | | | | | | | | | | | | | | | 3 |
| 2 | A2 | 1종근린생활시설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 • | | • | • | | | | | | | | | | | | | | | | 3 |
| 3 | A3 | 1종근린생활시설 | 지역자치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4 | A4 | 1종근린생활시설 | 파출소, 지구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5 | A5 | 1종근린생활시설 | 우체국 | • | • | • | • | • | • | ٠ | | | | | • | | | | | • | | | 9 |
| 6 | A6 | 1종근린생활시설 | 보건소 | ٠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7 | A7 | 1종근린생활시설 | 공공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8 | A8 | 1종근린생활시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9 | A9 | 1종근린생활시설 |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10 | A10 | 1종근린생활시설 | 한국장애인고 용공 단 및 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11 | A11 | 1종근린생활시설 |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12 | A12 | 1종근린생활시설 | 대피소 | • | | • | • | | | | | | | | | | | | | | | | 3 |
| 13 | A13 | 1종근린생활시설 | 공중화장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14 | A14 | 1종근린생활시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소(산후조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15 | A15 | 1종근린생활시설 | 지역아동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4 |

<표 1-4-1> 조사대상시설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한국경애인개발원 사 to rippoy www

I

| | | | | | 개개 시설 | | | 내 누 시 설 | | | | 위생 시설 | | | | 안내 시설 | | | | 기티 시설 | | | 비 고 |
|--------|------------|----------|----------------------------|---------|--|------------|--------|------------|---------|------------------|--------------------|----------|----|---------|------|--------------|---------|-----------|---------|------------|----|----------|--------|
| 연 번 | 저大며야쪙 | Ę | 용도 구 분 | 주출합구접그로 | ~~~~~~~~~~~~~~~~~~~~~~~~~~~~~~~~~~~~~~ |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출입구(문) | - 꿕- 너 | 계단또는승강기 | 호 대 변 기 | 나장(소 변 기 | | 여고 | 샤워실 탈이실 | 점자블록 | - 유도및안내시설 | 경보교피난설비 | 객실 ·침실 | 관람석·열람석 | - 접수대 ·작업대 | | <u> </u> | - |
| | | 대분류 | 소분류 | 11 | 12 | 13 | 21 | 22 | 23 | 31 | 32 | 33 | 34 | 35 | 41 | 42 | 43 | 51 | 52 | 53 | 54 | 55 | |
| 16 | B1 | 2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 • | ٠ | ٠ | • | | | | | | | | | | | | | | | | 4 |
| 17 | B2 | 2종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제과점 | • | ٠ | ٠ | • | | | | | | | | | | | | | | | | 4 |
| 18 | В3 | 2종근린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 • | ٠ | ٠ | • | | | | | | | | | | | | | | | | 4 |
| 19 | C1 | 문화·집회시설 | 공연장 | ٠ | ٠ | ٠ | • | • | • | • | • | • | | | ٠ | ٠ | • | | ٠ | | • | | 14 |
| 20 | C2 | 문화·집회시설 | 관람장 | • | • | ٠ | ٠ | • | • | • | • | • | | | ٠ | • | • | | ٠ | | • | | 14 |
| 21 | C3 | 문화·집회시설 | 집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22 | C4 | 문화·집회시설 | 전시장 | ٠ | • | ٠ | • | • | • | • | | | | | • | | | | | | | | 8 |
| 23 | C5 | 문화·집회시설 | 동·식물원 | ٠ | • | ٠ | • | • | • | ٠ | | | | | ٠ | | | | | | | | 8 |
| 24 | D1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 ٠ | • | ٠ | • | | | | | | | | | | | | | | | | 4 |
| 25 | E1 | 판매시설 | 도매·소매시장·상점 | • | • | ٠ | • | • | • | ٠ | | | | | | | | | | | | | 7 |
| 26 | F1 | 의료시설 | 종합병원 | • | • | ٠ | • | • | • | • | • | • | | | ٠ | • | • | | | | | | 12 |
| 27 | F2 | 의료시설 | 병원·치과병원·한방병 원·정신병원·요양병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28 | F3 | 의료시설 | 격리병원 | ٠ | • | ٠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29 | G1 | 교육연구시설 | 특수학교 | • | • | ٠ | • | • | • | • | • | | | | ٠ | • | • | | | | | | 11 |
| 30 | G2 |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 ٠ | • | ٠ | • | • | • | ٠ | • | | | | | | | | | | | | 8 |
| 31 | G3 | 교육연구시설 | 초등학교 | • | • | ٠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32 | G4 | 교육연구시설 | 중학교 | • | • | ٠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33 | G5 | 교육연구시설 | 고등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34 | G6 | 교육연구시설 | 전문대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35 | G7 | 교육연구시설 | 대학교 | • | • | ٠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36 | G8 | 교육연구시설 |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등 | • | • | ٠ | • | • | • | • | • | | | | | | | | | | | | 8 |
| 37 | G9 |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38 | H1 | 노유자시설 | 어린이 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39 | H2 | 노유자시설 | 아동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40 | H3 |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41 | H4 | 노유자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 42 | H5 | 노유자시설 | 이외 사회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٠ | • | • | | 18 |
| 43 | 11 |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44 | 12 | 수련시설 | 자연권수련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45 | J1 | 운동시설 | 체육관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46 | J2 | 운동시설 | 운동장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47 | K 1 |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 • | • | 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매가 시설 | | | 내 두 시 설 | | | | 위생 시설 | | | | 안내 시설 | | | | 기티 시설 | | | 비 고 |
|--------|------------|---------|---------------------------|---------------|-----------|----|---------|------------|-----------|------------------|--------------------|----------|-----|---------------------------------------|------|---|---------|-------|-----------|-------------|----|----------|--------------|
| 연 번 | 저 사 툐 야 쪙 | Ş | 울도구분 - | ~ 출 입 구 접 그 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출 합 구 문 | 부 도 | 』 계단또는승강기 | 호 대 변 기 | · ·장수 변 기 | | 여드고 | · · · · · · · · · · · · · · · · · · · | 점자블록 | - - - - - - - - - - - - - - - - - - - | 경보및피난설비 | 객실 침실 | 관람석 · 열람석 | 접 수 대 | | <u> </u> | 고 유형별의무설치개소수 |
| | | 대분류 | 소분류 | 11 | 12 | 13 | 21 | 22 | 23 | 31 | 32 | 33 | 34 | 35 | 41 | 42 | 43 | 51 | 52 | 53 | 54 | 55 | |
| 48 | K2 | 업무시설 | 금융업소 등 일반업무시설 | • | • | ٠ | • | • | ٠ | • | | | | | | | | | | | | | 7 |
| 49 | K3 | 업무시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 • | • | • | ٠ | ٠ | • | • | • | ٠ | | | • | • | ٠ | | | • | | | 13 |
| 50 | K4 | 업무시설 |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51 | K5 | 업무시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시 | • | • | • | ٠ | • | • | • | • | ٠ | | | • | • | • | | | • | | | 13 |
| 52 | K6 | 업무시설 |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 • | • | • | ٠ | • | • | • | • | ٠ | | | • | • | ٠ | | | • | | | 13 |
| 53 | L1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 • | | • | ٠ | | | | | | | | | | | ٠ | | | | | 4 |
| 54 | L2 |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콘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55 | M 1 | 공장 | 공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56 | N1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 • | • | • | | | | | | | | | | | | | | | | | 3 |
| 57 | N2 | 자동차관련시설 | 운전학원 | • | • | ٠ | • | • | ٠ | • | | | | | | | | | | | | | 7 |
| 58 | O1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59 | O2 | 방송통신시설 | 전신전화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60 | P1 | 교정시설 | 교도소·구치소 | • | • | ٠ | ٠ | • | ٠ | • | | ٠ | | | | | | | | | | | 8 |
| 61 | Q1 |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62 | Q2 | 묘지관련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63 | R1 |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 린이회관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64 | R2 | 관광휴게시설 | 휴게소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65 | S1 | 장례식장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 수시설은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66 | T1 | 공원 | 도시공원 | • | | | | | | • | | | | | ٠ | | | | | | | | 3 |
| 67 | T2 | 공원 | 자연공원 | • | | | | | | • | | | | | • | | | | | | | | 3 |
| 68 | U1 | 공동주택 | 아파트 | • | • | ٠ | • | | • | | | | | | | | | | | | | | 5 |
| 69 | U2 | 공동주택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 | | • | • | • | • | • | • | ٠ | | | | | | | | | | | 8 |
| 70 | U3 | 공동주택 | 연립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4 |
| 71 | U4 |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4 |
| 72 | V1 | 기숙사 | 기숙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1) 조사결과 분석방향

기본적인 분석내용인 편의시설 종류별 및 건물용도별 분석은 2008년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편의시설 설치추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시계열 분석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편의시설별 중요도를 감안한 설치율을 추가적으로 파악했다.

П

첫째, 기본적으로 2013년 조사표를 기준으로 한 편의시설별 설치율과 건물유형별 설치율을 파악한다. 이는 2008년도 조사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각 편의시설별 및 건물유형별 세부항목별 설치율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여 향후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시키는데 참고가 되도록 한 것은 2008년도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별, 시설주체별 분석도 2008년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시·도별 분석에서는 해당 시·군·구별 설치율 변화 등을 별도로 파악하여 해당 자치단체별로 제공하고, 시설주체별 분석은 공공관련시설과 민간관련시설을 구분하여 편의시설 설치율 차이의 의미를 파악 해 본다.

셋째, 2008년도 조사결과와 시계열적 비교분석이다. 시계열 비교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중의 하나인데 2013년도 조사항목이 2008년도의 조사항목과 차이가 있는 관계로 2013년도 전체 조사결과를 2008년도 설치율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시계열비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도와 동일한 조사항목만을 기준으로 시계열비교 분석을 시행하였고, 또 2013년도에 조사한 시설 중에서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비교하는 방법 으로도 2008년도 실태조사 이후 편의시설 설치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장애인편의시설 이용자에게 체감적인 편의제공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각 편의시설별 조사항목에 포함된 세부설치기준 중 해당 편의시설의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치기준을 2개씩 정하고, 이들 기준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핵심항목 기준' 설치율을 제시하여 편의시설별 체감 설치율을 산출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즉, 조사항목 중에서 편의시설 이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간의 가중치가 있음에도 그러한 것이 반영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가치로 분석이 된 점을 보완해 보려는 것이다.

2) 조사결과 신뢰도

2013년도 분석대상 시설은 약 14만개로 2008년도의 약 11만개보다 증가하였음에도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종류가 다르고, 조사한 자료 중 부정확한 자료는 분석대상 에서 제외한 관계로 일부 세부항목의 분석대상수는 2008년도보다 감소된 것이 있다. 하지만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013년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v. 20.0으로 하였으며, 시설 종류별로 표준편차는 내부시설 0.589, 기타시설 0.631, 매개시설 0.775, 안내시설 0.874, 위생 시설 0.84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표준편차는 0.744로 높은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

| | | 표준 편차 | 표준 편차 | 표준 편차 |
|------|-------------|-------|-------|-------|
| | 주출입구 접근로 | .565 | | |
| 매개시설 | 장애인주차구역 | .816 | .775 | |
| | 높이차이제거 | .886 | | |
| | 주출입문 | .624 | | |
| | 일반출입문 | .616 | | |
| | 복도 | .613 | | |
| 내부시설 | 계단 | .650 | .589 | |
| | 경사로 | .652 | | |
| | 승강기 | .477 | | |
| | 휠체어리프트 | .502 | | |
| | 일반사항 | .871 | | |
| | 대변기 | .922 | | .744 |
| 위생시설 | 소변기 | .929 | 940 | |
| 귀성시설 | 세면대 | .724 | .849 | |
| | 욕실 | .792 | | |
| | 샤워실 · 탈의실 | .792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887 | | |
|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설비 | .814 | .874 | |
| | 점자블록 | .884 | | |
| | 객실·침실 | .771 | | |
| 기타시설 | 관람석·열람석 | .385 | .631 | |
| 기다시설 | 접수대·작업대 | .676 | .031 | |
| | 매표소·판매대·음료대 | .389 | | |

<표 2-1-1> 시설종류별 표준편차



3) 편의시설 설치율 조사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이란 한 시설(건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전체 편의시설 항목수 중 조사를 통해 그 시설(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항목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П

2013년도 조사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67.9%, 적정설치율은 60.2%로 2008년의 설치율 77.5%, 적정설치율 55.8%와 비교시 설치율은 낮아지고 적정설치율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점자블록과 같은 세부항목이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세부항목 조사시에도 별도로 구분되어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시계열 비교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2008년도와 2013년도에 동일하게 조사한 항목만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을 비교한 결과 다음 <표 2-1-2>와 같이 2013년도의 설치율은 0.4%, 적정설치율 11%나 높아졌다.

<표 2-1-2> 2008년 및 2013년 편의시설 설치율

| | 2 | 2008년도 | | | 2 | 013년도 | | | | |
|-----------|-----------|--------|-----------|-------|-----------|-----------|-------|-----------|-------|--|
| 설치기준 | 설치수 | ᆞ및 | 적정설치 | 치수 및 | 설치기준 | 설치수 | ` 및 | 적정설치 | 수 및 | |
| 항목수 | 설치율 | £(%) | 적정설치 | 티율(%) | 항목수 | 설치율 | 울(%) | 적정설치율(% | | |
| 3,370,932 | 2,622,643 | 77.8% | 1,943,096 | 57.6% | 3,486,425 | 2,726,127 | 78.2% | 2,391,468 | 68.6% | |

시계열 비교 결과 설치율 증가폭 0.4%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2008년 이전 건물임에도 2008년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2013년 조사에 포함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적정설치율이 대폭 상승한 것은 미흡하게나마 설치된 시설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진 점과 2008년도에는 한 문항에 2개이상의 설치기준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었는데 2013년도 에는 세부기준별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최대한 배제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시계열비교의 또 다른 방법으로 2013년도 조사자료를 2008년 1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의 설치율을 비교하였다. 동 비교는 동일한 조사자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2008년도 조사와 2013년도 조사결과를 비교한 것보다 시계열 비교 분석에서는 오히려 더 유의미성이 있다고 보며, 비교 결과는 다음 <표 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71.6%로 2008이전 건물의 설치율 66.5%보다 5.1%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율은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 2008년 | 도 이전 | 건물 | | | 2008년 | 도 이후 | 건물 | |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 3,909,178 2,601,542 66.5% 2,285,559 58.5 | | | | 0 1 1 | | - (· · · | | |

<표 2-1-3>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

한편, 이번 분석에서 처음 시도한 편의시설별 핵심항목을 기준으로 한 설치율은 72.9%로 전체항목 설치율 67.9%보다 오히려 5% 높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세부항목의 설치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08년도 이후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아지고 있는 등 그동안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편의증진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편의시설 종류별, 건물유형별,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 <표 2-1-4>과 같다.

| | フ 日 | 설치기준 | 서취스 미 | | 적정설기 | 치수 및 |
|-------------|------------|-----------|-----------|--------|-----------|-------|
| | 구 분 | 항목수 | 설치수 및 | 실시뀰(%) | 적정설치 | 치율(%) |
| | 매개시설 | 2,729,583 | 1,897,877 | 69.5% | 1,706,129 | 62.5% |
| 편의 | 내부시설 | 1,929,421 | 1,555,422 | 80.6% | 1,392,127 | 72.2% |
| 신의 | 위생시설 | 1,250,126 | 583,869 | 46.7% | 478,392 | 38.3% |
| ~ 지설 종류별 | 안내시설 | 195,730 | 82,643 | 42.2% | 70,711 | 36.1% |
| 승규들 | 기타시설 | 200,514 | 163,868 | 81.7% | 147,789 | 73.7% |
| | 계 | 6,305,374 | 4,283,679 | 67.9% | 3,795,148 | 60.2% |
| | 1종 근린생활시설 | 1,001,853 | 701,339 | 70.0% | 612,251 | 61.1% |
| | 2종 근린생활시설 | 301,604 | 199,605 | 66.2% | 181,666 | 60.2% |
| | 문화·집회시설 | 98,369 | 74,073 | 75.3% | 65,840 | 66.9% |
| | 종교시설 | 142,909 | 100,510 | 70.3% | 89,431 | 62.6% |
| | 판매시설 | 79,737 | 58,500 | 73.4% | 52,750 | 66.2% |
| | 의료시설 | 179,940 | 134,855 | 74.9% | 118,955 | 66.1% |
| | 교육연구시설 | 925,477 | 653,449 | 70.6% | 573,285 | 61.9% |
| | 노유자시설 | 1,158,246 | 691,116 | 59.7% | 606,439 | 52.4% |
| | 수련시설 | 32,997 | 24,256 | 73.5% | 20,930 | 63.4% |
| | 운동시설 | 46,605 | 32,880 | 70.6% | 29,982 | 64.3% |
| 건물 | 업무시설 | 563,796 | 404,033 | 71.7% | 355,133 | 63.0% |
| 신골 유형별 | 숙박시설 | 212,873 | 149,000 | 70.0% | 132,230 | 62.1% |
| Π8 Ξ | 공장 | 263,260 | 138,490 | 52.6% | 124,925 | 47.5% |
| | 자동차관련시설 | 35,931 | 25,087 | 69.8% | 22,541 | 62.7% |
| | 방송통신시설 | 9,763 | 7,246 | 74.2% | 6,373 | 65.3% |
| | 교정시설 | 1,998 | 1,559 | 78.0% | 1,303 | 65.2% |
| | 묘지관련시설 | 4,199 | 2,731 | 65.0% | 2,426 | 57.8% |
| | 관광휴게시설 | 10,289 | 8,310 | 80.8% | 7,492 | 72.8% |
| | 장례식장 | 19,869 | 13,500 | 67.9% | 11,468 | 57.7% |
| | 공원 | 27,656 | 15,307 | 55.3% | 13,557 | 49.0% |
| | 공동주택 | 1,161,272 | 830,279 | 71.5% | 750,881 | 64.7% |
| | 기숙사 | 26,731 | 17,554 | 65.7% | 15,290 | 57.2% |
| | 계 | 6,305,374 | 4,283,679 | 67.9% | 3,795,148 | 60.2% |
| 시설 | 공공시설 | 733,461 | 539,767 | 73.6% | 456,772 | 62.3% |
| 주체별 | 민간시설 | 5,571,913 | 3,743,912 | 67.2% | 3,338,376 | 59.9% |
| 제 글 | 계 | 6,305,374 | 4,283,679 | 67.9% | 3,795,148 | 60.2% |

<표 2-1-4> 2013년도 편의시설 설치율

1) 편의시설 설치현황

2013년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에서 조사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수는 141,573개 이며, 편의시설 수는 6,305,374개 이다. 조사결과로 나타난 전체 건물의 설치율은 67.9%, 적정설치율은 6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종류 중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의 설치율은 다음 <표 2-2-1>과 같다.

| 편의시설 종류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 적정설치율(%) |
|------------|-----------|-----------|--------|-----------|----------|
| 매개시설 | 2,729,583 | 1,897,877 | 69.5% | 1,706,129 | 62.5% |
| 내부시설 | 1,929,421 | 1,555,422 | 806% | 1,392,127 | 72.2% |
| 위생시설 | 1,250,126 | | | | |

안내시설은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와 같이 건물의 구조와 관련이 없는 설치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타시설과 유사하게 설치율이 높게 나타나야 하지만 안내시설에는 주출입구 접근로의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설치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시설은 처음부터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화장실만을 설치한 건축물이 용도변경 등의 건축적 행위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로 포함²⁾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반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변경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적정하게 설치된 경우가 30%대로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시설 설치율이 내부시설이나 기타시설 보다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건물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설치율이 다른 세부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구<u>조적으로</u> 높이차이<u>를 제</u>거하는데 일부 제<u>하이 있는 경우가 있기</u> 때문이다.

(1) 매개시설

매개시설로 분류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항목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2-2>와 같다.

| 편의시설 종류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설: | 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 | 정설치율(%) |
|----------|-----------|----------------|-------|-----------|---------|
| 주출입구 접근로 | 991,011 | 870,981 | 87.9% | 802,575 | 81.0% |
| 장애인주차구역 | 224,274 | 151,557 | 67.6% | 108,774 | 48.5% |
| 높이차이제거 | 1,514,298 | <u>875.220</u> | | | |



경우에는 주출입구앞의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공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구조적인 제한적 요소가 있는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

П

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의 설치기준항목수는 991,011개로 설치율은 87.9%, 적정설치율은 8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접근로는 매개시설 중에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설치율은 다음과 같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 적정설치율(%) |
|------------------|----------|---------|--------|---------|----------|
| 바닥재질마감 | 141,573 | 139,699 | 98.7% | 135,589 | 95.8% |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141,573 | 137,112 | 96.8% | 125,314 | 88.5% |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141,573 | 134,534 | 95.0% | 121,669 | 85.9% |
| 접근로 유효폭 | 141,573 | 139,174 | 98.3% | 134,227 | 94.8% |
| 기울기 | 141,573 | 132,319 | 93.5% | 114,682 | 81.0% |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141,573 | 91,431 | 64.6% | 82,036 | 57.9% |
| 보행장애물 제거 | 141,573 | 96,712 | 68.3% | 89,058 | 62.9% |
| 계 | 991,011 | 870,981 | 87.9% | 802,575 | 81.0% |

<표 2-2-3> 주출입구 접근로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주출입구 접근로의 세부항목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의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질 마감으로 98.7%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95.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대부분의 대상시설에서 주출입구 접근로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또는 블록으로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거의 평탄하게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에서 80~90%대로 나타나고 있는 세부항목은 바닥마감 틈새나 접근로 상에 설치되는 배수로 덮개 등의 격자구멍 간격으로 많은 대상시설 에서 비교적 적정한 구조로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배수로 덮개는 아직도 기존의 그레 이팅을 사용하고 있어 2센티미터 이상의 격자구멍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적정설치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주출입구 접근로에서 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세부항목은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설치로 설치율은 64.6%, 적정설치율은 57.9%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많은 대상시설 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구분용 경계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시설에서도 주출입구 접근로는 별도의 보행접근로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본 항목의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출입구 접근로에서 비교적 설치율이 낮게 나타난 세부항목은 접근보행통로로 보행 장애물이 제거된 설치율은 68.3%, 적정설치율은 62.9%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앞서 언급된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공작물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등의 이동식 보행장애물이 많은 경우와 접근로 상에 설치된 식재나 장식물 등으로 인해 보행장애물이 설치된 경우 때문이다.

그 외 주출입구 접근로에서 가장 중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의 기울기로 설치되는 적정설치율은 8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12이하로 설치된 설치율은 93.5%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법적으로 완화받을 수 있는 1/12이하 적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적 함의

 접근로에 설치된 트랜치를 격자구멍이 2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차도와 보도 경계에 경계석이나 울타리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동이 다소 힘든 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가능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항목수는 224,274개이다. 이는 2008년도의 항목수보다 줄어들었는데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조사된 시설 중 법정의무시설 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하고 약 3만7천여 시설에 대한 자료만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설치율 분석시에는 편의상 장애인전용주차면수 설치비율을 3%로 동일 적용하여 전용주차면수를 적정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조사결과 설치율은 67.6%, 적정설치율은 48.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개시설 중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주차구역에 바닥표시를 하는데 그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특히 입식안내표시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매개시설 전체의 세부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의 안내표시는 설치시 건물 구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의시설로 설치상의 어려움이 없는 편의시설이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 적정설치율(%) |
|--------------|----------|---------|--------|---------|----------|
| 주차면수 확보 | 37,379 | 30,578 | 81.8% | 25,134 | 67.2% |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37,379 | 37,379 | 100.0% | 20,241 | 54.2% |
| 주차공간 확보 | 37,379 | 22,507 | 60.2% | 18,671 | 50.0% |
| 바닥마감 | 37,379 | 23,763 | 63.6% | 22,850 | 61.1% |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37,379 | 23,021 | 61.6% | 10,570 | 28.3% |
| 안전보행통행로 | 37,379 | 14,309 | 38.3% | 11,308 | 30.3% |
| 계 | 224,274 | 151,557 | 67.6% | 108,774 | 48.5% |

<표 2-2-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설치여부로 설치율은 100%, 적정설치율은 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이 100%인 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가 되는 경우는 이미 3(미설치)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1(적정)과 2(미흡)로만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 설치율에서 1(적정)로 평가된 비율은 5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구역의 일부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기 때문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안전한 이동을 위해 설치하게 한 안전보행통로 세부항목의 설치율 역시 38.3%로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된다. 다시말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후에 휠체어사용자는 안전보행통로로 이동하여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않고,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한 후에 해당 건축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수라고 볼 수 있다.

П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공간확보 세부항목도 설치율이 81.8%, 적정설치율이 7.2%<u>인 거이리 나타나 다르 세부화모처럼 서치유과 저저성치유이 나오 수주이리 지사디어다.</u> 이와같은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주차장을 장애인주차장으로만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바닥의 적절한 마감과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세부항목 각각의 설치율은 63.6%와 61.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각각 61.1%와 28.3%로 나타나 설치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의 경우 다른 편의시설과 달리 비교적 쉽게 개선이 가능함에도 적정설치율이 28.3%에 그치는 것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 정책적 함의 |
|--|
| ○ 바닥안내 및 입식안내 표시 설치율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장애인주차장 |
| 바닥표시 그려주기 및 입식표지판 설치해주기 등의 사업 시행을 통해 단기적으로 |
| 설치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설치기준항목수는 1,514,293개로 설치율은 57.8%, 적정설치율은 52.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 ! 정설치율(%) |
|--------------|-----------|---------|--------|---------|-----------|
| 높이차이제거 | 138,552 | 101,339 | 73.1% | 83,252 | 60.1% |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138,552 | 102,112 | 73.7% | 91,580 | 66.1% |
| 휴식참 | 138,552 | 94,978 | 68.6% | 91,520 | 66.1% |
| 경사로 바닥재질 | 138,552 | 101,003 | 72.9% | 96,846 | 69.9% |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138,552 | 98,942 | 71.4% | 91,116 | 65.8% |
| 손잡이 연속설치 | 138,552 | 90,701 | 65.5% | 83,505 | 60.3% |
| 손잡이 높이 | 138,552 | 90,572 | 65.4% | 86,407 | 62.4% |
| 손잡이 굵기 | 138,552 | 90,574 | 65.4% | 83,878 | 60.5% |
| 점자블록 형태 | 135,294 | 35,085 | 25.9% | 28,757 | 21.3% |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35,294 | 34,906 | 25.8% | 28,111 | 20.8% |
| 점자블록 시공방법 | 135,289 | 35,126 | 26.0% | 29,806 | 22.0% |
| 계 | 1,514,293 | 875,338 | 57.8% | 794,778 | 52.5% |

<표 2-2-5>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확보로 설치율은 73.7%, 적정설치율은 6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모든 대상 시설에서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이 1.2미터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접근로 없이 보도에 바로 접해 있는 소규모의 상가인 경우, 주출입구 높이차이를 제거 하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된 경사로는 일부 보도를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되는 출입구(문) 앞의 활동공간까지 확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중에서 경사로 등의 휴식참 설치에 대한 세부항목과 주출입구 연결접근로 폭의 적정설치율이 동일하게 66.1%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입구 앞에 계단 등의 높이차이가 있어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되는 경사로 바닥재질, 휴식참의 활동공간 확보, 손잡이 연속설치, 손잡이 높이, 손잡이 굵기의 세부항목은 대부분 60~70% 범위에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대부분의 경사로에 설치되는 세부 편의시설 중 한 종류인 경사로 손잡이가 기성제품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거의 유사한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조사에서 별도 세부하모으로 부리되어 조사되 적자부로 과려하모으 대부부 매우 낮은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점자블록의 형태, 점자블록 설치위치 및 점자블록 시공방법 각각의 설치율은 25.9%, 25.8%, 26.0%이며, 적정설치율은 21.3%, 20.8%, 2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공공 및 민간관련 대부분의 시설에서 주출입구 접근로에 계단 등의 단차가 있는 경우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표준형 점자블록

(30x30센티미터)을 사용하지 않고 보도블록 크기의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 보다 해당항목에서 설치율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부표 2-5-3참조).

정책적 함의

고정식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호출벨을 설치하고 이동식 경사로 비치 또는
 인적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

(2) 내부시설

내부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주출입문,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항목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2-6>과 같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주출입문 | 801,213 | <u>ී මු</u> සුවූ ූර | |

가. 주출입문

주출입문의 설치기준항목수는 801,213개로 설치율은 76.2%, 적정설치율은 6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문은 내부시설 중에서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출입구(문) 높이차이 | 114,315 | 96,376 | 84.3% | 96,376 | 84.3% |
| 통과유효폭 | 114,315 | 109,681 | 95.9% | 109,681 | 95.9% |
| 전·후면 유효거리 | 114,315 | 103,914 | 90.9% | 88,325 | 77.3% |
| 손잡이 설치 위치 | 114,315 | 110,829 | 97.0% | 97,745 | 85.5% |
| 손잡이 형태 | 114,315 | 110,390 | 96.6% | 104,250 | 91.2% |
| 점형블록 형태 | 114,819 | 39,798 | 34.7% | 29,585 | 25.8% |
| 점형블록 설치 위치 | 114,819 | 39,533 | 34.4% | 29,950 | 26.1% |
| 계 | 801,213 | 610,521 | 76.2% | 555,912 | 69.4% |

<표 2-2-7> 주출입문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주출입문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손잡이 설치 위치로 설치율은 97.0%, 적정설치율은 8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출입문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30%대의 매우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주출입문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의 형태 및 설치 위치의 설치율은 각각 34.7%, 34.4%이며, 적정설치율은 각각 25.8%, 26.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공공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시설에서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고 있거나 설치하더라도 표준형이 아닌 형태로 설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표준형 점형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피스형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며, 점형블록이 보행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지만 바닥면 으로부터 돌출되게 부착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공공시설보다 해당항목에서 설치율이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부표 2-5-4참조).

하지만 손잡이의 형태는 유리문에 막대형 손잡이가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적 함의

출입구문 앞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기존건물에서는 마감도를 높인 부착형을 설치
 하도록 함으로써 설치율 제고 가능



나. 일반출입문

일반출입문의 설치기준항목수는 569,365개로 설치율은 80.9%, 적정설치율은 7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출입문은 내부시설 중에서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Π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일반출입문 단차제거 | 113,873 | 104,775 | 92.0% | 90,670 | 79.6% |
| 통과유효폭 | 113,873 | 110,260 | 96.8% | 102,427 | 89.9% |
| 전·후면 유효거리 | 113,873 | 108,460 | 95.2% | 95,535 | 83.9% |
| 손잡이 설치 위치 | 113,873 | 102,557 | 90.1% | 83,789 | 73.6% |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113,873 | 34,794 | 30.6% | 30,958 | 27.2% |
| 계 | 569,365 | 460,846 | 80.9% | 403,379 | 70.8% |

<표 2-2-8> 일반출입문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일반출입문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통과유효폭으로 설치율은 96.8%, 적정설치율은 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출입문에 설치되는 점자표지판은 설치율이 30.6%, 적정설치율이 27.2%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일반 출입문에 설치되는 점자표지판 설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민간시설에서는 거의 설치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서도 설치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설치된 점자표지판도 오기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점자표지판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출입문과 달리 일반출입문의 단차제거의 설치율은 92.0%로 높게 나왔으나 적정설치율은 79.6%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손잡이 설치 위치 등의 세부항목은 주출입문과 유사한 설치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대부분 내부에 설치된 일반출입문에는 턱이 설치되지 않지만 상업시설의 복도에 접하는 일부 내부 일반출입문에 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 미흡 혹은 미설치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적 함의

내부 일반출입문에 설치되는 점자표지판은 스티커형의 부착이 가능하므로 사무실
 등과 같은 보편화된 실명 등은 스티커 점자표지판으로 제작·보급을 하는 등의 방법
 강구 필요

다. 복도

복도의 설치기준항목수는 146,187개로 설치율은 94.4%, 적정설치율은 9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도는 내부시설 중에서 수직이동수단인 휠체어리프트 다음으로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유효폭 | 47,019 | 45,256 | 96.3% | 43,053 | 91.6% |
| 단차 | 47,019 | 44,190 | 94.0% | 42,515 | 90.4% |
| 복도 통로 상부의 유효높이 | 47,019 | 44,304 | 94.2% | 42,709 | 90.8% |
| 손잡이 연속설치 | 1,710 | 1,427 | 83.5% | 1,335 | 78.1% |
| 손잡이 굵기 | 1,710 | 1,427 | 83.5% | 1,332 | 77.9% |
| 손잡이 설치높이 | 1,710 | 1,428 | 83.5% | 1,381 | 80.8% |
| 계 | 146,187 | 138,032 | 94.4% | 132,325 | 90.5% |

<표 2-2-9> 복도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복도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유효폭으로 설치율은 96.3%, 적정설치율은 9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시설 중에서 비교적 설치비율이 낮은 휠체어리프트를 제외 한다면 실질적으로 설치율이 가장 높은 복도는 모든 세부항목 설치율이 80~90%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손잡이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도의 세부항목 중에서 손잡이 관련 세부항목의 대상편의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복도에 손잡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복도의 손잡이는 많은 시설에 설치되지 않은 반면 복도의 다른 세부항목보다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복도 등에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손잡이의 굵기가 5센티미터 정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 계단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유효폭 | 19,278 | \$ 7 ,691 | |

Π

마. 경사로

경사로의 설치기준항목수는 12,768개로 설치율은 90.3%, 적정설치율은 6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로가 설치되는 경우는 장애인복지시설 등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에 계단보다는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경사로 유효폭 | 1,596 | 1,442 | 90.4% | 1,169 | 73.2% |
| 휴식참 | 1,596 | 1,384 | 86.7% | 1,023 | 64.1% |
| 기울기 1/12 | 1,596 | 1,468 | 92.0% | 994 | 62.3% |
| 바닥면 재질 | 1,596 | 1,538 | 96.4% | 1,233 | 77.3% |
| 휴식참 활동공간 | 1,596 | 1,511 | 94.7% | 1,107 | 69.4% |
| 손잡이 연속설치 | 1,596 | 1,385 | 86.8% | 824 | 51.6% |
| 손잡이 높이 | 1,596 | 1,401 | 87.8% | 1,030 | 64.5% |
| 손잡이 굵기 | 1,596 | 1,399 | 87.7% | 856 | 53.6% |
| 계 | 12,768 | 11,528 | 90.3% | 8,236 | 64.5% |

<표 2-2-11> 내부시설 중 경사로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경사로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경사로 바닥면 재질로 설치율은 96.4%, 적정설치율은 7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부분의 세부항목이 86%이상의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고, 적정설치율도 손잡이 관련 세부항목을 제외하고는 60~70% 범위로 조사되었다.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와 유사하게 경사로에 설치된 손잡이도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에서 20~30%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앞서 복도 및 계단 손잡이 평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5센티미터 정도의 굵은 손잡이를 사용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경사로 바닥면 기울기 세부항목의 설치율은 92.0%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적정 설치율은 62.3%로 나타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사이에 비교적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1/12의 기울기 기준을 지켜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내부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1/8~1/10정도 수준에서 설치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즉, 편의증진법 기울기를 1/8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 적용된 경우가 본 조사에 일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율을 더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적 함의

경사로의 기울기 보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경사로 입구에 경사로 기울기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 및 경사로 중간참의 벽측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 필요



바. 승강기

승강기의 설치기준항목수는 244,500개로 설치율은 93.2%, 적정설치율은 8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시설의 수직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설치기준항목수를 갖고 있는 승강기는 계단이나 경사로보다는 약간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고, 적정설치율에서는 계단이나 경사로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휠체어사용자 등 대부분의 시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수직이동 수단인 승강기의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의무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층 이하 소규모의 건물에는 여전히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현실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П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전면 활동공간 | 24,450 | 24,137 | 98.7% | 23,295 | 95.3% |
| 유효바닥면적(08'이전) | 18,579 | 18,497 | 99.6% | 17,359 | 93.4% |
| 유효바닥면적(08'이후) | 5,871 | 5,827 | 99.3% | 5,205 | 88.7% |
| 가로형 조작반 | 24,450 | 22,352 | 91.4% | 22,352 | 91.4% |
| 조작반 높이 | 24,450 | 22,612 | 92.5% | 20,950 | 85.7% |
| 일반조작반 조작설비 | 24,450 | 24,450 | 100.0% | 23,793 | 97.3% |
| 조작반 점자표지 | 24,450 | 23,188 | 94.8% | 23,188 | 94.8% |
| 점형블록 형태 | 24,450 | 19,931 | 81.5% | 14,697 | 60.1% |
| 점형블록 설치위치 | 24,450 | 20,360 | 83.3% | 18,164 | 74.3% |
| 도착여부 표시, 도착음 | 24,450 | 23,027 | 94.2% | 19,658 | 80.4% |
|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 24,450 | 23,507 | 96.1% | 19,539 | 79.9% |
| 계 | 244,500 | 227,888 | 93.2% | 208,200 | 85.2% |

<표 2-2-12> 승강기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승장기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일반조작반 조작설비로 설치율은 100%, 적정설치율은 9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세부항목 중에서 점자블록 관련 세부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90%이상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적정설치율도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승장기 버튼 앞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의 형태 및 점형블록 설치위치를 조사하는 세부항목은 다른 편의시설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의 설치율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인 80%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출입구문 및 계단 등에 설치되는 점형블록 과는 달리 승장기 버튼 앞에만 2장 정도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승장기 관련 점형블록 설치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 등에 의해 비교적 잘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일부의 승장기에는 버튼 앞에 설치되지 않고 승장기 문이 열리는 앞쪽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휠체어사용자나 걸음이 불편한 다양한 승강기 이용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에서 20%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많은 시설에서 표준형 점형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피스형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사. 휠체어리프트

휠체어리프트의 설치기준항목수는 1,164개로 설치율은 96.0%, 적정설치율은 81.7%인 것 으로 나타났다. 2층 이상의 건물이면서 내부에 승강기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단을 구조적으로 법적 규정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되는 사례가 매우 적은 편의시설이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활동공간 확보 | 388 | 374 | 96.4% | 321 | 82.7% |
| 유효바닥면적 | 388 | 374 | 96.4% | 317 | 81.7% |
| 호출벨 등의 설치 상황 | 388 | 370 | 95.4% | 313 | 80.7% |
| 계 | 1,164 | 1,118 | 96.0% | 951 | 81.7% |

<표 2-2-13> 휠체어리프트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휠체어리프트는 타고 내리기 위한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와 휠체어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호출벨로 관리자를 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호출벨 등의 설치 상황에 대해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 대부분 설치율이 95%이상으로 나타났고, 적정설치율은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경사형 혹은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가 대부분 규격제품으로 생산되어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리프트의 유효바닥면적에서 폭 혹은 길이가 규정보다 다소 부족하게 제작된 경우도 있어 적정설치율과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위생시설

위생시설로 분류된 일반사항,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항목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2-14>와 같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일반사항 | 401,661 | 188,875 | 47.0% | 155,192 | 38.6% |
| 대변기 | 586,184 | 290,018 | 49.5% | 233,998 | 39.9% |
| 소변기 | 198,880 | 67,508 | 33.9% | 63,579 | 32.0% |
| 세면대 | 36,939 | 30,238 | 81.9% | 20,105 | 54.4% |
| 욕실 | 14,128 | 3,683 | 26.1% | 2,990 | 21.2% |
| 샤워실 · 탈의실 | 12,334 | 3,547 | 28.8% | 2,528 | 20.5% |
| 계 | 1,250,126 | 583,869 | 46.7% | 478,392 | 38.3% |

<표 2-2-14> 위생시설의 세부시설별 설치율



위생시설 전체의 설치율은 46.7%, 적정설치율은 3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의 대분류인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중에서 안내시설과 함께 위생 시설이 매우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위생시설중 휠체어사용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대변기를 제외한 소변기나 세면대 등 다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위생시설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세면대로 설치율은 81.9%, 적정설치율은 5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욕실로 설치율은 26.1%, 적정설치율은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시설의 세부항목 중에서 세면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항목이 20~40% 범위의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건물 화장실 공간크기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화장실 관련 세부항목보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편의시설이 설치된 대변기도 이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 일반사항

화장실 일반사항의 설치기준항목수는 401,662개로 설치율은 47.0%, 적정설치율은 3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 및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가능 통로연결 여부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일반사항은 위생시설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57,432 | 34,734 | 60.5% | 23,721 | 41.3% |
| 시각적 설비 | 57,432 | 29,212 | 50.9% | 23,983 | 41.8% |
|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57,432 | 43,731 | 76.1% | 36,077 | 62.8% |
| 바닥 단차 | 57,432 | 36,171 | 63.0% | 36,171 | 63.0% |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57,432 | 12,325 | 21.5% | 12,325 | 21.5% |
| 점형블록 형태 | 57,251 | 16,351 | 28.6% | 11,568 | 20.2% |
| 점형블록 설치 위치 | 57,251 | 16,351 | 28.6% | 11,347 | 19.8% |
| 계 | 401,662 | 188,875 | 47.0% | 155,192 | 38.6% |

<표 2-2-15> 일반사항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위생시설의 일반사항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 가능 통로연결 여부로 설치율은 76.1%, 적정설치율은 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유아용거치대 설치는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21.5%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일반화장실 입구에 설치되는 점형블록 형태 및 설치 위치는 설치율이 모두

• 45 •

28.6%, 적정설치율이 각각 20.2%와 19.8%로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일반화장실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형블록이 대부분 설치되지 않았으며, 설치된 경우에도 비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화장실 앞이 아닌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설치하는 장애인용 화장실 앞에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편의증진법에 의해 설치되는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위해서만 설치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해 설치되는 장애인화장실을 시각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유아용거치대를 여성용 화장실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에 개정 되어 그 이전에 만들어진 화장실의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장실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시각적 설비도 설치율이 50.9%, 적정설치율이 41.8%로 비교적 높지 않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화장실은 노크를 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책적 함의

| ○ 일반화장실의 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시각적 설비는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 |
|---|
| 으로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음 |
| ○ 화장실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장애인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을 |
|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 있음 |

나. 대변기

대변기의 설치기준항목수는 586,184개로 설치율은 49.5%, 적정설치율은 3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시설 중에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부공간의 각종 편의시설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비교적 설치율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이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출입문 형태 | 73,273 | 36,244 | 49.5% | 33,995 | 46.4% | |
| 통과 유효폭 | 73,273 | 36,811 | 50.2% | 36,811 | 50.2% | |
| 바닥면 크기(05'이전) | 53,887 | 23,945 | 44.4% | 19,868 | 36.9% | |
| 바닥면 크기(05'이후) | 19,386 | 14,478 | 74.7% | 12,204 | 63.0% | |
| 좌대 높이 | 73,273 | 40,189 | 54.8% | 39,087 | 53.3% | |
| 수평손잡이 높이 | 73,273 | 37,688 | 51.4% | 31,801 | 43.4% | |
| 수직손잡이 | 73,273 | 36,003 | 49.1% | 24,059 | 32.8% | |
|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 73,273 | 36,284 | 49.5% | 21,274 | 29.0% | |
| 세정장치 형태 | 73,273 | 28,376 | 38.7% | 14,899 | 20.3% | |
| 계 | 586,184 | 290,018 | 49.5% | 233,998 | 39.9% | |

<표 2-2-16> 대변기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대변기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의 바닥면 크기로 설치율은 74.7%, 적정설치율은 6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일한 세부항목인 대변 기 칸막이 내부의 바닥면 크기 중에서 2005년 이전 편의중진법이 일부 개정되기 전까지의 규정³⁾을 적용하는 바닥면 크기는 설치율이 44.4%, 적정설치율이 36.9%로 설치율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2005년 이전의 건물에서는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대부분 일반화장실에 설치하는 경향이 많아 크기규정을 맞추어 설치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장실에 수직 및 수평 손잡이만을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반면, 2005년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폭을 1.0미터에서 1.4미터로 확대한 이후부터는 일반화장실을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장실 입구 혹은 화장실 내부 가장 안쪽 화장실을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변경 설치하거나 별도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Π

또한, 대변기에 설치되는 일련의 손잡이는 40~50% 범위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대변기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며, 설치된 손잡이 에서도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직손잡이의 경우에는 길이를 9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하거나 손잡이 설치방향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사례가 많으며, 수평손잡이는 회전형이 아닌 고정형으로 설치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대변기 세정장치는 설치율 38.7%, 적정설치율 20.3%로 대변기 세부항목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냈다. 이와같은 이유는 대변기 세정장치를 일반화장실과 동일한 후면 레버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책적 함의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크기 등의 관련 세부기준의
 개선 필요

다. 소변기

소변기의 설치기준항목수는 198,880개로 설치율은 33.9%, 적정설치율은 3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시설 중에서 대변기보다 오히려 더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소변기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인 손잡이는 목발사용자 등의 이용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일반화장실에 설치된 소변기에 손잡이만을 추가 설치하면 되지만, 장애인을

³⁾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의 내용이 2005년 일부개정 전에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 로 규정되어 있음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편의증진법 시행초기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내부에 손잡이가 설치된 소변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장애인용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소변기를 제거 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면서 일반 소변기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변기가 설치된 여러개의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변기처럼 한곳에만 설치하는 등으로 인해 미설치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수평손잡이 높이 | 39,776 | 13,572 | 34.1% | 12,496 | 31.4% | |
| 수평손잡이 길이 | 39,776 | 13,562 | 34.1% | 13,068 | 32.9% | |
| 좌우 손잡이 간격 | 39,776 | 13,521 | 34.0% | 12,933 | 32.5% | |
| 수직손잡이 높이 | 39,776 | 13,451 | 33.8% | 12,264 | 30.8% | |
| 수직손잡이 길이 | 39,776 | 13,402 | 33.7% | 12,818 | 32.2% | |
| 계 | 198,880 | 67,508 | 33.9% | 63,579 | 32.0% | |

<표 2-2-17> 소변기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소변기의 세부항목은 모두 30%대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소변기에 설치되는 손잡이가 기성제품 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평손잡이 혹은 수직손잡이 높이 세부항목에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를 약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소변기의 세정장치가 자동센서형인 경우에 손잡이를 센서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높이를 맞추어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함의

일반소변기에 기성제품의 손잡이를 추가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음

라. 세면대

세면대의 설치기준항목수는 36,939개로 설치율은 81.9%, 적정설치율은 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면대는 위생시설 중에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 | |
|--------------|---------|--------------|-------|------------------------------------|-------|--|
| 세면대 상·하단높이 | 12,313 | 10,284 | 83.5% | 9,053 | 73.5% | |
|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 12,313 | 10,106 | 82.1% | 8,576 | 69.6% | |
| 수도꼭지형태, 점자표시 | 12,313 | 9,848 | 80.0% | 2,476 | 20.1% | |
| 계 | 36,939 | 30,238 | 81.9% | 20,105 | 54.4% | |

<표 2-2-18> 세면대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세면대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세면대 높이로 설치율은 83.5%, 적정설치율은 7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세부항목도 설치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꼭지 형태 및 점자표시 세부항목은 설치율이 80.0%인데 반해 적정설치율이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세면대의 수도꼭지가 최근 들어 광감지식이나 싱글레버형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의 소규모 건물에서는 대부분 다이얼식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Π

정책적 함의

| ○ 세면대 수도꼭지를 광감지식으로 설치하면 냉온수 구분을 위한 점자 | 표지판을 설치 |
|---------------------------------------|---------|
| 하지 않아도 되는 점 홍보 필요 | |

마. 욕실

욕실의 설치기준항목수는 14,128개로 설치율은 26.1%, 적정설치율은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욕실은 위생시설 중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욕실이 의무사항인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한정되므로 대상시설이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욕실이 설치된 해당시설에서의 설치율도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휠체어사용자 출입가능 | 1,766 | 452 | 25.6% | 381 | 21.6% | |
| 출입문 형태 | 1,766 | 628 | 35.6% | 628 | 35.6% | |
| 전면 활동공간 | 1,766 | 444 | 25.1% | 385 | 21.8% | |
| 바닥재질 마감 | 1,766 | 642 | 36.4% | 642 | 36.4% | |
| 욕조 높이 | 1,766 | 405 | 22.9% | 307 | 17.4% | |
| 샤워기 위치 | 1,766 | 475 | 26.9% | 367 | 20.8% | |
| 비상용 벨 위치 | 1,766 | 213 | 12.1% | 157 | 8.9% | |
| 수도꼭지 형태, 점자표시 | 1,766 | 424 | 24.0% | 123 | 7.0% | |
| 계 | 14,128 | 3,683 | 26.1% | 2,990 | 21.2% | |

<표 2-2-19> 욕실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욕실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바닥재질 마감으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부분의 세부항목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치율이 낮기 때문에 적정설치율과의 차이도 적은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는 특히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장애인 관련시설에서는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휠체어사용자가 누군가의 도움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 관리자 등의 도움에 의해 욕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욕실내부의 비상용 벨은 거의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극소수 설치된 경우에도 욕조에서 이용가능 하도록 설치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정책적 함의

| ○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이용시설에 | 욕실 설치시 | 휠체어사용자 | 등의 | 단독 | 이용이 |
|---------------------|--------|--------|----|----|-----|
| 가능한 구조로 욕실 설치 유도 | | | | | |

바.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의 설치기준항목수는 12,334개로 설치율은 28.8%, 적정설치율은 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위생시설 중에서 욕실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샤워실 및 탈의실이 의무사항인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 복지시설에 한정되므로 대상시설이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욕실이 설치된 시설에서의 설치율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휠체어사용자 출입가능 | 1,762 | 603 | 34.2% | 514 | 29.2% |
| 샤워실 유효바닥면적 | 1,762 | 637 | 36.2% | 603 | 34.2% |
| 샤워용 의자높이 | 1,762 | 371 | 21.1% | 321 | 18.2% |
| 샤워기 위치 | 1,762 | 633 | 35.9% | 455 | 25.8% |
| 수도꼭지 형태, 점자표시 | 1,762 | 604 | 34.3% | 138 | 7.8% |
|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 | 1,762 | 405 | 23.0% | 282 | 16.0% |
| 탈의실 수납장 하부공간 확보 | 1,762 | 294 | 16.7% | 215 | 12.2% |
| 계 | 12,334 | 3,547 | 28.8% | 2,528 | 20.5% |

<표 2-2-20> 샤워실 및 탈의실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샤워실 및 탈의실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으로 설치율은 36.2%, 적정설치율은 3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세부항목이 20~30%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낮은 세부항목은 탈의실 수납장 하부공간 깊이 확보로 설치율은 16.7%, 적정설치율은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샤워용 의자높이도 설치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샤워실 내부에 휠체어사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샤워용 접이의자를 벽부착형으로 설치하거나 이동 가능한 의자를 샤워수전 주변에 비치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옮겨 앉은 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샤워실에는 옮겨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의실 수납장은 휠체어사용자가 함께 이용 가능하도록 하부공간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해당시설 대부분이 탈의실 수납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고, 일부 설치된 수납장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하부공간이 없이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4) 안내시설

안내시설로 분류된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 항목의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은 다음 <표 2-2-21>과 같다.

Π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77,642 | 30,107 | 38.8% | 27,825 | 35.8% | |
| 경보 및 피난설비 | 32,564 | 25,522 | 78.4% | 19,840 | 60.9% | |
| 접근로 점자블록 | 85,524 | 27,014 | 31.6% | 23,046 | 26.9% | |
| 계 | 195,730 | 82,643 | 42.2% | 70,711 | 36.1% | |

<표 2-2-21> 안내시설의 세부시설별 설치율

안내시설 전체의 설치율은 42.2%, 적정설치율은 3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시설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보 및 피난설비로 설치율은 78.4%, 적정설치율은 6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각장애인의 건물 유도안내를 위해 설치되는 점자블록은 설치율 31.6%, 적정설치율 26.9%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점자블록이 차량과 보행자가 구분 없이 드나드는 보차혼용 공간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치된 점자블록의 크기도 30x30센티미터의 표준형이 아닌 보도블록 크기로 제작된 제품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안내시설 중에서 경보 및 피난설비는 편의증진법에 별도로 설치기준을 정하지 않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 유도 및 안내설비

유도 및 안내설비의 설치기준항목수는 77,642개로 설치율은 38.8%, 적정설치율은 3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 및 안내설비 중에서 시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로 설치되고 있는 촉지도식 안내판과 특수신호장치(리모콘 등)로 작동하는 음성안내장치는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에 대해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⁴⁾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한 경우와 특수신호장치로 작동 하는 음성안내장치 중에서 설치율이 높은 세부항목을 선택한 후 설치율을 적용하였다.

⁴⁾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일반사항의 (11)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촉지도식 안내판 | 15,056 | 7,794 | 51.8% | 7,274 | 48.3% | |
| 설치규격 | 15,056 | 7,668 | 50.9% | 7,316 | 48.6% | |
| 점자표기방식 | 15,056 | 7,494 | 49.8% | 7,021 | 46.6% | |
| 음성안내장치 | 1,181 | 729 | 61.7% | 446 | 37.8% | |
|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 1,181 | 718 | 60.8% | 391 | 33.1% | |
| 점자블록 형태 | 15,056 | 2,853 | 18.9% | 2,526 | 16.8% | |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5,056 | 2,851 | 18.9% | 2,851 | 18.9% | |
| 계 | 77,642 | 30,107 | 38.8% | 27,825 | 35.8% | |

<표 2-2-22> 유도 및 안내설비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유도 및 안내설비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음성안내장치로 설치율은 61.7%, 적정설치율은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안내장치의 설치기준항목수가 1,181개로 촉지도식 안내판의 설치기준항목수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고, 특수신호장치(리모콘 등)로 작동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한 시설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되는 위치까지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점자블록의 설치율은 18.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 하면서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점자블록을 설치한 경우에도 표준형이 아닌 점자블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분의 경우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해 두었으나 이동이 가능한 스탠드형으로 설치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자블록을 설치한 위치와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함의

| 0 일 | 정규모 이하의 | 의 소규모 🛛 | 건물에서는 | 벽부착형 | 촉지도식 | 안내판을 | 설치하도록 | 하여 |
|-----|---------|---------|--------|------|-------|-------|-------|----|
| 초 | 지도 이동에 | 따른 점자 | 블록 재설치 | 등이 발 | 생하지 않 | 도록 개선 | | |

나. 경보 및 피난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기준항목수는 32,564개로 설치율은 78.4%, 적정설치율은 6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 및 피난설비는 안내시설 중에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 적정설: | |
|----------------------|---------|--------------|-------|--------------|-------|
| 시각장애인 설비(청각경보시스템) | 16,280 | 13,452 | 82.6% | 10,518 | 64.6% |
| 청각장애인 설비(시각경보시스템) | 16,284 | 12,070 | 74.1% | 9,322 | 57.2% |
| 계 | 32,564 | 25,522 | 78.4% | 19,840 | 60.9% |

<표 2-2-23>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경보 및 피난설비는 시각장애인 설비와 청각장애인 설비 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장애인 설비인 청각경보시스템은 모든 대상시설에서 소화전과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아 설치율이 100%로 예상되는 세부항목이지만 설치율은 82.6%에 그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편의증진법에 의해서는 경보 및 피난설비가 의무사항이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적용을 받지 않는 용도 혹은 규모의 건물5)인 경우에는 청각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로 인해 100% 설치율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Π

정책적 함의

| 0 | 소화설비 | 설치 대상 | 상시설과 | 편의증진법상 | 경보 | 및 | 피난설비 | 설치대상 | 시설을 | 동일 |
|---|-------|--------|------|--------|----|---|------|------|-----|----|
| | 하게 적용 | ·되도록 힡 | 할 필요 | | | | | | | |

다. 점자블록

주출입구 접근로에 설치되는 점자블록의 설치기준항목수는 85,524개로 설치율은 31.6%, 적정설치율은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이 30%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적정설치율은 20%대로 안내시설 중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로 나타났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 – – | 치수 및 치율(%) |
|-----------|---------|--------------|-------|--------|---------------|
| 점자블록 형태 | 28,508 | 9,032 | 31.7% | 7,459 | 26.2% |
| 점자블록 설치위치 | 28,508 | 8,981 | 31.5% | 7,788 | 27.3% |
| 점자블록 시공방법 | 28,508 | 9,001 | 31.6% | 7,799 | 27.4% |
| 계 | 85,524 | 27,014 | 31.6% | 23,046 | 26.9% |

<표 2-2-24>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 설치는 점자블록의 형태, 점자블록의 설치위치와 시공방법에서 각각 31.7%, 31.5%, 31.6%의 유사한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적정설치율도 26.2%, 27.3%, 27.4%로 나타남으로써 세부항목간의 설치율 차이는 거의 없다.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주출입구 접근로에 설치되는 점자블록이 대부분 비표준형으로 설치되기 때문이며, 주출입구 접근로에 점자블록을 안전보행통로에 설치하지 않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접근로에 설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설치된 점자블록은 기존의 바닥재질과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차가 구분되지 않은 접근로에 시각 장애인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한 시설접근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이다.

| 정책적 함의 | |
|------------------------|------|
| ○ 점자블록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 필요 |

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관련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에 의해 소화설비 설치에 대한 의무대상시설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5) 기타시설

기타시설로 분류된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2-25>와 같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 | |
|-------------|---------|--------------|-------|---------|--------|
| | | | | 적정설: | 시 팔(%) |
| 객실·침실 | 115,384 | 91,384 | 79.2% | 80,035 | 69.4% |
| 관람석·열람석 | 9,820 | 9,516 | 96.9% | 9,172 | 93.4% |
| 접수대·작업대 | 53,860 | 46,619 | 86.6% | 42,533 | 79.0% |
| 매표소·판매대·음료대 | 21,450 | 16,349 | 76.2% | 16,049 | 74.8% |
| 계 | 200,514 | 163,868 | 81.7% | 147,789 | 73.7% |

<표 2-2-25> 기타시설의 세부시설별 설치율

기타시설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설치기준항목수가 비교적 적은 관람석· 열람석으로 설치율은 96.9%, 적정설치율은 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표소·판매대· 음료대는 설치율 76.2%. 적정설치율 74.8%로 다른 편의시설에 비해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기타시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도서관 열람실에서는 하부공간이 적절하게 비워진 책상에 의자만을 이동식으로 설치하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열람석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영화관 등의 공연장에는 장애인석이 대부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상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는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대부분 출입문 근처에 설치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 설치율이 높더라도 휠체어사용자의 이용 만족도는 높지 않다.

이외에도 공공업무시설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접수대·작업대는 설치율 86.6%, 적정설치율 79.0%인 것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 객실·침실

객실·침실의 설치기준 항목수는 115,384개로 설치율은 79.2%, 적정설치율은 69.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객실·침실 설치비율 | 35 | 25 | 71.4% | 23 | 65.7% |
| 공용공간 접근성 | 35 | 30 | 85.7% | 26 | 74.3% |
| 출입문 유효폭 | 35 | 32 | 91.4% | 32 | 91.4% |
| 휠체어 활동공간 | 35 | 32 | 91.4% | 31 | 88.6% |
| 침대 높이 | 35 | 29 | 82.9% | 25 | 71.4% |
| 화장실 바닥단차 | 6,777 | 5,043 | 74.4% | 5,043 | 74.4% |

<표 2-2-26> 객실·침실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 개단키다 | 설치기준 | 설치= | 수 및 | 적정설 | 치수 및 |
|------------------|---------|--------|-------|--------|-------|
| 세부항목 | 항목수 | 설치 | 율(%) | | 치율(%) |
| 대변기칸막이 출입문 형태 | 6,777 | 5,505 | 81.2% | 5,430 | 80.1% |
| 대변기칸막이 문 유효폭 | 6,777 | 5,430 | 80.1% | 5,430 | 80.1% |
| 바닥면크기(05'이전) | 4,962 | 4,740 | 95.5% | 4,158 | 83.8% |
| 바닥면크기(05'이후) | 1,815 | 1,318 | 72.6% | 498 | 27.4% |
| 대변기형태 및 높이 | 6,777 | 6,021 | 88.8% | 5,816 | 85.8% |
| 대변기 수평손잡이 위치 | 6,777 | 4,945 | 73.0% | 4,653 | 68.7% |
| 대변기 수직손잡이 | 6,777 | 4,790 | 70.7% | 4,401 | 64.9% |
| 회전식 손잡이 | 6,777 | 4,772 | 70.4% | 4,238 | 62.5% |
| 대변기 세정장치 | 6,777 | 5,195 | 76.7% | 4,104 | 60.6% |
| 세면대 상·하단 높이 | 6,777 | 5,788 | 85.4% | 5,296 | 78.1% |
| 휠체어 발받이 공간 | 6,777 | 5,795 | 85.5% | 5,167 | 76.2% |
|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점자표시 | 6,777 | 5,858 | 86.4% | 4,014 | 59.2% |
| 샤워기 위치 | 6,777 | 5,827 | 86.0% | 5,047 | 74.5% |
| 비상용 벨 위치 | 6,777 | 4,315 | 63.7% | 3,988 | 58.8% |
| 샤워기 수도꼭지 형태 | 6,777 | 5,673 | 83.7% | 3,924 | 57.9% |
| 콘센트·스위치·옷걸이 높이 | 6,777 | 5,530 | 81.6% | 4,620 | 68.2% |
| 청각장애인용 초인등·경보설비 | 6,777 | 4,691 | 69.2% | 4,071 | 60.1% |
| 계 | 115,384 | 91,384 | 79.2% | 80,035 | 69.4% |

П

※ 객실·침실 설치기준항목수가 35로 나타난 것은 전국 대상인 6,777개 시설 중 35개 시설의 입력자료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반면, 객실·침실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전국 대상인 6,777개 시설의 모든 입력자료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대부분의 조사원이 객실내의 대변기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행하 였거나 조사표에 표기오류를 했을 가능성이 있음)

객실·침실의 세부항목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객실·침실내 화장실 내부의 바닥면 크기(2005년 이전)로 설치율은 95.5%, 적정설치율은 8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객실의 출입문 유효폭과 휠체어 활동공간 항목의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설치기준 항목수가 너무 작아 의미가 있는 설치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객실내 화장실의 비상용 벨 설치 관련 및 청각장애인용 초인등·경보설비는 60%대로 비교적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시설주의 인식부족으로 비상벨이나 경보설비와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객실 내부에 초인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관람석·열람석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출입구·피난통로의 접근성 | 2,455 | 2,400 | 97.8% | 2,294 | 93.4% |
| 유효바닥면적 | 2,455 | 2,372 | 96.6% | 2,310 | 94.1% |
| 열람석 하부공간 확보 | 2,455 | 2,380 | 96.9% | 2,329 | 94.9% |
|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설치 비율 | 2,455 | 2,364 | 96.3% | 2,239 | 91.2% |
| 계 | 9,820 | 9,516 | 96.9% | 9,172 | 93.4% |

<표 2-2-27> 관람석·열람석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관람석·열람석의 모든 세부조사항목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90%대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중에서도 출입구 및 피난통로의 접근성이 97.8%의 설치율과 93.4%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어 대부분의 관람석·열람석이 피난통로 및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 등에 설치되는 열람석도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하부공간이 비워진 열람석을 1%이상 설치하여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공연장의 관람석이나 도서관 등의 열람석이 다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설치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서관의 열람석은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 열람석에 장애인 이용 가능한 열람석을 비치해둠으로써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함의

영화관 등의 공연장에 설치되는 장애인관람석을 2곳 이상으로 분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의 관람석 선택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다. 접수대·작업대

접수대·작업대의 설치기준항목수는 53,860개로 설치율은 86.6%, <u>적정설치율은 79.0%</u>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대·작업대는 기타시설 중에서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부분 공공관련시설에 많이 있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이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 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및 설치율(%)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휠체어사용자의 접근 가능 여부 | 13,465 | 12,622 | 93.7% | 12,622 | 93.7% |
| 작업대의 설치높이 | 13,465 | 11,301 | 83.9% | 11,301 | 83.9% |
| 작업대의 하부공간 높이 확보 | 13,465 | 11,497 | 85.3% | 10,665 | 79.2% |
| 작업대의 하부공간 깊이 확보 | 13,465 | 11,217 | 83.3% | 7,945 | 59.0% |
| 계 | 53,860 | 46,619 | 86.6% | 42,533 | 79.0% |

<표 2-2-28> 접수대·작업대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접수대·작업대 유도 및 안내설비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접수대·작업대의 접근가능 여부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9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수대·작업대의 설치 높이와 하부공간 높이 및 깊이 확보도 모두 80%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접수대·작업대를 휠체어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부공간을 45센티미터 까지 확보하여야 하는 세부항목은 적정설치율이 설치율보다 20%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데스크를 설치한 후 하부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장애인용으로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는 사례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정책적 함의

민원실 데스크의 경우에는 장애인용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식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앉아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좌식방식으로 설치하면 휠체어사용자도 구분없이 민원을
 편리하게 볼 수 있음

П

라. 매표소·판매대·음료대

매표소·판매대·음료대의 설치기준항목수는 21,450개로 설치율은 76.2%, 적정설치율은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표소·판매대·음료대는 기타시설 중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 | |
|---------------|-------------|--------------|-------|--------|-------|--|
| 매표소의 높이 | 2,146 | 2,078 | 96.8% | 1,972 | 91.9% | |
| 매표소 하부공간 높이 | 2,146 | 2,030 | 94.6% | 1,994 | 92.9% | |
| 매표소 하부공간 깊이 | 2,146 | 2,001 | 93.2% | 1,921 | 89.5% | |
| 동전투입구·조작버튼 위치 | 2,144 | 2,065 | 96.3% | 2,026 | 94.5% | |
| 조작버튼 점자표시 | 2,144 | 1,891 | 88.2% | 1,891 | 88.2% | |
| 누름버튼식 | 2,144 | 2,056 | 95.9% | 2,056 | 95.9% | |
| 음료대 분출구 높이 | 2,144 | 2,092 | 97.6% | 2,056 | 95.9% | |
| 조작기 형태 | 2,144 | 2,089 | 97.4% | 2,089 | 97.4% | |
| 점형블록 형태 | 2,146 | 24 | 1.1% | 21 | 1.0% | |
| 점형블록 설치위치 | 2,146 | 23 | 1.1% | 23 | 1.1% | |
| 계 | 21,450 | 16,349 | 76.2% | 16,049 | 74.8% | |

<표 2-2-29> 매표소·판매대·음료대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매표소·판매대·음료대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음료대 분출구 높이로 설치율 97.6%, 적정설치율은 9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부분 세부항목의 설치율이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자블록은 거의 모든 조사대상시설에서 설치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대부분의 매표소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하부공간을 설치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대상시설별 비치용품 비치현황

비치용품은 건물에 설치되는 편의시설과 달리 건물의 출입구나 민원실, 매표소 등에 비치해 둠으로써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용품이다. 걸음이 불편한 시설이용자를 위한 휠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 및 점자업무 책자 등이 있으며, 비치율 현황은 다음 <표 2-2-30>과 같다.

| 세부항목 | 비치용품수(개) 비치수 | | 러 비치용품수(개) 비치수 및 비치율(%) | | 비치율(%) |
|---------|--------------|--------|-------------------------|--|--------|
| 의무시설 | 31,388 | 17,006 | 54.2% | | |
| 권장시설 | 17,198 | 6,423 | 37.3% | | |
| 의무+권장시설 | 48,586 | 23,429 | 48.2% | | |

<표 2-2-30> 비치용품 비치율

비치용품을 의무 및 권장으로 비치하여야 하는 시설수는 48,586개로 비치율은 48.2%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는 비치용품의 비치율은 54.2%로 권장용품의 비치율인 37.3% 보다는 높지만 전체적인 비치용품 비치율은 절반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비치용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확대경과 같은 비치용품은 시각장애인 중에서 약시인의 이용뿐 아니라 노인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점자안내 책자 등도 시각장애인이 해당기관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치용품을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에서 의무 비치용품 비치율이 가장 높은 대상시설은 우체국으로 61.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장 비치용품 비치율이 가장 높은 대상시설은 도서관으로 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와 권장을 합한 비치용품 비치율이 가장 높은 대상시설도 51.3%의 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상시설별 비치용품 비치율은 다음 <표 2-2-31>과 같다.



<표 2-2-31> 대상시설별 비치용품 비치율

| 대상시설 종류 | Н | 치용품수(개) | 비치수 및 | 비치율(%) |
|------------|----|---------|--------|--------|
| | 의무 | 10,906 | 6,084 | 55.8% |
| 읍·면·동사무소 | 권장 | 2,725 | 657 | 24.1% |
| | 소계 | 13,631 | 6,741 | 49.5% |
| | 의무 | 5,179 | 3,163 | 61.1% |
| 우체국 | 권장 | 1,719 | 298 | 17.3% |
| | 소계 | 6,898 | 3,461 | 50.2% |
| | 의무 | 366 | 179 | 48.9% |
| 전신전화국 | 권장 | 122 | 43 | 35.2% |
| | 소계 | 488 | 222 | 45.5% |
| | 의무 | 240 | 66 | 27.5% |
| 공공도서관 | 권장 | 240 | 86 | 35.8% |
| | 소계 | 480 | 152 | 31.7% |
| | 의무 | 366 | 105 | 28.7% |
| 공연장 | 권장 | 365 | 88 | 24.1% |
| | 소계 | 731 | 193 | 26.4% |
| | 의무 | 39 | 14 | 35.9% |
| 관람장 | 권장 | 39 | 13 | 33.3% |
| | 소계 | 78 | 27 | 34.6% |
| | 권장 | 1,353 | 522 | 38.6% |
| 전시장 | 소계 | 1,353 | 522 | 38.6% |
| | 권장 | 76 | 32 | 42.1% |
| 동·식물원 | 소계 | 76 | 32 | 42.1% |
| | 권장 | 1,401 | 443 | 31.6% |
| 도·소매점 | 소계 | 1,401 | 443 | 31.6% |
| | 의무 | 929 | 458 | 49.3% |
| 도서관 | 권장 | 624 | 338 | 54.2% |
| | 소계 | 1,553 | 796 | 51.3% |
| | 의무 | 13,363 | 6,937 | 51.9% |
| 국가 또는 | 권장 | 7,992 | 3,663 | 45.8% |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소계 | 21,355 | 10,600 | 49.6% |
| | 권장 | 542 | 240 | 44.3% |
| 관광숙박시설 | 소계 | 542 | 240 | 44.3% |
| | 의무 | 31,388 | 17,006 | 54.2% |
| 계 | 권장 | 17,198 | 6,423 | 37.3% |
| | 소계 | 48,586 | 23,429 | 48.2% |

2013년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에서는 대상시설의 건물군을 22종, 7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1>과 같다.

| 구 분 | 대상 | 대상편의 | 설치= | 수 및 | 적정설; | 치수 및 |
|-----------|---------|-----------|-----------|-------|-----------|-------|
| | 건물수 | 시설수 | 설치율(%) | | 적정설치율 (%) | |
| 1종 근린생활시설 | 27,050 | 1,001,853 | 701,339 | 70.0% | 612,251 | 61.1% |
| 2종 근린생활시설 | 10,190 | 301,604 | 199,605 | 66.2% | 181,666 | 60.2% |
| 문화·집회시설 | 1,563 | 98,369 | 74,073 | 75.3% | 65,840 | 66.9% |
| 종교시설 | 4,669 | 142,909 | 100,510 | 70.3% | 89,431 | 62.6% |
| 판매시설 | 1,526 | 79,737 | 58,500 | 73.4% | 52,750 | 66.2% |
| 의료시설 | 2,537 | 179,940 | 134,855 | 74.9% | 118,955 | 66.1% |
| 교육연구시설 | 14,765 | 925,477 | 653,449 | 70.6% | 573,285 | 61.9% |
| 노유자시설 | 19,698 | 1,158,246 | 691,116 | 59.7% | 606,439 | 52.4% |
| 수련시설 | 424 | 32,997 | 24,256 | 73.5% | 20,930 | 63.4% |
| 운동시설 | 1,317 | 46,605 | 32,880 | 70.6% | 29,982 | 64.3% |
| 업무시설 | 9,706 | 563,796 | 404,033 | 71.7% | 355,133 | 63.0% |
| 숙박시설 | 4,335 | 212,873 | 149,000 | 70.0% | 132,230 | 62.1% |
| 공장 | 5,483 | 263,260 | 138,490 | 52.6% | 124,925 | 47.5% |
| 자동차관련시설 | 1,501 | 35,931 | 25,087 | 69.8% | 22,541 | 62.7% |
| 방송통신시설 | 205 | 9,763 | 7,246 | 74.2% | 6,373 | 65.3% |
| 교정시설 | 36 | 1,998 | 1,559 | 78.0% | 1,303 | 65.2% |
| 묘지관련시설 | 98 | 4,199 | 2,731 | 65.0% | 2,426 | 57.8% |
| 관광휴게시설 | 235 | 10,289 | 8,310 | 80.8% | 7,492 | 72.8% |
| 장례식장 | 298 | 19,869 | 13,500 | 67.9% | 11,468 | 57.7% |
| 공원 | 1,418 | 27,656 | 15,307 | 55.3% | 13,557 | 49.0% |
| 공동주택 | 34,099 | 1,161,272 | 830,279 | 71.5% | 750,881 | 64.7% |
| 기숙사 | 420 | 26,731 | 17,554 | 65.7% | 15,290 | 57.2% |
| 계 | 141,573 | 6,305,374 | 4,283,679 | 67.9% | 3,795,148 | 60.2% |

<표 2-3-1> 건물유형별(22개 건물군) 편의시설 설치현황

22종의 건물군 중에서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은 건물군은 관광휴게시설군으로 설치율 80.8%, 적정설치율 72.8%을 나타냈다. 그 외에 70~80% 범위의 설치율을 나타낸 건물군은 교정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 수련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운동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휴게시설의 편의 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의무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건물내외의 여유공간도 다른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설치율이 높은 교정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이 비교적 적고, 시설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설치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문화·집회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의료시설은 다른 건물보다 설치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대부분 이용자가 환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어떤 시설보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이 높아야만 하는 시설로 볼 수 있다.



한편, 설치율이 50%대 이하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건물군은 노유자시설, 공원, 공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하여 노인 및 아동관련 각종 시설이 포함된 노유자시설의 설치율이 59.7%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어떤 군보다도 시설이용 약자가 많은 건물군인 노약자시설이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이 많은 반면, 설치되면 오히려 이용자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유자 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노유자시설 중에서 아동관련시설의 내부(실내공간으로 구분되어 신발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인 경우)에 설치되는 계단이나 화장실 입구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П

22종의 건물군별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군은 1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3>과 같다.

| | 네비오험 | 설치기준 | 설치= | 수 및 | 적정 설치수 및 | |
|-----|------------------------------|-----------|---------|-------|----------|-------|
| | 세부유형 | 항목수 | 설치율(%) | | 적정설치율(%) | |
| A1 |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 227,409 | 159,334 | 70.1% | 150,448 | 66.2% |
| A2 |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 27,267 | 18,919 | 69.4% | 17,305 | 63.5% |
| A3 | 지역자치센터 | 167,616 | 130,300 | 77.7% | 110,558 | 66.0% |
| A4 | 파출소,지구대 | 110,866 | 70,990 | 64.0% | 58,257 | 52.5% |
| A5 | 우체국 | 97,167 | 67,611 | 69.6% | 55,414 | 57.0% |
| A6 | 보건소 | 115,151 | 81,700 | 71.0% | 68,453 | 59.4% |
| A7 | 공공도서관 | 15,481 | 12,055 | 77.9% | 10,368 | 67.0% |
| A8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 5,147 | 3,646 | 70.8% | 3,192 | 62.0% |
| A9 |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 1,613 | 1,305 | 80.9% | 1,169 | 72.5% |
| A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사 | 124 | 89 | 71.8% | 81 | 65.3% |
| A11 |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 948 | 789 | 83.2% | 700 | 73.8% |
| A12 | 대피소 | 3,138 | 2,008 | 64.0% | 1,624 | 51.8% |
| A13 | 공중화장실 | 86,836 | 57,069 | 65.7% | 48,627 | 56.0% |
| A14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산후조리원포함) | 138,375 | 92,781 | 67.1% | 83,672 | 60.5% |
| A15 | 지역아동센터 | 4,941 | 2,968 | 60.1% | 2,587 | 52.4% |
| | 계 | 1,002,079 | 701,564 | 70.0% | 612,455 | 61.1% |

<표 2-3-3>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15개의 1종 근린생활시설 세부유형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유형은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로 설치율 81.0%, 적정설치율은 7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설치율이 높은

• 61 •

세부유형은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공공도서관, 지역자치센터 순으로 각각 77.4%, 76.2%, 76.1%인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의 설치율을 나타내는 세부유형은 모두 공공시설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 중에서도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사의 경우에는 60%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등이 규모가 작은 편이면서 비교적 오래된 건물이 많아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 등에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한 제한이 많은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외 시설은 일반업무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세부유형에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는 10% 내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체수준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군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표 2-3-4>와 같다.

| | 러이니서이 조금 | 설치기준 | 서리스 미 | | 적정설기 | 치수 및 |
|--------|-------------|-----------|---------|--------|----------|-------|
| | 편의시설의 종류 |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지율(%) | 적정설치율(%) | |
| 미비 | 주출입구 접근로 | 189,350 | 166,631 | 88.0% | 155,169 | 81.9% |
| 개 | 장애인주차구역 | 16,194 | 12,065 | 74.5% | 9,319 | 57.5% |
| 시 | 높이차이제거 | 292,646 | 183,668 | 62.8% | 162,592 | 55.6% |
| 설 | 소계 | 498,190 | 362,364 | 72.7% | 327,080 | 65.7% |
| | 주출입문 | 96,554 | 78,301 | 81.1% | 69,257 | 71.7% |
| | 일반출입문 | 68,490 | 55,564 | 81.1% | 48,056 | 70.2% |
| 내 | 복도 | 22,257 | 21,260 | 95.5% | 20,294 | 91.2% |
| 부 | 계단 | 26,504 | 17,547 | 66.2% | 13,293 | 50.2% |
| 시 | 경사로 | 1,680 | 1,466 | 87.3% | 916 | 54.5% |
| 설 | 승강기 | 26,140 | 24,014 | 91.9% | 21,670 | 82.9% |
| | 휠체어리프트 | 189 | 176 | 93.1% | 143 | 75.7% |
| | 소계 | 241,814 | 198,328 | 82.0% | 173,629 | 71.8% |
| | 일반사항 | 75,641 | 37,171 | 49.1% | 28,434 | 37.6% |
| 01 | 대변기 | 107,272 | 57,804 | 53.9% | 43,978 | 41.0% |
| 위 | 소변기 | 6,880 | 2,924 | 42.5% | 2,747 | 39.9% |
| 생 | 세면대 | 4,932 | 4,113 | 83.4% | 2,534 | 51.4% |
| 시 | 욕실 | - | _ | - | - | _ |
| 설 | 샤워실ㆍ탈의실 | - | - | - | - | _ |
| | 소계 | 194,725 | 102,012 | 52.4% | 77,693 | 39.9% |
| 안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 | - | _ |
| 내 | 경보 및 피난설비 | - | - | - | - | _ |
| 시 | 점자블록 | 31,668 | 9,073 | 28.7% | 7,407 | 23.4% |
| 설 | 소계 | 31,668 | 9,073 | 28.7% | 7,407 | 23.4% |
| 71 | 객실·침실 | - | - | - | - | _ |
| 기 | 관람·열람석 | - | - | - | - | _ |
| 타 시 | 접수·작업대 · | 35,456 | 29,562 | 83.4% | 26,442 | 74.6% |
| 시설 | 매표소·판매대·음료대 | - | - | - | - | _ |
| 12 | 소계 | 35,456 | 29,562 | 83.4% | 26,442 | 74.6% |
| | 계 | 1,001,853 | 701,339 | 70.0% | 612,251 | 61.1% |

<표 2-3-4> 1종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 해당없음 항목임(이하 표 동일)



1종 근린생활시설군의 편의시설 대분류 설치율은 전체대상 설치율과 동일하게 기타시설이 83.4%의 설치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타시설이 대부분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종 근린생활시설군은 소규모의 소매점, 이·미용원, 일반목욕장, 의원 등의 민간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의 공공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어 전체 설치율과 매우 유사한 설치율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매개시설 중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항목 설치율은 전체대상 설치율인 67.6%보다 다소 높은 74.5%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항목 설치율도 전체대상 설치율인 57.8%보다 다소 높은 62.8%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 세부유형이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의 공공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아 10대 미만 설치로 장애인주차장 설치 예외 시설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시설 중에서 경사로의 경우에는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차이가 32.8%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존건물이 용도변경 등의 과정에서 대상시설에 편입이 되었으나 구조적으로 기울기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생시설은 설치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된 욕실, 샤워실·탈의실이 포함되는 건물유형이 없기 때문에 전체대상 설치율 46.7% 보다는 약간 높은 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시설은 전체대상 설치율 42.2%보다 매우 낮은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안내시설 중에서 비교적 설치율이 낮은 점자블록 항목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군은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5>와 같다.

| | 세부유형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 – –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B1 | 일반음식점 | 293,181 | 187,861 | 64.1% | 170,967 | 58.3% | |
| B2 | 휴게음식점,제과점 | 14,552 | 40.450 | | | | |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부분 작은 규모의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출입문앞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u>루 이채 2</u>족 그립새화시설구이_주축이구 놀이찬이제거 세부하모 주 저혀브로 과려 하모으 17%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표 2-3-6참조).

내부시설은 주출입문과 일반출입문 두 개의 항목만 의무설치 사항으로 두 항목 모두 전체대상 설치율보다는 2~6%정도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출입문 앞의 점형 블록 설치관련 항목은 15%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부표 2-3-7참조)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세부항목의 점형블록 미설치와 거의 유사한 설치율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출입문의 경우에는 점자표지판 설치 세부항목이 24.4%인 것으로 나타나(부표 2-3-7참조) 거의 설치되지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및 점자표지판 설치관련 세부항목은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이 좀 더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군은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7>과 같다.

| | 세부유형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C1 |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 음악당,서커스장) | 32,212 | 24,033 | 74.6% | 21,446 | 66.6% |
| C2 |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 3,455 | 2,484 | 71.9% | 2,238 | 64.8% |
| C3 |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 21,803 | 15,862 | 72.8% | 14,152 | 64.9% |
| C4 |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 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 38,759 | 30,161 | 77.8% | 26,687 | 68.9% |
| C5 | 동・식물원 | 2,140 | 1,533 | 71.6% | 1,317 | 61.5% |
| 계 | | 98,369 | 74,073 | 75.3% | 65,840 | 66.9% |

<표 2-3-7>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5개의 문화 및 집회시설 세부유형 설치율은 7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세부유형 설치율이 70%대로 전체대상 설치율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세부유형인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극장이나 영화관이 포함되는 공연장은 대부분 민간시설이지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산업전시장 등이 포함되는 전시장은 대부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П

관련이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 5개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는 전시장이 77.8%의 가장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지형상의 특성이 반영되고 시설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동·식물원은 설치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군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8>과 같다.

| 편의시설의 종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i>፣</i> 적정설 <i>፣</i> | |
|----------|----------------|-------------|--------|--------|------------------------------|-------|
| 미비 | 주출입구 접근로 | 10,941 | 9,924 | 90.7% | 9,259 | 84.6% |
| 거 | 장애인주차구역 | 4,812 | 3,806 | 79.1% | 2,927 | 60.8% |
| 시 | 높이차이제거 | 16,944 | 11,882 | 70.1% | 10,733 | 63.3% |
| 설 | 소계 | 32,697 | 25,612 | 78.3% | 22,919 | 70.1% |
| | 주출입문 | 9,394 | 7,830 | 83.4% | 7,222 | 76.9% |
| | 일반출입문 | 6,680 | 5,518 | 82.6% | 5,094 | 76.3% |
| 내 | 복도 | 3,606 | 3,472 | 96.3% | 3,361 | 93.2% |
| 부 | 계단 | 2,744 | 1,875 | 68.3% | 1,491 | 54.3% |
| 시 | 경사로 | 336 | 306 | 91.1% | 223 | 66.4% |
| 설 | 승강기 | 7,080 | 6,666 | 94.2% | 6,000 | 84.7% |
| | 휠체어리프트 | 81 | 81 | 100.0% | 77 | 95.1% |
| | 소계 | 29,921 | 25,748 | 86.1% | 23,468 | 78.4% |
| | 일반사항 | 8,515 | 5,371 | 63.1% | 4,529 | 53.2% |
| | 대변기 | 12,360 | 8,771 | 71.0% | 7,398 | 59.9% |
| 위 | 소변기 | 1,535 | 760 | 49.5% | 737 | 48.0% |
| 생 시 | 세면대 | 1,257 | 1,012 | 80.5% | 730 | 58.1% |
| 설 | 욕실 | - | _ | - | - | - |
| 2 | 샤워실 · 탈의실 | - | - | - | - | - |
| | 소계 | 23,667 | 15,914 | 67.2% | 13,394 | 56.6% |
| 안 | 유도 및 안내설비 | 2,013 | 674 | 33.5% | 627 | 31.1% |
| 내 | 경보 및 피난설비 | 831 | 684 | 82.3% | 513 | 61.7% |
| 시 | 점자블록 | 3,456 | 1,184 | 34.3% | 1,021 | 29.5% |
| 설 | 소계 | 6,300 | 2,542 | 40.3% | 2,161 | 34.3% |
| - 1 | 객실·침실 | - | | - | - | |
| 기 | 관람·열람석 | 1,656 | 1,533 | 92.6% | 1,418 | 85.6% |
| 타 시 | <u>젊수·</u> 작업대 | - | - | - | - | |
| 설 | 매표소·판매대·음료대 | 4,128 | 2,724 | 66.0% | 2,480 | 60.1% |
| | 소계 | 5,784 | 4,257 | 73.6% | 3,898 | 67.4% |
| | 계 | 98,369 | 74,073 | 75.3% | 65,840 | 66.9% |

<표 2-3-8> 문화 및 집회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문화 및 집회시설군의 편의시설 대분류 설치율은 매개시설이 78.3%로 전체대상 설치율 69.5%에 비해 8.8%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매개시설중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높이차이제거 설치율은 각각 90.7%, 79.1%, 70.1%로 전체대상 설치율과 비교할 때 모든 항목이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람장, 전시장 등 시설의 특성상 대지가 넓고 주출입구 접근로는 비교적 여유 있게 설치되는 건물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시설보다는 주출입구 높이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데 유리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도 비교적 양호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П

내부시설중 주출입문,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설치율도 각각 8<u>3.4%, 82.6%, 96.3%, 68.3%, 91.1%, 94.2%, 100.0%</u>로 전체대상 설치율에 비해 약간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람장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2층에도 관람석을 설치 하고 있는데 공공 관람장의 경우에는 비교적 2층 관람장까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민간 관람장이나 영화관 등에서는 휠체어사용자의 관람석 접근은 대부분 직접 피난이 가능한 층에만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이유로 승강기 설치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휠체어사용자의 다양한 좌석 선택에 대한 이용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위생시설은 욕실, 샤워실·탈의실을 제외한 일반사항, 대변기, 소변기는 모두 전체대상 설치율보다 15%이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는 상대적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면대는 전체대상 설치율 81.9%보다 약간 낮은 80.5%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내시설중 유도 및 안내설비는 전체대상 설치율인 38.8% 보다 약간 낮은 33.5%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경보 및 피난설비와 점자블록은 전체대상 설치율 각각 78.4%, 31.8%보다 약간 높은 82.3%, 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장 중에서는 대지의 규모가 크고 주출입구 접근로가 긴 경우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출입구문까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잘 설치해주어야만 혼자 해당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만 30%대의 설치율로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이용시 많은 불편요소가 발생되거나 이용이 불 가능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기타시설에서는 의무설치 항목인 관람석·열람석이 92.6%의 설치율로 전체대상 설치율 96.9%보다 오히려 약간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매표소·판매대·음료대는 66.0%의 설치율로 전체대상 설치율 76.2%보다 약 10%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대부분의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에 설치되는 매표소는 일반매표소이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매표소가 설치되는 경우도 대부분 별도의 낮은 책상을 덧붙여 설치하는 등으로 인해 고정식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4)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9>와 같다.

<표 2-3-9> 종교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종교시설은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의 종교집회장으로 구성되며, 설치율은 7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대상 설치율 보다는 약간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종교집회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이 비교적 많지 않은 건물군에 속한다.

종교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10>과 같다.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미위 | 주출입구 접근로 | 32,683 | 27,641 | 84.6% | 25,157 | 77.0% | |
| 개 | 장애인주차구역 | 8,694 | 5,577 | 64.1% | 3,984 | 45.8% | |
| 시 | 높이차이제거 | 50,764 | 28,292 | 55.7% | 24,773 | 48.8% | |
| 설 | 소계 | 92,141 | 61,510 | 66.8% | 53,914 | 58.5% | |
| | 주출입문 | 29,693 | 22,170 | 74.7% | 20,640 | 69.5% | |
| | 일반출입문 | 21,075 | 16,830 | 79.9% | 14,877 | 70.6% | |
| 내 | 복도 | - | - | - | - | - | |
| 부 | 계단 | - | - | - | - | - | |
| 시 | 경사로 | - | - | - | - | - | |
| 설 | 승강기 | - | - | - | - | - | |
| | 휠체어리프트 | - | - | - | - | - | |
| | 소계 | 50,768 | 39,000 | 76.8% | 35,517 | 70.0% | |
| | 계 | 142,909 | 100,510 | 70.3% | 89,431 | 62.6% | |

<표 2-3-10> 종교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종교시설군의 편의시설 대분류 설치율은 매개시설이 66.8%로 전체대상 설치율 69.5%에 비해 2.78%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매개시설중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높이차이제거 설치율은 각각 84.6%, 64.1%, 55.7%로 전체대상 설치율과 비교할 때 모든 항목이 약간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에는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거의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항목 중에서는 종교시설 내부공간에 설치되는 주차구역에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를 적정하게 설치하지 않고 있어 적정설치율을 더 많이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부표 2-3-13참조).



내부시설중에서는 주출입문, 일반출입문만 의무설치 항목으로 적용된다. 주출입문은 74.7%, 79.9% 설치율을 나타내어 전체대상 설치율 76.2%보다 약간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부에 설치되는 일반출입문도 전체대상 설치율 80.9%보다 약간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대부분의 종교시설에도 주출입문 앞의 점형블록 설치율이 20%대에 그치고 있고, 내부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판 설치율이 20%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부표 2-3-14참조).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안내서비스가 비교적 많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혼자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편의시설 설치에 보다 더 소홀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5) 판매시설

판매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11>와 같다.

| 세부유형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 E1 도매, 소매시장, 상점 | 79,737 | 58,500 | 73.4% | 52,750 | 66.2% |

<표 2-3-11> 판매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판매시설은 도매, 소매시장, 상점으로 구성되며, 세부유형 설치율은 73.4%인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대상 설치율 보다는 약간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판매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 설, 위생시설의 일부만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판매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12>와 같다.

<표 2-3-12> 판매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미비 | 주출입구 접근로 | 10,682 | 9,676 | 90.6% | 9,076 | 85.0% | |
| 개 | 장애인주차구역 | 4,902 | 3,724 | 76.0% | 2,779 | 56.7% | |
| 시 | 높이차이제거 | 16,338 | 11,131 | 68.1% | 10,686 | 65.4% | |
| 설 | 소계 | 31,922 | 24,531 | 76.8% | 22,541 | 70.6% | |
| | 주출입문 | 9,204 | 7,238 | 78.6% | 6,704 | 72.8% | |
| | 일반출입문 | 6,530 | 5,291 | 81.0% | 4,769 | 73.0% | |
| 내 | 복도 | 3,432 | 3,221 | 93.9% | 3,040 | 88.6% | |
| 부 | 계단 | 2,032 | 1,298 | 63.9% | 980 | 48.2% | |
| 시 | 경사로 | 240 | 215 | 89.6% | 141 | 58.8% | |
| 설 | 승강기 | 6,360 | 5,925 | 93.2% | 5,455 | 85.8% | |
| | 휠체어리프트 | 18 | 18 | 100.0% | 13 | 72.2% | |
| | 소계 | 27,816 | 23,206 | 83.4% | 21,102 | 75.9% | |
| | 일반사항 | 8,063 | 4,131 | 51.2% | 3,507 | 43.5% | |
| | 대변기 | 11,936 | 6,632 | 55.6% | 5,600 | 46.9% | |
| 위 | 소변기 | - | - | - | _ | _ | |
| 생 | 세면대 | - | _ | - | - | _ | |
| 시 설 | 욕실 | _ | _ | - | _ | _ | |
| 当 | 샤워실 | - | - | - | - | _ | |
| | 소계 | 19,999 | 10,763 | 53.8% | 9,107 | 45.5% | |
| | 계 | 79,737 | 58,500 | 73.4% | 52,750 | 66.2% | |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으로 구성 되며, 세부유형 설치율은 7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대상 설치율 보다는 약간 높지만 의료시설에의 접근편의성은 장애인등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다른 시설에 비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종합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설치율이 높긴 하지만 비교적 시설규모가 큰 시설이므로 장애인 등 노약자의 이용이 높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시설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П

의료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14>과 같다.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기 설치을 | |
|--------|-----------|----------|---------|--------|-------------|-------|
| 미위 | 주출입구 접근로 | 17,759 | 16,022 | 90.2% | 14,843 | 83.6% |
| 개 | 장애인주차구역 | 8,442 | 6,300 | 74.6% | 4,785 | 56.7% |
| 시 | 높이차이제거 | 27,514 | 19,763 | 71.8% | 18,102 | 65.8% |
| 설 | 소계 | 53,715 | 42,085 | 78.3% | 37,730 | 70.2% |
| | 주출입문 | 15,794 | 13,433 | 85.1% | 12,441 | 78.8% |
| | 일반출입문 | 11,245 | 9,386 | 83.5% | 8,688 | 77.3% |
| 내 | 복도 | 5,622 | 5,520 | 98.2% | 5,394 | 95.9% |
| 부 | 계단 | 2,360 | 1,826 | 77.4% | 1,521 | 64.4% |
| 시 | 경사로 | 376 | 358 | 95.2% | 305 | 81.1% |
| 설 | 승강기 | 15,980 | 14,954 | 93.6% | 13,723 | 85.9% |
| | 휠체어리프트 | 45 | 44 | 97.8% | 41 | 91.1% |
| | 소계 | 51,422 | 45,521 | 88.5% | 42,113 | 81.9% |
| | 일반사항 | 13,241 | 8,817 | 66.6% | 7,612 | 57.5% |
| | 대변기 | 20,192 | 15,244 | 75.5% | 12,324 | 61.0% |
| 위 | 소변기 | 9,350 | 5,940 | 63.5% | 5,643 | 60.4% |
| 생 시 | 세면대 | 7,554 | 6,480 | 85.8% | 4,281 | 56.7% |
| 설 | 욕실 | - | - | - | - | - |
| | 샤워실 | _ | - | - | - | - |
| | 소계 | 50,337 | 36,481 | 72.5% | 29,860 | 59.3% |
| 안 | 유도 및 안내설비 | 11,966 | 4,314 | 36.1% | 3,915 | 32.7% |
| 내 | 경보 및 피난설비 | 5,018 | 4,104 | 81.8% | 3,250 | 64.8% |
| 시 | 점자블록 | 7,482 | 2,350 | 31.4% | 2,087 | 27.9% |
| 설 | 소계 | 24,466 | 10,768 | 44.0% | 9,252 | 37.8% |
| | 계 | 179,940 | 134,855 | 74.9% | 118,955 | 66.1% |

<표 2-3-14> 의료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매개시설중에서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세부항목 중에서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37.2%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전통행로도 46.3%로 조금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18참조). 병원과 같이 이용자 대부분이 환자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후에도 가능한 안전통행로를 이용하여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설치율 40%대로는 매우 부족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안전통행로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시설중에서는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는 30.2%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계단의 점형블록 설치는 45.1%, 손잡이 점자표시는 35.6%로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다른 건물군과 비교할 때는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부표 2-3-19참조). 다른 건물군에 비해 병원은 휠체어사용자가 많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단이나 승강기 버튼 앞, 안내데스크 앞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만 최소화한 점형블록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병원 복도 및 통로의 벽측에 손잡이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위생시설중에서는 화장실 남녀구분과 접근 관련 일반사항, 대변기, 세면대가 의무사항으로 이 중에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30.9%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20 참조). 위생시설 세부항목의 설치율은 전체대상 설치율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병원시설의 사용자 중에서 다수가 휠체어사용자나 목발사용자 등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시설의 화장실 입구 시각장애인 점형블록 설치 세부항목의 설치율은 49.6%로 다른 건물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고 적정설치율도 37.9%로 건물군 보다는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병원시설의 특성상 휠체어사용자나 보행보조기, 링거 거치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휠체어사용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용 화장실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일반화장실로 드나드는 화장실 통로 입구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

안내시설중에서는 유도안내설비의 점자블록 설치가 18.1%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출입구 접근로의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도 31.4%로 비교적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21참조). 종합병원의 경우 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종합병원의 특성상 외래진료동이나 병동 등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다수여서 가능한 종합안내데스크가 있는 곳까지는 연속적인 점자블록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은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원, 직업 훈련소, 학원, 도서관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유형 설치율은 7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설치율 보다는 약간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교육연구시설은 매개시설부터 기타시설까지 대부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이 많은 건물군에 속한다. 교육연구시설 건물군은 9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15>와 같다.

| | 세부유형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G1 | 특수학교 | 9,487 | 7,258 | 76.5% | 6,615 | 69.7% | |
| G2 | 유치원 | 95,375 | 57,290 | 60.1% | 50,933 | 53.4% | |
| G3 | 초등학교 | 288,207 | 210,549 | 73.1% | 183,015 | 63.5% | |
| G4 | 중학교 | 144,893 | 104,813 | 72.3% | 91,107 | 62.9% | |
| G5 | 고등학교 | 106,718 | 76,808 | 72.0% | 66,875 | 62.7% | |
| G6 | 전문대학 | 9,052 | 6,696 | 74.0% | 6,002 | 66.3% | |
| G7 | 대학교 | 28,244 | 21,298 | 75.4% | 18,953 | 67.1% | |
| G8 | 교육원(연수원등),직업훈련소,학 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제외)등 | 222,522 | 150,565 | 67.7% | 133,566 | 60.0% | |
| G9 | 도서관 | 20,979 | 18,172 | 86.6% | 16,219 | 77.3% | |
| 계 | | 925,477 | 653,449 | 70.6% | 573,285 | 61.9% | |

<표 2-3-15> 교육연구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교육연구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16>과 같다.

| 편의시설의 종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미 | 주출입구 접근로 | 103,355 | 91,958 | 89.0% | 83,059 | 80.4% |
| 개 | 장애인주차구역 | 39,108 | 29,263 | 74.8% | 21,893 | 56.0% |
| 시 | 높이차이제거 | 159,995 | 104,401 | 65.3% | 93,269 | 58.3% |
| 설 | / 소계 | 302,458 | 225,622 | | | |

| 편의시설의 종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안 | 유도 및 안내설비 | 41,526 | 16,784 | 40.4% | 15,639 | 37.7% |
| 내 | 경보 및 피난설비 | 17,477 | 13,540 | 77.5% | 10,550 | 60.4% |
| 시 | 점자블록 | 26,379 | 8,119 | 30.8% | 7,152 | 27.1% |
| 설 | 소계 | 85,382 | 38,443 | 45.0% | 33,341 | 39.0% |
| 21 | 객실·침실 | - | - | - | - | - |
| | 관람·열람석 | 1,312 | 1,221 | 93.1% | 1,130 | 86.1% |
| 타 시 | 접수·작업대 | - | - | - | - | - |
| 석 | 매표소 등 | - | - | - | - | - |
| .5 | 소계 | 1,312 | 1,221 | 93.1% | 1,130 | 86.1% |
| | 계 | 925,477 | 653,449 | 70.6% | 573,285 | 61.9% |

매개시설중에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세부항목의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33.9%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전통행로도 45.0%로 조금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22참조). 대부분의 교육연구시설은 대지의 규모 등으로 인해 주출입구 접근로가 비교적 긴 편이고, 학교 운동장 등의 구성으로 인해 대지경계선부터 건물이 있는 출입구 접근로 구간은 보차가 분리되지 않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드나드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계단의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점형블록을 계단의 폭만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부시설중에서는 다른 건물군과 마찬가지로 주출입문과 계단의 점형블록 설치율이 낮다 (부표 2-3-23참조).

위생시설중에서는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17.9%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부표 2-3-24참조).

안내시설중에서는 유도안내설비의 점자블록 설치가 20.0%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출입구 접근로의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도 30.8%로 비교적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25참조). 학교시설 대부분은 주출입구 접근로에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민간시설인 학원의 경우에도 주출입구 접근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볼 수 있다.



8)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건물군은 5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17>과 같다.

П

| 세부유형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H1 | 어린이집 | 454,635 | 249,788 | 54.9% | 210,085 | 46.2% |
| H2 | 아동복지시설 | 29,856 | 16,888 | 56.6% | 14,710 | 49.3% |
| H3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 491,178 | 279,946 | 57.0% | 242,327 | 49.3% |
| H4 | 장애인복지시설 | 107,103 | 77,629 | 72.5% | 69,504 | 64.9% |
| H5 | 이외 사회복지시설 | 107,922 | 74,798 | 69.3% | 67,787 | 62.8% |
| | 계 | 1,158,246 | 691,116 | 59.7% | 606,439 | 52.4% |

<표 2-3-17> 노유자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노유자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율이 가장 낮은 56.6% 설치율을 나타냈다. 전체대상 설치율 보다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노유자시설은 매개시설부터 기타시설까지 모든 세부항목이 의무 사항인 건물군이다. 동 시설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야 하는 건물군 중의 하나이나 의무시설이 제일 많은 것이 설치율을 낮추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유자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18>과 같다.

| 편의시설의 종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미뷔 | 주출입구 접근로 | 137,886 | 121,183 | 87.9% | 111,931 | 81.2% |
| 거 | 장애인주차구역 | 8,850 | 6,516 | 73.6% | 5,043 | 57.0% |
| 시 | 높이차이제거 | 210,197 | 113,268 | 53.9% | 99,364 | 47.3% |
| 설 | 소계 | 356,933 | 240,967 | 67.5% | 216,338 | 60.6% |
| | 주출입문 | 122,195 | 86,969 | 71.2% | 77,954 | 63.8% |
| | 일반출입문 | 86,930 | 67,082 | 77.2% | 53,753 | 61.8% |
| 내 | 복도 | 52,191 | 48,319 | 92.6% | 46,231 | 88.6% |
| 부 | 계단 | 41,576 | 27,816 | 66.9% | 22,032 | 53.0% |
| 시 | 경사로 | 5,136 | 4,515 | 87.9% | 3,267 | 63.6% |
| 설 | 승강기 | 35,090 | 32,362 | 92.2% | 29,287 | 83.5% |
| | 휠체어리프트 | 198 | 186 | 93.9% | 160 | 80.8% |
| | 소계 | 343,316 | 267,249 | 77.8% | 232,684 | 67.8% |
| | 일반사항 | 113,543 | 39,626 | 34.9% | 32,664 | 28.8% |
| | 대변기 | 156,520 | 53,054 | 33.9% | 41,988 | 26.8% |
| 위 | 소변기 | 78,515 | 16,773 | 21.4% | 15,580 | 19.8% |
| 생 시 설 | 세면대 | 5,346 | 4,303 | 80.5% | 2,903 | 54.3% |
| | 욕실 | 14,128 | 3,683 | 26.1% | 2,990 | 21.2% |
| 2 | 샤워실 | 12,334 | 3,547 | 28.8% | 2,528 | 20.5% |
| | 소계 | 380,386 | 120,986 | 31.8% | 98,653 | 25.9% |

<표 2-3-18> 노유자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편의시설의 종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안 | 유도 및 안내설비 | 8,289 | 2,871 | 34.6% | 2,628 | 31.7% |
| 내 | 경보 및 피난설비 | 3,480 | 2,608 | 74.9% | 2,101 | 60.4% |
| 시 | 점자블록 | 5,259 | 1,374 | 26.1% | 1,169 | 22.2% |
| 설 | 소계 | 17,028 | 6,853 | 40.2% | 5,898 | 34.6% |
| - 1 | 객실·침실 | 29,525 | 28,019 | 94.9% | 26,130 | 88.5% |
| フ | 관람·열람석 | 6,852 | 6,762 | 98.7% | 6,624 | 96.7% |
| 타 시 | 접수·작업대 | 6,884 | 6,655 | 96.7% | 6,543 | 95.0% |
| 석 | 매표소 등 | 17,322 | 13,625 | 78.7% | 13,569 | 78.3% |
| 2 | 소계 | 60,583 | 55,061 | 90.9% | 52,866 | 87.3% |
| | 계 | 1,158,246 | 691,116 | 59.7% | 606,439 | 52.4% |

매개시설중에서는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20.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전통행로도 42.0%로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27참조). 노유자시설은 무엇보다 주출입구 접근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되어 안전하게 해당 시설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의 설치율이 60%대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유자시설의 보행이용자 안전 접근에 대한 심각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내부시설중에서는 출입문과 계단 등에 설치되는 점형블록과 점자표시 설치율이 상당히 낮아 전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28참조). 노유자시설 중에서 노인 및 아동관련시설 중에서는 주출입문 앞의 점형블록 설치와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 설치 등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낮아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동 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용이 거의 없는 내부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는 대부분 설치되지 않는 수준이다.

위생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낮추는데 점자블록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변기와 소변기의 설치율이 낮은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개선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는 15.5%의 아주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변기의 손잡이도 21.5%로 비교적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욕실의 비상벨 설치는 12.1%에 불과하고 탈의실 하부 수납장의 하부공간 확보도 16.7%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3-29참조). 노유자시설 중에서 아동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아동용 대변기에 성인용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비현실적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일부 완화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시설을 동일하게 조사 함으로써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설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외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고려한다면 위생시설 관련 설치율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유자시설 중에서 장애인화장실을 비교적 잘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화장실 입구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기 보다는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화장실 문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이유는 장애인화장실을 모든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전용화장실이라는 잘못된 개념의 이해가 아직도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Π

안내시설중에서는 유도안내설비의 점자블록 설치가 12.4%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출입구 접근로의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도 26.2%로 비교적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30참조).

기타시설은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까지 모두 의무사항인데 이중에서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앞에 설치되는 점형블록 설치율이 0.5%로 전혀 설치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부표 2-3-31참조).

노유자시설 중에서도 특히 아동관련시설의 내부 층간이동을 위한 계단 등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함으로써 아동들의 시설이용에 어려움이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편의시설 설치를 융통성있게 할 필요가 있다.

9) 수련시설

수련시설 건물군은 2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19>와 같다.

| 세부유형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11 |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 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 21,545 | 16,199 | 75.2% | 14,064 | 65.3% |
| |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 원,청소년야영장) | 11,452 | 8,057 | 70.4% | 6,866 | 60.0% |
| | 계 | 32,997 | 24,256 | 73.5% | 20,930 | 63.4% |

<표 2-3-19> 수련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 야영장 등의 자연권수련시설로 구성된다. 수련시설군의 설치율은 73.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자연권수련시설이 지형상의 특성 등으로 인해 설치율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20>과 같다.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실 | 널치율(%) | 적정설치~ 적정설치율 | |
|---|----------|----------|---------|--------|----------------|----------|
| 머 | 주출입구 접근로 | 2,968 | 2,442 | 82.3% | 2,195 | 74.0% |
| 개 | 장애인주차구역 | 990 | 720 | 72.7% | 523 | 52.8% |
| 시 | 높이차이제거 | 4,580 | 2,773 | 60.5% | 2,415 | 52.7% |
| 설 | 소계 | 8,538 | 5,935 | 69.5% | 5,133 | 60.1% |
| | 주출입문 | 2,639 | 2,106 | 79.8% | 1,916 | 72.6% |
| | 일반출입문 | 1,880 | 1,520 | 80.9% | 1,300 | 69.1% |
| 내 | 복도 | 1,077 | 1,049 | 97.4% | 1,024 | 95.1% |
| 부 | 계단 | 1,248 | 814 | 65.2% | 626 | 50.2% |
| 시 | 경사로 | 72 | 65 | 90.3% | 46 | 63.9% |
| 설 | 승강기 | 1,450 | 1,386 | 95.6% | 1,247 | 86.0% |
| | 휠체어리프트 | 33 | 31 | 93.9% | 30 | 90.9% |
| | 소계 | 8,399 | 6,971 | 83.0% | 6,189 | 79-78/11 |



위생시설중에서는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율이 36.0%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부표 2-3-34참조).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 침실 내부에 화장실이 설치되며, 특히 장애인 이용가능 침실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개별적인 침실 내부외에 홀에 설치되는 화장실을 장애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소수이며, 설치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 점형블록은 여전히 일반화장실 입구에 설치하기 보다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는 장애인 화장실 입구에 설치하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기타시설에서는 객실·침실이 의무사항이며, 대부분의 설치율이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35참조).

10) 운동시설

운동시설 건물군은 2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21>과 같다.

| 세부유형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J1 | 체육관 | 17,621 | 13,183 | 74.8% | 11,939 | 67.8% |
| J2 |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 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 마,사격,궁도,골프)과 부수되는 건축물 | 28,984 | 19,697 | 68.0% | 18,043 | 62.3% |
| | 계 | 46,605 | 32,880 | 70.6% | 29,982 | 64.3% |

<표 2-3-21> 운동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운동시설군은 체육관, 운동장(부수되는 건축물 포함)으로 구성된다. 육상 등을 위한 야외 운동장외에도 수영, 볼링, 스케이트 등의 실내운동장이 포함되는 건물군의 설치율은 70.6%로 전체대상 설치율보다는 약간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경기를 하는 운동장외에도 부수되는 건축물이 포함되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치율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일부, 위생시설 중에서 소변기만이 의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운동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22>와 같다.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미위 | 주출입구 접근로 | 9,219 | 8,124 | 88.1% | 7,609 | 82.5% |
| 거 | 장애인주차구역 | 3,696 | 2,881 | 77.9% | 2,177 | 58.9% |
| 시 | 높이차이제거 | 14,214 | 8,866 | 62.4% | 8,203 | 57.7% |
| 설 | 소계 | 27,129 | 19,871 | 73.2% | 17,989 | 66.3% |
| | 주출입문 | 8,119 | 6,345 | 78.2% | 5,911 | 72.8% |
| | 일반출입문 | 5,775 | 4,691 | 81.2% | 4,212 | 72.9% |
| 내 | 복도 | - | - | - | - | - |
| 부 | 계단 | - | _ | - | - | _ |
| 시 | 경사로 | - | - | - | - | - |
| 설 | 승강기 | - | - | - | - | - |
| | 휠체어리프트 | - | - | - | - | - |
| | 소계 | 13,894 | 11,036 | 79.4% | 10,123 | 72.9% |
| | 일반사항 | 147 | 91 | 61.9% | 86 | 58.5% |
| ol | 대변기 | - | - | - | - | _ |
| 위 | 소변기 | 5,435 | 1,882 | 34.6% | 1,784 | 32.8% |
| 생 | 세면대 | - | - | - | - | - |
| 시 | 욕실 | - | - | - | - | _ |
| 설 | 샤워실 | - | - | - | - | _ |
| | 소계 | 5,582 | 1,973 | 35.3% | 1,870 | 33.5% |
| | 계 | 46,605 | 32,880 | 70.6% | 29,982 | 64.3% |

<표 2-3-22> 운동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매개시설중에서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세부항목 중에서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25.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전통행로도 45.9%로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36참조). 운동장과 같은 대규모의 운동시설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대부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후 이동하는 경로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주차후 운동시설 내부로 접근하는 구간에 안전통행로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는 비교적 많다고 볼 수 있다.

내부시설중에서는 주출입문과 일반출입문이 의무사항으로 주출입문의 점형블록 설치율은 34.3%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도 25.6%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37참조).

위생시설중에서는 화장실 남녀구분과 접근 관련 일반사항, 소변기가 의무사항인데 이 중에서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 9.5%의 매우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38참조). 운동시설은 장애인이용가능화장실 중에서 대변기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변기만을 설치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편이며,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에 대한 인지도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일반화장실을 주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일반 화장실 앞의 점형블록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 업무시설

업무시설 건물군은 6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23>과 같다.

Π

| | 세부유형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K1 |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 208,841 | 163,050 | 78.1% | 141,281 | 67.7% |
| K2 | 금융업소 등 일반업무시설 | 346,220 | 234,085 | 67.6% | 207,652 | 60.0% |
| K3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 4,499 | 3,518 | 78.2% | 3,180 | 70.7% |
| K4 |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 1,898 | 1,447 | 76.2% | 1,306 | 68.8% |
| K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사 | 731 | 586 | 80.2% | 504 | 68.9% |
| K6 |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 1,381 | 1,122 | 81.2% | 1,006 | 72.8% |
| | 계 | 563,570 | 403,808 | 71.7% | 354,929 | 63.0% |

<표 2-3-23> 업무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업무시설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사,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등의 공공업무시설과 금융업소 등 일반업무시설을 포함한다. 공공과 민간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업무시설군의 설치율은 71.7%로 전체대상 설치율보다는 약간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공공시설이 해당되는 업무시설군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민간시설인 금융업소 등의 일반 업무시설의 설치율이 가장 낮은 6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시설군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24>와 같다.

적정설치수 및 설치수 및 설치율(%)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항목수 적정설치율(%) 주출입구 접근로 67,942 60,799 89.5% 56,108 82.6% 매 장애인주차구역 개 28,560 19,430 68.0% 14,153 49.6% 시 높이차이제거 105.301 68.070 64.6% 61.302 58.2% 설 소계 201,803 148,299 73.5% 131,563 65.2% 주출입문 60,539 49,348 81.5% 44,845 74.1% 75.0% 일반출입문 42.935 35.786 83.3% 32,220 복도 19.656 18,707 95.2% 17,995 91.5% 내 계단 15.143 69.9% 11.844 54.7% 부 21.656 시 경사로 1,248 1,148 92.0% 837 67.1% 설 승강기 32,520 30,230 27,582 84.8% 93.0% 휠체어리프트 198 196 99.0% 170 85.9% 소계 178,752 150.558 84.2% 135.493 75.8%

<표 2-3-24> 업무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일반사항 | 46,676 | 25,186 | 54.0% | 21,020 | 45.0% | |
| | 대변기 | 76,976 | 40,878 | 53.1% | 33,778 | 43.9% | |
| 위 | 소변기 | 11,135 | 6,843 | 61.5% | 6,491 | 58.3% | |
| 생 시 | 세면대 | 8,643 | 7,474 | 86.5% | 5,085 | 58.8% | |
| ~ 석 | 욕실 | - | _ | _ | - | _ | |
| 2 | 샤워실 | - | - | - | - | - | |
| | 소계 | 143,430 | 80,381 | 56.0% | 66,374 | 46.3% | |
| 안 | 유도 및 안내설비 | 13,848 | 5,464 | 39.5% | 5,016 | 36.2% | |
| 내 | 경보 및 피난설비 | 5,758 | 4,586 | 79.6% | 3,426 | 59.5% | |
| 시 | 점자블록 | 8,685 | 4,343 | 50.0% | 3,713 | 42.8% | |
| 설 | 소계 | 28,291 | 14,393 | 50.9% | 12,155 | 43.0% | |
| | 객실·침실 | - | - | - | - | - | |
| 기 | 관람·열람석 | - | - | - | - | - | |
| 타 | 접수·작업대 | 11,520 | 10,402 | 90.3% | 9,548 | 82.9% | |
| 시 설 | 매표소 등 | - | - | - | - | _ | |
| 2 | 소계 | 11,520 | 10,402 | 90.3% | 9,548 | 82.9% | |
| | 계 | 563,796 | 404,033 | 71.7% | 355,133 | 63.0% | |

매개시설중에서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세부항목 중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36.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전통행로도 37.5%로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39참조).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의 점형블록 세부항목은 대부분의 다른 건물군보다는 약간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 다음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설치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대부분의 민간시설보다는 공공시설에서 편의시설을 좀 더 상세하게 설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전통행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민간시설과 동일하게 설치되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내부시설중에서는 다른 건물유형과 마찬가지로 주출입문과 계단의 점형블록, 손잡이 점자 표시의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표 2-3-40).

위생시설중에서도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 37.3%의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부표 2-3-41참조). 일반화장실 앞의 점형블록 설치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같은 이유는 대부분의 공공시설에서도 시각 장애인을 위해 화장실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인지는 되어 있으나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사용자 등의 시설이용약자를 모두 단일화하여 장애인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내시설중에서는 점자블록 설치율이 20.8%로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 설치율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부표 2-3-42참조).



12) 숙박시설

숙박시설 건물군은 2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25>와 같다.

| | 세부유형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L1 |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 166,773 | 116,025 | 69.6% | 103,414 | 62.0% |
| L2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 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46,100 | 32,975 | 71.5% | 28,816 | 62.5% |
| | 계 | 212,873 | 149,000 | 70.0% | 132,230 | 62.1% |

<표 2-3-25> 숙박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숙박시설군은 호텔이나 여관 등의 일반숙박시설과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숙박시설군의 설치율은 7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숙박시설과 공공숙박시설의 설치율은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전체대상 설치율보다는 약간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숙박시설의 특성상 장애인 이용가능 객실 등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비교적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 세부항목이 많은 편이다.

숙박시설군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26>과 같다.

<표 2-3-26> 숙박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주출입구 접근로 | 30,345 | 26,764 | 88.2% | 24,883 | 82.0% | |
| 매개 | 장애인주차구역 | 1,830 | 1,350 | 73.8% | 1,043 | 57.0% | |
| 시설 | 높이차이제거 | 45,844 | 24,250 | 52.9% | 22,760 | 49.6% | |
| | 소계 | 78,019 | 52,364 | 67.1% | 48,686 | 62.4% | |
| | 주출입문 | 26,013 | 18,668 | 71.8% | 17,509 | 67.3% | |
| | 일반출입문 | 18,530 | 14,687 | 79.3% | 12,379 | 66.8% | |
| | 복도 | 1,269 | 1,200 | 94.6% | 1,163 | 91.6% | |
| 내부 | 계단 | 920 | 642 | 69.8% | 507 | 55.1% | |
| 시설 | 경사로 | 120 | 119 | 99.2% | 90 | 75.0% | |
| | 승강기 | 2,870 | 2,477 | 86.3% | 2,177 | 75.9% | |
| | 휠체어리프트 | 12 | 10 | 83.3% | 7 | 58.3% | |
| | 소계 | 49,734 | 37,803 | 76.0% | 33,832 | 68.0% | |
| | 일반사항 | 3,137 | 1,770 | 56.4% | 1,575 | 50.2% | |
| | 대변기 | 4,536 | 2,588 | 57.1% | 2,205 | 48.6% | |
| 위생 | 소변기 | 2,105 | 857 | 40.7% | 814 | 38.7% | |
| - 기정 시설 | 세면대 | 1,698 | 1,239 | 73.0% | 878 | 51.7% | |
| 시설 | 욕실 | - | _ | - | - | - | |
| | 샤워실 | - | - | - | - | - | |
| | 소계 | 11,476 | 6,454 | 56.2% | 5,472 | 47.7%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 | - | - | |
| 안내 | 경보 및 피난설비 | - | _ | - | - | - | |
| 시설 | 점자블록 | 1,710 | 440 | 25.7% | 400 | 23.4% | |
| | 소계 | 1,710 | 440 | 25.7% | 400 | 23.4% | |

| 편의시설의 종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객실·침실 | 71,934 | 51,939 | 72.2% | 43,840 | 60.9% |
| | 관람·열람석 | - | - | - | - | - |
| 기타 시설 | <u>젊수·</u> 작업대 · | - | _ | _ | _ | _ |
| 시설 | 매표소 등 | - | - | - | - | - |
| | 소계 | 71,934 | 51,939 | 72.2% | 43,840 | 60.9% |
| | 계 | 212,873 | 149,000 | 70.0% | 132,230 | 62.1% |

매개시설중에서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세부항목 중에서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16.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3-44참조).

내부시설중에서는 주출입문의 점형블록 설치율은 15.7%,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는 21.1%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계단의 손잡이 점자표시도 17.4%로 역시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45참조).

위생시설중에서는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율이 33.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부표 2-3-46참조).

안내시설중에서는 점자블록 설치율이 20%대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시각 장애인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숙박시설에서 주출입구 접근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 공장

공장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27>과 같다.

<표 2-3-27> 공장의 설치율

| | 세부유형 |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M1 | 공장 | 263,260 | 138,490 | 52.6% | 124,925 | 47.5% |

공장의 설치율은 52.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2개 건물군 중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공장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은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출입문 그리고 위생시설의 대변기 및 소변기까지이다.

공장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28>과 같다.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매 | 주출입구 접근로 | 20.201 | 20 726 | 85.3% | | |
| | | 38,381 | 32,736 | | 30,508 | 79.5% |
| 개 | 장애인주차구역 | 11,220 | 6,927 | 61.7% | 4,835 | 43.1% |
| 시 | 높이차이제거 | 58,918 | 27,921 | 47.4% | 26,304 | 44.6% |
| 설 | 소계 | 108,519 | 67,584 | 62.3% | 61,647 | 56.8% |
| | 주출입문 | 34,187 | 24,186 | 70.7% | 22,639 | 66.2% |
| | 일반출입문 | 24,360 | 19,109 | 78.4% | 16,738 | 68.7% |
| 내 | 복도 | - | - | _ | - | - |
| 부 | 계단 | - | - | - | - | - |
| 시 | 경사로 | - | - | - | - | - |
| 설 | 승강기 | - | - | - | - | - |
| | 휠체어리프트 | - | - | - | - | - |
| | 소계 | 58,547 | 43,295 | 73.9% | 39,377 | 67.3% |
| | 일반사항 | 30,986 | 11,550 | 37.3% | 9,849 | 31.8% |
| io | 대변기 | 43,248 | 11,845 | 27.4% | 9,972 | 23.1% |
| 위 | 소변기 | 21,960 | 4,216 | 19.2% | 4,080 | 18.6% |
| 생 시 | 세면대 | - | - | - | - | - |
| 석 | 욕실 | - | - | - | - | _ |
| 12 | 샤워실 | _ | _ | _ | _ | |
| | 소계 | 96,194 | 27,611 | 28.7% | 23,901 | 24.8% |
| | 계 | 263,260 | 138,490 | 52.6% | 124,925 | 47.5% |

<표 2-3-28> 공장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П

매개시설중에서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세부항목 중에서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19.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3-49참조). 이와같은 이유는 공장시설의 경우, 대부분 외부 불특정다수의 접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시설중에서는 주출입문의 점형블록 설치율과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 설치율 모두 10%대로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50참조).

위생시설중에서는 영유아용 거치대 18.5%,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율이 17.7%로 전체 설치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51참조). 공장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화장실 앞에 설치되어야 할 시각장애인 점형블록은 공장시설에서도 장애인화장실 앞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물군은 2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29>와 같다.

| | 세부유형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N1 | 주차장 | 28,371 | 20,716 | 73.0% | 18,835 | 66.4% |
| N2 | 운전학원 | 7,560 | 4,371 | 57.8% | 3,706 | 49.0% |
| | 계 | 35,931 | 25,087 | 69.8% | 22,541 | 62.7% |

<표 2-3-29> 자동차관련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자동차관련시설군의 설치율은 69.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대상 설치율과 거의 비슷한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련시설군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 시설은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그리고 위생시설의 대변기까지이다.

자동차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30>과 같다.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미비 | 주출입구 접근로 | 10,507 | 9,262 | 88.2% | 8,644 | 82.3% | |
| 개 | 장애인주차구역 | 4,842 | 3,041 | 62.8% | 2,043 | 42.2% | |
| 시 | 높이차이제거 | 15,899 | 10,288 | 64.7% | 9,819 | 61.8% | |
| 설 | 소계 | 31,248 | 22,591 | 72.3% | 20,506 | 65.6% | |
| | 주출입문 | 933 | 634 | 68.0% | 560 | 60.0% | |
| | 일반출입문 | 655 | 493 | 75.3% | 378 | 57.7% | |
| 니 | 복도 | 378 | 340 | 89.9% | 318 | 84.1% | |
| 부 | 계단 | 408 | 237 | 58.1% | 169 | 41.4% | |
| 시 | 경사로 | 48 | 43 | 89.6% | 26 | 54.2% | |
| 설 | 승강기 | 130 | 109 | 83.8% | 99 | 76.2% | |
| | 휠체어리프트 | - | - | - | - | - | |
| | 소계 | 2,552 | 1,856 | 72.7% | 1,550 | 60.7% | |
| | 일반사항 | 915 | 299 | 32.7% | 241 | 26.3% | |
| ol | 대변기 | 1,216 | 341 | 28.0% | 244 | 20.1% | |
| 위 생 | 소변기 | - | - | - | - | - | |
| 생시 | 세면대 | - | _ | - | - | - | |
| 석 | 욕실 | - | - | - | - | - | |
| 12 | 샤워실 | - | - | - | - | - | |
| | 소계 | 2,131 | 640 | 30.0% | 485 | 22.8% | |
| | 계 | 35,931 | 25,087 | 69.8% | 22,541 | 62.7% | |

<표 2-3-30> 자동차관련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매개시설중에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세부항목의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20% 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3-52참조).

내부시설중 주출입문의 점형블록 설치율은 10%대,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도 10%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53참조).

위생시설중에서는 영유아용 거치대 9.2%,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 20%대로 전체 설치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54참조).

자동차관련시설은 주차장이나 운전학원으로 시각장애인의 단독이용이 거의 없는 시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관련시설군에서의 시각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은 설치관련 제외를 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 건물군은 2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33>과 같다.

| | 세부유형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01 | 방송국 | 3,226 | 2 361 | |

매개시설중에서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세부항목 중에서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30%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3-55참조).

내부시설중에서는 주출입문의 점형블록 설치율은 30%대,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는 20%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56참조).

위생시설중에서는 영유아용 거치대 29.9%,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 35.4%로 전체 설치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지만 다른 건물군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57참조).

방송통신시설군은 시설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며, 시설상의 특성으로 인해 설치율이 다른 시설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매개시설의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의 점형블록 설치 항목은 다른 시설군과 동일하게 30%대의 설치율(부표 2-3-55참조)을 나타냄 으로써 방송통신시설군도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관련 설치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6) 교정시설

교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35>와 같다.

| | 세부유형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P1 | 교도소, 구치소 | 1,998 | 1,559 | 78.0% | 1,303 | 65.2% |

<표 2-3-35> 교정시설의 설치율

교정시설군은 교도소, 구치소시설이 포함되며, 설치율은 78.0%로 전체대상 설치율보다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교정시설수가 많지 않고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할 편의시설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의 대변기, 세면대까지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에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정시설군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36>과 같다.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イ 적정설치율 | |
|-----|------------|----------|-------|--------|----------------|--------------|
| 매 | 주출입구 접근로 | 252 | 226 | 89.7% | 213 | 84.5% |
| 개 | 장애인주차구역 | 138 | 120 | 87.0% | 91 | 65.9% |
| 시 / | 높이차이제거 | 382 | 277 | 72.5% | 246 | 64.4% |
| 설/ | 소계 | | 623 | 80.7% | 550 | 71.2% |
| | 주출입문 | 233 | 184 | 79.0% | 166 | 71.2% |
| | 일반출입문 | 1654 | 135 | 81.8% | 1712 | 67.9% |
| LH | 복도 | 99 | 97 | 98.0% | 93 | 93.9% |
| 부 | 계단 | 72 | 45 | 62.5% | 35 | 48.6% |
| ~ | <u>さ</u> へ | - | _ | _ | | - |
| 섵 | | 20 | 17 | 85.0% | 14 | ₩ <u>6</u> ₩ |

17) 묘지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건물군은 2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37>과 같다.

| 세부유형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Q1 | 화장시설 | 1,104 | 755 | 68.4% | 692 | 62.7% |
| Q2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3,095 | 1,976 | 63.8% | 1,734 | 56.0% |
| | 계 | 4,199 | 2,731 | 65.0% | 2,426 | 57.8% |

<표 2-3-37> 묘지관련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묘지관련시설군은 화장시설, 봉안당이 포함되며 설치율은 65.0%로 전체대상 설치율보다 약간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교정시설과 유사하게 전국에 묘지관련시설이 많지 않고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도 매개시설, 내부시설 중 출입문, 위생시설의 대변기까지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일반적 이용이 아닌 시설군 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율은 비교적 낮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묘지관련시설군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38>과 같다.

| <표 2-3-38> 묘지관련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
|---------------------------------|--|
|---------------------------------|--|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주출입구 접근로 | 686 | 573 | 83.5% | 524 | 76.4% |
| 매개 | 장애인주차구역 | 216 | 178 | 82.4% | 140 | 64.8% |
| 시설 | 높이차이제거 | 1,017 | 576 | 56.6% | 526 | 51.7% |
| 매개 | 소계 | 1,919 | 1,327 | 69.2% | 1,190 | 62.0% |
| | 주출입문 | 590 | 429 | 72.7% | 402 | 68.1% |
| | 일반출입문 | 420 | 324 | 77.1% | 292 | 69.5% |
| | 복도 | - | - | - | - | - |
| 내부 | 계단 | - | - | - | - | - |
| 시설 | 경사로 | - | - | - | - | - |
| | 승강기 | - | - | - | - | - |
| | 휠체어리프트 | - | - | - | - | - |
| | 소계 | 1,010 | 753 | 74.6% | 694 | 68.7% |
| | 일반사항 | 534 | 256 | 47.9% | 218 | 40.8% |
| | 대변기 | 736 | 395 | 53.7% | 324 | 44.0% |
| | 소변기 | - | _ | - | - | - |
| | 세면대 | - | _ | - | _ | _ |
| 지설 | 욕실 | - | _ | _ | _ | _ |
| | 샤워실 | - | _ | - | - | _ |
| | 소계 | 1,270 | 651 | 51.3% | 542 | 42.7% |
| | 계 | 4,199 | 2,731 | 65.0% | 2,426 | 57.8% |



매개시설중에서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세부항목중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20%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3-61참조). 묘지관련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 도심지와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대부분 묘지관련시설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영역제시가 필요하다.

П

내부시설중에서는 주출입문의 점형블록 설치율은 20%대,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는 10% 대로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62참조).

위생시설중에서는 영유아용 거치대 22.4%,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 16.9%로 전체 설치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63참조).

18) 관광휴게시설

관광휴게시설 건물군은 2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39>와 같다.

| 세부유형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R1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 1,201 | 887 | 73.9% | 782 | 65.1% |
| R2 | 휴게소 | 9,088 | 7,423 | 81.7% | 6,710 | 73.8% |
| | 계 | 10,289 | 8,310 | 80.8% | 7,492 | 72.8% |

<표 2-3-39> 관광휴게시설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관광휴게시설군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휴게소가 포함되며, 설치율은 80.0%로 전체대상 설치율보다 비교적 높아 전체 건물군 중에서 가장 설치율이 높은 건물군 으로 나타났다. 관광휴게시설군 중에서도 휴게소가 더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중 출입문, 위생시설의 대변기 까지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관광휴게시설군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40>과 같다.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매 | 주출입구 접근로 | 1,645 | 1,494 | 90.8% | 1,380 | 83.9% |
| 기 | 장애인주차구역 | 726 | 633 | 87.2% | 488 | 67.2% |
| 시 | 높이차이제거 | 2,488 | 1,802 | 72.4% | 1,663 | 66.8% |
| 설 | 소계 | 4,859 | 3,929 | 80.9% | 3,531 | 72.7% |
| | 주출입문 | 1,420 | 1,226 | 86.3% | 1,152 | 81.1% |
| | 일반출입문 | 1,005 | 833 | 82.9% | 782 | 77.8% |
| 내 | 복도 | - | - | - | - | _ |
| 부 | 계단 | - | - | - | - | - |
| 시 | 경사로 | _ | _ | _ | _ | _ |
| 설 | 승강기 | - | - | - | - | - |
| | 휠체어리프트 | - | _ | - | - | - |
| | 소계 | 2,425 | 2,059 | 84.9% | 1,934 | 79.8% |
| | 일반사항 | 1,197 | 883 | 73.8% | 769 | 64.2% |
| | 대변기 | 1,808 | 1,439 | 79.6% | 1,258 | 69.6% |
| 위 | 소변기 | - | _ | _ | _ | _ |
| 생 시 | 세면대 | - | - | - | - | - |
| 석 | 욕실 | - | - | - | - | _ |
| 2 | 샤워실 | _ | _ | _ | _ | |
| | 소계 | 3,005 | 2,322 | 77.3% | 2,027 | 67.5% |
| | 계 | 10,289 | 8,310 | 80.8% | 7,492 | 72.8% |

<표 2-3-40> 관광휴게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관광휴게시설군에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휴게소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치되고 있다.

매개시설중에서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세부항목중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40%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건물군에 비해서는 설치율이 높은 수준이다 (부표 2-3-64참조). 이와같은 이유는 관광휴게시설군을 가장 대표하는 휴게소가 대부분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잘 시행하고 있으며 높이차이가 있어서 제거된 경우에는 반드시 점형블록을 잘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시설중에서는 주출입문과 일반출입문 세부항목이 의무사항이며, 주출입문의 점형블록 설치율은 50%대,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는 29.9%로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다른 건물군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65참조).

위생시설중에서는 영유아용 거치대 47.4%,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 60.2%로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건물군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부표 2-3-66참조). 그 외 대부분의 위생시설 세부항목이 70~90%범위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관광휴게시설 건물군에서 휠체어사용자 등이 대변기 등을 이용하는데는 비교적 용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장례식장

장례식장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41>과 같다.

<표 2-3-41> 장례식장의 설치율

| | 세부유형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S1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 | 19,869 | 13,500 | 67.9% | 11,468 | 57.7% |

장례식장은 설치율이 67.9%로 전체대상 설치율과 동일한 건물군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 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까지 포함되어,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은 많은데 비해 편의시설 설치는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42>와 같다.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 | 치율(%) |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 |
|------------------|----------|---------|---------------|----------------|---------|
| 머 | 2,086 | 1,692 | 81.1% | 1,547 | 74.2% |
| 개 | 882 | 695 | 78.8% | 488 | 55.3% |
| 시 | 3,249 | 2,099 | 64.6% | 1,826 | 56.2% |
| 설 | 6,217 | 4,486 | 72.2% | 3,861 | 62.1% |
| | 1,941 | 1,551 | 79.9% | 1,442 | 74.3% |
| | 1,385 | 1,122 | T10% 7 | (Chī) | 3.09% / |
| 내 부 시 설 | | | | | |

매개시설중에서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세부항목중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20%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3-67참조).

내부시설중에서는 주출입문의 점형블록 설치율이 30%대,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는 19.1%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68참조).

위생시설중에서는 영유아용 거치대 17.2%,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 31.1%의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69참조).

안내시설중에서는 점자블록 설치율이 14%대로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 설치율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부표 2-3-70참조).

장례식장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설치율이 낮은 시각 장애인관련시설에 대해서도 설치율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시설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설치율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장례식장이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곳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출입구 접근로에 반드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 공원

공원군은 2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45>와 같다.

| | 세부유형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1 | 도시공원(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 | 21,147 | 11,344 | 53.6% | 10, 124 | 47.9% |
| T2 |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 | 6,509 | 3,963 | 60.9% | 3,433 | 52.7% |
| | 계 | 27,656 | 15,307 | 55.3% | 13,557 | 49.0% |

<표 2-3-45> 공원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공원군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 등이 포함되는 도시공원과 국립·도립·군립공원 등이 포함되는 자연공원이 포함된다. 공원군의 설치율은 55.3%로 전체대상 설치율보다 훨씬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공장 다음으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건물군이다. 공원군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은 매개시설의 접근로, 위생시설의 대변기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이 매우 적은 편이지만 설치율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공원군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46>과 같다.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미위 | 주출입구 접근로 | 9,926 | 9,086 | 91.5% | 8,379 | 84.4% |
| 개 | 장애인주차구역 | - | - | - | - | - |
| 시 | 높이차이제거 | - | - | - | - | - |
| 설 | 소계 | 9,926 | 9,086 | 91.5% | 8,379 | 84.4% |
| | 일반사항 | 6,770 | 3,086 | 45.6% | 2,722 | 40.2% |
| ol | 대변기 | 10,960 | 3,135 | 28.6% | 2,456 | 22.4% |
| 위 | 소변기 | - | - | - | - | - |
| 생 시 | 세면대 | - | - | - | - | _ |
| 석 | 욕실 | - | - | - | - | - |
| 2 | 샤워실 | - | - | - | - | - |
| | 소계 | 17,730 | 6,221 | 35.1% | 5,178 | 29.2% |
| | 계 | 27,656 | 15,307 | 55.3% | 13,557 | 49.0% |

<표 2-3-46> 공원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Π

매개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세부항목이 80~90%의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71참조).

위생시설중에서는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 세부항목의 설치율이 약 17%의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변기의 회전식 손잡이 설치와 세정장치 형태가 20%대의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시설과 달리 대변기 출입문 형태 및 통과 유효폭, 바닥면크기 등도 20%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72참조).

모두가 불편없이 이용하여야 할 공원의 위생시설 중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손잡이 설치가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을 이용하는 휠체어사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공원의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개방화장실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접근뿐만 아니라 위생시설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1) 공동주택

공동주택 건물군은 4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분되며, 세부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47>과 같다.

| 세부유형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U1 | 아파트 | 450,263 | 351,378 | 78.0% | 314,678 | 69.9% |
| U2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68,220 | 46,048 | 67.5% | 40,802 | 59.8% |
| U3 | 연립주택 | 96,655 | 60,351 | 62.4% | 53,990 | 55.9% |
| U4 | 다세대주택 | 546,134 | 372,502 | 68.2% | 341,411 | 62.5% |
| 계 | | 1,161,272 | 830,279 | 71.5% | 750,881 | 64.7% |

<표 2-3-47> 공동주택의 세부유형별 설치율

공동주택군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설치율은 7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대상 설치율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립 주택과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은 전체대상 설치율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군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48>과 같다.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매 | 주출입구 접근로 | 238,693 | 207,508 | 86.9% | 189,474 | 79.4% |
| 개 | 장애인주차구역 | 66,612 | 40,797 | 61.2% | 27,109 | 40.7% |
| 시 | 높이차이제거 | 371,109 | 201,955 | 54.4% | 190,063 | 51.2% |
| 설 | 소계 | 676,414 | 450,260 | 66.6% | 406,646 | 60.1% |
| | 주출입문 | 222,880 | 167,070 | 75.0% | 152,658 | 68.5% |
| | 일반출입문 | 158,495 | 131,596 | 83.0% | 119,914 | 75.7% |
| 내 | 복도 | 2,814 | 2,601 | 92.4% | 2,492 | 88.6% |
| 부 | 계단 | 14,072 | 9,332 | 66.3% | 7,007 | 49.8% |
| 시 | 경사로 | 1,008 | 957 | 94.9% | 716 | 71.0% |
| 설 | 승강기 | 60,540 | 56,241 | 92.9% | 51,424 | 84.9% |
| | 휠체어리프트 | 54 | 51 | 94.4% | 42 | 77.8% |
| | 소계 | 459,863 | 367,848 | 80.0% | 334,253 | 72.7% |
| | 일반사항 | 6,839 | 3,217 | 47.0% | 2,775 | 40.6% |
| | 대변기 | 9,800 | 4,774 | 48.7% | 3,944 | 40.2% |
| 위 | 소변기 | 4,690 | 1,518 | 32.4% | 1,462 | 31.2% |
| 생 시 | 세면대 | 3,666 | 2,662 | 72.6% | 1,801 | 49.1% |
| 석 | 욕실 | - | - | - | - | - |
| 2 | 샤워실 | - | _ | - | - | _ |
| | 소계 | 24,995 | 12,171 | 48.7% | 9,982 | 39.9% |
| | 계 | 1,161,272 | 830,279 | 71.5% | 750,881 | 64.7% |

<표 2-3-48> 공동주택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매개시설중에서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세부항목중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20%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3-73참조).

내부시설중에서는 주출입문의 점형블록 설치율은 30%대, 계단 점형블록 설치와 점자표기는 10%대이나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는 다른 시설군에 비해 다소 높은 40%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74참조).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된 계단에 점형블록과 점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시설중에서는 영유아용 거치대와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 세부항목의 설치율이 약 19%의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고, 소변기 손잡이 설치는 모든 세부항목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3-75참조).



22) 기숙사

기숙사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49>와 같다.

<표 2-3-49> 기숙사의 설치율

П

| 세부유형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V1 7 | 기숙사 | 26,731 | 17,554 | 65.7% | 15,290 | 57.2% |

기숙사는 설치율이 65.7%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대상 설치율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의 출입문, 위생시설의 대변기 세면대, 기타시설의 객실·침실이 포함되어 비교적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이 많은 편이다.

기숙사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50>과 같다.

|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미비 | 주출입구 접근로 | 2,940 | 2,519 | 85.7% | 2,318 | 78.8% |
| 개 | 장애인주차구역 | 912 | 627 | 68.8% | 460 | 50.4% |
| 시 | 높이차이제거 | 4,562 | 2,464 | 54.0% | 2,221 | 48.7% |
| 설 | 소계 | 8,414 | 5,610 | 66.7% | 4,999 | 59.4% |
| | 주출입문 | 2,716 | 2,056 | 75.7% | 1,880 | 69.2% |
| | 일반출입문 | 1,925 | 1,518 | 78.9% | 1,277 | 66.3% |
| 내 | 복도 | - | - | - | - | - |
| 부 | 계단 | - | - | - | - | - |
| 시 | 경사로 | - | - | - | - | - |
| 설 | 승강기 | - | _ | - | - | - |
| | 휠체어리프트 | - | - | - | - | - |
| | 소계 | 4,641 | 3,574 | 77.0% | 3,157 | 68.0% |
| | 일반사항 | 2,341 | 911 | 38.9% | 769 | 32.8% |
| | 대변기 | 3,264 | 1,196 | 36.6% | 1,060 | 32.5% |
| 위 | 소변기 | - | - | - | - | - |
| 생 시 | 세면대 | 1,218 | 753 | 61.8% | 483 | 39.7% |
| 석 | 욕실 | - | - | - | - | - |
| 2 | 샤워실 | - | - | - | - | - |
| | 소계 | 6,823 | 2,860 | 41.9% | 2,312 | 33.9% |
| | 객실·침실 | 6,853 | 5,510 | 80.4% | 4,822 | 70.4% |
| 기 | 관람·열람석 | - | - | - | - | - |
| 타 시 | 접수·작업대 | - | - | - | - | - |
| 석 | 매표소 등 | - | | - | - | - |
| 2 | 소계 | 6,853 | 5,510 | 80.4% | 4,822 | 70.4% |
| | 계 | 26,731 | 17,554 | 65.7% | 15,290 | 57.2% |

<표 2-3-50> 기숙사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매개시설중에서는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세부항목중 점형블록 설치 관련 설치율이 20%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3-76참조). 이와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시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내부시설중에서는 주출입문의 점형블록 설치율은 30%대, 일반출입문의 점자표지는 20% 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표 2-3-77참조).

위생시설중에서는 영유아용 거치대와 일반화장실 입구의 점형블록 설치 세부항목의 설치율이 약 19%의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부표 2-3-78참조). 기숙사는 시설특성상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특성을 명확히 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숙사군은 기타시설 중에서 객실·침실이 의무사항이며, 객실·침실의 세부항목 대부분의 설치율이 7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타시설의 설치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로사에서는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로 지역을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조사결과 분석시에는 세종시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수가 너무 적어 종전의 행정구역인 충남에 힙하여 16개시·도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별도로 제공 할 계획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개략적으로 요약만 하였다.

| 구 분 | 대상건물수 | 대상편의 시설수 | 설치수 및 설 | 치율(%) |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 |
|--------|--------|-------------|---------|-------|----------------|-------|
| 서울 | 18,529 | 698,539 | 469,537 | 67.2% | 423,987 | 60.7% |
| 부산 | 9,672 | 445,606 | 318,466 | 71.5% | 293,709 | 65.9% |
| 대구 | 7,002 | 236,084 | 170,423 | 72.2% | 152,237 | 64.5% |
| 인천 | 10,450 | 415,069 | 277,264 | 66.8% | 247,923 | 59.7% |
| 광주 | 5,052 | 229,268 | 161,775 | 70.6% | 140,738 | 61.4% |
| 대전 | 3,535 | 109,913 | 78,329 | 71.3% | 70,351 | 64.0% |
| 울산 | 3,606 | 173,880 | 122,601 | 70.5% | 116,142 | 66.8% |
| 247927 | 29,541 | 1,326,389 | 923,628 | 69.6% | 827,777 | 62.4% |
| 강원 | 4.464 | 8 | | | | |

П

1) 매개시설

지역별 매개시설의 설치율은 다음 <표 2-4-2>와 같다.

| 구 분 | 대상편의시설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서울 | 371,308 | 230,804 | 62.2% | 209,842 | 56.5% | |
| 부산 | 189,598 | 135,498 | 71.5% | 126,283 | 66.6% | |
| 대구 | 136,206 | 102,438 | 75.2% | 92,093 | 67.6% | |
| 인천 | 198,454 | 132,502 | 66.8% | 120,345 | 60.6% | |
| 광주 | 94,175 | 69,413 | 73.7% | 61,223 | 65.0% | |
| 대전 | 68,750 | 51,017 | 74.2% | 46,493 | 67.6% | |
| 울산 | 71,069 | 51,544 | 72.5% | 48,844 | 68.7% | |
| 경기 | 573,940 | 421,982 | 73.5% | 384,449 | 67.0% | |
| 강원 | 69,335 | 53,870 | 77.7% | 49,964 | 72.1% | |
| 충북 | 94,407 | 61,138 | 64.8% | 54,977 | 58.2% | |
| 충남(세종) | 146,873 | 96,245 | 65.5% | 83,132 | 56.6% | |
| 전북 | 135,641 | 94,128 | 69.4% | 84,911 | 62.6% | |
| 전남 | 142,708 | 92,059 | 64.5% | 73,660 | 51.6% | |
| 경북 | 194,209 | 131,935 | 67.9% | 113,801 | 58.6% | |
| 경남 | 184,023 | 131,453 | 71.4% | 116,779 | 63.5% | |
| 제주 | 58,887 | 41,851 | 71.1% | 39,333 | 66.8% | |
| 계 | 2,729,583 | 1,897,877 | 69.5% | 1,706,129 | 62.5% | |

<표 2-4-2> 지역별 매개시설 설치율

매개시설의 설치율이 전체 평균이상인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시·도와 가장 낮은 시·도의 설치율 차이는 약 15%를 나타내고 있다.

2) 내부시설

지역별 내부시설의 설치율은 다음 <표 2-4-3>과 같다.

| 구 분 | 대상편의시설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3) 위생시설

지역별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다음 <표 2-4-4>와 같다.

| 구 분 | 대상편의시설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서울 | 79,510 | 50,975 | 64.1% | 43,167 | 54.3% | |
| 부산 | 78,196 | 37,573 | 48.0% | 32,297 | 41.3% | |
| 대구 | 38,072 | 17,294 | 45.4% | 14,080 | 37.0% | |
| 인천 | 62,724 | 24,470 | 39.0% | 20,522 | 32.7% | |
| 광주 | 47,545 | 23,961 | 50.4% | 19,857 | 41.8% | |
| 대전 | 16,287 | 8,409 | 51.6% | 6,931 | 42.6% | |
| 울산 | 35,762 | 16,607 | 46.4% | 14,958 | 41.8% | |
| 경기 | 259,060 | 118,221 | 45.6% | 99,166 | 38.3% | |
| 강원 | 39,753 | 21,585 | 54.3% | 18,190 | 45.8% | |
| 충북 | 65,924 | 22,212 | 33.7% | 18,525 | 28.1% | |
| 충남(세종) | 83,640 | 40,162 | 48.0% | 31,407 | 37.6% | |
| 전북 | 73,584 | 35,759 | 48.6% | 28,516 | 38.8% | |
| 전남 | 100,270 | 45,844 | 45.7% | 32,747 | 32.7% | |
| 경북 | 123,186 | 52,980 | 43.0% | 41,909 | 34.0% | |
| 경남 | 119,509 | 54,412 | 45.5% | 44,447 | 37.2% | |
| 제주 | 27,104 | 13,405 | 49.5% | 11,673 | 43.1% | |
| 계 | 1,250,126 | 583,869 | 46.7% | 478,392 | 38.3% | |

<표 2-4-4> 지역별 위생시설 설치율

위생시설의 설치율이 전체 평균을 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세종시 포함), 전라북도,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시·도와 가장 낮은 시·도의 설치율 차이는 약 30%로 안내시설과 함께 지역적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4) 안내시설

지역별 안내시설의 설치율은 다음 <표 2-4-5>와 같다.

| 구 분 | 대상편의시설수 | 설치수 및 설치 | 치율(%) |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
|--------|---------|----------|-------|-----------------|----------------|
| 서울 | 22,205 | 9,573 | 43.1% | 8,362 | 37.7% |
| 부산 | 11,212 | 6,225 | 55.5% | 5,806 | 51.8% |
| 대구 | 8,819 | 5,233 | 59.3% | 4,754 | 53.9% |
| 인천 | 7,451 | 3,133 | 42.0% | 2,741 | 36.8% |
| 광주 | 6,636 | 3,775 | 56.9% | 3,318 | 50.0% |
| 대전 | 4,257 | 1,878 | 44.1% | 1,738 | 40.8% |
| 울산 | 5,225 | 2,926 | 56.0% | 2,737 | 52.4% |
| 경기 | 33,461 | 11,007 | 32.9% | 8,871 | 26.5% |
| 강원 | 8,535 | 3,705 | 43.4% | 3,142 | 36.8% |
| 충북 | 7,448 | 3,064 | 41.1% | 2,555 | 34.3% |
| 충남(세종) | 12,255 | 3,241 | 26.4% | 2,229 | 18.2% |
| 전북 | 12,687 | 5,405 | 42.6% | 5,055 | 39.8% |
| 전남 | 16,957 | 5,726 | 33.8% | 4,502 | 26.5% |
| 경북 | 17,398 | 7,058 | 40.6% | 5,663 | 32.5% |
| 경남 | 18,146 | 9,414 | 51.9% | 8,178 | 45.1% |
| 제주 | 3,038 | 1,280 | 42.1% | | 8.91% 3 |

5) 기타시설

지역별 기타시설의 설치율은 다음 <표 2-4-6>과 같다.

| 구 분 | 대상편의시설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 서울 | 17,474 | 14,571 | 83.4% | 13,336 | 76.3% |
| 부산 | 13,514 | 10,966 | 81.1% | 9,796 | 72.5% |
| 대구 | 19,204 | | | | |



72개 건물유형을 시설주체별로 다음과 같이 공공 및 민간시설로 구분하여 설치율을 파악 했다. 건물군 및 건물유형에 대한 세부 건물의 시설명은 앞서 건물유형별 설치현황 분석에서 제시하였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건물유형코드로만 표기한다.

Π

공공시설로 구분된 A3(지역자치센터), A4(파출소, 지구대), A5(우체국), A6(보건소), A7 (공공도서관), A8(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A9(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A10(한국장애인고용 공단 및 지사), A11(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K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K3(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K4(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민연금 공단 및 지사), K5(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사), K6(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P1(교도소, 구치소)가 해당된다.

<표 2-5-1>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분류표

| 시설주체 | 건물유형코드 |
|------|--|
| 공공시설 |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K1, K3, K4, K5, K6, P1 |
| 민간시설 | A1, A2, A12, A13, A14, A15, B1, B2, B3, C1, C2, C3, C4, C5, D1, E1, F1, F2, F3, G1, G2, G3, G4, G5, G6, G7, G8, G9, H1, H2, H3, H4, H5, I1, I2, J1, J2, K2, L1, L2, M1, N1, N2, O1, O2, Q1, Q2, R1, R2, S1, T1, T2, U1, U2, U3, U4, V1 |

시설주체 구분에 의해 공공 및 민간시설로 구분된 설치율은 다음 <표 2-5-2>와 같다.

<표 2-5-2>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율

| 시설주체 | 대상건물수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공공시설 | 11,973 | 733,461 | 539,767 | 73.6% | 456,772 | 62.3% | |
| 민간시설 | 129,600 | 5,571,913 | 3,743,912 | 67.2% | 3,338,376 | 59.9% | |
| 계 | 141,573 | 6,305,374 | 4,283,679 | 67.9% | 3,795,148 | 60.2% | |

공공시설의 설치율은 73.6%, 적정설치율은 62.3%이며, 민간시설의 설치율은 67.2%, 적정 설치율은 59.9%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 5%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시설은 민간시설과는 달리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없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이 되는 관계로 건물연한이 오래된 건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만큼 설치율이 높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경우에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수직이동 수단 등이 미설치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내부 공간의 구조적 제한 등으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시설주체별로 본 편의시설 설치율은 다음 <표 2-5-3>과 같다.

| 편의 | | 0FI | 공시설 | | | | 믿 | 민간시설 | | | | |
|----------|-------------|------------|-------|--------------|--------|-------------|------------|-------|--------------|-------|--|--|
| 시설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
| 매개 시설 | 233,974 | 184,633 | 78.9% | 157,964 | 67.5% | 2,495,609 | 1,713,244 | 68.7% | 1,548,165 | 62.0% | | |
| 내부 시설 | 213,204 | 181,395 | 85.1% | 158,447 | 74.3% | 1,716,217 | 1,374,027 | 80.1% | 1,233,680 | 71.9% | | |
| 위생 시설 | 184,238 | 111,053 | 60.3% | 85,405 | 547704 | 1 | | | | | | |



특히 주출입구접근로의 세부항목 중에서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설치는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59.8%로 나타난 반면, 민간시설에서는 설치율이 65.0%로 나타났다(부표 2-5-1참조). 전체설치율이 유사한 상황에서 세부항목 중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설치 항목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더 낮게 나타난 이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대지내 진입 접근로가 차도와 인도 구분없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청사인 경우에는 접근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보차가 구분되지 않은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П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율은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은 설치율 82.2%, 적정설치율 65.7%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간시설에서는 설치율 66.1%, 적정설치율 46.8%로 나타나 공공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세부항목 중에서 주차공간 확보와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는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민간시설의 설치율보다 20~30%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부표 2-5-2참조). 이와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공공시설의 경우, 주차장 설치 공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반면, 민간시설은 기존건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을 설치(증설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차대수가 줄어들어 주차장법을 위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주차장에 장애인주차 표시만을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곳에도 바닥주차표시 외에 입식주차표시를 하지 않은 민간시설이 많기 때문에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설치에 대한 설치율에서도 민간시설이 비교적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설치율도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은 설치율 73.0%, 적정설치율 59.3%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간시설에서는 설치율 56.4%, 적정설치율 51.8%로 나타나 민간시설에서의 건물 출입구 높이차이제거가 공공시설의 건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공공 건물은 대부분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문이 설치되는 건물의 입구에서 대지경계선 까지의 접근로 공간이 비교적 여유있게 설치되기 때문에 출입문 앞에 계단 등의 단차가 설치 되어도 경사로를 규정에 맞추어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반면, 민간시설은 건물 입구가 바로 대지경계선에 접해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대문이다. 특히 소규모 건물이면서 민간시설로만 구성된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제과점, 안마시술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도와 바로 접해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1~2단 정도의 계단을 설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 건물을 용도변경하면서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될 때 출입구 문 앞에 설치된 계단의 단차를 제거하는데 제한요소가 많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로 인해 높이차이 제거의 세부항목 중에서도 높이차이제거의 설치율이 58.8%로(부표 2-5-3참조) 72종 건물유형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u>C</u>z



일반출입문의 설치율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매우 유사한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시설은 설치율 82.3%, 적정설치율 71,1%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간시설에서는 설치율 80.8%, 적정설치율 70.8%로 나타났다. 관련항목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부표 2-5-5참조)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모두 주요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점자표지판 설치 세부항목의 설치율이 매우 낮은 결과(공공시설 26.3%, 민간시설 31.0%)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시설주등이 아직까지 다른 편의시설보다 점자표지판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낮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도의 설치율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에서 유사하게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시설은 설치율 96,1%, 적정설치율은 92,1<u>%인 것으로 나타났으며,</u> 민간시설은 설치율 94.0%, 적정설치율 9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내부시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민간시설의 복도손잡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90%이상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내부시설 중 수직이동수단으로는 계단,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등이 있다. 건물이 소규모이면서 5층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계단만으로 수직이동 수단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항목이 승강기, 경사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계단의 설치율은 승강기 혹은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등의 수직이동수단과는 달리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계단의 설치율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 68.4%로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계단의 세부항목의 설치율을 살펴보면(부표 2-5-7참조) 다른 세부항목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세부항목은 계단 손잡이 30센티미터 연장설치와 점형블록 설치, 점자표기이다. 특히 점자표기는 부착형으로 설치하는 편의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20%대로 매우 저조한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점형블록 설치 항목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이 37.7%인데 비해 민간시설이 26.1%인 것으로 나타나(부표 2-5-7참조) 민간시설의 계단에 점형블록이 거의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시설의 수직이동 수단 중에서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이 불가능한 계단을 제외한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리프트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비슷한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승강기와 경사로, 휠체어리프트의 설치율이 모두 93%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사로에 설치되는 손잡이의 연속설치와 손잡이의 굵기 등 일련의 손잡이 설치관련 세부항목에서 설치율은 낮지 않으나 적정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정설치율과 설치율의 차이가 약 30~40%인 것을 알 수 있다(부표 2-5-8참조). 이와같은 이유는 대부분의 기성제품 손잡이가 지름 5센티미터 내외 굵기의 난간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 장애인편의시설로 설치되어야 하는 손잡이는 난간용으로 설치되는 것과는 달리 3.2~3.8센티미터 굵기로 설치 되어야 손에 잡기 쉽고 시설이용약자의 이용편의에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계단에서는 손잡이가 아닌 난간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Π

3) 위생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로 구분된 위생시설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5-6>과 같다. 위생시설 전체의 설치율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60.3%로 민간시설의 설치율인 44.4%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편의시설 | | 공공시설 | | | 항목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332,877 151,404 45.5% 126,618 38.0% | | |
|------------|-------------|--------------|-------------|-----------|---|---------------|--|
| 진의지절 종류 | 설치기준 | 설치수 및 | 적정설치수 | | | | |
| | <u> 항목수</u> | 설치율(%) | 적정설치율(% | ()) 항목수 | 설지율(%) | 석성설지율(%) | |
| 일반사항 | 68,784 | 37,471 54.5% | 28,574 41.5 | % 332,877 | 151,404 45.5% | 126,618 38.0% | |
| 대변기 | 95,568 | 59,174 61.9% | 45,196 47.3 | % 490,616 | 30,84432 | | |



중에서도 설치율이 매우 낮은 시설(자동차관련시설 19.7%, 공장 23.4%, 노유자시설 27.1% - 부표 2-5-12참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П

소변기의 설치율은 공공시설은 61.5%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민간시설의 설치율은 32.3%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설치율이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시설에서는 소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 비교적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노유자시설의 소변기 설치율이 21.4%에 그치고 있으며, 공장의 소변기 설치율은 2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5-13참조). 이와같은 이유는 기성제품 소변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각종 유형의 소변기에 설치되는 물내림 센서위치 등으로 인해 소변기 손잡이 설치높이가 일부 변화되어 설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면대의 설치율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모두가 80%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대변기와 소변기의 설치율보다는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시설에서의 세면대 설치율은 86.4%이며, 민간시설에서의 세면대 설치율은 8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 및 민간시설 모두에서 적정설치율이 각각 58.8%, 53.1%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지 않은 설치율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고 있으나 세면대의 수도꼭지 형태와 점자표시 부착 등의 적정설치율이 10~20%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4) 안내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로 구분된 안내시설의 세부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5-7>과 같다. 안내시설 전체의 설치율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41.3%로 민간시설의 설치율인 42.6%보다 오히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편의시설 | | 망 | 공시설 | | | | Ľ | 민간시설 | 1 | |
|---------------------|-------------|------------|-------|---------------------|-------|-------------|-----------------|-------|---------------------|-------|
| 편의지설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イ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유도 및 안내설비 | 13,848 | 5,464 | 39.5% | 5,016 | 36.2% | 63,794 | 24,643 | 38.6% | 22,809 | 35.8% |
| 경보 및 피난설비 | 5,758 | 4,586 | 79.6% | 3,426 | 59.5% | 26,806 | 20,936 | 78.1% | 16,414 | 61.2% |
|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 | 35,463 | 12,672 | 35.7% | 10,524 | 29.7% | 50,061 | 14,342 | 28.6% | 12,522 | 25.0% |
| 계 | 55,069 | 22,722 | 41.3% | 18,966 | 34.4% | 140,661 | 59,921 | 42.6% | 51,745 | 36.8% |

<표 2-5-7> 시설주체별 안내시설 설치율

유도 및 안내설비의 설치율은 공공시설이 39.5%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고, 민간시설의 설치율은 38.6%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설치율이 유사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세부항목 중에서 촉지도식 안내판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점형 블록의 설치율이 공공시설에서는 20.8%, 민간시설에서는 18.5%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율은 공공 및 민간시설 모두에서 다른 세부 시설보다 비교적 높은 설치율인 79.6%와 78.1%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정설치율은 공공시설이 56.0%, 민간시설이 57.5%로 절반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관련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에 의해 경보 및 피난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편의증진법에서는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인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설치율에서는 20%정도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주출입구 접근로의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의 설치율은 공공시설이 35.7%, 민간시설이 28.6%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시설이 민간시설보다는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공공시설의 설치율도 비교적 낮다. 점자블록의 형태와 설치위치 시공방법까지 모두 공공시설에서는 30%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고, 민간시설에서는 20%대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주출입구 접근로에 의무적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설치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표 2-5-19참조).

5) 기타시설

기타시설 중에서는 접수대·작업대만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이 비교될 수 있는 세부항목이다. 접수대·작업대 세부항목의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5-8>과 같다.

| 편의시설 종류 | | 0FI | 공시설 | | | 민간시설 | | | | | |
|-----------------|-------------|-------------------|-------|---------------------|-------|-------------|-----------------|-------|---------------------|-------|--|
| | 설치기준 항목수 |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객실·침실 | _ | - | - | _ | - | 115,384 | 91,384 | 79.2% | 80,035 | 69.4% | |
| 관람석·열람석 | - | - | - | - | - | 9,820 | 9,516 | 96.9% | 9,172 | 93.4% | |
| 접수대·작업대 | 46,976 | 39,964 | 85.1% | 35,990 | 76.6% | 6,884 | 6,655 | 96.7% | 6,543 | 95.0% | |
| 매표소·판매대 ·음료대 | - | - | - | _ | - | 21,450 | 16,349 | 76.2% | 16,049 | 74.8% | |
| 계 | 46,976 | 39,964 | 85.1% | 35,990 | 76.6% | 153,538 | 123,904 | 80.7% | 111,799 | 72.8% | |

<표 2-5-8> 시설주체별 기타시설 설치율



접수대·작업대의 공공시설 설치율은 85.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시설의 설치율은 9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의 설치율이 낮게 나왔지만 설치기준항목 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고려하면 설치율 차이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접수대· 자<u>엊대의 센부한목별 서치용으 대부부 80~90%대로 나타나 비교저 야ㅎ하게 석치되는 거으</u> 알 수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의 작업대 하부공간 깊이 확보에서는 적정설치율이 54.4%(부표 2-5-22참조)로 나타나 설치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П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는 설치대상 시설에 대해 전반적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조사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종류별 세부항목의 중요도등이 반영되지 않고 모든 세부조사항목에 대하여 설치여부를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세부항목별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보다 체감적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설치기준을 편의시설 종류별로 2개씩 선정하여 설치수준을 분석했다.

연구진이 항목을 1차 선정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편의시설 종류별 핵심항목을 검증하였다. 편의시설 종류별 핵심항목은 다음 <표 2-6-1>과 같다.

| $ \begin{array}{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 편 | 의시설 종류 | | 핵심항목 |
|---|--------|-----------|--------------------|--|
| 비.1.32 모노 등의 신행당행 기초가는 18분의 1 이하 (다만, 지형상 관련한 경우 11.32 모노 등의 신행당행 기초가는 18분의 1 이하 (다만, 지형상 관련한 경우 가 가 1225 창에인진용추차구역의 크기는 폭 3.5m이상, 길이 5m 이상(행행주차인 경우 포이차이제 12.25 창에인진용추차구역의 크기는 폭 3.5m이상, 길이 5m 이상(행행주차인 경우 포이차이제 1.32.1 핵당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는 2cm이하가 되고 주술인문일까지의 철체이 등의 접근 가능여부 1.32.2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 1.2m이상 설치 여부 출입구(문) 2.1.1 주출인문의 높이지에 여부 2.1.1 감도 취당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 1.2m이상 설치 여부 2.1.1 주출인문의 도이 1.2m이상 설치 여부 출입구(문) 2.1.1 주출입문의 도이 1.2m이상 설치 여부 2.2.1.2 목도 11.1.2 주출입문의 도이 0.8m이하로 철보, 0.2m이상을 확보 2.2.1.2 감도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2.4.2.5 기단 2.4.2.5 개단 여자 2.2m이상을 확보 2.4.3 감다 경사로의 기관 후 1.2m이상을 확도 2.2m이상 열도관 한 약 2.4.3 2.4.3 감다 경사로의 기관 1.2 12분의 101하 설치 2.4.3 2.4.2.5 1.2.2.4 감다 감소 1 경사로의 기관 1.2 12분의 101하 설치 2.4.3 2.4.3 2.4.3 감다 승강기 대한 미 전 1.2 12분의 101하 설치 2.4.3 | 개 시 | 접근로 | 1.1.3.1 | |
| 실 경애인건 아자 구역 장애인건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안전통행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m 이상 높이차이제 거 13.21 해당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는 2cm이하가 되고 주출입문까지의 휠체어 등의 접근 가능여부 13.22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어 1.2m 이상 설치 여부 13.22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어 1.2m 이상 설치 여부 21.11 주출입문의 도이차이 여부 21.12 주출입문 등과유효폭의 0.8m 이상 확보 여부 21.12 주출입문 등과유효폭의 0.8m 이상 확보 여부 21.12 주요 이 가 주요 이 가 문 확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계단 24.23 월면의 높이 0.18m 이하로 설치,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설치 24.25 계단측면에 높이 0.80 이해 순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24.3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하 설치 24.4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하 설치 24.4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하 설치 24.44 1.3m 이상 환체어리프 토 24.51 환체어리프 토 24.51 기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같이 1.05m 이상, 수직형 0.9×깊이 감료 31.13 환의 바닥면적 경사형 0.76×같이 1.05m 이상, 수직형 0.9×깊이 1 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같이 1.05m 이상, 수직형 0.9×깊이 환화 1 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같이 1.05m 이상, 우주형 0.9×깊이 1 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같이 1.05m 이상, 우지형 0.9×깊이 1 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같이 1.05m 이상, 우지형 | | | 1.1.3.2 | 보도 등의 진행방향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 |
| 실 구역 1232 장애민 안전용주자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민용 증강절비에 위효폭은 12m 이상 높이차이제 거 1321 핵당시선의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는 2cm이하가 되고 유효물은 12m 이상 불 한입구(문) 1322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이 12m이상 철치 여부 1322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이 12m이상 철치 여부 1322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이 12m이상 철치 여부 22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이 12m이상 철치 여부 2112 주출입문 까지의 철체어 여부 2121 북도 위탁면의 당차는 2cm 이하로 확보 2121 북도 비탁면의 당차는 2cm 이하로 확보 2122 감도 비탁면의 다차는 2cm 이하로 확보 2123 철면의 높이 0.8m이상 확실 여부 2212 무도 비탁면의 당차는 2cm 이하로 확보 2425 계단측면에 높이 0.8 [*] 09m에 순점이 관이 0 [*] 41 2425 계단측면의 도 0.8 [*] 09m에 순점이 전 여부 2425 계단측면의 높이 0.8 [*] 09m에 순점이 전 여부 2443 경사로의 기울가는 12분의 101하 설치 2443 (2081.1 이전·이후)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2.4 [*] 44 1.3 [*] 5 [*] 01 전 [*] 0 [*] 1 | | | 1.2.2.5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길이 5m 이상(평행주차인 경우 폭 2m이상, 길이 6m 이상)의 규정에 적합한 주차공간의 확보 |
| 거 1.3.2.2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이 1.2m이상 설치 여부 출입구(문) 2.1.1.1 주출입문 등과유효폭의 0.8m이상 확보 여부 복도 바라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고1.1 목도의 유효폭의 1.2m이상으로 함 복도 바라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고1.1 목도의 바라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고1.2 정신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계단 2.4.2.3 첼면의 높이 0.8m이하로 설치, 디딤관의 너비는 0.28m이상 설치 2.4.2.5 계단측면에 높이 0.8°0.9m에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2.4.3.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하 설치 2.4.3.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하 설치 2.4.3.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하 설치 2.4.4.3 (208.1.1 이전·이후)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2.4.4.4 1.35m이상 활체어리고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2.4.5.1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2.4.5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2.4.5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2.4.5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확보 대변기 3.2.2 대변기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3.2.1 < | | | 1.2.3.2 | 이르기까지 장애인 안전통행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m 이상 |
| 비용한 1.3.22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 여부 2.1.1 주출입문 돌과유효폭의 0.8m이상 확보 여부 2.1.2 주출입문 통과유효폭의 0.8m이상 확보 여부 2.2.1 목도 위효폭은 1.2m이상으로 함 2.2.1 목도 바닥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 등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계단 2.4.2.3 철면의 높이 0.18m 이하로 설치, 디딜판의 너비는 0.28m이상 설치 2.4.2.5 계단 2.4.2.5 제단속면에 높이 0.8°0.9m에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2.4.3 경사로의 유효록 1.2m이상 확보 2.4.3 경사로 2.4.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하 설치 2.4.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하 설치 2.4.3 승강기 2.4.4 6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출당장간 확보 2.4.4.3 (2008.1.1 이전·이후)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2.4.4.1 6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2.4.4.2 (2008.1.1 이전·이후)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2.4.4.3 (2008.1.1 이전·이후 1.4m×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2.4.4 1.3m이상 월체어리프 2.4.51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1.1.1.3 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3.1.1.4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법빈기간의 단차포함)가 2cm이하 1.1.14 화장실의 바다 단차(화장실과 대법빈기간의 방학 보) 위효 바닥면 크기가 | | | 1.3.2.1 | 해당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는 2cm이하가 되고 주출입문까지의 휠체어 등의 접근 가능여부 |
| 불법 귀(문) 2.1.2 주출입문 통과유효폭의 0.8m이상 확보 여부 4 목도 22.1.1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함 2.2.12 복도 바닥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계단 2.4.2.3 챌면의 높이 0.18m 이하로 설치, 디딤판의 너비는 0.2m이상 설치 2.4.2.5 계단측면에 높이 0.8~0.9m에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경사로 2.4.3.1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2.4.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1하 설치 승강기 2.4.4.1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4.4.3 (208.1.1 이전·이후)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2.4.4.4 1.35m이상 활체어리프 2.4.5.1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1.2m이상 1.2m이상 활세어리프 2.4.5.1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1.2m이상 1.2m이상 기대면기 3.2.2 대면기 3.2.2 적 법 3.1.3 활체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3.1.1.4 확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간의 단차포함)가 2cm이하 3.2.2.5 목 1.4m이상, 깊이 1.8m이상 건의 경우) 확보 3.2.1 소법기 학자에 수 전속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3.2.2.5 목 1.4m | | ~1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이 1.2m이상 설치 여부 |
| 비 21.1.2 구술입분 등과유효복의 0.8m이상 확보 여부 복도 22.1.1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함 2.2.12 복도 바닥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계단 24.2.3 챌면의 높이 0.8m이상 확보 2.4.2 계단측면에 높이 0.8m이상 확보 24.2.5 경사로 24.4.1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2.4.3.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설치 2.4.4.1 승강기 24.4.1 승강기 2.4.4.1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4.4.1 1.35m이상 24.4.4 1.35m이상 24.4.4 1.35m이상 활체어리프 24.5.1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m×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201.05m이상, 수직형 0.9×20 1.2m이상 24.5.2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m×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201.05m이상, 수직형 0.9×20 1.2m이상 24.5.2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m×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2.4.5.2 대한 것의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3.1.1.4 3.2.2.4 (2005.12.30 이전·아후 신축 건축 감종관 0.8m이상 확보 2.2.4 4년 3.2.2.4 (2005.12.30 이전·아후 신축 감종관 유효 유효 0.8m이야 확보 3.2.4 <t< td=""><td></td><td>츠이그(므)</td><td>2.1.1.1</td><td></td></t<> | | 츠이그(므) | 2.1.1.1 | |
| 복도2.2.1.2복도 바닥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CPL,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계단2.4.2.3챌면의 높이 0.18m 이하로 설치,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설치2.4.2.5계단측면에 높이 0.8°C 0.9m에 순잡이가 연속되게 설치경사로2.4.3.1경사로의 우효폭 1.2m 이상 확보2.4.3.3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설치2.4.4.4(.2008.1.1 이전·이후)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손강기2.4.3.1(.2008.1.1 이전·이후)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관계어리프2.4.5.1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m×1.4m 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관계어리프2.4.5.1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 이상, 수직형 0.9×깊이관계 이라프1.1.3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3.1.1.3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3.1.1.4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간의 단차포함)가 2cm 이하관비3.2.2.5대변기 간의 호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확보신변기3.2.1소변기의 수평순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3.2.3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세면대3.4.1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0.65m 이상으로 설치유실3.5.1수취기는 않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사위실·탈의3.62.1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위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 | 걸 나 (군) | 2.1.1.2 | 주출입문 통과유효폭의 0.8m이상 확보 여부 |
| 비 22.1.2 다만, 부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계단 2.4.2.3 첼면의 높이 0.18m 이하로 설치,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설치 2.4.2.5 계단측면에 높이 0.8~0.9m에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경사로 2.4.3.1 경사로의 유효폭 1.2m 이상 확보 2.4.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설치 금 2.4.3.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설치 금 2.4.4.1 승강기 1.1 여전·이후)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2.4.4.4 (2008.1.1 이전·이후)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2.4.4.4 (2008.1.1 이전·이후)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2.4.4.4 (24.52)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m×1.4m 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2.4.4.4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 이상, 수직형 0.9×깊이 1.1.3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3.1.1.4 최지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3.1.1.4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간의 단차포함)가 20m 이하 3.1.1.4 회장의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간의 단차포함)가 20m 이하 3.2.2.2 대변기 3.2.2.4 (2005.12.30 이전·이후 신축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3.2.2.5 로친기의 수평순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3.2.1 소변기의 수평순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소변기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 | | 2.2.1.1 | |
| 내 계단 2.4.2.5 계단측면에 높이 0.8°0.9m에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경사로 2.4.3.1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24.3.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하 설치 승강기 2.4.4.1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승강기 2.4.4.3 (2008.1.1 이전·이후)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2.4.4.4 1.35m이상 2.4.4.3 (2008.1.1 이전·이후)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2.4.4.4 활체어리프 2.4.5.1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m×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1.2m이상 1.2m이상 1.2m이상 일반 3.1.1.3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동로 연결 여부 3.1.4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칸의 단차포함)가 2cm이하 대변기 3.2.2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3.2.1 소변기의 가락이 수 신축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확보 소변기 3.3.2.1 소변기의 구력은 0.6m내외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세면대 3.4.2.1 휠체어사용자의 소리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0.65m 이상으로 설치 유실 3.5.1 소변기의 논란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사위실·탈의 3.6.2.1 해당시설에 철치된 사위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 | 복도 | 2.2.1.2 | 복도 바닥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
| 1 24.25 계단속면에 높이 0.8 0.9m에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경사로 24.3.1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24.3.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하 설치 2.4.3.1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승강기 2.4.4.1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4.4 1.35m이상 활체어리프 트 2.4.5.1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m×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1.2m이상 일반 3.1.1.3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3.1.1.4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간의 단차포함)가 2cm이하 3.2.2 대변기 간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3.2.4 (2005.12.30 이전·이후 신축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3.2.5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확보 소변기 3.3.2.1 소변기의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 [°] C0.9m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월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0.65m 이상으로 설치 욕실 3.5.1 4시면대 3.4.2.1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3.5.3.1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 . 11 | 계단 | 2.4.2.3 | 챌면의 높이 0.18m이하로 설치, 디딤판의 너비는 0.28m이상 설치 |
| 심 경사로 24.3.1 경사로의 파요국 1.2mol상 목보 24.3.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하 설치 24.3.3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0하 설치 2.4.1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ol상의 활동공간 확보 2.4.3 (2008.1.1 이전·이후)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ol상, 깊이 2.4.4 1.35mol상 휠체어리프 트 2.4.5.1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m×1.4mol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ol상, 수직형 0.9×깊이 1.2mol상 1.2mol상 일반 3.1.1.3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3.1.1.4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간의 단차포함)가 2cmol하 3.2.2 대변기 간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ol상 확보 대변기 3.2.2.1 (2005.12.30 이건·이후 신축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ol상, 깊이 1.8mol상(대변기 길이 방향) 확보 3.3.2.1 소변기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시면대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0.65mol상으로 설치 4 월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유실 3.5.2.1 옥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3.5.2.1 옥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3.5.3.1 사위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초요1 | 냅 | | 2.4.2.5 | 계단측면에 높이 0.8~0.9m에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
| 실 8 · 시 · · · · · · · · · · · · · · · · · | 치 | 경사로 | 2.4.3.1 |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
| 승강기 2.4.3 2.4.4 (2008.1.1 이전·이후)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휠체어리프 트 2.4.5.1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m×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1.2m이상 일반 3.1.1.3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3.1.1.4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칸의 단차포함)가 2cm이하 3.2.2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대변기 3.2.2 (2005.12.30 이전·이후 신축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확보 소변기 3.3.2.1 소변기의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세면대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0.65m이상으로 설치 욕실 3.5.2.1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3.5.3.1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 | | 2.4.3.3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설치 |
| 위해 이라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_ | | 2.4.4.1 |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 철세어리프 트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1.2m이상 일반 3.1.1.3 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3.1.1.4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칸의 단차포함)가 2㎝이하 대변기 3.2.2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3.2.2.4 (2005.12.30 이전·이후 신축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확보 소변기 3.3.2.1 소변기의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세면대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0.65m이상으로 설치 욕실 3.5.2.1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5.3.1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샤워실·탈의 3.6.2.1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 | 승강기 | | |
| 트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주직형 0.9×깊이 1.2m이상 일반 3.1.1.3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3.1.1.4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칸의 단차포함)가 2㎝이하 3.2.2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대변기 3.2.2 3.2.2.4 (2005.12.30 이전·이후 신축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확보 소변기 3.3.2.1 소변기 3.3.2.1 소변기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세면대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65m이상으로 설치 욕실 3.5.2.1 옥실 3.5.2.1 옥실 3.5.2.1 옥실 3.5.2.1 옥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3.5.2.1 옥실 등에 휠체어 소이 닿는 곳에 설치 샤워실·탈의 3.6.2.1 | | | 2.4.5.1 |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m×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
| 이 일 만 3.1.1.4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칸의 단차포함)가 2㎝이하 1 3.2.2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1 3.2.2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3.2.2 3.2.2 (2005.12.30 이전·이후 신축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3.2.2 3.2.2 (2005.12.30 이전·이후 신축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3.2.1 소변기의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시면대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0.65m이상으로 설치 0.65m이상으로 설치 유실 3.5.2.1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샤워실·탈의 3.6.2.1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 | | 2.4.5.2 |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1.2m이상 |
| 위 3.1.1.4 화상실의 바닥 난자(화상실과 내면기간의 단자포함)가 2cm이하 대변기 3.2.2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3.2.4 3.2.2.4 (2005.12.30 이전·이후 신축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확보 소변기 3.3.2.1 소변기의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소변기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세면대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0.65m이상으로 설치 욕실 3.5.2.1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소위실·탈의 3.6.2.1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 | 일반 | 3.1.1.3 |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
| 대변기 3.2.24 3.2.5 (2005.12.30 이전·이후 신축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확보 소변기 3.3.2.1 소변기의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소변기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세면대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0.65m이상으로 설치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소위실 3.5.2.1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소위실·탈의 3.6.2.1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 | | 3.1.1.4 |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칸의 단차포함)가 2㎝이하 |
| 위 3.2.2.5 폭 1.4m이상, 코이 1.8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확보 1 3.2.2.5 폭 1.4m이상, 코이 1.8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확보 소변기 3.3.2.1 소변기의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세면대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6 6.5m이상으로 설치 유실 3.5.2.1 옥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3.5.3.1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샤워실·탈의 3.6.2.1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 | 대변기 | 3.2.2.2 |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
| 생 소변기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실 세면대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욕실 3.5.2.1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소원실·탈의 3.6.2.1 사위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 생 | | 3.2.2.4 3.2.2.5 | (2005.12.30 이전·이후 신축 건축물인 경우)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확보 |
| 시 3.3.2.3 좌구 온업이의 간격은 0.60m대외 세면대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0.65m이상으로 설치 욕실 3.5.2.1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용신 3.5.3.1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샤워실·탈의 3.6.2.1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 | ㅅ버기 | 3.3.2.1 | 소변기의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
| 설 세면대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0.65m이상으로 설치 욕실 3.5.2.1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3.5.3.1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샤워실·탈의 3.6.2.1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 | 소먼기 | 3.3.2.3 |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
| 욕실 3.5.3.1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샤워실·탈의 3.6.2.1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 | 세면대 | 3.4.2.1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0.65m이상으로 설치 |
| 3.5.3.1 ·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넣는 곳에 설치 샤워실·탈의 3.6.2.1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 | 0 AI | 3.5.2.1 |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
| | | 4 실 | 3.5.3.1 |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
| | | 샤워실·탈의 | 3.6.2.1 |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
| | | 실 | 3.6.2.2 | 샤워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 |

<표 2-6-1> 편의시설종류별 핵심항목

| | | | NMM NMM | | | | | |
|------------------|------------|---------|---|--|--|--|--|--|
| 편 | 의시설 종류 | | 핵심항목 | | | | | |
| | 유도·안내설 | 4.1.2.1 | 시각장애인이 해당시설의 방의 배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 | | | |
| | 비 | 4.1.2.2 | 설치규격 | | | | | |
| 안 | 저지브로 | 1.1.6.1 | 주출입구 점자블록 형태 | | | | | |
| - 내 시 | 점자블록 | 1.1.6.2 | 주출입구 점자블록 설치위치(주출입구 접근로에 점자블록 연속설치) | | | | | |
| 설 | 청각경보설 비 | 4.2.1.1 |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ㆍ피난설비가연속적으로 설치 | | | | | |
| | 시각경보설 비 | 4.2.1.2 |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 | | | | | |
| | 객실·침실 | 5.1.4.1 |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칸의 단차포함)가 2㎝이하 | | | | | |
| | | 5.1.4.3 |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확보 | | | | | |
| | | 5.2.2.2 | 휠체어사용자용 관람석인 경우에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이 0.9m이상, 깊이 1.3m이상으로 설치 | | | | | |
| 기 타 시 설 | 관람·열람석 | 5.2.2.3 |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이며, 하단은 높이가 0.65m이하이며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 | | | | |
| | 접수·작업대 | 5.3.2.2 |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로 설치 | | | | | |
| | | 5.3.2.4 |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 | | | | |
| | 매표소 등 | 5.4.3.1 |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매표소의 높이는 0.7~0.9m이하에 설치 | | | | | |
| | _ | 5.4.3.7 |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0.8m로 설치 | | | | | |

П

oddi

동 분석은 편의시설 핵심항목에 대한 적정설치율과 미흡설치율, 미설치율을 산출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알아보았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핵심항목기준 설치율은 다음 <표 2-6-2>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편의/ | 편의시설 종류 대상편의시설수 및 | | 적정설치수 및 | | 미흡설치수 및 | | 미설치수 및 | | |
|--------|-------------------|-------------|---------|----------------|-----------|--|--------------|----------------------|------------------|
| 및 세부항목 | | 전체 설치율% | | 적정설치율(%) | | 미흡설치율(%) | | 미설치율(%) | |
| A | a b | 대상편의 시설수 | 설치율 | a와 b가 모두 적정 | 적정 설치율 | 경우1) a와 b중 하나는 적정, 하나는 미흡 경우2) a,b 모두 미흡 | 미 흡 설 치 율 | a와 b중 1개라도 미설치 | 미 설 치 율 |

<표 2-6-2> 핵심항목기준 편의시설 설치율 산정방법

A : 편의시설 종류(대분류)

a, b : 세부항목 중 핵심항목

핵심항목으로 선정된 2개의 항목이 적정하게 설치된 경우와 미흡으로 설치된 경우, 미설치된 경우로 구분하여 2개의 항목 모두 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을 적정한 것으로 한정 했고, 2개의 항목 중 1개의 항목만이라도 미설치된 경우에는 미설치로 판단하였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미흡으로 분류하였다. 이와같이 구분한 이유는 핵심항목으로 선정된 2개의 항목 모두 적정으로 설치되어야만 시설이용자 측면에서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1개의 항목만 이라도 미흡으로 설치되거나 2개의 항목이 모두 미흡으로 설치 되면 시설이용자 측면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흡설치율로 산정하였다. 또한 1개의 항목이라도 미설치되면 건물이용자 측면에서는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설치율로 산정하였다.

핵심항목을 기준으로 한 설치율은 72.9%(적정설치율은 62.9% + 미흡설치율 10%)로 모든 세부항목의 설치율(67.9%)보다 5%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설치율이 낮게 나타난 점자블록 관련항목 등이 핵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편의시설 종류 | 핵심세부항목수 및 전체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미흡설치 미흡설치 |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
| 매개시설 내부시설 | 317,504 207,046 | 100.0% 100.0% | 208,725 | 65.7% | 45,853 | 14.4% | 62,926 | 19.8% |



주출입구 접근로의 핵심항목으로 선정된 접근로의 유효폭과 기울기는 휠체어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핵심항목이다. 휠체어사용자 등의 시설이용약자가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후 주출입구 접근로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과정에서 접근로의 기울기가 최소 1/12이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항목이 바로 접근로의 기울기 세부항목이다. 또한 접근로의 유효폭도 최소 1.2미터는 확보되어야만 휠체어사용자와 일반보행자가 최소의 교행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두 항목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접근로의 설치율은 92.8%(적정설치율은 79.3% + 미흡설치율 13.5%)로 나타나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핵심항목기준 설치율이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87.9%보다 약 5%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П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핵심항목인 주차공간의 폭 확보와 안전통행로 확보 항목은 각각 휠체어사용자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주차한 후 해당 건물 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핵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두 항목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율은 59.1%(적정설치율은 41.0% + 미흡설치율 18.1%)로 나타나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67.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41.0%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 48.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핵심항목은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와 출입구 연결접근로 폭 항목이다. 휠체어사용자가 해당건물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로를 이용해 접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입문 앞턱이 있거나 접근로 폭이 좁으면 내부로 들어가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항목이다. 두 가지 항목을 핵심으로 하는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의 설치율은 73.0%(적정설치율은 58.6% + 미흡설치율 14.4%)로 나타나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57.8%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58.6%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 5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항목 설치율이 비교적 낮으므로 건물의 구조 등으로 개선이 쉽지 않은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에 대한 다양한 방법 제시를 통해 높이차이 제거가 되지 않은 해당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도와 바로 접해있는 중규모 이하 수준의 상업시설에서의 높이차이 제거는 이동식 경사로 비치 및 호출벨 설치 등을 법 이행 방법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117 •

2) 내부시설

내부시설의 주출입문, 복도, 계단·경사로·승강기·휠체어리프트로 6개 항목에서 각각 핵심항목으로 선정된 세부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6-5>와 같다. 핵심 항목기준 설치율은 87.0%(적정설치율은 82.1% + 미흡설치율 4.9%)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80.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82.1%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인 72.2% 보다 약 10%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세부항목 | 대상편의/ 전체 설 | | 적정설; 적정설; | | 미흡설: 미흡설: |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
| 주출입 | 출입문 높이차이여부 | 114.015 | 100.09/ | 05 000 | 00.00/ | | | 10.115 | 10 70/ |
| 문 | 통과유효폭 | 114,315 | 100.0% | 95,200 | 83.3% | - | - | 19,115 | 16.7% |
| | 복도유효폭 | 47.010 | 100.00/ | 40.000 | 07.00/ | 0 700 | F 70/ | 0.400 | 7.00/ |
| 복도 | 바닥단차 | 47,019 | 100.0% | 40,908 | 87.0% | 2,703 | 5.7% | 3,408 | 7.2% |
| | 챌면높이·디딤판너비 | 10.070 | 100.00/ | 10 574 | E4.09/ | 4 00 1 | 05.40/ | 0.000 | 10.70/ |
| 계단 | 손잡이 연속설치 | 19,278 | 100.0% | 10,574 | 54.9% | 4,901 | 25.4% | 3,803 | 19.7% |
| 경사로 | 경사로 유효폭 | | 100.00/ | 010 | EZ 10/ | 454 | 00.40/ | 000 | 1.4.40/ |
| 경작도 | 기울기 1/12이하 | 1,596 | 100.0% | 912 | 57.1% | 454 | 28.4% | 230 | 14.4% |
| | 전면활동공간 확보 | 04.450 | 100.00/ | 00.070 | 00.00/ | 1 000 | 0.10/ | 200 | 1.00/ |
| 승강기 | 유효바닥면적(08'이전·후) | 24,450 | 100.0% | 22,078 | 90.3% | 1,983 | 8.1% | 389 | 1.6% |
| 휠체어 | 휠체어 상·하부 활동공간확보 | | 100.00/ | 000 | 77.00/ | 05 | 10.00/ | 00 | F 00/ |
| 리프트 |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 | 100.0% | 300 | 77.3% | 65 | 16.8% | 23 | 5.9% |
| | 계 | 207,046 | 100.0% | 169,972 | 82.1% | 10,106 | 4.9% | 26,968 | 13.0% |

<표 2-6-5> 핵심항목기준 내부시설 설치율

주출입문의 핵심항목으로 선정된 출입문 높이차이 제거와 통과 유효폭은 휠체어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핵심항목이다. 대부분의 건물에서 외부로부터 내부로 진입하는 주출입문 혹은 부출입문에 단차를 두지 않지만 소규모의 건물인 경우에는 일부 문에 문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설치율이 83.3%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출입문의 핵심항목으로 선정된 출입문 높이차이 여부와 통과 유효폭 두 항목을 핵심으로 하는 주출입문의 설치율은 83.3%(적정 설치율도 설치율과 동일함)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76.2%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도의 핵심항목으로 선정된 복도의 유효폭과 바닥단차는 휠체어사용자가 내부를 수평적 으로 이동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항목이다. 복도의 유효폭과 바닥 단차의 두 핵심항목의 설치율은 92.7%(적정설치율은 87.0% + 미흡설치율 5.7%)로 전체 항목기준 설치율인 94.4% 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87.0%로 전체 항목기준 적정설치율 90.5% 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항목 설치율 보다 약간 낮은



설치율은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핵심항목 중에서 바닥단차 항목이 복도의 유효폭 항목에 비해 약간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이유는 복도의 유효폭은 건축법에 의해 최소한 1.2미터 이상으로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설치율이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지만 복도의 일부에 단차가 생기는 경우는 다소 있는 편이며, 이때 복도의 단차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경사로 기울기 등을 기준보다 가파르게 설치 하는 등 단차제거가 기준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П

내부 수직이동을 위한 수단 중 계단의 핵심항목으로 선정된 챌면높이와 디딤판 너비 그리고 연속손잡이는 승강기가 없는 건물에서 계단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 계단의 챌면높이와 디딤판 너비의 두 핵심항목의 설치율은 80.3%(적정설치율은 54.9% + 미흡 설치율 25.4%)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68.4%보다는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설치율도 54.9%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 5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수직이동을 위한 수단 중에서 복지관 등과 같이 일부 특수한 시설에서만 설치되고 있는 경사로의 핵심항목은 경사로의 유효폭과 기울기이다. 특히 기울기를 1/12이하로 설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동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사로의 기울기 규정과 폭 규정은 반드시 기준에 맞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경사로 유효폭과 기울기 두 핵심항목의 설치율은 85.5%(적정설치율은 57.1% + 미흡설치율 28.4%)로 전체항목 기준 설치율인 90.3%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57.1%로 전체항목 기준 적정설치율 64.5%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수직이동을 위한 수단 중에서 이용이 가장 용이한 승강기의 핵심항목은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 확보와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이다. 만약 승강기 전면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휠체어사용자는 아무리 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승강기 사용이 불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승강기 전면활동공간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이 휠체어사용자가 탈 수 없는 수준이거나 승강기를 탄 후 회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이 또한 편의가 제공될 수 없는 편의시설이 되는 것이다. 승강기는 대부분 기성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17인승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대부분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규정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설치율이나 적정설치율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승강기 전면활동공간 확보 및 내부 유효바닥면적의 두 핵심항목 설치율은 98.4%(적정설치율은 90.3% + 미흡설치율 8.1%)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93.2%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90.3%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 85.2%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수직이동을 위한 수단 중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휠체어리프트의 핵심항목은 상·하부 활동공간 확보와 유효바닥면적이다. 주로 기성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리프트의 핵심 항목인 상·하부 활동공간 확보와 유효바닥면적의 설치율은 94.1%(적정설치율은 77.3% + 미흡 설치율 16.8%)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96.0%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설치율도 77.3%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 81.7%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대적 설치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상 핵심항목을 중심으로 본 내부시설 중에서 주출입문의 경우, 높이차이가 발생되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건물구조인 경우에는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동식경사로 설치 및 호출벨 등으로 실질적인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위생시설

위생시설의 일반사항,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로 6개 항목에서 각각 핵심항목으로 선정된 세부항목별 설치율은 52.3%(적정설치율은 44.3% + 미홉설치율 8.0%)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46.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44.3%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인 38.3% 보다 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세부항목 | 대상편의시 전체 설 | | 적정설; 적정설; | | | 치수 및 치율(%)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
| 일반 사항 | 접근가능통로 연결여부 | 57,432 | 100.0% | 29,620 | 51.6% | 4,723 | 8.2% | 23,089 | 40.2% |
| ~18 | 화장실바닥단차 | | | | | | | | |
| | 출입문 통과유효폭 | | | | | | | | |
| 대변기 | 대변기 비닥면 유효공간확보(05 이전·후) | | 100.0% | 30,759 | 42.0% | 7,369 | 10.1% | 35,145 | 48.0% |
| 소변기 | 수평손잡이 높이 | 20 776 | 100.0% | 10.014 | 20 70/ | 1 202 | 0.00/ | | 66.0% |
| 고먼거 | 좌우손잡이 간격 | 39,776 | 100.0% | 12,214 | 30.7% | 1,303 | 3.3% | 26,259 | 66.0% |
| 세면대 | 상·하단 높이 | 12,313 | 100.0% | 9,053 | 73.5% | 1,231 | 10.0% | 2,029 | 16.5% |
| 욕실 | 휠체어사용자 출입가능여부 | 1,766 | 100.0% | 308 | 17.4% | 126 | 7.1% | 1,332 | 75.4% |
| | 샤워기 위치 | | | | | | | | |
| 샤워실· 타이시 | 풀립//공연구 | | 100.0% | 502 | 28.5% | 95 | 5.4% | 1,165 | 66.1% |
| 걸려설 | 탈의실 유효바닥면적 | | | | | | | | |
| | 계 | | 100.0% | 82,456 | 44.3% | 14,847 | 8.0% | 89,019 | 47.8% |

<표 2-6-6> 핵심항목기준 위생시설 설치율

위생시설 일반사항의 핵심항목인 접근가능통로 연결여부와 화장실 바닥단차는 휠체어 사용자와 같이 공간점유율이 많아 일반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반드시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 일반화장실 내부에 장애인화장실이 아무리 잘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까지의 접근가능통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휠체어 이용자들의 접근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 두 핵심항목의 설치율은 59.8%(적정설치율은 51.6% + 미흡설치율 8.2%)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47.0%보다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51.6%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 38.6%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시설 중 대변기의 핵심항목은 출입문 통과유효폭과 바닥면 유효폭 확보이다. 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화장실에 접근 한 후에는 대변기 칸막이 내부로 들어가 변기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핵심항목의 설치율은 52.1%(적정설치율은 42.0% + 미흡설치율 10.1%)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49.5%보다는 약간 높으며, 적정설치율도 42.0%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 39.9%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중 절반 정도는 휠체어 장애인이 사실상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화장실 이용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출입문 통과유효폭과 바닥면 유효폭 확보를 모두 미흡하게 설치하거나 두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미흡하게 설치하여 시설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는 10.1%로 나타났고, 두 항목 모두 혹은 두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미설치로 나타난 경우는 48.0%로 나타났으므로 화장실의 대변기를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약자가 이용하는데 58.1%는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소변기의 핵심항목은 수평손잡이 높이와 좌우손잡이 간격이다. 이 기준은 특히 목발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변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핵심항목의 설치율은 34.0%(적정설치율은 30.7% + 미흡설치율 3.3%)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33.9%와 거의 유사한 설치율을 나타냈으며, 적정설치율은 30.7%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 32.0%보다는 오히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미설치로 나타난 경우가 66.0%나 되어 목발사용자 등과 같이 소변기의 손잡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변기 이용에 매우 불편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세면대의 핵심항목인 상·하단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세면대를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항목이다. 아무리 세면대가 잘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부공간이 비워져 있지 않다면 휠체어사용자는 세면대를 측면으로 접근하여 매우 불편한 자세로 사용하거나 아예 접근이 되지 않아 세면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세면대의 상·하부공간 확보에 대한 설치율은 83.5%(적정설치율은 73.5% + 미흡설치율 10.0%)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81.9%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은 73.5%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54.4% 보다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설치된 세면대 중에서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세면대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Π

욕실의 핵심항목으로 선정된 휠체어사용자 욕실 출입 가능여부와 샤워기 위치 항목의 설치율은 24.6%(적정설치율은 17.4% + 미흡설치율 7.2%)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26.1% 보다도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샤워 및 탈의실의 핵심항목인 샤워실 출입 가능여부와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은 휠체어를 타고 샤워 및 탈의실에 접근가능한지를 알아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다. 샤워 및 탈의실의 두 핵심항목에 대한 설치율은 33.9%(적정설치율은 28.5% + 미흡설치율 5.4%)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28,8%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28.5%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20.5% 보다 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설치로 나타난 경우가 66.1%나 됨으로써 대부분의 시설이용자가 욕실과 비슷하게 샤워 및 탈의실 사용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안내시설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의 3개 항목에서 각각 핵심 항모ㅇㄹ 서저되 세브하모며 서치유 및 저저서치유으 다으 <ㅍ 2-6-7>과 가다. 해시하모기준 설치율은 55.3%(적정설치율은 44.4% + 미흡설치율 10.9%)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42.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44.1%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인 36.1% 보다 약 8%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세부항목 | 대상편의시 전체 설: | | 적정설차 적정설차 | | 미흡설치 미흡설치 | | 미설치 미설치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점자·촉지도안내판 설치위치 | 15,056 | 100.0% | 7,147 | 47.5% | 471 | 3.1% | 7,438 | 49.4% |
| 경보 및 | 시각장애인설비 연속적설치 | 16,280 | 100.0% | 10,518 | 64.6% | 2,934 | 18.0% | 2,828 | 17.4% |
| 피난설비 | 청각장애인설비 연속적 설치 | 16,284 | 100.0% | 9,322 | 57.2% | 2,748 | 16.9% | 4,214 | 25.9% |
| | 접근로 점자블록 형태 | | | | | | | | |
| 점자블록 | 접근로 점자블록 설치위치 | 28,508 | 100.0% | 6,807 | 23.9% | 2,145 | 7.5% | 19,556 | 68.6% |
| | 계 | \$76,128 | 100.0% | 33,794 | <u>44,4%</u> , | 298 8 |) B 9%I | | |



시설로 시각장애인과 같이 시설물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항목 이다. 이 두 핵심항목의 설치율은 50.6%(적정설치율은 47.5% + 미흡설치율 3.1%)로 전체항목 기준 설치율인 38.8%보다는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47.5%로 전체항목 기준 적정설치율 36.1%보다 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 및 피난설비의 핵심항목인 시각장애인설비 연속적 설치와 청각장애인설비 연속적 설치는 비상시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목이다.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소리로 알려주는 시각장애인용 비상벨은 설치율이 82.6%(적정설치율은 64.6% + 미홉설치율 18.0%)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각장애인에게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경광등은 설치율이 비상벨과 달리 조금 더 낮은 74.1%(적정설치율은 57.2% + 미홉설치율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의 핵심항목인 접근로 점자블록 형태 및 점자블록 설치위치는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주출입구 접근로를 따라 이동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항목이다. 주출입구에 설치 되는 점자블록이 표준형으로 연속설치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외부에서부터 건물로 이동할 때 정확히 안내할 수 있다. 하지만 잘 설치되어 있어야할 주출입구 접근로의 점자블록 설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로 점자블록 형태 및 점자블록 설치위치의 두 핵심항목 설치율은 31.4%(적정설치율은 23.9% + 미흡설치율은 7.5%)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31.6% 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은 23.9%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 26.9%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기타시설

기타시설의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대·음료대의 4개 항목에서 각각 핵심항목으로 선정된 세부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6-8>과 같다. 핵심항목기준 설치율은 79.4%(적정설치율은 68.0% + 미홉설치율 11.4%)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81.7%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은 68.0%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인 73.7% 보다 약 5%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모두 핵심항목설치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 세부항목 | 대상편의시설수 및 전체 설치율% | | 적정설: 적정설: | | 미흡설# 미흡설# | |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 |
|-------------------------|---------------------------------|----------------------|--------|--------------|-------|--------------|-------|-------------------|-------|
| 개시. | 객실 화장실 바닥단차 | | | | | | | | |
| 작절 ¹ 침실 | 침실 대변기칸막이 줄입문 통과유효폭 | | 100.0% | 4,880 | 72.0% | - | _ | 1,897 | 28.0% |
| | 관람석 유효바닥면적 | | | | | | | | |
| 관람석· 열람석 | 열람석높이·휠체어 발받이 공간(하부공간) 확보 | 2,455 | 100.0% | 2,285 | 93.1% | 77 | 3.1% | 93 | 3.8% |
| 접수대· | 작업대 높이 | | | | | | | | |
| 접구대 [.] 작업대 | 휠체어 발받이 공간확보 | 13,465 | 100.0% | 7,796 | 57.9% | 2,640 | 19.6% | 3,029 | 22.5% |
| 매표소· | 매표소· 매표소 높이 | | | | | | | | |
| 판매대· 음료대 | 우글네 비ᄎㅋ 도시 | | 100.0% | 1,934 | 90.2% | 106 | 4.9% | 104 | 4.9% |
| | 계 | | 100.0% | 16,895 | 68.0% | 2,823 | 11.4% | 5,123 | 20.6% |

<표 2-6-8> 핵심항목기준 기타시설 설치율

기타시설 객실·침실의 핵심항목인 화장실 바닥단차, 대변기칸막이 출입문 통과 유효폭의 설치율은 72.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생시설의 일반사항 및 대변기 핵심항목기준 의 설치율인 59.8%(적정설치율은 51.6% + 미흡설치율 8.2%)과 52.1%(적정설치율은 42.0% + 미흡설치율 10.1%)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석·열람석의 핵심항목인 관람석 유효바닥면적, 열람석 높이 및 하부공간 확보의 설치율은 96.2%(적정설치율은 93.1% + 미흡설치율 3.1%)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96.9%와 거의 비숫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은 93.1%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도 93.4%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대·작업대의 핵심항목인 접수대 및 작업대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두 핵심항목의 설치율은 77.5%(적정설치율은 57.9% + 미흡설치율 19.6%)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86.6%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57.9%로 전체항목기준 적정설치율 79.0%보다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표소·판매대·음료대의 핵심항목인 매표소 높이와 음료대 분출구 높이 두 항목의 설치율은 95.1%(적정설치율은 90.2% + 미홉설치율 4.9%)로 전체항목기준 설치율인 76.2%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은 90.2%로 전체항목기준 적정 설치율도 74.8%보다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2008년와 2013년도의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을 비교한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2008년 조사와 2013년 조사방법등이 같아야 하는데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조사에서 대부부 프하디지 와아더 시가자애이 저자부로 설치 두에 대하 세부하모으 2013년에 추가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전체설치율이 낮아진 것처럼 보인다.

П

따라서 2013년 조사결과를 2008년 조사결과와 바로 시계열 분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2008년도와 2013년에도 공통적으로 조사된 세부항목에 한정하여 설치현황의 시계열 비교를 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2-7-1>와 같다.

| 편의 | | 20 |)08년도 | | | 2013년 도 | | | | | | |
|----------|-------------|------------|-------|--------------|-------------|-------------------|-----------|-------|---------------------|-------|--|--|
| 시설 종류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수 및 율(%) | 설치기준 설치 항목수 설치 |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매개 시설 | 1,342,840 | 1,035,594 | 77.1% | 754,353 | 56.2% | 1,455,010 | 1,202,226 | 82.6% | 1,063,331 | 73.1% | | |
| 내부 시설 | 1,406,739 | 1,231,281 | 87.5% | 959,834 | 68.2% | 1,030,043 | 969,146 | 94.1% | 867,051 | 84.2% | | |
| 위생 시설 | 512,965 | 286,607 | 55.9% | 183,238 | 35.7% | 808,790 | 414,059 | 51.2% | 336,763 | 41.6% | | |
| 안내 시설 | 28,994 | 14,350 | 49.5% | 7,498 | 25.9% | 77,309 | 43,077 | 55.7% | 35,019 | 45.3% | | |
| 기타 시설 | 79,394 | 54,811 | 69.0% | 38,173 | 48.1% | 115,273 | 97,619 | 84.7% | 89,304 | 77.5% | | |
| 계 | 3,370,932 | 2,622,643 | 77.8% | 1,943,096 | 57.6% | 3,486,425 | 2,726,127 | 78.2% | 2,391,468 | 68.6% | | |

<표 2-7-1> 연도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2008년 전수조사의 전체 설치율은 77.5%, 적정설치율은 55.8%였으나 2013년도와 동일하게 조사된 항목만으로 산정한 설치율은 77.8%, 적정설치율은 57.6%이다. 반면 동일한 항목 으로만 비교한 2013년 전수조사의 전체 설치율은 78.2%이고 적정설치율은 68.6%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항목만으로 비교한 시계열비교 결과는 전체설치율에서 0.4% 증가를 보였고, 적정설치율에서 11.0%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설치율 0.4% 증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이나 2008년도 이전의 시설 중에서 2008년도 에는 조사되지 않았다가 2013년도 조사에 포함된 시설의 설치율이 낮기 때문에 설치율 증가폭이 미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다음 8장의 2008년도 이전·이후의 설치율 비교결과 2008년도 이후 건물의 설치율이 평균적으로 5%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 반면, 적정설치율이 급증한 것은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을 중심으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세부기준 단위별로 조사항목을 구성한 관계로 적정과 미흡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설문문항의 객관화가 적정설치율을 높게 나타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에 해당되는 2개 항목(높이차이제거,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중에서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을 평가하는 항목이 2008년과 2013년 조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2008년에는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을 평가하면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경사로 기울기를 함께 조사한 관계로 대부분 미흡하게 설치된 기울기가 사실상 두 번 반영 되었지만, 2013년에는 높이차이제거 항목에서만 경사로 기울기를 조사함으로써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을 조사할 때는 높이차이 제거를 위해 설치된 경사로의 기울기를 반영하지 않고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만을 조사하였다.

매개시설 전체적으로 볼 때 2008년 대상시설에 비해 2013년 대상시설의 설치율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적정 설치율은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적정설치율에서 오히려 약간 감소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시설 중에서 기존의 시설이 용도 변경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로 편입되면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면수 유지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만큼 확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와 입식안내표시 미설치 등이 증가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내부시설

내부시설은 주출입문,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6개 항목이며, 세부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7-3>와 같다.

| 비미 | | 20 | 08년도 | | | 2013년 도 | | | | | | |
|-----------|-------------|------------|-------|--------------|---------------|-------------|------------|-------------|--------------------|-------|--|--|
| 세부 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 적정설; | 치수 및 치율(%)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는 및 울(%)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문입출주 | 311,867 | 283,828 | 91.0% | 212,324 | 68.1% | 342,945 | 324,424 | 94.6% | 295,751 | 86.2% | | |
| 일반출 입문 | 415,820 | 350,588 | 84.3% | 233,154 | 56.1% | 455,492 | 426,052 | 93.5% | 372,421 | 81.8% | | |
| 복도 | 99,768 | 87,524 | 87.7% | 76,812 | 77.0% | 94,038 | 88,494 | 94.1% | 85,224 | 90.6% | | |
| 계단 | 173,802 | 153,284 | 88.2% | 112,309 | 64.6% | 57,834 | 53,531 | 92.6% | 41,025 | 70.9% | | |
| 경사로 | 231,719 | 203,992 | 88.0% | 186,383 | 80.4% | 6,384 | 5,832 | 91.4% | 4,419 | 69.2% | | |
| 승강기 | 173,763 | 152,065 | 87.5% | 138,852 | 79.9% | 73,350 | 70,813 | 96.5% | 68,211 | 93.0% | | |
| 계 | 1,406,739 | 1,231,281 | 87.5% | 959,834 | 68.2% | 1,030,043 | 969,146 | 94.1% | 867,051 | 84.2% | | |

<표 2-7-3> 연도별 내부시설 설치율

주출입문의 설치율은 2008년 91.0%, 적정설치율은 68.1%였으나 2013년에는 94.6%의 설치 율과 86.2%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설치율은 3.6% 증가하였으며, 적정설치율은 18.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적정설치율의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П

일반출입문의 2008년 설치율은 84.3%, 적정설치율은 56.1%였으나 2013년에는 93.5%의 설치율과 81.8%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설치율은 9.2% 증가하였으며, 적정설치율은 25.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적정설치율의 증가율 폭이 매우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복도의 2008년 설치율은 87.7%, 적정설치율은 77.0%였으나 2013년에는 94.1%의 설치율과 90.6%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어 설치율이 6.4% 증가하였으며, 적정설치율은 13.6% 증가하였다.

수직이동수단 중 계단의 2008년 설치율은 88.2%, 적정설치율은 64.6%였으나 2013년에는 92.6%의 설치율과 70.9%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설치율은 4.4% 증가하였으며 적정 설치율은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강기의 2008년 설치율은 87.5%, 적정설치율은 79.9%였으나 2013년에는 96.5%의 설치율과 93.0%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설치율은 9% 증가하였으며 적정설치율은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시설 전체적으로 볼 때 2008년 대상시설에 비해 2013년 대상시설의 설치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직이동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승강기의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이 증가한 것은 의미가 크다.

3) 위생시설

위생시설은 일반사항,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6개 항목이며, 세부 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7-4>과 같다.

| | | 20 | 08년도 | | | | 2 | .013년도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 설치수 | 및 | 적정설치수 및 | | 설치기준 | 설치수 및 | | 적정설치 | 수 및 |
| | 항목수 | 설치율 | (%) | 적정설치율(%) | | 항목수 | 설치율(%) | | 적정설치 | 율(%) |
| 일반사항 | 141,221 | 69,319 | 49.1% | 41,771 | 29.6% | 172,295 | 107,677 | 62.5% | 83,781 | 48.6% |
| 대변기 | 329,511 | 187,373 | 56.9% | 123,402 | 37.5% | 512,911 | 253,734 | 49.5% | 212,724 | 41.5% |
| 소변기 | 16,504 | 9,342 | 56.6% | 7,068 | 42.8% | 79,552 | 27,023 | 34.0% | 24,760 | 31.1% |
| 세면대 | 17,228 | 13,710 | 79.6% | 5,767 | 33.5% | 24,626 | 20,132 | 81.8% | 11,529 | 46.8% |
| 욕실 | 5,100 | 3,992 | 78.3% | 3,107 | 60.9% | 10,596 | 2,611 | 24.6% | 1,977 | 18.7% |
| 샤워실·탈 의실 | 3,401 | 2,871 | 84.4% | 2,123 | 62.4% | 8,810 | 2,882 | 32.7% | 1,992 | 22.6% |
| 계 | 512,965 | 286,607 | 55.9% | 183,238 | 35.7% | 808,790 | 414,059 | 51.2% | 336,763 | 41.6% |

~표 ?-7-4> 연도별 위생시설 설치율

화장실의 남녀구분 설치 및 접근과 관련되는 일반사항의 2008년 설치율은 49.1%, 적정 설치율은 29.6%였으나 2013년에는 62.5%의 설치율과 48.6%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설치율은 13.4% 증가하였으며, 적정설치율은 1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변기의 2008년 설치율은 56.9%, 적정설치율은 37.5%였으나 2013년에는 49.5%의 설치율과 41.5%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들어 오히려 설치율은 7.4% 감소하였으며, 적정설치율은 4% 증가한 것이다. 2008년에는 대변기 대부분의 세부항목 설치율이 50%이상 으로 조사되었으나 2013년에는 대부분의 세부항목이 40%대인 것으로 나타나 2013년의 설치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설치된 장애인용화장실을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아예 창고나 청소실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 되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05년 이후 대변기 바닥면 폭이 1.4미터로 변경 적용된 이후 건물의 설치율이 74.7%로 좀 더 높은 설치율을 나타냄으로써 대변기 내부공간 크기는 오히려 좀 더 적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변기의 2008년 설치율은 56.6%, 적정설치율은 42.8%였으나 2013년에는 34.0%의 설치율과 31.1%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들어 오히려 설치율은 13.8% 감소하였으며, 적정설치율은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소변기의 손잡이 설치율이 50% 대로 나타났으나 2013년 들어 소변기의 손잡이 설치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와같은 이유는 기존의 건물이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로 포함되면서 소변기의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면대의 2008년 설치율은 79.6%, 적정설치율은 33.5%였으나 2013년에는 81.8%의 설치율과 46.8%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설치율은 2.2% 증가하였고, 적정설치율은 13.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욕실의 2008년 설치율은 78.3%, 적정설치율은 60.9%였으나 2013년에는 24.6%의 설치율과 18.7%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에 설치율은 무려 53.7% 감소하였으며, 적정 설치율도 4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샤워 및 탈의실은 2008년 84.4%이며, 적정설치율은 62.4%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에는 32.7%의 설치율과 22.6%의 적정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에 설치율은 무려 51.7% 감소하였으며, 적정설치율도 3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실, 샤워 및 탈의실의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이 대폭 감소한 요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2008년도에는 대상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에는 만개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들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에어로빅 등 각종 운동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욕실, 샤워 및 탈의실의 필요에 의해 설치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관련 복지시설을 제외 하고 매우 낮은 편이어서 편의시설이 거의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П

4) 안내시설

안내시설은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 설치 3개 항목이며, 세부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7-5>과 같다.

| | | 20 | 08년도 | | 2013년도 |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차 적정설차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유도 및 안내설비 | 5,612 | 1,389 | 24.8% | 896 | 16.0% | 16,237 | 8,523 | 52.5% | 1,720 | 47.5% |
| 경보 및 피난설비 | 5,612 | 3,824 | 68.1% | 1,339 | 23.9% | or .04 | · · | 78.4% | 19,840 | 60.9% |
| 주출입구접 근로 점자블록 | 17,770 | 9,137 | 51.4% | 5,263 | | ٥,٥08 | 0,002 | 31.7% | 7,459 | 26.2% |
| 계 | 28,994 | 14,350 | 26%57 | | | | | | | |



5) 기타시설

기타시설은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대·음료대 4개 항목이며, 세부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7-6>과 같다.

Π

| | | 2 | 008년 도 | | | 2013년 도 | | | | | | |
|---------------------|-------------|------------|--------|---------------------|-------|-------------|-----------------|-------|---------------------|-------|--|--|
| 세부항 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イ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객실·침 실 | 51,096 | 32,197 | 63.0% | 22,823 | 44.7% | 47,614 | 37,613 | 79.0% | 33,784 | 71.0% | | |
| 관람석· 열람석 | 3,402 | 2,743 | 80.6% | 2,267 | 66.6% | 7,365 | 7,152 | 97.1% | 6,933 | 94.1% | | |
| 접수대· 작업대 | 22,346 | 17,801 | 79.7% | 11,255 | 50.4% | 53,860 | 46,619 | 86.6% | 42,533 | 79.0% | | |
| 매표소· 판매대· 음료대 | 2,550 | 2,070 | 81.2% | 1,828 | 71.7% | 6,434 | 6,235 | 96.9% | 6,054 | 94.1% | | |
| 계 | 79,394 | 54,811 | 69.0% | 38,173 | 48.1% | 115,273 | 97,619 | 84.7% | 89,304 | 77.5% | | |

<표 2-7-6> 연도별 기타시설 설치율

객실·침실의 2008년 설치율은 63.0%, 적정설치율은 44.7%였으나 2013년에는 79.0%의 설치율과 71.0%의 적정설치율로 나타나 설치율은 16%, 적정설치율은 26.3%로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다.

관람석·열람석의 2008년 설치율은 80.6%, 적정설치율은 66.6%였으나 2013년에는 97.1%의 설치율과 94.1%의 적정설치율로 나타나 설치율은 16.5%, 적정설치율은 27.5%로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관람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관람석 조례 등이 만들어 지면서 장애인관람석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는 수준이 높아지면서 설치율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접수대·작업대의 2008년 설치율은 79.7%. 적정설치율은 50.4%였으나 20<u>13년</u>에는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각각 86.6%, 79.0%로 나타나 설치율은 6.9%, 적정설치율은 28.6%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이유는 민원실 등의 접수대 설치방식이 예전에는 장애인전용접수대를 따로 설치하는 방식을 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누구나 앉아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일체형의 민원데스크 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와 같은 현상이 적정설치율 향상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매표소·판매기·음료대의 2008년 설치율은 81.2%, 적정설치율은 71.7%였으나 2013년에는 96.9%의 설치율과 94.1%의 적정설치율로 나타나 설치율은 15.7%. 적정설치율은 22.4<u>%로</u>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시설 전체적으로 볼 때 2008년 대상시설에 비해 2013년 대상시설의 설치율은 모두 비교적 양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부가적 설치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수준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장에서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비교하는 이유는 제7장의 시계열 비교를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즉, 앞장의 비교는 2008년도와 2013년의 설치대상시설이 5% 내외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 폭이 대폭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신축인 건물보다 기존건물에서 용도변경 등의 목적으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매개시설

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된 대상시설의 매개시설 세부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8-2>와 같다. 매개시설 전체의 설치율에서는 2008년 이후 건물의 설치율이 72.1%로 2008년 이전 건물의 설치율인 68.1%보다 4%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편의시설 | | 2008년 5 | 도 이전 | 건물 | | 2008년도 이후 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기준 | 설치수 | 설치수 및 | | 적정설치수 및 | | 설치기준 설치수 | | 적정설 | 치수 및 | |
| ο Π | 항목수 | 설치율 | <u>}</u> (%) | 설치율(%) | | 항목수 | 설치율(%) | | 설치율(%) | | |
| 주출입구 접근로 | 618,296 | 542,396 | 87.7% | 497,726 | 80.5% | 269,150 | 238, 126 | 88.5% | 221,208 | 82.2% | |
| 장애인 주차구역 | 137,358 | 90,588 | 66.0% | 62,642 | 45.6% | 62,352 | 42,619 | 68.4% | 32,189 | 51.6% | |
| 높이차이 제거 | 952,613 | 529,922 | 55.6% | 476,969 | 50.1% | 415,963 | 257,863 | 62.0% | 238,293 | 57.3% | |
| 계 | 1,708,267 | 1,162,906 | 68.1% | 1,037,337 | 60.7% | 747,465 | 538,608 | 72.1% | 491,690 | 65.8% | |

<표 2-8-2>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매개시설 설치율

주출입구 접근로의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87.7%, 2008년 이후 건물에서 88.5%로 나타나 1.2%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율도 2008년 이전 건물에서 66.0%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건물에서 68.4%로 나타나 2.4%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출입구의 높이차이제거는 2008년 이전 건물에서 55.6%의 설치율을 나타낸 반면, 2008년 이후 건물에서 62.0%를 나타냄으로써 매개시설 항목 중 가장 많은 6.4% 증가를 나타냈다. 이와같은 이유는 2008년 이후에 편의시설 대상이 된 건물 중에서 2008년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물이 포함되고 있기는 하지만 신축되는 건물에서는 가능한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단차를 설치하더라도 경사로 등으로 단차를 제거하는 노력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매개시설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항목이 2008년 이후 건물에서 약간 높은 설치율을 나타 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항목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편의증진에 있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 내부시설

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된 건물의 내부시설 세부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8-3>과 같다. 내부시설 전체의 설치율에서는 2008년 이후 건물의 설치율이 82.8%로 2008년 이전 건물의 설치율인 79.6%보다 3.2%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П

| 편의시설 | | 2008년 5 | 도 이전 | 건물 | | 2008년도 이후 건물 | | | | | |
|------------|-----------|---------|--------------|---------|-------|--------------|---------|-------|----------|-------|--|
| 전의시설 종류 | 설치기준 | 설치수 | = 및 | 적정설치 | 이수 및 | 설치기준 | 설치- | 수 및 | 적정설; | 치수 및 | |
| | 항목수 | 설치율 | <u>}</u> (%) | 적정설치 | 율(%) | 항목수 | 설치율 | 울(%) | 적정설: | 치율(%) | |
| 주출입문 | 490,466 | 365,429 | 74.5% | 331,563 | 67.6% | 222,808 | 176,974 | 79.4% | 163, 103 | 73.2% | |
| 일반출입문 | 348,590 | 279,790 | 80.3% | 242,282 | 69.5% | 158,360 | 130,329 | 82.3% | 116,955 | 73.9% | |
| 복도 | 89,334 | 84,353 | 94.4% | 80,607 | 90.2% | 36,882 | 35,229 | 95.5% | 34, 195 | 92.7% | |
| 계단 | 101,496 | 67,835 | 66.8% | 52,667 | 51.9% | 34,856 | 25,132 | 72.1% | 20,591 | 59.1% | |
| 경사로 | 7,008 | 6,294 | 89.8% | 4,171 | 59.5% | 3,216 | 2,967 | 92.3% | 2,408 | 74.9% | |
| 승강기 | 157,500 | 146,417 | 93.0% | 133,466 | 84.7% | 60,930 | 57,675 | 94.7% | 53,118 | 87.2% | |
| 크피모이셔홀 | 642 | 607 | 94.5% | 494 | 76.9% | 264 | 263 | 99.6% | 247 | 93.6% | |
| 계 | 1,195,036 | 950,725 | 79.6% | 845,250 | 70.7% | 517,316 | 428,569 | 82.8% | 390,617 | 75.5% | |

<표 2-8-3>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내부시설 설치율

주출입문의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74.5%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건물에서 79.4%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4.9%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출입문의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80.3%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건물에서 82.3%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2%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복도의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94.4%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건물에서 95.5%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1.1%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복도는 건물이 계획되는 단계에서 대부분 적정하게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이전·이후의 설치율 차이가 매우 낮은 편의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계단의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66.8%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건물에서 72.1%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5.3%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단은 건물의 가장 기본적인 수직이동수단이지만 건물 계획시 최소한의 공간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2008년 이후의 건물에서 5.3% 정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는 건물에서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약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사로의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89.8%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건물에서 92.3%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2.5%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승강기의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93.0%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건물에서 94.7%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1.7%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승강기는 설치율 자체가 높고, 기성제품으로 설치되는 관계로 2008년 이전·이후 설치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휠체어리프트의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94.5%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건물 에서 99.6%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5.1%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시설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항목이 2008년 이후 건물에서 1~5% 범위의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위생시설

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된 건물의 위생시설 세부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8-4>와 같다. 위생시설 전체의 설치율에서는 2008년 이후 건물의 설치율이 54.1%로 2008년 이전 건물의 설치율인 44.1%보다 10%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편의시설 | | 2008년 | 토 이전 | 건물 | | 2008년도 이후 건물 | | | | | |
|-------------|---------|---------|-------|---------|-------|--------------|---------|--------------|---------|-------|--|
| 종류 | 설치기준 | 설치イ | 는 및 | 적정설 | 치수 및 | 설치기준 | 설치수 | - 및 | 적정설치 | 비수 및 | |
| | 항목수 | 설치율 | 울(%) | 적정설 | 치율(%) | 항목수 | 설치율 | <u>}</u> (%) | 적정설치 | 티율(%) | |
| 일반사항 | 240,242 | 107,470 | 44.7% | 86,336 | 35.9% | 99,244 | 53,096 | 53.5% | 45,189 | 45.5% | |
| 대변기 | 354,536 | 163,836 | 46.2% | 128,661 | 36.3% | 154,264 | 90,935 | 58.9% | 76,935 | 49.9% | |
| 소변기 | 114,615 | 36,043 | 31.4% | 33,678 | 29.4% | 51,545 | 19,933 | 38.7% | 18,927 | 36.7% | |
| 세면대 | 22,356 | 18,016 | 80.6% | 11,749 | 52.6% | 10,116 | 8,476 | 83.8% | 5,935 | 58.7% | |
| 욕실 | 8,768 | 2,253 | 25.7% | 1,768 | 20.2% | 3,976 | 1,062 | 26.7% | 926 | 23.3% | |
| 샤워실· 탈의실 | 7,721 | 2,146 | 27.8% | 1,475 | 19.1% | 3,472 | 1,106 | 31.9% | 844 | 24.3% | |
| 계 | 748,238 | 329,764 | 44.1% | 263,667 | 35.2% | 322,617 | 174,608 | 54.1% | 148,756 | 46.1% | |

<표 2-8-4>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위생시설 설치율

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및 접근관련 일반사항의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44.7%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건물에서 53.5%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8.8%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변기의 설치율도 2008년 이전 건물에서 46.2%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건물에서 58.9%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12.7%로 다소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생시설 중에서 가장 높은 설치율 향상을 나타내고 있는 대변기는 편의증진법 시행 초기에 장애인 남녀공용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2008년 이후 부터는 장차법에 따라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설치율 향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Π

소변기는 2008년 이전 건물에서 31.4%의 설치율을 나타낸 반면, 2008년 이후 건물에서 38.7%를 나타냄으로써 2008년 이후 건물이 7.3% 증가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면대는 2008년 이전 건물에서 80.6%의 설치율을 나타낸 반면, 2008년 이후 건물에서 83.8%를 나타냄으로써 2008년 이후 건물이 3.2% 증가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욕실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25.7%의 설치율을 나타낸 반면, 2008년 이후 건물에서 26.7%를 나타냄으로써 2008년 이후 건물이 1% 증가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샤워실·탈의실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27.8%의 설치율을 나타낸 반면, 2008년 이후 건물 에서 31.9%를 나타냄으로써 2008년 이후 건물이 4.1% 증가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생시설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항목이 2008년 이후 건물에서 10%내외의 설치율 향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변기 항목이 2008년 이전 건물과 2008년 이후 건물의 비교에서 2008년 이후 건물이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분류 편의시설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화장실등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어 설치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설치율이 낮아 향후 더욱 신경써야 할 시설중 하나이다.

4) 안내시설

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된 건물의 안내시설 세부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8-5>와 같다. 안내시설 전체의 설치율에서는 2008년 이후 건물의 설치율이 47.2%로 2008년 이전 건물의 설치율인 40.3%보다 7%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 2008년도 이전 건물 | | | | | 2008년도 이후 건물 | | | | |
|-----------------|--------------|--------|-------|----------|-------|--------------|--------|-------|----------|-------|
| 편의시설 종류 | 설치기준 설치수 및 | | | 적정설치수 및 | | 설치기준 | 설치수 및 | | 적정설치수 및 | |
| | 항목수 | 설치율(%) | | 적정설치율(%) | | 항목수 설치율(%) | | 율(%) | 적정설치율(%) | |
| 유도 및 안내설비 | 48,097 | 17,841 | 37.1% | 16,319 | 33.9% | 18,784 | 7,995 | 42.6% | 7,523 | 40.1% |
| 경보 및 피난설비 | 20,227 | 15,407 | 76.2% | 11,588 | 57.3% | 7,831 | 6,564 | 83.8% | 5,330 | 68.1% |
| 주출입구접근로 점지블록 | 55,875 | 16,851 | 30.2% | 14,087 | 25.2% | 19,038 | 6,975 | 36.6% | 6,229 | 32.7% |
| 계 | 124,199 | 50,099 | 40.3% | 41,994 | 33.8% | 45,653 | 21,534 | 47.2% | 19,082 | 41.8% |

<표 2-8-5>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안내시설 설치율

유도 및 안내설비의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37.1%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건물에서 42.6%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5.5%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76.2%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건물에서 83.8%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7.6%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30.2%의 설치율을 나타낸 반면, 2008년 이후 건물에서 36.6%를 나타냄으로써 2008년 이후 건물이 6.4% 증가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내시설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항목이 2008년 이후 건물에서 5~7% 범위의 약간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기타시설

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된 건물의 기타시설 세부항목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다음 <표 2-8-6>과 같다. 기타시설 전체의 설치율에서는 2008년 이후 건물의 설치율이 84.4%로 2008년 이전 건물의 설치율인 81.0%보다 3.4%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 2008년도 이전 건물 | | | | | 2008년도 이후 건물 | | | | |
|-----------------|--------------|---------|-------|----------|-------|--------------|--------|-------|----------|-------|
| 편의시설 종류 | 설치기준 | 설치수 및 | | 적정설치수 및 | | 설치기준 설치수 | | 수 및 | 적정설치수 및 | |
| | 항목수 | 설치율(%) | | 적정설치율(%) | | 항목수 | 설치율(%) | | 적정설치율(%) | |
| 객실·침실 | 76,422 | 59,396 | 77.7% | 52,007 | 68.1% | 27,740 | 23,323 | 84.1% | 20,407 | 73.6% |
| 관람석·열람석 | 6,164 | 5,951 | 96.5% | 5,714 | 92.7% | 2,788 | 2,711 | 97.2% | 2,633 | 94.4% |
| 접수대·작업대 | 37,344 | 32,449 | 86.9% | 29,537 | 79.1% | 12,016 | 10,336 | 86.0% | 9,502 | 79.1% |
| 매표소·판매대· 음료대 | 13,508 | 10,252 | 75.9% | 10,053 | 74.4% | 6,030 | 4,624 | 76.7% | 4,555 | 75.5% |
| 계 | 133,438 | 108,048 | 81.0% | 97,311 | 72.9% | 48,574 | 40,994 | 84.4% | 37,097 | 76.4 |

<표 2-8-6>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기타시설 설치율

객실·침실의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77.7%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건물에서 84.1%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6.4%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람석·열람석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96.5%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건물에서 97.2%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0.7%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수대·작업대는 2008년 이전 건물에서 86.9%의 설치율을 나타낸 반면, 2008년 이후 건물에서 86.0%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의 설치율이 0.9%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매표소·판매대·음료대 설치율은 2008년 이전 건물에서 75.9%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건물에서 76.7%로 나타나 2008년 이후 건물이 0.8%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Π

전체설치율에서 비교적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기타시설은 접수대·작업대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2008년 이후 건물에서 설치율이 약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접수대·작업대는 오히려 2008년 이전 건물에서 설치율이 0.9% 감소함으로써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도 조사대상시설수는 08년도보다는 30%이상 증가하였지만 2003년도에 조사한 시설수와 비슷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조사대상임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대상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상시설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Ш

조사대상을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더라도 조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앞서 시행한 3번(1998년, 2003년, 2008년)의 전수조사에 비해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기반한 편의시설 현황은 편의시설종류별, 건물유형별 설치율 분석외에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 2008년 이전·이후 건물의 설치율 및 핵심항목기준 설치율 등 다양한 설치율을 제시하여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였다. 설치율 종류가 많아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본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분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번 조사를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평가하고, 이에 따른 향후 편의증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2013년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에서 조사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수는 141,573개이며, 편의시설 수는 6,305,374개 이다. 조사결과 전체 건물의 설치율은 67.9%, 적정설치율은 6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종류중에서 대분류인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설치율이 나타내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 편의시설별 설치율 제고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개시설 전체의 설치율은 69.5%, 적정설치율은 6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시설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로 설치율은 87.9%, 적정설치율은 81.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로 설치율은 57.8%, 적정설치율은 5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비교적 많은 건물의 출입구에 계단 등이 설치되고 이로인해 건물의 높이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개시설의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시설주로 하여금 접근로에 설치된 트랜치를 격자구멍이 2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호출벨을 설치하고 이동식 경사로 비치 또는 인적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차도와 보도 경계에 경계석이나 울타리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동이 다소 힘든 화분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히지 않고 접근 가능한 구조로 개선토록 지도만 하여도 장애인의 편의를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에서는 도로, 주택, 건축, 교통부서 등과 협조하거나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주택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바닥표시 그려주기 및 입식표지판 설치 해주기 등의 사업 시행을 통해 설치율을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다.

② 내부시설 전체의 설치율은 80.6%, 적정설치율은 7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시설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수직이동수단의 한 종류인 휠체어리프트로 설치율은 96.0%, 적정설치율은 81.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계단으로 설치율은 68.4%, 적정설치율은 5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단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은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는 계단손잡이 굵기, 점자 표지판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내부시설에서 나타난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첫째, 출입문의 손잡이 설치위치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 일반출입문 또는 계단의 손잡이 등에 설치되는 점자표지판은 스티커 형태로 제작·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설치율 향상을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 홍보에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Ш

둘째, 출입구 및 승강기 버튼 앞에 설치되는 점자블록은 기존 건물에서는 매립형으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마감도를 높인 부착형을 설치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위생시설 전체의 설치율은 46.7%, 적정설치율은 3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시설의 세부항목 중에서 세면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항목이 20~40% 범위의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관계로 편의시설 종류중 위생시설이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는 위생시설이 다른 편의시설보다 설치에 대한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화장실 내부 공간에서의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크기 규정인 1.4x1.8미터에 맞추어 변기 등을 배치하고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모든 건물의 화장실 공간크기 등의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설치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로 인해 화장실 등이 포함되는 위생시설 대부분의 편의시설 설치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위생시설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첫째,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휠체어사용자 중에서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크기 등의 관련 세부규정을 현실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소변기에 기성제품의 손잡이를 추가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진 시키고, 세면대 수도꼭지를 광감지식으로 설치하면 냉온수 구분을 위한 점자표지판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홍보하여 설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④ 안내시설 전체의 설치율은 42.2%, 적정설치율은 3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시설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보 및 피난설비로 설치율은 78.4%, 적정설치율은 6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각장애인의 건물 유도안내를 위해 설치되는 점자블록은 설치율 31.6%, 적정설치율 26.9%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안내시설 중에서 주출입구 접근로에 시각장애인의 건물 유도안내를 위해 설치되는 점자블록이 차량과 보행자가 구분없이 드나드는 보차혼용 공간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치된 점자블록의 크기도 30x30센티미터의 표준형이 아닌 보도블록 크기로 제작된 제품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내시설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대안을 제시하면,

첫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소화설비 설치에 대한 의무대상시설과 편의증진법령에 의한 안내시설의 경보 및 피난설비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주출입구 접근로에 별도의 보행자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바닥재질의 색상 및 재질의 구분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⑤ 기타시설 중에서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세부항목은 관람석·열람석으로 설치율은 96.9%, 적정설치율은 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표소·판매대 · 음료대는 설치율 76.2%, 적정 설치율 74.8%로 다른 편의시설에 비해서는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기타시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도서관 열람실에서는 하부공간이 적절하게 비워진 책상에 의자만을 이동식으로 설치하면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열람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열람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관 등의 공연장에 장애인석이 대부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비상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주로 설치되어야 하는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대부분 출입문 근처에 설치되고 있다. 이와같은 설치로 인해 설치율이 높은 공연장을 이용 하는 휠체어사용자는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이외에도 공공업무시설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접수대·작업대는 설치율 86.6%, 적정설치율 79.0%인 것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시설에서 나타난 이와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대안을 제시하면,

첫째, 영화관 등의 공연장에 설치되는 장애인관람석은 2곳 이상으로 분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의 관람석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원실 데스크의 경우에는 좌식방식의 민원실 데스크를 설치하면 휠체어사용자가 어떤 종류의 민원이든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현장 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전수조사를 종합평가한 결과에 의해 향후 편의증진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Ш

첫째,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가 설치율 조사에 그치지 않고, 동 조사결과가 장애인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68% 라고 하면 건물 100개중 68개의 건물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번 조사의 설치율은 건물단위의 설치율이 아니라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은 편의시설 설치율이 90%, 또 다른 건물은 50%의 설치율을 보일 수 있다. 이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가 건물용도별로 다르고, 설치 하여야 하는 세부항목도 최저 2개에서 최대 20개, 세부항목별 설치기준은 최저 20개에서 최대 160여개로 많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기준을 100% 만족한 시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규정상 100% 설치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당해 건물에 장애인등이 이용하는데 적정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편의시설 설치율이 편의증진정책이나 장애인의 체감편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의미있는 정보제공과는 관련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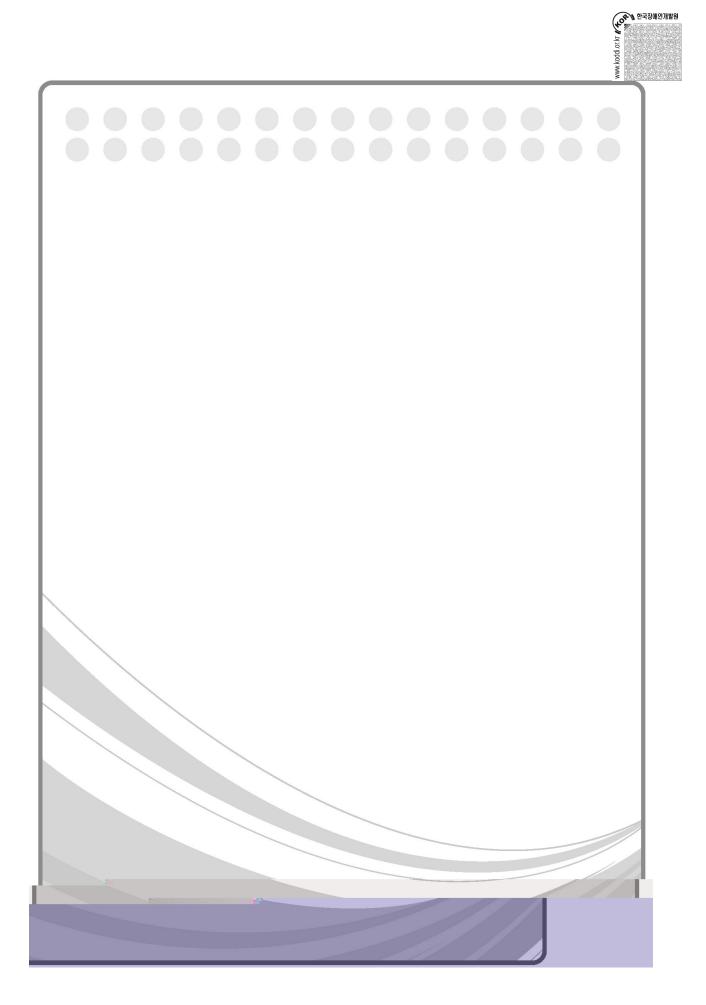
따라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파악하는 설치율 보다는 건물단위로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즉, 동 조사결과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건물 단위별로 설치현황을 분석하고, 설치율의 정도가 장애인등에게 얼마만큼의 편의정도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기준 또는 등급 등의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별로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장애인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공개 과정을 통하여 수요자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편의증진정책이 될 수 있으며, 또 편의시설 설치율도 제고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개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도(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건물의 용도별로 편의시설 설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분석대상 시설 약 14만개는 2008년도보다 약 30%나 증가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2003년도에도 약 14만개를 조사하였던 것과 비교시에는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시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 시설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설치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첫 번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건물단위의 설치율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려는 장기적 계획에는 지장을 주는 것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앞서 제시된 정책 개선안이 보다 현실성있게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건물의 용도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한,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를 특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건물 용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 동일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대상 시설이 되었다가 제외되는 등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시설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이용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이에 건물용도도 중요하지만 용도와 관계없이 규모별 편의시설 설치항목을 차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 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시설주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경우에 자칫 생활에 밀접한 생활권 용도의 건물이 오히려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국민의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에 변화가 있고, 또 전동휠체어 보급 확산 등 편의시설 관련 환경이 변화된 점, 시각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게 나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즉, 최소한의 설치기준을 최적의 설치기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시설이용상의 편의수준과 시설주의 의무이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관련 세부설치기준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시설 이용시 가장 중요한 편의시설은 접근로 경사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장애인화장실, 수직이동 시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시설주관기관에서는 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관내 대상건물중 위와 같은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건물을 중심 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부록표 1] 건물유형별 세부항목별 설치율

<부표 2-3-1>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세부항목 | | | 설치기준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 | |
|-----------------|------|------------------|----------|---------|--------|-------------|-------|--|
| | | | <u> </u> | | | <u>적정설치</u> | | |
| 주출입구 | 1121 | 바닥재질마감 | 27,050 | 26,699 | 98.7% | 26,067 | 96.4% |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27,050 | 26,327 | 97.3% | 24,300 | 89.8% |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27,050 | 26,029 | 96.2% | 23,816 | 88.0% | |
| | 1131 | 접근로유효폭 | 27,050 | 26,632 | 98.5% | 25,797 | 95.4% | |
| 접근로 | 1132 | 기울기 1/18이하 | 27,050 | 25,721 | 95.1% | 22,782 | 84.2% |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27,050 | 17,021 | 62.9% | 15,529 | 57.4% |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27,050 | 18,202 | 67.3% | 16,878 | 62.4% | |
| | | 소계 | 189,350 | 166,631 | 88.0% | 155,169 | 81.9% |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2,699 | 2,412 | 89.4% | 2,238 | 82.9% | |
| 장애인주 - 차구역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2,699 | 2,699 | 100.0% | 1,707 | 63.2% | |
| | 1225 | 주차공간확보 | 2,699 | 1,885 | 69.8% | 1,588 | 58.8% | |
| | 1226 | 바닥마감 | 2,699 | 1,979 | 73.3% | 1,921 | 71.2% | |
|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2,699 | 1,921 | 71.2% | 954 | 35.3% | |
| | 1232 | 안전통행로 | 2,699 | 1,169 | 43.3% | 911 | 33.8% | |
| | | 소계 | 16,194 | 12,065 | 74.5% | 9,319 | 57.5% |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26,806 | 20,912 | 78.0% | 16,582 | 61.9% |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26,806 | 21,071 | 78.6% | 18,319 | 68.3% | |
| | 1323 | 휴식참 | 26,806 | 19,607 | 73.1% | 18,810 | 70.2% |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26,806 | 20,797 | 77.6% | 19,762 | 73.7% | |
| 높이차이 제거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26,806 | 20,318 | 75.8% | 18,317 | 68.3% | |
|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26,806 | 18,629 | 69.5% | 16,818 | 62.7% | |
| | 1327 | 손잡이 높이 | 26,806 | 18,595 | 69.4% | 17,564 | 65.5% | |
| | 1328 | 손잡이 굵기 | 26,806 | 18,607 | 69.4% | 16,891 | 63.0% |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26,066 | 8,376 | 32.1% | 6,425 | 24.6% |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26,066 | 8,353 | 32.0% | 6,330 | 24.3% |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26,066 | 8,403 | 32.2% | 6,774 | 26.0% | |
| | | 소계 | 292,646 | 183,668 | 62.8% | 162,592 | 55.6% | |
| | | 계 | 498,190 | 362,364 | 72.7% | 327,080 | 65.7% | |

| 세부항목 | | | 설치기준 | 설치수 및 | 설치윸(%) | 적정설치 | |
|-----------|------|------------------|--------|--------|---------|--------|---------|
| | | | 항목수 | | 212(/3) | 적정설치· | 율(%)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13,740 | 12,242 | 89.1% | 12,242 | 89.1% |
| | 2112 | 통과유효폭 | 13,740 | 13,230 | 96.3% | 13,230 | 96.3% |
| | 2113 | 전 후면 유효거리 | 13,740 | 12,695 | 92.4% | 10,883 | 79.2% |
| 주출입문 | 2114 | 손잡이 위치 | 13,740 | 13,410 | 97.6% | 11,841 | 86.2% |
| | 2115 | 손잡이 형태 | 13,740 | 13,366 | 97.3% | 12,537 | 91.2%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13,927 | 6,698 | 48.1% | 4,186 | 30.1%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3,927 | 6,660 | 47.8% | 4,338 | 31.1% |
| | | 소계 | 96,554 | 78,301 | 81.1% | 69,257 | 71.7% |
| 일반 출입문 | 2141 | 일반출입문 단차제거 | 13,698 | 12,878 | 94.0% | 11,239 | 82.0% |
| | 2142 | 통과유효폭 | 13,698 | 13,323 | 97.3% | 12,089 | 88.3% |
| | 2143 | 전 후면 유효거리 | 13,698 | 13,218 | 96.5% | 11,553 | 84.3% |
| | 2144 | 손잡이 설치위치 | 13,698 | 12,590 | 91.9% | 10,134 | 74.0% |
| | 2145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13,698 | 3,555 | 26.0% | 3,041 | 22.2% |
| | | 소계 | 68,490 | 55,564 | 81.1% | 48,056 | 70.2% |
| | 2211 | 복도유효폭 | 7,419 | 7,156 | 96.5% | 6,669 | 89.9% |
| | 2212 | 단차 | 7,419 | 7,072 | 95.3% | 6,845 | 92.3% |
| 복도 | 2213 | 복도 통로상부의 유효높이 | 7,419 | 7,032 | 94.8% | 6,780 | 91.4% |
| | | 소계 | 22,257 | 21,260 | 95.5% | 20,294 | 91.2% |
| | 2421 | 유효폭 | 3,313 | 3,189 | 96.3% | 2,724 | 82.2% |
| | 2422 | 챌면설치 여부 | 3,313 | 3,166 | 95.6% | 3,166 | 95.6% |
| | 2423 | 챌면의 높이, 디딤판 너비 | 3,313 | 3,205 | 96.7% | 2,685 | 81.0% |
| | 2424 | 손잡이 굵기 | 3,313 | 2,611 | 78.8% | 1,117 | 33.7% |
| 계단 | 2425 | 손잡이 연속설치 | 3,313 | 2,569 | 77.5% | 1,874 | 63.3% t |

<부표 2-3-2>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부표 2-3-3>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 | 세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i>፣</i> 적정설 <i>፣</i>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10,811 | 7,126 | 65.9% | 4.074 | 37.7% |
| | 3112 | 시각적 설비 | 10,811 | 5,462 | 50.5% | 4,375 | 40.5%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10,811 | 8,272 | 76.5% | 6,336 | 58.6%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10,811 | 7,163 | 66.3% | 7,163 | 66.3% |
|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 10,811 | 2,056 | 19.0% | 2,056 | 19.0% |
| | 3131 | 점형블록 형태 | 10,793 | 3,546 | 32.9% | 2,253 | 20.9% |
| | 3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0,793 | 3,546 | 32.9% | 2,177 | 20.2% |
| | | 소계 | 75,641 | 37,171 | 49.1% | 28,434 | 37.6% |
| | 3221 | 출입문 형태 | 13,409 | 7,095 | 52.9% | 6,602 | 49.2% |
| | 3222 | 통과 유효폭 | 13,409 | 7,167 | 53.4% | 7,167 | 53.4%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9,897 | 4,939 | 49.9% | 3,773 | 38.1%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3,512 | 2,659 | 75.7% | 2,229 | 63.5% |
| | 3231 | 좌대 높이 | 13,409 | 8,134 | 60.7% | 7,915 | 59.0% |
| 대변기 | 3232 | 수평손잡이 높이 | 13,409 | 7,643 | 57.0% | 6,191 | 46.2% |
| | 3233 | 수직손잡이 | 13,409 | 7,282 | 54.3% | 4,339 | 32.4% |
| | 3234 |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 13,409 | 7,344 | 54.8% | 3,432 | 25.6% |
| | 3235 | 세정장치형태 | 13,409 | 5,541 | 41.3% | 2,330 | 17.4% |
| | 소계 | | 107,272 | 57,804 | 53.9% | 43,978 | 41.0% |
| | 3321 | 수평손잡이 높이 | 1,376 | 587 | 42.7% | 528 | 38.4% |
| | 3322 | 수평손잡이 길이 | 1,376 | 586 | 42.6% | 564 | 41.0% |
| 소내고 | 3323 | 좌우 손잡이 간격 | 1,376 | 586 | 42.6% | 570 | 41.4% |
| 소변기 | 3324 | 수직손잡이 높이 | 1,376 | 583 | 42.4% | 525 | 38.2% |
| | 3325 | 수직손잡이 길이 | 1,376 | 582 | 42.3% | 560 | 40.7% |
| | | 소계 | 6,880 | 2,924 | 42.5% | 2,747 | 39.9% |
| | 3421 | 세면대 상·하단높이 | 1,644 | 1,401 | 85.2% | 1,202 | 73.1% |
| 세명민 | 3422 | 휠체어 발받이 깊이공간 | 1,644 | 1,375 | 83.6% | 1,114 | 67.8% |
| 세면대 | 3423 | 수도꼭지형태, 점자표시 | 1,644 | 1,337 | 81.3% | 218 | 13.3% |
| | 소계 | | | 4,113 | 83.4% | 2,534 | 51.4% |
| | | 계 | 194,725 | 102,012 | 52.4% | 77,693 | 39.9% |

<부표 2-3-4>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안내시설

| 세부항목 |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주출입구 접근로 | 1161 | 점자블록 형태 | 10,556 | 3,035 | 28.8% | 2,361 | 22.4% |
| | 116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0,556 | 3,012 | 28.5% | 2,534 | 24.0% |
| | 116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10,556 | 3,026 | 28.7% | 2,512 | 23.8% |
| 계 | | 31,668 | 9,073 | 28.7% | 7,407 | 23.4% | |

| 세부항목 |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5321 | 편리한 접근성 및 이용성 | 8,864 | 8,185 | 92.3% | 8,185 | 92.3% |
| | 5322 | 작업대의 높이 | 8,864 | 7,109 | 80.2% | 7,109 | 80.2% |
| 접수대· 작업대 | 5323 | 하단 높이 | 8,864 | 7,233 | 81.6% | 6,617 | 74.7% |
| | 5324 | 휠체어 발받이 공간 | 8,864 | 7,035 | 79.4% | 4,531 | 51.1% |
| | 계 | | 35,456 | 29,562 | 83.4% | 26,442 | 74.6% |

<부표 2-3-5>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기타시설

<부표 2-3-6> 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세부 | 부항목 | 설치기준항목 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적정설기 | |
|------|------|------------------|-------------|---------|--------|--------------|-------|
| | 1121 | 바닥 재질마감 | 10,190 | 10,035 | 98.5% | 9,742 | 95.6%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10,190 | 9,787 | 96.0% | 8,993 | 88.3% |
| 주출입구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10,190 | 9,773 | 95.9% | 8,895 | 87.3% |
| 접근로 | 1131 | 접근로 유효폭 | 10,190 | 9,992 | 98.1% | 9,715 | 95.3% |
| | 1132 | 기울기 1/18이하 | 10,190 | 9,694 | 95.1% | 8,665 | 85.0%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10,190 | 6,897 | 67.7% | 6,352 | 62.3%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10,190 | 7,259 | 71.2% | 6,767 | 66.4% |
| | | 소계 | 71,330 | 63,437 | 88.9% | 59,129 | 82.9%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1,998 | 1,109 | 55.5% | 928 | 46.4% |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장소 | 1,998 | 1,998 | 100.0% | 789 | 39.5% |
| 지에이조 | 1225 | 주차공간확보 | 1,998 | 896 | 44.8% | 715 | 35.8% |
| 장애인주 | 1226 | 바닥마감 | 1,998 | 954 | 47.7% | 908 | 45.4% |
| 차구역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1,998 | 916 | 45.8% | 381 | 19.1% |
| | 1232 | 안전통행로 | 1,998 | 542 | 27.1% | 422 | 21.1% |
| | | 소계 | 11,988 | 6,415 | 53.5% | 4,143 | 34.6%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10,086 | 5,927 | 58.8% | 5,000 | 49.6%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10,086 | 5,967 | 59.2% | 5,368 | 53.2% |
| | 1323 | 휴식참 | 10,086 | 5,624 | 55.8% | 5,459 | 54.1%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10,086 | 5,879 | 58.3% | 5,649 | 56.0% |
|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10,086 | 5,781 | 57.3% | 5,389 | 53.4% |
| 높이차이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10,086 | 5,342 | 53.0% | 5,098 | 50.5% |
| 제거 | 1327 | 손잡이 높이 | 10,086 | 5,338 | 52.9% | 5,190 | 51.5% |
| | 1328 | 손잡이 굵기 | 10,086 | 5,337 | 52.9% | 5,105 | 50.6%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9,835 | 1,682 | 17.1% | 1,492 | 15.2%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9,835 | 1,668 | 17.0% | 1,455 | 14.8%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9,835 | 1,683 | 17.1% | 1,509 | 15.3% |
| | | 소계 | 110,193 | 50,228 | 45.6% | 46,714 | 42.4% |
| | | 계 | 193,511 | 120,080 | 62.1% | 109,986 | 56.8% |



| | 세부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9,009 | 7,422 | 82.4% | 7,422 | 82.4% |
| | 2112 | 통과 유효폭 | 9,009 | 8,558 | 95.0% | 8,558 | 95.0%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9,009 | 7,914 | 87.8% | 6,267 | 69.6% |
| ㅈᄎ이ᄆ | 2114 | 손잡이 위치 | 9,009 | 8,676 | 96.3% | 7,990 | 88.7% |
| 주출입문 | 2115 | 손잡이 형태 | 9,009 | 8,658 | 96.1% | 8,277 | 91.9%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9,074 | 1,447 | 15.9% | 1,153 | 12.7%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9,074 | 1,434 | 15.8% | 1,134 | 12.5% |
| | 소계 | | 63,193 | 44,109 | 69.8% | 40,801 | 64.6% |
| | 2141 | 일반출입문 단차제거 | 8,980 | 8,037 | 89.5% | 6,821 | 76.0% |
| | 2142 | 통과유효폭 | 8,980 | 8,623 | 96.0% | 8,033 | 89.5% |
| 일반 | 2143 | 전·후면 유효거리 | 8,980 | 8,407 | 93.6% | 7,101 | 79.1% |
| 일만 출입문 | 2144 | 손잡이 위치 | 8,980 | 8,162 | 90.9% | 6,927 | 77.1% |
| | 2145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8,980 | 2,187 | 24.4% | 1,997 | 22.2% |
| | | 소계 | 44,900 | 35,416 | 78.9% | 30,879 | 68.8% |
| 계 | | 108,093 | 79,525 | 73.6% | 71,680 | 66.3% | |

<부표 2-3-7> 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 | 세브 | 브항목 | 설치기준 | 설치수 및 | 선치윤(%-) | 적정설; | |
|------------|------|------------------|-------------|--------|---------|--------|-------|
| | | 1 | <u> 항목수</u> | | | 적정설: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1,563 | 1,544 | 98.8% | 1,505 | 96.3%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1,563 | 1,511 | 96.7% | 1,423 | 91.0%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1,563 | 1,509 | 96.5% | 1,407 | 90.0% |
| 주출입구 | 1131 | 접근로 유효폭 | 1,563 | 1,547 | 99.0% | 1,507 | 96.4% |
| 접근로 | 1132 | 기울기 1/18이하 | 1,563 | 1,477 | 94.5% | 1,266 | 81.0%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1,563 | 1,134 | 72.6% | 1,029 | 65.8%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1,563 | 1,202 | 76.9% | 1,122 | 71.8% |
| | | 소계 | 10,941 | 9,924 | 90.7% | 9,259 | 84.6%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802 | 755 | 94.1% | 628 | 78.3% |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장소 | 802 | 802 | 100.0% | 537 | 67.0% |
| | 1225 | 주차공간확보 | 802 | 616 | 76.8% | 533 | 66.5% |
| 장애인주 | 1226 | 바닥마감 | 802 | 631 | 78.7% | 604 | 75.3% |
| 차구역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802 | 623 | 77.7% | 311 | 38.8% |
| | 1232 | 안전통행로 | 802 | 379 | 47.3% | 314 | 39.2% |
| | | 소계 | 4,812 | 3,806 | 79.1% | 2,927 | 60.8%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1,545 | 1,349 | 87.3% | 1,097 | 71.0%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1,545 | 1,360 | 88.0% | 1,237 | 80.1% |
| | 1323 | 휴식참 | 1,545 | 1,269 | 82.1% | 1,220 | 79.0%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1,545 | 1,354 | 87.6% | 1,305 | 84.5% |
| 높이차이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1,545 | 1,328 | 86.0% | 1,251 | 81.0% |
| 표이지이 제거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1,545 | 1,182 | 76.5% | 1,070 | 69.3% |
| | 1327 | 손잡이 높이 | 1,545 | 1,180 | 76.4% | 1,112 | 72.0% |
| | 1328 | 손잡이 굵기 | 1,545 | 1,178 | 76.2% | 1,077 | 69.7%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1,528 | 559 | 36.6% | 442 | 28.9%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528 | 560 | 36.6% | 447 | 29.3%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1,528 | 563 | 36.8% | 475 | 31.1% |
| 소계 | | 16,944 | 11,882 | 70.1% | 10,733 | 63.3% | |
| | | 계 | 32,697 | 25,612 | 78.3% | 22,919 | 70.1% |

<부표 2-3-8>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부표 | 2-3-9> 문화 및 | 집회시설의 | 세부항목 | ¦ 설치율 : | 내부시설 | |
|---------|-------|---------------|----------------|-------|---------|------------|-------|
| 세부항목 | | | 설치기 쥰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1, 34 | 1,266 | 94.3% | 1,266 | 94.3% |
| | 2112 | 통과유효폭 | 1, 341 | 1,307 | 97.4% | 1,307 | 97.4%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1,841 | 1,290 | 96.1% | 1,218 | 90.8% |
| ㅈᄎ이ᄆ | 2114 | 손잡이 위치 | 1,342 | 1,320 | 98.4% | 1,235 | 92.0% |
| 주출입문 | 2115 | 손잡이 형태 | 1,342 | 1,315 | 98.0% | 1,252 | 93.3%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1,342 | 668 | 49.8% | 447 | 33.3%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342 | 664 | 49.5% | 497 | 37.0% |
| | | 소계 | 9, 394 | 7,830 | 83.4% | 7,222 | 76.9% |
| | 2141 | 일반출입문 단차제거 | 1, 3 36 | 1,297 | 97.1% | 1,221 | 91.4% |
| | 2142 | 통과유효폭 | 1, 3 B6 | 1,316 | 98.5% | 1,268 | 94.9% |
| 일반 | 2143 | 전·후면 유효거리 | 1, 3 36 | 1,300 | 97.3% | 1,217 | 91.1% |
| 출입문 | 2144 | 손잡이 위치 | 1, 3 36 | 1,274 | 95.4% | 1,111 | 83.2% |
| | 2145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1,336 | 331 | 24.8% | 277 | 20.7% |
| | | 소계 | 6, 6 80 | 5,518 | 82.6% | 5,094 | 76.3% |
| | 2211 | 유효폭 | 1,2D2 | 1,167 | 97.1% | 1,127 | 93.8% |
| 복도 | 2212 | 단차 | 1, 2D 2 | 1,158 | 96.3% | 1,123 | 93.4% |
| <u></u> | 22232 | 복도 통로상부의 유효높이 | 1, 2D 2 | 1,147 | 95.4% | 1,111 | 92.4% |
| | | 소계 | 3,606 | 3,472 | | | |



| | الم | 부항목 | 설치기준 | 서치스 미 | 설치율(%) | 적정설계 | 치수 및 |
|-------------|------|-----------------------------|--------|--------|----------|----------|-------|
| | | T 8 T | 항목수 | 걸지도 못 | 길지 뀰(70) | 적정설치율(%)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1,217 | 957 | 78.6% | 734 | 60.3% |
| | 3112 | 시각적 설비 | 1,217 | 837 | 68.8% | 730 | 60.0%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회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1,217 | 1,075 | 88.3% | 928 | 76.3%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1,217 | 1,007 | 82.7% | 1,007 | 82.7% |
|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1,217 | 349 | 28.7% | 349 | 28.7%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1,215 | 573 | 47.2% | 382 | 31.4%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215 | 573 | 47.2% | 399 | 32.8% |
| | | 소계 | 8,515 | 5,371 | 63.1% | 4,529 | 53.2% |
| | 3221 | 출입문 형태 | 1,545 | 1,108 | 71.7% | 1,062 | 68.7% |
| | 3222 | 통과 유효폭 | 1,545 | 1,120 | 72.5% | 1,120 | 72.5%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1,004 | 682 | 67.9% | 609 | 60.7%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541 | 472 | 87.2% | 426 | 78.7% |
| - 11 년년 그 1 | 3231 | 좌대 높이 | 1,545 | 1,182 | 76.5% | 1,160 | 75.1% |
| 대변기 | 3232 | 수평손잡이 높이 | 1,545 | 1,141 | 73.9% | 973 | 63.0% |
| | 3233 | 수직손잡이 | 1,545 | 1,081 | 70.0% | 749 | 48.5% |
| | 3234 |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 1,545 | 1,100 | 71.2% | 710 | 46.0% |
| | 3235 | 세정장치 형태 | 1,545 | 885 | 57.3% | 589 | 38.1% |
| | 소계 | | 12,360 | 8,771 | 71.0% | 7,398 | 59.9% |
| | 3321 | 수평손잡이 높이 | 307 | 153 | 49.8% | 148 | 48.2% |
| | 3322 | 수평손잡이 길이 | 307 | 152 | 49.5% | 148 | 48.2% |
| – 1 | 3323 | 좌우 손잡이 간격 | 307 | 153 | 49.8% | 149 | 48.5% |
| 소변기 | 3324 | 수직손잡이 높이 | 307 | 151 | 49.2% | 144 | 46.9% |
| | 3325 | 수직손잡이 길이 | 307 | 151 | 49.2% | 148 | 48.2% |
| | | 소계 | 1,535 | 760 | 49.5% | 737 | 48.0% |
| | 3421 | 세면대 상 하단높이 | 419 | 347 | 82.8% | 311 | 74.2% |
| | 3422 |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 419 | 335 | 80.0% | 297 | 70.9% |
| 세면대 | 3423 | 수도꼭지형태, 점자표시 | 419 | 330 | 78.8% | 122 | 29.1% |
| | 소계 | | | 1,012 | 80.5% | 730 | 58.1% |
| | | 계 | 23,667 | 15,914 | 67.2% | 13,394 | 56.6% |

<부표 2-3-10>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 | ٨ | 부항목 | 설치기준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 |
|--------------|------|----------------------|----------|-------|--------|-------|-------|
| | | | <u> </u> | | 1 | 적정설: | |
| | 4121 | 촉지도식 안내판 | 393 | 175 | 44.5% | 169 | 43.0% |
| | 4122 | 설치규격 | 393 | 175 | 44.5% | 168 | 42.7% |
| | 4123 | 점자표기방식 | 393 | 173 | 44.0% | 161 | 41.0% |
| 유도 및 | 4124 | 음성안내장치 | 24 | 11 | 45.8% | 4 | 16.7% |
| 안내설비 | 4125 |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 24 | 12 | 50.0% | 4 | 16.7% |
| | 4141 | 점자블록 형태 | 393 | 64 | 16.3% | 57 | 14.5% |
| | 41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393 | 64 | 16.3% | 64 | 16.3% |
| | 소계 | | 2,013 | 674 | 33.5% | 627 | 31.1% |
| 과 너 미 | 4211 | 시각장애인 설비(청각경보시스템) | 415 | 354 | 85.3% | 269 | 64.8% |
| 경보 및 피난설비 | 4212 | 청각장애인 설비(시각경보시스템) | 416 | 330 | 79.3% | 244 | 58.7% |
| | | 소계 | 831 | 684 | 82.3% | 513 | 61.7% |
| | 1161 | 점자블록 형태 | 1,152 | 395 | 34.3% | 315 | 27.3% |
| 주출입구 | 116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152 | 394 | 34.2% | 359 | 31.2% |
| 접근로 | 116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1,152 | 395 | 34.3% | 347 | 30.1% |
| | | 소계 | 3,456 | 1,184 | 34.3% | | 29.5% |
| 계 | | | | 2,542 | 40.3% | 2,161 | 34.3% |

<부표 2-3-11>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안내시설

<부표 2-3-12>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기타시설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 |
| 관람석 | | | |
| 열람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항목 | | | 설치기준항 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 적정설치· |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4,669 | 4,600 | 98.5% | 4,451 | 95.3%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4,669 | 4,438 | 95.1% | 4,019 | 86.1%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4,669 | 4,419 | 94.6% | 3,927 | 84.1% |
| 주출입구 접근로 | | | | | | | |

<부표 2-3-13> 종교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세부항목 | |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4,239 | 3,770 | 88.9% | 3,770 | 88.9% |
| | 2112 | 통과유효폭 | 4,239 | 4,115 | 97.1% | 4,115 | 97.1%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4,239 | 3,949 | 93.2% | 3,543 | 83.6% |
| ㅈᄎ이ᄆ | 2114 | 손잡이 설치위치 | 4,239 | 4,117 | 97.1% | 3,703 | 87.4% |
| 주출입문 | 2115 | 손잡이 형태 | 4,239 | 4,092 | 96.5% | 3,852 | 90.9%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4,249 | 1,069 | 25.2% | 838 | 19.7%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4,249 | 1,058 | 24.9% | 819 | 19.3% |
| | | 소계 | 29,693 | 22,170 | 74.7% | 20,640 | 69.5% |
| | 2141 | 일반출입문 단차제거 | 4,215 | 3,961 | 94.0% | 3,454 | 81.9% |
| | 2142 | 통과유효폭 | 4,215 | 4,137 | 98.1% | 3,912 | 92.8% |
| 일반 | 2143 | 전·후면 유효거리 | 4,215 | 4,087 | 97.0% | 3,701 | 87.8% |
| 출입문 | 2144 | 손잡이 설치 위치 | 4,215 | 3,797 | 90.1% | 3,109 | 73.8% |
| | 2145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4,215 | 848 | 20.1% | 701 | 16.6% |
| | | 소계 | 21,075 | 16,830 | 79.9% | 14,877 | 70.6% |
| | | 계 | 50,768 | 39,000 | 76.8% | 35,517 | 70.0% |

<부표 2-3-14> 종교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 세부항목 | | 설치기준항 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적정설기 | |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1,526 | 1,515 | 99.3% | 1,482 | 97.1% |
| 주출입구 접근로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1,526 | 1,499 | 98.2% | 1,412 | 92.5%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1,526 | 1,441 | 94.4% | 1,320 | 86.5% |
| | 1131 | 접근로 유효폭 | 1,526 | 1,514 | 99.2% | 1,480 | 97.0% |
| | 1132 | 기울기 | 1,526 | 1,459 | 95.6% | 1,326 | 86.9%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1,526 | 1,093 | 71.6% | 984 | 64.5%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1,526 | 1,155 | 75.7% | 1,072 | 70.2% |
| | | 소계 | 10,682 | 9,676 | 90.6% | 9,076 | 85.0%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817 | 754 | 92.3% | 569 | 69.6% |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817 | 817 | 100.0% | 529 | 64.7% |
| | 1225 | 주차공간 확보 | 817 | 579 | 70.9% | 482 | 59.0% |
| 장애인주 차구역 | 1226 | 바닥마감 | 817 | 606 | 74.2% | 587 | 71.8% |
| ~ ~ ~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817 | 586 | 71.7% | 313 | 38.3% |
| | 1232 | 안전통행로 | 817 | 382 | 46.8% | 299 | 36.6% |
| | | 소계 | 4,902 | 3,724 | 76.0% | 2,779 | 56.7%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1,497 | 1,274 | 85.1% | 1,170 | 78.2%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1,497 | 1,283 | 85.7% | 1,225 | 81.8% |
| | 1323 | 휴식참 | 1,497 | 1,235 | 82.5% | 1,215 | 81.2%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1,497 | 1,274 | 85.1% | 1,248 | 83.4% |
| 높이차이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1,497 | 1,258 | 84.0% | 1,227 | 82.0% |
| 표이지어 제거 | 1326 | 손잡이연속설치 | 1,497 | 1,201 | 80.2% | 1,175 | 78.5% |
| | 1327 | 손잡이 높이 | 1,497 | 1,201 | 80.2% | 1,185 | 79.2% |
| | 1328 | 손잡이 굵기 | 1,497 | 1,201 | 80.2% | 1,171 | 78.2%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1,454 | 402 | 27.6% | 360 | 24.8%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454 | 398 | 27.4% | 350 | 24.1%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1,454 | 404 | 27.8% | 360 | 24.8% |
| | | 소계 | 16,338 | 11,131 | 68.1% | 10,686 | 65.4% |
| | | 계 | 31,922 | 24,531 | 76.8% | 22,541 | 70.6% |

<부표 2-3-15> 판매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세부 | 부하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 |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1,314 | 1,205 | 91.7% | 1,205 | 91.7% |
| | 2112 | 통과유효폭 | 1,314 | 1,279 | 97.3% | 1,279 | 97.3% |
| | 2113 | 전 후면 유효거리 | 1,314 | 1,208 | 91.9% | 1,100 | 83.7% |
| 주출입문 | 2114 | 손잡이 설치위치 | 1,314 | 1,279 | 97.3% | 1,140 | 86.8% |
| | 2115 2131 | 손잡이 형태 저혀보르 혀대 | 1,314 | 1,280 | 97.4% | 1,231 366 | 93.7% |
| | 2131 2132 | 점형블록 형태 점형블록 설치위치 | 1,317 1,317 | 494 493 | 37.5% 37.4% | 383 | 27.8% 29.1% |
| | 2152 | | 9,204 | 7,238 | 78.6% | 6,704 | 72.8% |
| | 2141 | 일반출입문 단차제거 | 1,306 | 1,220 | 93.4% | 1,128 | 86.4% |
| | 2141 | 몰라물급한 한자세기 통과유효폭 | 1,306 | 1,220 | 93.4 % 97.7% | 1,120 | 91.6% |
| 일반 | 2142 | 전·후면 유효거리 | 1,306 | 1,247 | 95.5% | 1,125 | 86.1% |
| 출입문 | 2144 | 손잡이 설치 위치 | 1,306 | 1,204 | 92.2% | 1,021 | 78.2% |
| 282 | 2145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1,306 | 344 | 26.3% | 299 | 22.9% |
| | | 소계 | 6,530 | 5,291 | 81.0% | 4,769 | 73.0% |
| | 2211 | 유효폭 | 1,144 | 1,086 | 94.9% | 1,001 | 87.5% |
| 복도 | 2212 | 단차 | 1,144 | 1,078 | 94.2% | 1,037 | 90.6% |
| <u></u> ¬⊥ | 2213 | 복도 통로상부의 유효높이 | 1,144 | 1,057 | 92.4% | 1,002 | 87.6% |
| | | 소계 | 3,432 | 3,221 | 93.9% | 3,040 | 88.6% |
| | 2421 | 유효폭 | 254 | 246 | 96.9% | 216 | 85.0% |
| | 2422 | 챌면 설치 여부 | 254 | 235 | 92.5% | 235 | 92.5% |
| | 2423 2424 | 챌면의 높이, 디딤판너비 손잡이 굵기 | 254 254 | 239 199 | 94.1% 78.3% | 193 88 | 76.0% 34.6% |
| ᅰᄃ | 2424 2425 | 손잡이 읽기 손잡이 연속설치 | 254 254 | 199 194 | 76.3% 76.4% | 129 | 50.8% |
| 계단 | 2426 |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 254 | 91 | 35.8% | 50 | 19.7% |
| | 2427 | 점형블록 설치 | 254 | 54 | 21.3% | 41 | 16.1% |
| | 2428 | 손잡이 점자표기 | 254 | 40 | 15.7% | 28 | 11.0% |
| | | 소계 | 2,032 | 1,298 | 63.9% | 980 | 48.2% |
| | 2431 | 경사로 유효폭 | 30 | 26 | 86.7% | 22 | 73.3% |
| | 2432 | 휴식참 | 30 | 24 | 80.0% | 16 | 53.3% |
| | 2433 | 기울기 1/12 | 30 | 27 | 90.0% | 16 | 53.3% |
| | 2434 | 바닥면 재질 | 30 | 29 | 96.7% | 23 | 76.7% |
| 경사로 | 2435 | 휴식참 활동공간 | 30 | 29 | 96.7% | 20 | 66.7% |
| | 2436 | 손잡이 연속설치 소자이 노이 | 30 | 27 | 90.0% | 14 | 46.7% |
| | 2437 2438 | 손잡이 높이 손잡이 굵기 | 30 30 | 27 26 | 90.0% 86.7% | 15 15 | 50.0% 50.0% |
| | 2400 | | | | | 15 | 50.0% 58.8% |
| | 0.4.1 | 소계 | 240 | 215 | 89.6% | 141 | 50.8% |
| | 2441 | 전면 활동공간 | 636 | 631 | 99.2% | | |

<부표 2-3-16> 판매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승강기

| | 세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1,155 | 721 | 62.4% | 551 | 47.7% |
| | 3112 | 시각적 설비 | 1,155 | 654 | 56.6% | 562 | 48.7%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1,155 | 865 | 74.9% | 730 | 63.2%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1,155 | 799 | 69.2% | 799 | 69.2% |
|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1,155 | 336 | 29.1% | 336 | 29.1%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1,144 | 378 | 33.0% | 266 | 23.3%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144 | 378 | 33.0% | 263 | 23.0% |
| | | 소계 | 8,063 | 4,131 | 51.2% | 3,507 | 43.5% |
| | 3221 | 출입문 형태 | 1,492 | 838 | 56.2% | 799 | 53.6% |
| | 3222 | 통과 유효폭 | 1,492 | 847 | 56.8% | 847 | 56.8%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1,024 | 499 | 48.7% | 439 | 42.9%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468 | 375 | 80.1% | 344 | 73.5% |
| | 3231 | 좌대 높이 | 1,492 | 902 | 60.5% | 875 | 58.6% |
| 내면기 | 3232 | 수평손잡이 높이 | 1,492 | 855 | 57.3% | 731 | 49.0% |
| | 3233 | 수직손잡이 | 1,492 | 825 | 55.3% | 597 | 40.0% |
| | 3234 |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 1,492 | 832 | 55.8% | 530 | 35.5% |
| | 3235 | 세정장치 형태 | 1,492 | 659 | 44.2% | 438 | 29.4% |
| 일반사항 대변기 | 3115 3131 3132 3221 3222 3224 3225 3231 3232 3233 3233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점자블록 형태 점자블록 설치위치 호입문 형태 통과 유효폭 바닥면크기(05'이전) 바닥면크기(05'이주) 주대 높이 수평손잡이 높이 수 지손잡이 | 1,155 1,144 1,144 8,063 1,492 1,492 1,492 1,492 1,492 1,492 1,492 | 336 378 378 4,131 838 847 499 375 902 855 825 825 832 | 29.1% 33.0% 33.0% 51.2% 56.2% 56.8% 48.7% 80.1% 60.5% 57.3% 55.3% 55.8% | 336 266 263 3,507 799 847 439 344 875 731 597 530 | 29 20 20 20 55 55 56 42 75 58 49 40 35 |

<부표 2-3-17> 판매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부표 2-3-18> 의료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 ヘーエ 2 3 10~ - | | | _ 'E '' | | |
|-------------|------|------------------|-------------|--------|---------|------------|-------|
| | 세부 | 부항목 | 설치기준 하모스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 |
| | 1101 | | <u> </u> | 0.505 | 00 59/ | <u>적정설</u> | |
| 주출입구 접근로 | 1121 | 바닥재질마감 | 2,537 | 2,525 | 99.5% | 2,463 | 97.1%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2,537 | 2,506 | 98.8% | 2,347 | 92.5%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2,537 | 2,452 | 96.6% | 2,280 | 89.9% |
| | 1131 | 접근로 유효폭 | 2,537 | 2,507 | 98.8% | 2,425 | 95.6% |
| | 1132 | 기울기 | 2,537 | 2,367 | 93.3% | 1,987 | 78.3%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2,537 | 1,788 | 70.5% | 1,610 | 63.5%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2,537 | 1,877 | 74.0% | 1,731 | 68.2% |
| | | 소계 | 17,759 | 16,022 | 90.2% | 14,843 | 83.6%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1,407 | 1,305 | 92.8% | 1,146 | 81.4% |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1,407 | 1,407 | 100.0% | 866 | 61.5% |
| | 1225 | 주차공간 확보 | 1,407 | 963 | 68.4% | 797 | 56.6% |
| 장애인주 | 1226 | 바닥마감 | 1,407 | 999 | 71.0% | 951 | 67.6% |
| 차구역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1,407 | 975 | 69.3% | 518 | 36.8% |
| | 1232 | 안전통행로 | 1,407 | 651 | 46.3% | 507 | 36.0% |
| | | 소계 | 8,442 | 6,300 | 74.6% | 4,785 | 56.7%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2,516 | 2,232 | 88.7% | 1,846 | 73.4%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2,516 | 2,243 | 89.1% | 2,078 | 82.6% |
| | 1323 | 휴식참 | 2,516 | 2,097 | 83.3% | 2,022 | 80.4%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2,516 | 2,230 | 88.6% | 2,141 | 85.1% |
|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2,516 | 2,191 | 87.1% | 2,048 | 81.4% |
| 노이코이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2,516 | 2,008 | 79.8% | 1,835 | 72.9% |
| 높이차이 제거 | 1327 | 손잡이 높이 | 2,516 | 2,005 | 79.7% | 1,924 | 76.5% |
| 1.114 | 1328 | 손잡이 굵기 | 2,516 | 2,005 | 79.7% | 1,861 | 74.0%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2,462 | 918 | 37.3% | 793 | 32.2%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2,462 | 915 | 37.2% | 765 | 31.1%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2,462 | 919 | 37.3% | 789 | 32.0% |
| | | 소계 | 27,514 | 19,763 | 71.8% | 18,102 | 65.8% |
| | | 계 | 53,715 | 42,085 | 78.3% | 37,730 | 70.2% |

| | ⊨ البر | 부항목 | 설치기준 | 선치수 미 | 설치율(%) | 적정설 | |
|------|--------------|--|--------|----------|----------------|----------|-------------------------|
| | ר ויי | | 항목수 | | = 시 = (/0) | 적정설 | 치율(%)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2,254 | 2,138 | 94.9% | 2,138 | 94.9% |
| | 2112 | 통과유효폭 | 2,254 | 2,221 | 98.5% | 2,221 | 98.5%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2,254 | 2,150 | 95.4% | 1,985 | 88.1% |
| ㅈᄎ이ᄆ | 2114 | 손잡이 설치위치 | 2,254 | 2,222 | 98.6% | 2,055 | 91.2% |
| 주출입문 | 2115 | 손잡이 형태 | 2,254 | 2,216 | 98.3% | 2,154 | 95.6%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2,262 | 1,245 | 55.0% | 936 | 41.4%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2,262 | 1,241 | 54.9% | 952 | 42.1% |
| | | 소계 | 15,794 | 13,433 | 85.1% | 12,441 | 78.8% |
| | 2141 | 일반출입문 단차제거 | 2,249 | 2,196 | 97.6% | 2,090 | 92.9% |
| | 2142 | 통과유효폭 | 2,249 | 2,203 | 98.0% | 2,121 | 94.3% |
| 일반 | 2143 | 전·후면 유효거리 | 2,249 | 2,182 | 97.0% | 2,060 | 91.6% |
| 출입문 | 2144 | 손잡이 설치 위치 | 2,249 | 2,125 | 94.5% | 1,828 | 81.3% |
| | 2145 | 점지표지판 설치위치 | 2,249 | 680 | 30.2% | 589 | 26.2% |
| | | 소계 | 11,245 | 9,386 | 83.5% | 8,688 | 77.3% |
| | 2211 | 유효폭 | 1,874 | 1,846 | 98.5% | 1,810 | 96.6% |
| 복도 | 2212 | 단차 | 1,874 | 1,847 | 98.6% | 1,803 | 96.2% |
| 7-1 | 2213 | 복도 통로상부의 유효높이 | 1,874 | 1,827 | 97.5% | 1,781 | 95.0% |
| | | 소계 | 5,622 | 5,520 | 98.2% | 5,394 | 95.9% |
| | 2421 | 유효폭 | 295 | 295 | 100.0% | 267 | 90.5% |
| | 2422 | 챌면 설치 여부 | 295 | 291 | 98.6% | 291 | 98.6% |
| | 2423 | 챌면의 높이, 디딤판 너비 | 295 | 290 | 98.3% | 261 | 88.5% |
| | 2424 | 손잡이 굵기 | 295 | 272 | 92.2% | 175 | 59.3% |
| 계단 | 2425 | 손잡이 연속설치 | 295 | 269 | 91.2% | 226 | 76.6% |
| | 2426 |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 295 | 171 | 58.0% | 114 | 38.6% |
| | 2427 | 점형블록 설치 | 295 | 133 | 45.1% | 101 | 34.2% |
| | 2428 | 손잡이 점자표기 | 295 | 105 | 35.6% | 86 | 29.2% |
| | 0.404 | 소계 | 2,360 | 1,826 | 77.4% | 1,521 | 64.4% |
| | 2431 | 경사로 유효폭 | 47 | 47 | 100.0% | 45 | 95.7% |
| | 2432 | 휴식참 | 47 | 44 | 93.6% | 37 | 78.7% |
| | 2433 | 기울기 1/12 | 47 | 43 | 91.5% | 34 | 72.3% |
| | 2434 | 바닥면 재질 | 47 | 47 | 100.0% | 42 | 89.4% |
| 경사로 | 2435 | 휴식참 활동공간 손잡이 연속설치 | 47 47 | 46 43 | 97.9% | 40 38 | 85.1% |
| | 2436 2437 | 손잡이 <u>연곡철지</u> 손잡이 높이 | 47 | 43 | 91.5% 93.6% | 39 | <u> </u> |
| | 2437 | | 47 | 44 | 93.6% | 39 | 63.8% |
| | 2400 | <u>- 근급이 ᆰ기</u> | 376 | 358 | 95.0% 95.2% | 305 | 81.1% |
| | 2441 | 전면 활동공간 | 1,598 | 1,596 | 99.9% | 1,561 | 97.7% |
| | 2443 | 유효비탁면적(08'이전) | 1,390 | 1,330 | 100.0% | 1,180 | 97.0% |
| | 2444 | 유효비탁면적(08'이후) | 382 | 382 | 100.0% | 359 | 94.0% |
| | 2445 | 기료의 직원 이 아이 아 | 1,598 | 1,474 | 92.2% | 1,474 | 92.2% |
| | 2445 | 조작반 높이 | 1,598 | 1,474 | 92.2% | 1,474 | <u>92.2 /0</u> 88.2% |
| | 2447 | 일반조직반 조작설비 | 1,598 | 1,407 | 100.0% | 1,403 | 98.4% |
| 승강기 | 2448 | 조작반 점자표지 | 1,598 | 1,530 | 95.6% | 1,573 | 95.6% |
| | 2449 | 점자블록 형태 | 1,598 | 1,327 | 81.0% | 983 | <u> </u> |
| | 24410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598 | 1,332 | 83.4% | 1,166 | 73.0% |
| | 24411 | 도착여부 표시, 도착음 | 1,598 | 1,506 | 94.2% | 1,100 | 77.8% |
| | 24412 |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 1,598 | 1,500 | 96.5% | 1,247 | 77.0% |
| | | <u> </u> | 15,980 | 14,954 | 93.6% | 13,723 | 85.9% |
| | 2451 | 활동공간 확보 | 15,960 | 14,904 | 93.3% | 13,723 | <u> </u> |
| | 2451 | 월등8건 목도 유효바닥면적 | 15 | 14 | 100.0% | 13 | 93.3% |
| 휠체어 | 2452 | 호출벨 등의 설치 상황 | 15 | 15 | 100.0% | 14 | 93.3% |
| | 2-100 | <u>오늘을 하는 가 성당</u> 소계 | 45 | 44 | 97.8% | 41 | 91.1% |
| | | <u></u> 계 | 51,422 | 45,521 | <u> </u> | 42,113 | <u> </u> |
| | | - II | 01,422 | | 00.070 | 42,110 | 01.370 |

<부표 2-3-19> 의료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부표 2-3-20> 의료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 · · · | | | | | | | |
|-------|------|-----------------------------|--------------------|--------|--------|--------------|-------|
| | 세 | 부항목 | 설치기준 <u>항목수</u>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1,893 | 1,599 | 84.5% | 1,282 | 67.7% |
| | 3112 | 시각적 설비 | 1,893 | 1,346 | 71.1% | 1,153 | 60.9%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회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1,893 | 1,721 | 90.9% | 1,467 | 77.5%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1,893 | 1,693 | 89.4% | 1,693 | 89.4% |
|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1,893 | 584 | 30.9% | 584 | 30.9%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1,888 | 937 | 49.6% | 717 | 38.0%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888 | 937 | 49.6% | 716 | 37.9% |
| | | 소계 | 13,241 | 8,817 | 66.6% | 7,612 | 57.5% |
| | 3221 | 출입문 형태 | 2,524 | 1,882 | 74.6% | 1,729 | 68.5% |
| | 3222 | 통과 유효폭 | 2,524 | 1,966 | 77.9% | 1,966 | 77.9%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1,648 | 1,261 | 76.5% | 1,047 | 63.5%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876 | 763 | 87.1% | 667 | 76.1% |
| 리머리카 | 3231 | 좌대 높이 | 2,524 | 2,090 | 82.8% | 2,031 | 80.5% |
| 대변기 | 3232 | 수평손잡이 높이 | 2,524 | 2,005 | 79.4% | 1,665 | 66.0% |
| | 3233 | 수직손잡이 | 2,524 | 1,900 | 75.3% | 1,339 | 53.1% |
| | 3234 |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 2,524 | 1,902 | 75.4% | 1,159 | 45.9% |
| | 3235 | 세정장치 형태 | 2,524 | 1,475 | 58.4% | 721 | 28.6% |
| | | 소계 | 20,192 | 15,244 | 75.5% | 12,324 | 61.0% |
| | 3321 | 수평손잡이 높이 | 1,870 | 1,196 | 64.0% | 1,098 | 58.7% |
| | 3322 | 수평손잡이 길이 | 1,870 | 1,196 | 64.0% | 1,164 | 62.2% |
| | 3323 | 좌우 손잡이 간격 | 1,870 | 1,195 | 63.9% | 1,149 | 61.4% |
| 소변기 | 3324 | 수직손잡이 높이 | 1,870 | 1,177 | 62.9% | 1,085 | 58.0% |
| | 3325 | 수직손잡이 길이 | 1,870 | 1,176 | 62.9% | 1,147 | 61.3% |
| | | 소계 | 9,350 | 5,940 | 63.5% | 5,643 | 60.4% |
| | | | | | | | |

427 ha

세면대

| | 서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4121 | 촉지도식 안내판 | 2,332 | 1,133 | 48.6% | 1,036 | 44.4% |
| | 4122 | 설치규격 | 2,332 | 1,097 | 47.0% | 1,037 | 44.5% |
| | 4123 | 점자표기방식 | 2,332 | 1,065 | 45.7% | 996 | 42.7% |
| 유도 및 | 4124 | 음성안내장치 | 153 | 88 | 57.5% | 19 | 12.4% |
| 안내설비 | 4125 |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 153 | 88 | 57.5% | 20 | 13.1% |
| | 4141 | 점자블록 형태 | 2,332 | 422 | 18.1% | 386 | 16.6% |
| | 41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2,332 | 421 | 18.1% | 421 | 18.1% |
| | | 소계 | 11,966 | 4,314 | 36.1% | 3,915 | 32.7% |
| | 4211 | 시각장애인 설비(청각경보시스템) | 2,509 | 2,097 | 83.6% | 1,656 | 66.0% |
| 경보 및 피난설비 | 4212 | 청각장애인 설비(시각경보시스템) | 2,509 | 2,007 | 80.0% | 1,594 | 63.5% |
| | | 소계 | 5,018 | 4,104 | 81.8% | 3,250 | 64.8% |
| | 1161 | 점자블록 형태 | 2,494 | 782 | 31.4% | 688 | 27.6% |
| 주출입구 | 116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2,494 | 783 | 31.4% | 713 | 28.6% |
| 접근로 | 116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2,494 | 785 | 31.5% | 686 | 27.5% |
| | | 소계 | 7,482 | 2,350 | 31.4% | 2,087 | 27.9% |
| | | 계 | 24,466 | 10,768 | 44.0% | 9,252 | 37.8% |

<부표 2-3-21> 의료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안내시설



<부표 2-3-22> 교육연구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세브 | 부하목 | 설치기준 | 설치수 및 | 설치윸(%) | 적정설기 | | | |
|-------------|------|------------------|----------|---------|--------|---------|-------|--|--|
| | | | <u> </u> | | | 적정설 | | | |
| 주출입구 | 1121 | 바닥재질마감 | 14,765 | 14,609 | 98.9% | 14,128 | 95.7% | |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미감 | 14,765 | 14,363 | 97.3% | 12,980 | 87.9% | |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긴격 | 14,765 | 13,982 | 94.7% | 12,348 | 83.6% | | |
| | 1131 | 접근로 유효폭 | 14,765 | 14,578 | 98.7% | 13,970 | 94.6% | | |
| 접근로 | 1132 | 기울기 | 14,765 | 13,526 | 91.6% | 10,970 | 74.3% | | |
| | 1141 | 치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14,765 | 10,242 | 69.4% | 9,039 | 61.2% | |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14,765 | 10,658 | 72.2% | 9,624 | 65.2% | | |
| | | 소계 | 103,355 | 91,958 | 89.0% | 83,059 | 80.4% | |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6,518 | 6,029 | 92.5% | 5,294 | 81.2% | | |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6,518 | 6,518 | 100.0% | 3,980 | 61.1% | | |
| 지세이즈 | 1225 | 주차공간 확보 | 6,518 | 4,469 | 68.6% | 3,686 | 56.6% | | |
| 장애인주 차구역 | 1226 | 바닥마감 | 6,518 | 4,721 | 72.4% | 4,513 | 69.2% | | |
| M ¬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6,518 | 4,593 | 70.5% | 2,082 | 31.9% | | |
| | 1232 | 안전통행로 | 6,518 | 2,933 | 45.0% | 2,338 | 35.9% | | |
| | 소계 | | 39,108 | 29,263 | 74.8% | 21,893 | 56.0% | |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14,614 | 11,982 | 82.0% | 9,607 | 65.7% | |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14,614 | 12,062 | 82.5% | 10,875 | 74.4% | | |
| | 1323 | 휴식참 | 14,614 | 11,015 | 75.4% | 10,542 | 72.1% | |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14,614 | 11,955 | 81.8% | 11,386 | 77.9% | | |
|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14,614 | 11,690 | 80.0% | 10,721 | 73.4% | | |
| 높이차이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14,614 | 10,392 | 71.1% | 9,375 | 64.2% | | |
| 제거 | 1327 | 손잡이 높이 | 14,614 | 10,366 | 70.9% | 9,715 | 66.5% | | |
| | 1328 | 손잡이 굵기 | 14,614 | 10,369 | 71.0% | 9,490 | 64.9% | |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14,361 | 4,869 | 33.9% | 3,896 | 27.1% | |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4,361 | 4,838 | 33.7% | 3,671 | 25.6% | |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14,361 | 4,863 | 33.9% | 3,991 | 27.8% | | |
| | | 소계 | 159,995 | 104,401 | 65.3% | 93,269 | 58.3% | | |
| | | 계 | 302,458 | 225,622 | 74.6% | 198,221 | 65.5% | | |

| | 세녁 | 부하목 | 설치기준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 |
|------|------|----------------|----------|--------|-----------------|--------|-------|
| | | | <u> </u> | | | 적정설치 | |
| | 2111 | 출입구 (문) | 13,101 | 11,794 | 90.0% | 11,794 | 90.0% |
| | 2112 | 통과유효폭 | 13,101 | 12,808 | 97.8% | 12,808 | 97.8%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13,101 | 12,504 | 95.4% | 11,385 | 86.9% |
| | 2114 | 손잡이 위치 | 13,101 | 12,830 | 97.9% | 11,348 | 86.6% |
| 주출입문 | 2115 | 손잡이 형태 | 13,101 | 12,766 | 97.4% | 12,030 | 91.8%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13,123 | 6,509 | 49.6% | 4,738 | 36.1%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3,123 | 6,478 | 49.4% | 4,813 | 36.7% |
| | | 소계 | 91,751 | 75,689 | 82.5% | 68,916 | 75.1% |
| | 2141 | 일반출입문 | 13,024 | 12,276 | 94.3% | 10,348 | 79.5% |
| | 2142 | 통과유효폭 | 13,024 | 12,719 | 97.7% | 11,654 | 89.5% |
| 일반 | 2142 | 전·후면 유효거리 | 13,024 | 12,688 | 97.4% | 11,610 | 89.1% |
| | 2143 | 손잡이 위치 | 13,024 | 11,397 | 97.478 87.5% | 8,895 | 68.3% |
| 출입문 | 2144 | 점자표자판 설치위치 | 13,024 | 4,151 | 31.9% | 3,503 | 26.9% |
| | 2145 | | | | | | |
| | | 소계 | 65,120 | 53,231 | 81.7% | 46,010 | 70.7% |
| | 2211 | 복도 유효폭 | 10,845 | 10,606 | 97.8% | 10,240 | 94.4% |
| 복도 | 2212 | 바닥단차 | 10,845 | 10,177 | 93.8% | 9,655 | 89.0% |
| 국工 | 2213 | 유효높이확보 | 10,845 | 10,267 | 94.7% | 9,861 | 90.9% |
| | | 소계 | 32,535 | 31,050 | 95.4% | 29,756 | 91.5% |
| | 2421 | 계단 또는 승강 설비 | 4,954 | 4,904 | 99.0% | 4,704 | 95.0% |
| | 2422 | 챌면 | 4,954 | 4,784 | 96.6% | 4,784 | 96.6% |
| | 2423 | 챌면의 높이, 디딤판 너비 | 4,954 | 4,864 | 98.2% | 4,357 | 87.9% |
| | 2424 | 손잡이 굵기 | 4,954 | 4,203 | 84.8% | 2,358 | 47.6% |
| 계단 | 2425 | 손잡이 연속설치 | 4,954 | 4,126 | 83.3% | 3,217 | 64.9% |
| | 2426 | 수평손집이 연장설치 | 4,954 | 2,378 | 48.0% | 1,517 | 30.6% |
| | 2427 | 점형블록 설치 | 4,954 | 1,655 | 33.4% | 1,153 | 23.3% |
| | 2428 | 손잡이 점자표기 | 4,954 | 1,330 | 26.8% | 1,035 | 20.9% |
| | 2,20 | 소계 | 39,632 | 28,244 | 71.3% | 23,125 | 58.3% |
| | 2431 | 경사로 유효폭 | 948n | , | | , | |

<부표 2-3-23> 교육연구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경사로

<부표 2-3-24> 교육연구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 | 세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11,066 | 8,232 | 74.4% | 5,885 | 53.2% |
| | 3112 | 시각적 설비 | 11,066 | 7,157 | 64.7% | 5,817 | 52.6%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11,066 | 9,299 | 84.0% | 7,873 | 71.1% |
| 일반사항 | <u> 3</u> 4 (5 | | | | | | |

| | ٨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 적정설치· | |
|------|------|-------------|-------------|-------|--------|----------------------------|-------|
| | 4121 | 촉지도식 안내판 | 8,022 | 4,264 | 53.2% | 4,016 | 50.1% |
| | 4122 | 설치규격 | 8,022 | 4,244 | 52.9% | 4,055 | 50.5% |
| | 4123 | 점자표기방식 | 8,022 | 4,150 | 51.7% | 3,900 | 48.6% |
| 유도 및 | 4124 | 음성안내장치 | 708 | 468 | 66.1% | 351 | 49.6% |
| 안내설비 | 4125 |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 708 | 446 | 63.0% | 285 | 40.3% |
| | 4141 | 점자블록 형태 | 8,022 | 1,606 | 20.0% | 1,426 | 13.% |

<부표 2-3-25> 교육연구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안내시설



<부표 2-3-27> 노유자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세부 | 부하목 | 설치기준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계 | |
|------------|------|------------------|----------|---------|--------|---------|-------|
| | - | | <u> </u> | | | 적정설 | |
| 주출입구 | 1121 | 바닥재질마감 | 19,698 | 19,369 | 98.3% | 18,763 | 95.3%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미감 | 19,698 | 18,847 | 95.7% | 17,152 | 87.1%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긴격 | 19,698 | 18,774 | 95.3% | 17,202 | 87.3% |
| | 1131 | 접근로 유효폭 | 19,698 | 19,325 | 98.1% | 18,446 | 93.6% |
| 접근로 | 1132 | 기울기 | 19,698 | 18,331 | 93.1% | 15,961 | 81.0% |
| | 1141 | 치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19,698 | 13,003 | 66.0% | 11,903 | 60.4%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19,698 | 13,534 | 68.7% | 12,504 | 63.5% |
| | | 소계 | 137,886 | 121,183 | 87.9% | 111,931 | 81.2%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1,475 | 1,314 | 89.1% | 1,180 | 80.0% |
| | 1224 | 승강설비와 기까운 장소 | 1,475 | 1,475 | 100.0% | 958 | 64.9% |
| 장애인주 | 1225 | 주차공간 확보 | 1,475 | 1,008 | 68.3% | 868 | 58.8% |
| 차구역 | 1226 | 바닥마감 | 1,475 | 1,075 | 72.9% | 1,044 | 70.8% |
| | 1231 | 비닥 및 입식안내표시 | 1,475 | 1,024 | 69.4% | 497 | 33.7% |
| | 1232 | 안전통행로 | 1,475 | 620 | 42.0% | 496 | 33.6% |
| | | 소계 | 8,850 | 6,516 | 73.6% | 5,043 | 57.0%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19,207 | 13,566 | 70.6% | 10,383 | 54.1%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19,207 | 13,689 | 71.3% | 11,748 | 61.2% |
| | 1323 | 휴식참 | 19,207 | 12,484 | 65.0% | 11,920 | 62.1%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19,207 | 13,524 | 70.4% | 12,797 | 66.6% |
|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19,207 | 13,164 | 68.5% | 11,674 | 60.8% |
| 높이차이 제거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19,207 | 11,731 | 61.1% | 10,199 | 53.1% |
| ~11.21 | 1327 | 손잡이 높이 | 19,207 | 11,699 | 60.9% | 10,971 | 57.1% |
| | 1328 | 손잡이 굵기 | 19,207 | 11,699 | 60.9% | 10,220 | 53.2%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18,847 | 3,915 | 20.8% | 3,154 | 16.7% |
| | 1342 | 점자블록 설차위치 | 18,847 | 3,892 | 20.7% | 3,049 | 16.2%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18,847 | 3,905 | 20.7% | 3,249 | 17.2% |
| | | 소계 | 210,197 | 113,268 | 53.9% | 99,364 | 47.3% |
| | | 계 | 356,933 | 240,967 | 67.5% | 216,338 | 60.6% |

| | 세부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 설치율(%) | 적정설치 적정설치 | 지수 및 지율(%) |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17,437 | 13,006 | 74.6% | 13,006 | 74.6% |
| | 2112 | 통과유효폭 | 17,437 | 16,525 | 94.8% | 16,525 | 94.8%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17,437 | 15,799 | 90.6% | 12,947 | 74.3% |
| 주출입문 | 2114 | 손잡이 설치위치 | 17,437 | 16,287 | 93.4% | 13,863 | 79.5% |
| | 2115 | 손잡이 형태 | 17,437 | 16,079 | 92.2% | 14,610 | 83.8%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17,505 | 4,646 | 26.5% | 3,495 | 20.0%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7,505 | 4,627 | 26.4% | 3,508 | 20.0% |
| | 0144 | 소계 | 122,195 | 86,969 | 71.2% | 77,954 | 63.8% |
| | 2141 | 일반출입문 단차제거 | 17,386 | 15,167 | 87.2% | 11,030 | 63.4% |
| | 2142 | 통과유효폭 | 17,386 | 16,797 | 96.6% | 14,549 | 83.7% |
| 일반 | 2143 | 전·후면 유효거리 | 17,386 | 16,638 | 95.7% | 14,312 | 82.3% |
| 출입문 | 2144 | 손잡이 설치 위치 | 17,386 | 14,788 | 85.1% | 10,781 | 62.0% |
| | 2145 | 점지표지판 설치위치 | 17,386 | 3,692 | 21.2% | 3,081 | 17.7% |
| | 0011 | 소계 | 86,930 | 67,082 | 77.2% | 53,753 | 61.8% |
| | 2211 | 유효폭 | 15,687 | 14,907 | 95.0% | 14,088 | 89.8% |
| | 2212 | 단차 | 15,687 | 14,446 | 92.1% | 13,905 | 88.6% |
| не | 2213 | 복도 통로상부의 유효높이 | 15,687 | 14,684 | 93.6% | 14,190 | 90.5% |
| 복도 | 2231 | 손잡이 연속설치 | 1,710 | 1,427 | 83.5% | 1,335 | 78.1% |
| | 2232 | 손잡이 굵기 | 1,710 | 1,427 | 83.5% | 1,332 | 77.9% |
| | 2233 | 손잡이 설치높이 | 1,710 | 1,428 | 83.5% | 1,381 | 80.8% |
| | 0.40.1 | 소계 | 52,191 | 48,319 | 92.6% | 46,231 | 88.6% |
| | 2421 | 유효폭 | 5,197 | 5,041 | 97.0% | 4,223 | 81.3% |
| | 2422 | <u> 챌면 설치 여부</u> | 5,197 | 4,942 | 95.1% | 4,942 | 95.1% |
| | 2423 | <u> </u> | 5,197 | 4,972 | 95.7% | 4,133 | 79.5% |
| | 2424 | 손잡이 굵기 | 5,197 | 4,258 | 81.9% | 2,542 | 48.9% |
| 계단 | 2425 | 손잡이 연속설치 | 5,197 | 4,203 | 80.9% | 3,239 | 62.3% |
| | 2426 |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 5,197 | 2,134 | 41.1% | 1,329 | 25.6% |
| | 2427 | 점형블록 설치 | 5,197 | 1,233 | 23.7% | 849 | 16.3% |
| | 2428 | <u>손잡이 점자표기</u> | 5,197 | 1,033 | 19.9% | 775 | 14.9% |
| | 0.401 | 소계 | 41,576 | 27,816 | 66.9% | 22,032 | 53.0% |
| | 2431 | 경사로 | 642 | 571 | 88.9% | 441 | 68.7% |
| | 2432 | 휴식참 | 642 | 528 | 82.2% | 388 | 60.4% |
| | 2433 | 기울기 1/12 | 642 | 569 | 88.6% | 384 | 59.8% |
| 거나ㅋ | 2434 | 바닥면 재질 휴식참 활동공간 | 642 | 612 | 95.3% | 498 | 77.6% |
| 경사로 | 2435 | | 642 | 592 | 92.2% | 435 | 67.8% |
| | 2436 2437 | 손잡이 연속설치 손잡이 높이 | 642 642 | 543 548 | 84.6% 85.4% | 347 418 | <u> </u> |
| | 2437 | 손잡이 굶기 | 642 | 552 | 86.0% | 356 | 55.5% |
| | 2400 | <u> 근접이 ᆰ기</u> 소계 | 5,136 | 4,515 | 80.0% | 3.267 | <u> </u> |
| | 2441 | 전면 활동공간 | 3,509 | 3,384 | 96.4% | 3,267 | 92.8% |
| | 2441 | - 신한 철종등간 유효비탁면적(08'0전) | 2,534 | 2,520 | 90.4% | 2,332 | 92.0% |
| | 2443 | 유효비탁면적(08'이후) | 2,554 | <u>2,320</u> 962 | 99.4 /0 98.7% | 813 | 83.4% |
| | 2444 | 가로형 조작반 | 3,509 | 3,148 | <u>90.7 //</u> 89.7% | 3,148 | 89.7% |
| | 2445 | 조작반 높이 | 3,509 | 3,140 | 90.8% | 2,905 | 82.8% |
| | 2440 | 일반조직반 조직설비 | 3,509 | 3,509 | 100.0% | 3,318 | 94.6% |
| 승강기 | 2447 | 조작반 점자표지 | 3,509 | 3,317 | 94.5% | 3,317 | <u>94.0%</u> 94.5% |
| | 2440 | 점자블록 형태 | 3,509 | 2,877 | <u>94.3</u> % 82.0% | 2,152 | <u> </u> |
| | 24410 | 점형블록 설치위치 | 3,509 | 2,017 | 83.0% | 2,132 | 73.0% |
| | 24411 | 도착여부 표시, 도착음 | 3,509 | 3,224 | 91.9% | 2,751 | 78.4% |
| | 24412 |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 3,509 | 3,320 | 94.6% | 2,734 | 77.9% |
| | 27712 | | 35,090 | 32,362 | 94.0% | 29,287 | 83.5% |
| | 2451 | 활동공간 확보 | 66 | 60 | 90.9% | 53 | <u> </u> |
| | 2452 | 유효바닥면적 | 66 | 63 | 95.5% | 58 | 87.9% |
| 휠체어 | 2452 | 호출벨 등의 설치 상황 | 66 | 63 | 95.5% | 49 | 74.2% |
| | 2700 | <u>오늘을 하는 가 않</u> 다. 소계 | 198 | 186 | 93.9% | 160 | 80.8% |
| | | <u></u> 계 | 343,316 | 267,249 | 77.8% | 232,684 | 67.8% |
| | | 1 | 010,010 | | ,1.070 | ,00 r | 01.070 |

<부표 2-3-28> 노유자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 세부항목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16,233 | 7,435 | 45.8% | 4,618 | 28.4% |
| | 3112 | 시각적 설비 | 16,233 | 5,401 | 33.3% | 4,252 | 26.2%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회장실 접근기능 통로 연결 여부 | 16,233 | 11,350 | 69.9% | 9,528 | 58.7%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16,233 | 7,392 | 45.5% | 7,392 | 45.5% |
|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16,233 | 3,030 | 18.7% | 3,030 | 18.7%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16,189 | 2,509 | 15.5% | 1,965 | 12.1%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6,189 | 2,509 | 15.5% | 1,879 | 11.6% |
| | | 소계 | 113,543 | 39,626 | 34.9% | 32,664 | 28.8% |
| | 3221 0 | 출출입문 형태 | 19,565 | 6,703 | 34.3% | ∩¢£2€∷ | |

<부표 2-3-29> 노유자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대변기

| | 서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4121 | 촉지도식 안내판 | 1,609 | 791 | 49.2% | 744 | 46.2% |
| | 4122 | 설치규격 | 1,609 | 779 | 48.4% | 741 | 46.1% |
| | 4123 | 점자표기방식 | 1,609 | 764 | 47.5% | 723 | 44.9% |
| 유도 및 | 4124 | 음성안내장치 | 122 | 65 | 53.3% | 18 | 14.8% |
| 안내설비 | 4125 |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 122 | 72 | 59.0% | 22 | 18.0% |
| | 4141 | 점자블록 형태 | 1,609 | 200 | 12.4% | 180 | 11.2% |
| | 41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609 | 200 | 12.4% | 200 | 12.4% |
| | 소계 | | 8,289 | 2,871 | 34.6% | 2,628 | 31.7% |
| | 4211 | 시각장애인 설비(청각경보시스템) | 1,739 | 1,342 | 77.2% | 1,080 | 62.1% |
| 경보 및 피난설비 | 4212 | 청각장애인 설비(시각경보시스템) | 1,741 | 1,266 | 72.7% | 1,021 | 58.6% |
| | | 소계 | 3,480 | 2,608 | 74.9% | 2,101 | 60.4% |
| | 1161 | 점자블록 형태 | 1,753 | 460 | 26.2% | 376 | 21.4% |
| 주출입구 | 116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753 | 455 | 26.0% | 405 | 23.1% |
| 접근로 | 116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1,753 | 459 | 26.2% | 388 | 22.1% |
| | | 소계 | 5,259 | 1,374 | 26.1% | 1,169 | 22.2% |
| | | 계 | 17,028 | 6,853 | 40.2% | 5,898 | 34.6% |

<부표 2-3-30> 노유자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안내시설



<부표 2-3-31> 노유자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기타시설

| | | | 설치기준 | | | <u>저</u> 전선 : | 적정설치수 및 | |
|-------------|----------|----------------------|---------------------------------------|--------|--------|---------------|---------|--|
| | <u>ل</u> | 부항목 | · · · · · · · · · · · · · · · · · · · | 설치수 및 | 설치율(%) | 직장설: | | |
| | 5121 | 객실·침실 설치비율 | 3 | 3 | 100.0% | 3 | 100.0% | |
| | 5122 | 공용공간 접근성 | 3 | 3 | 100.0% | 3 | 100.0% | |
| | 5123 | 출입문 유효폭 | 3 | 3 | 100.0% | 3 | 100.0% | |
| | 5124 | 휠체어 활동공간 | 3 | 3 | 100.0% | 3 | 100.0% | |
| | 5125 | 침대 높이 | 3 | 3 | 100.0% | 3 | 100.0% | |
| | 5141 | 화장실 바닥단차 | 1,736 | 1,643 | 94.6% | 1,643 | 94.6% | |
| | 5142 | 대변기칸막이 출입문 형태 | 1,736 | 1,663 | 95.8% | 1,648 | 94.9% | |
| | 5143 | 대변기칸막이 문 유효폭 | 1,736 | 1,671 | 96.3% | 1,671 | 96.3% | |
| | 5145 | 바닥면크기(05'이전) | 1,165 | 1,154 | 99.1% | 1,080 | 92.7% | |
| | 5146 | 바닥면크기(05'이후) | 571 | 562 | 98.4% | 87 | 15.2% | |
| | 5147 | 대변기형태 및 높이 | 1,736 | 1,700 | 97.9% | 1,678 | 96.7% | |
| | 5148 | 대변기 수평손잡이 위치 | 1,736 | 1,629 | 93.8% | 1,579 | 91.0% | |
| 객실·침 | 5149 | 대변기 수직손잡이 | 1,736 | 1,616 | 93.1% | 1,540 | 88.7% | |
| 실 | 51410 | 회전식 손잡이 | 1,736 | 1,624 | 93.5% | 1,514 | 87.2% | |
| | 51411 | 대변기 세정장치 | 1,736 | 1,616 | 93.1% | 1,466 | 84.4% | |
| | 51412 | 세면대 상 하단 높이 | 1,736 | 1,679 | 96.7% | 1,621 | 93.4% | |
| | 51413 | 휠체어 발받이 공간 | 1,736 | 1,680 | 96.8% | 1,610 | 92.7% | |
| | 51414 |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점자표시 | 1,736 | 1,684 | 97.0% | 1,451 | 83.6% | |
| | 51415 | 샤워기 위치 | 1,736 | 1,674 | 96.4% | 1,562 | 90.0% | |
| | 51416 | 비상용 벨 위치 | 1,736 | 1,533 | 88.3% | 1,471 | 84.7% | |
| | 51417 | 샤워기 수도꼭지 형태 | 1,736 | 1,668 | 96.1% | 1,446 | 83.3% | |
| | 5151 | 콘센트·스위치·옷걸이 높이 | 1,735 | 1,665 | 96.0% | 1,573 | 90.7% | |
| | 5152 | 청각장애인용 초인등·경보설비 | 1,735 | 1,543 | 88.9% | 1,475 | 85.0% | |
| | | 소계 | 29,525 | 28,019 | 94.9% | 26,130 | 88.5% | |
| | 5221 | 출입구·피난통로의 접근성 | 1,713 | 1,698 | 99.1% | 1,632 | 95.3% | |
| | 5222 | 유효바닥면적 | 1,713 | 1,689 | 98.6% | 1,679 | 98.0% | |
| 관람석· | 5223 | 열람석 하부공간 확보 | 1,713 | 1,688 | 98.5% | 1,680 | 98.1% | |
| 열람석 | 5224 |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설치 비율 | 1,713 | 1,687 | 98.5% | 1,633 | 95.3% | |
| | | 소계 | 6,852 | 6,762 | 98.7% | 6,624 | 96.7% | |
| | 5321 | 휠체어사용자의 접근 가능 여부 | 1,721 | 1,699 | 98.7% | 1,699 | 98.7% | |
| | 5322 | 작업대의 설치높이 | 1,721 | 1,658 | 96.3% | 1,658 | 96.3% | |
| 접수대· 작업대 | 5323 | 작업대의 하부공간 높이 확보 | 1,721 | 1,654 | 96.1% | 1,626 | 94.5% | |
| | 5324 | 작업대의 하부공간 깊이 확보 | 1,721 | 1,644 | 95.5% | 1,560 | 90.6% | |
| | | 소계 | 6,884 | 6,655 | 96.7% | 6,543 | 95.0% | |
| | 5431 | 매표소의 높이 | 1,732 | 1,709 | 98.7% | 1,703 | 98.3% | |
| | 5432 | 매표소 하부공간 높이 | 1,732 | 1,706 | 98.5% | 1,700 | 98.2% | |
| | 5433 | 매표소 하부공간 깊이 | 1,732 | 1,700 | 98.2% | 1,685 | 97.3% | |
| | 5434 | 동전투입구·조직버튼 위치 | 1,732 | 1,708 | 98.6% | 1,693 | 97.7% | |
| 매표소· | 5435 | 조작버튼 점자표시 | 1,732 | 1,642 | 94.8% | 1,642 | 94.8% | |
| 판매대· | 5436 | 누름버튼식 | 1,732 | 1,705 | 98.4% | 1,705 | 98.4% | |
| 음료대 | 5437 | 음료대 분출구 높이 | 1,732 | 1,722 | 99.4% | 1,708 | 98.6% | |
| | 5438 | 조작기 형태 | 1,732 | 1,717 | 99.1% | 1,717 | 99.1% | |
| | 5451 | 점형블록 형태 | 1,733 | 8 | 0.5% | 8 | 0.5% | |
| | 545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733 | 8 | 0.5% | 8 | 0.5% | |
| | | 소계 | 17,322 | 13,625 | 78.7% | 13,569 | 78.3% | |
| | | 계 | 60,583 | 55,061 | 90.9% | 52,866 | 87.3% | |

| | 세부 | 브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424 | 409 | 96.5% | 392 | 92.5%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424 | 386 | 91.0% | 346 | 81.6%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424 | 391 | 92.2% | 346 | 81.6% |
| 주출입구 | 1131 | 접근로 유효폭 | 424 | 409 | 96.5% | 395 | 93.2% |
| 접근로 | 1132 | 기울기 | 424 | 367 | 86.6% | 288 | 67.9%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424 | 231 | 54.5% | 208 | 49.1%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424 | 249 | 58.7% | 220 | 51.9% |
| | | 소계 | 2,968 | 2,442 | 82.3% | 2,195 | 74.0%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165 | 148 | 89.7% | 136 | 82.4% |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165 | 165 | 100.0% | 95 | 57.6% |
| | 1225 | 주차공간 확보 | 165 | 118 | 71.5% | 98 | 59.4% |
| 장애인주 차구역 | 1226 | 바닥마감 | 165 | 121 | 73.3% | 114 | 69.1% |
| 사구곡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165 | 118 | 71.5% | 41 | 24.8% |
| | 1232 | 안전통행로 | 165 | 50 | 30.3% | 39 | 23.6% |
| | | 소계 | 990 | 720 | 72.7% | 523 | 52.8%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418 | 339 | 81.1% | 250 | 59.8%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418 | 341 | 81.6% | 296 | 70.8% |
| | 1323 | 휴식참 | 418 | 309 | 73.9% | 286 | 68.4%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418 | 340 | 81.3% | 326 | 78.0% |
|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418 | 332 | 79.4% | 297 | 71.1% |
| 높이차이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418 | 267 | 63.9% | 229 | 54.8% |
| 제거 | 1327 | 손잡이 높이 | 418 | 267 | 63.9% | 249 | 59.6% |
| | 1328 | 손잡이 굵기 | 418 | 266 | 63.6% | 233 | 55.7%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412 | 104 | 25.2% | 78 | 18.9%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412 | 104 | 25.2% | 86 | 20.9%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412 | 104 | 25.2% | 85 | 20.6% |
| | | 소계 | 4,580 | 2,773 | 60.5% | 2,415 | 52.7% |
| | | 계 | 8,538 | 5,935 | 69.5% | 5,133 | 60.1% |

<부표 2-3-32> 수련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부표 2-3-33> 수련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 | | | 서 키기 조 | | | 저저지러리 | |
|------|------|-------------------------|-------------------|------------|------------------------|-------------------------|----------------------|
| | 세부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숙 적정설치율 | |
| | 2111 | 출입문 높이차이 | <u>방속도</u> 377 | 344 | 91.2% | <u>····작장철지물</u> 344 | <u>=(%)</u> 91.2% |
| | 2111 | 물집군 코이자이 통과유효폭 | 377 | 344 369 | 91.2% 97.9% | 344 369 | 91.2% 97.9% |
| | 2112 | 전·후면 유효거리 | 377 | 363 | 97.9% 96.3% | 332 | 97.97% 88.1% |
| | 2113 | 손잡이 위치 | 377 | 372 | 90.3 <i>%</i> 98.7% | 330 | 87.5% |
| 주출입문 | 2114 | 손잡이 형태 | 377 | 372 | 98.7% | 348 | 92.3%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377 | 143 | 37.9% | 94 | 24.9% |
| | 2131 | 점형블록 설치위치 | 377 | 143 | 37.9% | 99 | 26.3% |
| | 2102 | 소계 | 2,639 | 2,106 | 79.8% | 1,916 | 72.6% |
| | 2141 | 일반출입문 단차제거 | 376 | 352 | 93.6% | 302 | 80.3% |
| | 2142 | 통과유효폭 | 376 | 370 | 98.4% | 333 | 88.6% |
| 일반 | 2143 | 전·후면 유효거리 | 376 | 372 | 98.9% | 336 | 89.4% |
| 출입문 | 2144 | 손잡이 설치 위치 | 376 | 344 | 91.5% | 266 | 70.7% |
| eac | 2145 | 점지표지판 설치위치 | 376 | 82 | 21.8% | 63 | 16.8% |
| | =110 | 소계 | 1,880 | 1,520 | 80.9% | 1,300 | 69.1% |
| | 2211 | 유효폭 | 359 | 353 | 98.3% | 344 | 95.8% |
| | 2212 | 단차 | 359 | 347 | 96.7% | 340 | 94.7% |
| 복도 | 2213 | 복도 통로상부의 유효높이 | 359 | 349 | 97.2% | 340 | 94.7% |
| | | 소계 | 1,077 | 1,049 | 97.4% | 1,024 | 95.1% |
| | 2421 | 유효폭 | 156 | 155 | 99.4% | 138 | 88.5% |
| | 2422 | 챌면 설치 여부 | 156 | 149 | 95.5% | 149 | 95.5% |
| | 2423 | 챌면의 높이, 디딤판 너비 | 156 | 153 | 98.1% | 132 | 84.6% |
| | 2424 | 손잡이 굵기 | 156 | 118 | 75.6% | 43 | 27.6% |
| 계단 | 2425 | 손잡이 연속설치 | 156 | 115 | 73.7% | 82 | 52.6% |
| | 2426 |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 156 | 54 | 34.6% | 28 | 17.9% |
| | 2427 | 점형블록 설치 | 156 | 42 | 26.9% | 31 | 19.9% |
| | 2428 | 손잡이 점자표기 | 156 | 28 | 17.9% | 23 | 14.7% |
| | | 소계 | 1,248 | 814 | 65.2% | 626 | 50.2% |
| | 2431 | 경사로 유효폭 | 9 | 9 | 100.0% | 8 | 88.9% |
| | 2432 | 휴식참 | 9 | 7 | 77.8% | 6 | 66.7% |
| | 2433 | 기울기 1/12 | 9 | 9 | 100.0% | 5 | 55.6% |
| | 2434 | 바닥면 재질 | 9 | 8 | 88.9% | 8 | 88.9% |
| 경사로 | 2435 | 휴식참 활동공간 | 9 | 8 | 88.9% | 7 | 77.8% |
| | 2436 | 손잡이 연속설치 | 9 | 8 | 88.9% | 4 | 44.4% |
| | 2437 | 손잡이 높이 | 9 | 8 | 88.9% | 6 | 66.7% |
| | 2438 | 손잡이 굵기 | 9 | 8 | 88.9% | 2 | 22.2% |
| | | 소계 | 72 | 65 | 90.3% | 46 | 63.9% |
| | 2441 | 승강기 활동공간확보 | 145 | 145 | 100.0% | 139 | 95.9% |
| | 2443 | 유효비탁면적(08'이전) | 96 | 96 | 100.0% | 91 | 94.8% |
| | 2444 | 유효비탁면적(08'이후) | 49 | 49 | 100.0% | 44 | 89.8% |
| | 2445 | 월체어사용자용조직반 고 고 비 노 이 | 145 | 139 | 95.9% | 139 | 95.9% |
| | 2446 | 조작반 높이 | 145 | 140 | 96.6% | 132 | 91.0% |
| 승강기 | 2447 | 일반조작반 조작설비 | 145 | | | | |
| | | | | | | | |

| 세부항목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설치율(%) |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365 | 272 | 74.5% | 186 | 51.0% |
| | 3112 | 시각적 설비 | 365 | 208 | 57.0% | 186 | 51.0%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회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365 | 66 8 2 | | | |
| 일반사항 | | | | | | | |

<부표 2-3-34> 수련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 <부표 2-3-35> 수련시설 | 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기타시설 |
|------------------|--------------------|
| 1 | |

| | ٨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
|-----------|-------|--------------------|-------------|-------|--------|--------------|-------|--|--|--|--|
| | 5141 | 바닥단차 | 416 | 328 | 78.8% | 328 | 78.8% | | | | |
| | 5142 | 대변기칸막이 출입문 형태 | 416 | 352 | 84.6% | 351 | 84.4% | | | | |
| | 5143 | 대변기칸막이 문 유효폭 | 416 | 350 | 84.1% | 350 | 84.1% | | | | |
| | 5145 | 바닥면크기(05'이전) | 280 | 268 | 95.7% | 208 | 74.3% | | | | |
| | 5146 | 바닥면크기(05'이후) | 136 | 124 | 91.2% | 23 | 16.9% | | | | |
| | 5147 | 대변기형태 및 높이 | 416 | 377 | 90.6% | 369 | 88.7% | | | | |
| | 5148 | 대변기 수평손잡이 위치 | 416 | 334 | 80.3% | 318 | 76.4% | | | | |
| | 5149 | 대변기 수직손잡이 | 416 | 321 | 77.2% | 297 | 71.4% | | | | |
| | 51410 | 회전식 손잡이 | 416 | 329 | 79.1% | 290 | 69.7% | | | | |
| 객실·침 실 | 51411 | 대변기 세정장치 | 416 | 346 | 83.2% | 286 | 68.8% | | | | |
| | 51412 | 세면대 상·하단 높이 | 416 | 378 | 90.9% | 357 | 85.8% | | | | |
| | 51413 | 휠체어 발받이 공간 | 416 | 373 | 89.7% | 350 | 84.1% | | | | |
| | 51414 | 수도꼭지 형태 및 점자표시 | 416 | 376 | 90.4% | 275 | 66.1% | | | | |
| | 51415 | 샤워기 위치 | 416 | 367 | 88.2% | 322 | 77.4% | | | | |
| | 51416 | 비상용 벨 위치 | 416 | 283 | 68.0% | 267 | 64.2% | | | | |
| | 51417 | 수도꼭지 형태 | 416 | 368 | 88.5% | 272 | 65.4% | | | | |
| | 5151 | 콘센트·스위치·옷걸이 높이 | 416 | 352 | 84.6% | 315 | 75.7% | | | | |
| | 5152 | 청각장애인용 초인등·경보설비 | 416 | 290 | 69.7% | 265 | 63.7% | | | | |
| | | 소계 | 7,072 | 5,916 | 83.7% | 5,243 | 74.1% | | | | |
| | | 계 | 7,072 | 5,916 | 83.7% | 5,243 | 74.1% | | | | |

| | 세부 | 브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1,317 | 1,300 | 98.7% | 1,276 | 96.9%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1,317 | 1,279 | 97.1% | 1,203 | 91.3%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1,317 | 1,268 | 96.3% | 1,179 | 89.5% |
| 주출입구 | 1131 | 접근로 유효폭 | 1,317 | 1,302 | 98.9% | 1,261 | 95.7% |
| 접근로 | 1132 | 기울기 | 1,317 | 1,226 | 93.1% | 1,066 | 80.9%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1,317 | 847 | 64.3% | 785 | 59.6%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1,317 | 902 | 68.5% | 839 | 63.7% |
| | | 소계 | 9,219 | 8,124 | 88.1% | 7,609 | 82.5%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616 | 544 | 88.3% | 445 | 72.2% |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616 | 616 | 100.0% | 413 | 67.0% |
| | 1225 | 주차공간 확보 | 616 | 472 | 76.6% | 406 | 65.9% |
| 장애인주 차구역 | 1226 | 바닥마감 | 616 | 486 | 78.9% | 470 | 76.3% |
|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616 | 480 | 77.9% | 222 | 36.0% |
| | 1232 | 안전통행로 | 616 | 283 | 45.9% | 221 | 35.9% |
| | | 소계 | 3,696 | 2,881 | 77.9% | 2,177 | 58.9%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1,302 | 1,042 | 80.0% | 892 | 68.5%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1,302 | 1,042 | 80.0% | 982 | 75.4% |
| | 1323 | 휴식참 | 1,302 | 970 | 74.5% | 940 | 72.2%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1,302 | 1,030 | 79.1% | 1,003 | 77.0% |
|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1,302 | 1,021 | 78.4% | 958 | 73.6% |
| 높이차이 | 1326 | 손잡이연속설치 | 1,302 | 936 | 71.9% | 862 | 66.2% |
| 제거 | 1327 | 손잡이 높이 | 1,302 | 934 | 71.7% | 896 | 68.8% |
| | 1328 | 손잡이 굵기 | 1,302 | 934 | 71.7% | 875 | 67.2%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1,266 | 317 | 25.0% | 258 | 20.4%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266 | 319 | 25.2% | 258 | 20.4%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1,266 | 321 | 25.4% | 279 | 22.0% |
| | | 소계 | 14,214 | 8,866 | 62.4% | 8,203 | 57.7% |
| | | 계 | 27,129 | 19,871 | 73.2% | 17,989 | 66.3% |

<부표 2-3-36> 운동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세부 | 부하목 | 설치기준 | 설치수 및 | 설치율(%) | | | | | | | |
|-----------|------|---------------|-------------|--------|--------|--------|--------|--|--|--|--|--|
| | - | L | <u> 항목수</u> | | | 적정설: | 지 쥴(%) | | | | | |
| | 2111 | 출입문 높이차이 | 1,159 | 1,056 | 91.1% | 1,056 | 91.1% | | | | | |
| | 2112 | 통과유효폭 | 1,159 | 1,131 | 97.6% | 1,131 | 97.6% | | | | |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1,159 | 1,108 | 95.6% | 1,044 | 90.1% | | | | | |
| ㅈㅊ이ㅁ | 2114 | 손잡이 위치 | 1,159 | 1,130 | 97.5% | 1,051 | 90.7% | | | | | |
| 주출입문 | 2115 | 손잡이 형태 | 1,159 | 1,125 | 97.1% | 1,062 | 91.6% | | | | |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1,162 | 399 | 34.3% | 270 | 23.2% | | | | |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162 | 396 | 34.1% | 297 | 25.6% | | | | | |
| | 소계 | | 8,119 | 6,345 | 78.2% | 5,911 | 72.8% | | | | | |
| | 2141 | 문턱 높이차이 | 1,155 | 1,080 | 93.5% | 964 | 83.5% | | | | | |
| | 2142 | 통과유효폭 | 1,155 | 1,128 | 97.7% | 1,056 | 91.4% | | | | | |
| | 2143 | 전·후면 유효거리 | 1,155 | 1,127 | 97.6% | 1,056 | 91.4% | | | | | |
| 일반 출입문 | 2144 | 손잡이 위치 | 1,155 | 1,060 | 91.8% | 894 | 77.4% | | | | | |
| 200 | 2145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1,155 | 296 | 25.6% | 242 | 21.0% | | | | | |
| | | 소계 | 5,775 | 4,691 | 81.2% | 4,212 | 72.9% | | | | | |
| | | 계 | 13,894 | 11,036 | 79.4% | 10,123 | 72.9% | | | | | |

<부표 2-3-37> 운동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부표 2-3-38> 운동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 | 세부항목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21 | 18 | 85.7% | 17 | 81.0% |
| | 3112 | 시각적 설비 | 21 | 17 | 81.0% | 15 | 71.4%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21 | 19 | 90.5% | 18 | 85.7%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21 | 17 | 81.0% | 17 | 81.0% |
|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21 | 16 | 76.2% | 16 | 76.2%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21 | 2 | 9.5% | 1 | 4.8%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21 | 2 | 9.5% | 2 | 9.5% |
| | | 소계 | 147 | 91 | 61.9% | 86 | 58.5% |
| | 3321 | 수평손잡이 높이 | 1,087 | 378 | 34.8% | 350 | 32.2% |
| | 3322 | 수평손잡이 길이 | 1,087 | 378 | 34.8% | 364 | 33.5% |
| | 3323 | 좌우 손잡이 간격 | 1,087 | 377 | 34.7% | 359 | 33.0% |
| 소변기 | 3324 | 수직손잡이 높이 | 1,087 | 377 | 34.7% | 352 | 32.4% |
| | 3325 | 수직손잡이 길이 | 1,087 | 372 | 34.2% | 359 | 33.0% |
| | | 소계 | 5,435 | 1,882 | 34.6% | 1,784 | 32.8% |
| | | 계 | 5,582 | 1,973 | 35.3% | 1,870 | 33.5% |

| 세부항목 | | 설치기준항 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9,706 | 9,618 | 99.1% | 9,307 | 95.9%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9,706 | 9,491 | 97.8% | 8,781 | 90.5%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9,706 | 9,281 | 95.6% | 8,431 | 86.9% |
| 주출입구 | 1131 | 접근로 유효폭 | 9,706 | 9,570 | 98.6% | 9,198 | 94.8% |
| 접근로 | 1132 | 기울기 | 9,706 | 9,149 | 94.3% | 7,948 | 81.9%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9,706 | 6,731 | 69.3% | 6,048 | 62.3%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9,706 | 6,959 | 71.7% | 6,395 | 65.9% |
| | | 소계 | 67,942 | 60,799 | 89.5% | 56,108 | 82.6%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4,760 | 4,199 | 88.2% | 3,502 | 73.6% |
| 장애인주 차구역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4,760 | 4,760 | 100.0% | 2,553 | 53.6% |
| | 1225 | 주차공간 확보 | 4,760 | 2,832 | 59.5% | 2,369 | 49.8% |
| | 1226 | 바닥마감 | 4,760 | 2,952 | 62.0% | 2,842 | 59.7% |
|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4,760 | 2,900 | N 9 9% 6 | | 11.118963 |

<부표 2-3-39> 업무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세부항목 <u>항목수</u> 설치수 및 설치율(%) 직정 | 설치율(%) |
|--|---------|
| 2111 출입구(문) 높이차이 8,649 7,808 90.3% 7,80 | 8 90.3% |
| 2112 통과유효폭 8,649 8,430 97.5% 8,4 | 0 97.5% |
| 2113 전·후면 유효거리 8,649 8,157 94.3% 7,10 | 8 82.2% |
| · · · · · · · · · · · · · · · · · · · | 0 87.4% |
| 주출입문 2114 뜬답이 철지되지 0,049 0,021 90.5% 7,0 2115 손잡이 형태 8,649 8,514 98.4% 8,10 | 6 93.7% |
| 2131 점형블록 형태 8,647 3,980 46.0% 2,8 | 9 32.6% |
| 2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8,647 3,938 45.5% 3,0 | 4 34.9% |
| 소계 60,539 49,348 81.5% 44,8 | 5 74.1% |
| 2141 문턱 높이차이 8,587 8,119 94.5% 7,50 | 9 87.4% |
| 2142 통과유효폭 8,587 8,406 97.9% 7,93 | 6 92.4% |
| 일반 2143 전·후면 유효거리 8,587 8,308 96.8% 7,4 | 6 87.1% |
| 출입문 2144 손잡이 위치 8,587 8,067 93.9% 6,63 | 9 78.0% |
| 2145 점지표지판 설치위치 8,587 2,886 33.6% 2,6 | 0 30.3% |
| 소계 42,935 35,786 83.3% 32,2 | 0 75.0% |
| 2211 유효폭 6,552 6,301 96.2% 6,0 | 4 91.8% |
| | 5 92.4% |
| 복도 2213 복도 통로상부의 유효높이 6,552 6,149 93.8% 5,9% | 6 90.4% |
| 소계 19,656 18,707 95.2% 17,95 | |

<부표 2-3-40> 업무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 세부항목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 적정설치· |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6,674 | 4,348 | 65.1% | 3,258 | 48.8% |
| | 3112 | 시각적 설비 | 6,674 | 3,968 | 59.5% | 3,373 | 50.5%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6,674 | 5,176 | 77.6% | 4,269 | 64.0%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6,674 | 4,726 | 70.8% | 4,726 | 70.8% |
|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6,674 | 2,008 | 30.1% | 2,008 | 30.1%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6,653 | 2,480 | 37.3% | 1,695 | 25.5%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6,653 | 2,480 | 37.3% | 1,691 | 25.4% |
| | | 소계 | 46,676 | 25,186 | 54.0% | 21,020 | 45.0% |
| | 3221 | 출입문 형태 | 9,622 | 5,115 | 53.2% | 4,854 | 50.4% |
| | 3222 | 통과 유효폭 | 9,622 | 5,205 | 54.1% | 5,205 | 54.1%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6,751 | 3,390 | 50.2% | 2,804 | 41.5%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2,871 | 1,991 | 69.3% | 1,742 | 60.7% |
| 대변기 | 3231 | 좌대 높이 | 9,622 | 5,569 | 57.9% | 5,443 | 56.6% |
| | 3232 | 수평손잡이 높이 | 9,622 | 5:00 35) | | | |

<부표 2-3-41> 업무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 세부항목 |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 | 4121 | 촉지도식 안내판 | 2,700 | 1,431 | 53.0% | 1,309 | 48.5% | | |
| | 4122 | 설치규격 | 2,700 | 1,373 | 50.9% | 1,315 | 48.7% | | |
| | 4123 | 점자표기방식 | 2,700 | 1,342 | 49.7% | 1,241 | 46.0% | | |
| 유도 및 | 4124 | 음성안내장치 | 174 | 97 | 55.7% | 54 | 31.0% | | |
| 안내설비 | 4125 |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 174 | 100 | 57.5% | 60 | 34.5% | | |
| | 4141 | 점자블록 형태 | 2,700 | 561 | 20.8% | 477 | 17.7% | | |
| | 41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2,700 | 560 | 20.7% | 560 | 20.7% | | |
| | 소계 | | 13,848 | 5,464 | 39.5% | 5,016 | 36.2% | | |
| 경보 및 피난설비 | 4211 | 시각장애인 설비(청각경보시스템) | 2,881 | 2,400 | 83.3% | 1,815 | 63.0% | | |
| | 4212 | 청각장애인 설비(시각경보시스템) | 2,877 | 2,186 | 76.0% | 1,611 | 56.0% | | |
| | 소계 | | 5,758 | 4,586 | 79.6% | 3,426 | 59.5% | | |
| | 1161 | 점자블록 형태 | 2,895 | 1,450 | 50.1% | 1,191 | 41.1% | | |
| 주출입구 접근로 | 116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2,895 | 1,444 | 49.9% | 1,254 | 43.3% | | |
| | 116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2,895 | 1,449 | 50.1% | 1,268 | 43.8% | | |
| | 소계 | | 8,685 | 4,343 | 50.0% | 3,713 | 42.8% | | |
| 계 | | | 28,291 | 14,393 | 50.9% | 12,155 | 43.0% | | |

<부표 2-3-42> 업무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안내시설

<부표 2-3-43> 업무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기타시설

| 세부항목 |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설치율(%) | |
|-------------|------|------------------|-------------|-----------------|-------|-------------------|-------|
| 접수대· 작업대 | 5321 | 편리한 접근성 및 이용성 | 2,880 | 2,738 | 95.1% | 2,738 | 95.1% |
| | 5322 | 작업대의 높이 | 2,880 | 2,534 | 88.0% | 2,534 | 88.0% |
| | 5323 | 하단 높이 | 2,880 | 2,592 | 90.0% | 2,422 | 84.1% |
| | 5324 | 휠체어 발받이 공간 | 2,880 | 2,538 | 88.1% | 1,854 | 64.4% |
| | 소계 | | 11,520 | 10,402 | 90.3% | 9,548 | 82.9% |
| 계 | | | 11,520 | 10,402 | 90.3% | 9,548 | 82.9% |

| | 세부 | 부항목 | 설치기준항 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4,335 | 4,243 | 97.9% | 4,114 | 94.9%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4,335 | 4,205 | 97.0% | 3,910 | 90.2%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4,335 | 4,136 | 95.4% | 3,817 | 88.1% |
| 주출입구 | 1131 | 접근로 유효폭 | 4,335 | 4,239 | 97.8% | 4,102 | 94.6% |
| 접근로 | 1132 | 기울기 | 4,335 | 4,042 | 93.2% | 3,518 | 81.2%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4,335 | 2,899 | 66.9% | 2,647 | 61.1%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4,335 | 3,000 | 69.2% | 2,775 | 64.0% |
| | | 소계 | 30,345 | 26,764 | 88.2% | 24,883 | 82.0%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305 | 271 | 88.9% | 217 | 71.1% |
| 장애인주 차구역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305 | 305 | 100.0% | 199 | 65.2% |
| | 1225 | 주차공간 확보 | 305 | 211 | 69.2% | 186 | 61.0% |
| | 1226 | 바닥마감 | 305 | 220 | 72.1% | 217 | 71.1% |
|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305 | 208 | 68.2% | 113 | 37.0% |
| | 1232 | 안전통행로 | 305 | 135 | | | |

<부표 2-3-44> 숙박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부표 2-3-45> 숙박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 | | | 설치기준 | | | 적정설 | 치수 및 |
|---------|--------------|------------------------------------|------------|-------------------|-----------------------|------------|-----------------------|
| | 세부 | 부항목 |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3,709 | 3,290 | 88.7% | 3,290 | 88.7% |
| | 2112 | 통과유효폭 | 3,709 | 3,539 | 95.4% | 3,539 | 95.4%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3,709 | 3,463 | 93.4% | 2,990 | 80.6% |
| 주출입문 | 2114 | 손잡이 설치위치 | 3,709 | 3,601 | 97.1% | 3,339 | 90.0% |
| | 2115 | 손잡이 형태 | 3,709 | 3,608 | 97.3% | 3,425 | 92.3%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3,734 | 586 | 15.7% | 470 | 12.6%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3,734 | 581 | 15.6% | 456 | 12.2% |
| | | 소계 | 26,013 | 18,668 | 71.8% | 17,509 | 67.3% |
| | 2141 | 문턱 높이차이 | 3,706 | 3,392 | 91.5% | 2,813 | 75.9% |
| | 2142 | 통과유효폭 | 3,706 | 3,574 | 96.4% | 3,256 | 87.9% |
| 일반 | 2143 | 전 후면 유효거리 | 3,706 | 3,535 | 95.4% | 2,988 | 80.6% |
| 출입문 | 2144 | 손잡이 위치 | 3,706 | 3,404 | 91.9% | 2,703 | 72.9% |
| | 2145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3,706 | 782 | 21.1% | 619 | 16.7% |
| | | 소계 | 18,530 | 14,687 | 79.3% | 12,379 | 66.8% |
| | 2211 | 유효폭 | 423 | 398 | 94.1% | 387 | 91.5% |
| | 2212 | 단차 | 423 | 405 | 95.7% | 392 | 92.7% |
| 복도 | 2213 | 복도 통로상부의 | 423 | 397 | 93.9% | 384 | 90.8% |
| | | 유효높이 | | | | | |
| | 0.40.4 | 소계 | 1,269 | 1,200 | 94.6% | 1,163 | 91.6% |
| | 2421 | 유효폭 | 115 | 112 | 97.4% | 96 | 83.5% |
| | 2422 | 챌면 설치 여부 | 115 | 113 | 98.3% | 113 | 98.3% |
| | 2423 | · 챌면의 높이, 디딤판 너비 | 115 | 114 | 99.1% | 94 | 81.7% |
| 계단 | 2424 | 손잡이 굵기 | 115 | 98 | 85.2% | 48 | 41.7% |
| 개한 | 2425 | 손잡이 연속설치 | 115 | 98 | 85.2% | 76 | 66.1% |
| | 2426 |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 115 | 54 | 47.0% | 37 | 32.2% |
| | 2427 | 점형블록 설치 | 115 | 33 | 28.7% | 27 | 23.5% |
| | 2428 | 손잡이 점자표기 | 115 | 20 | 17.4% | 16 | 13.9% |
| | 0.404 | 소계 | 920 | 642 | 69.8% | 507 | 55.1% |
| | 2431 | 경사로 유효폭 | 15 | 14 | 93.3% | 12 | 80.0% |
| | 2432 | 휴식참 | 15 | 15 | 100.0% | 12 | 80.0% |
| | 2433 | 기울기 1/12 | 15 | 15 | 100.0% | 12 | 80.0% |
| 74 11 7 | 2434 | 바닥면 재질 | 15 | 15 | 100.0% | 12 | 80.0% |
| 경사로 | 2435 | 휴식참 활동공간 | 15 | 15 | 100.0% | 12 | 80.0% |
| | 2436 | 손잡이 연속설치 | 15 | 15 | 100.0% | 10 | 66.7% |
| | 2437 | 손잡이 높이 | 15 15 | 15 | 100.0% | 10 | <u> </u> |
| | 2438 | 손잡이 굵기 | | 15 | 100.0% | 10 | |
| | 0441 | 소계 승강기 활동공간확보 | 120 287 | <u>119</u> 274 | <u>99.2%</u> 95.5% | 90 249 | <u>75.0%</u> 86.8% |
| | 2441 2443 | <u>응경기 철승승간목도</u> 유효비닥면적(08'이전) | | | | | |
| | 2443 | 유효바닥면적(08°이후) | 207 80 | <u>201</u> 80 | 97.1% 100.0% | 171 61 | <u>82.6%</u> 76.3% |
| | 2444 | 표요미덕면적(08·이우) 휠체어사용자용조직반 | 287 | 239 | 83.3% | 239 | 83.3% |
| | 2445 | _ 휠체어사용사용소식만 _ 조작반 높이 | 287 | 239 | 83.3% | 239 | <u>83.3%</u> 73.9% |
| | 2440 | <u>오직한 높이</u> 일반조작반 조작설비 | 287 | 244 287 | 100.0% | 212 | <u> </u> |
| 승강기 | 2447 | | 287 | 287 | 87.5% | 269 | <u> </u> |
| | 2448 | | 287 | 180 | 62.7% | 135 | <u> </u> |
| | 2449 | _ 점영글족 영태 _ 점형블록 설치위치 | 287 | | 67.6% | | <u> </u> |
| | 24410 | _ 점영글목 설지위지 _ 도착여부 표시, 도착음 | 287 | <u>194</u> 261 | 90.9% | 170 212 | <u> </u> |
| | 24411 | 포직어구 표시, 도직금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 287 | 261 | 90.9% 92.7% | 212 | <u> </u> |
| | 24412 | <u>점일등, 금경신오경지</u> 소계 | 2,870 | 2,477 | 92.7% 86.3% | 208 | 72.5% |
| | 2451 | | 2,870 | <u> </u> | 75.0% | 2,177 | <u> </u> |
| | 2451 | 요효바닥면적 | 4 | 4 | 100.0% | 2 | 50.0% |
| 휠체어 | 2452 | 호출벨, 작동설명서 등 | 4 | 3 | 75.0% | 3 | 75.0% |
| | 2-100 | <u>오늘리, 국장교상자 장</u> 소계 | 12 | 10 | 83.3% | 7 | 58.3% |
| | | 계 | 49,734 | 37,803 | 76.0% | 33,832 | 68.0% |
| | | · 1 | | 07,000 | 10.070 | 00,002 | 00.070 |

| | 세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설치·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449 | 292 | 65.0% | 226 | 50.3% |
| | 3112 | 시각적 설비 | 449 | 280 | 62.4% | 246 | 54.8% |
| 일반사항 | 3113 |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기능 통로 연결 여부 | 449 | 364 | 81.1% | 313 | 69.7% |
| | 3114 | 바닥 단차 | 449 | 344 | 76.6% | 344 | 76.6% |
|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449 | 194 | 43.2% | 194 | 43.2%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446 | 148 | 33.2% | 128 | 28.7%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446 | 148 | 33.2% | 124 | 27.8% |
| | | 소계 | 3,137 | 1,770 | 56.4% | 1,575 | 50.2% |
| | 3221 | 출입문 형태 | 567 | 318 | 56.1% | 313 | 55.2% |
| | 3222 | 통과 유효폭 | 567 | 337 | 59.4% | 337 | 59.4%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382 | 200 | 52.4% | 169 | 44.2%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185 | 141 | 76.2% | 121 | 65.4% |
| | 3231 | 좌대 높이 | 567 | 353 | 62.3% | 349 | 61.6% |
| 대변기 | 3232 | 수평손잡이 높이 | 567 | 327 | 57.7% | 279 | 49.2% |
| | 3233 | 수직손잡이 | 567 | 314 | 55.4% | 238 | 42.0% |
| | 3234 |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 567 | 310 | 54.7% | 212 | 37.4% |
| | 3235 | 세정장치 형태 | 567 | 288 | 50.8% | 187 | 33.0% |
| | 소계 | | 4,536 | 2,588 | 57.1% | 2,205 | 48.6% |
| | 3321 | 수평손잡이 높이 | 421 | 173 | 41.1% | 162 | 38.5% |
| | 3322 | 수평손잡이 길이 | 421 | 173 | 41.1% | 167 | 39.7% |
| | 3323 | 좌우 손잡이 간격 | 421 | 171 | 40.6% | 164 | 39.0% |
| 소변기 | 3324 | 수직손잡이 높이 | 421 | 170 | 40.4% | 159 | 37.8% |
| | 3325 | 수직손잡이 길이 | 421 | 170 | 40.4% | 162 | 38.5% |
| | | 소계 | 2,105 | 857 | 40.7% | 814 | 38.7% |
| | 3421 | 세면대 상·하단높이 | 566 | 423 | 74.7% | 381 | 67.3% |
| 네마르미 | 3422 |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 566 | 406 | 71.7% | 362 | 64.0% |
| 세면대 | 3423 | 숫도꼴진혁태 _운 점자표시 | 566 | 410 | 72.4% | 135 | 23.9% |
| | | 소계 | 1,698 | 1,239 | 73.0% | 878 | 51.7% |
| | | 계 | 11,476 | 6,454 | 56.2% | 5,472 | 47.7% |

<부표 2-3-46> 숙박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 세부항목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 1161 | 점자블록 형태 | 570 | 148 | 26.0% | 127 | 22.3% |
| 주출입구 | 116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570 | 146 | 25.6% | 135 | 23.7% |
| 접근로 | 116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570 | 146 | 25.6% | 138 | 24.2% |
| | 소계 | | 1,710 | 440 | 25.7% | 400 | 23.4% |
| 계 | | | 1,710 | 440 | 25.7% | 400 | 23.4% |

<부표 2-3-47> 숙박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안내시설

<부표 2-3-48> 숙박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기타시설

| 세브하모 | 설치기준 | 설치수 및 | 적정설치수 및 |
|------|----------|--------|----------|
| 세부항목 | <u> </u> | 설치율(%) | 적정설치율(%) |

フリームテレー

| | 세부 | 브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5,483 | 5,434 | 99.1% | 5,310 | 96.8%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5,483 | 5,388 | 98.3% | 5,078 | 92.6%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5,483 | 5,274 | 96.2% | 4,903 | 89.4% |
| 주출입구 접근로 | 1131 | 접근로 유효폭 | 5,483 | 5,415 | 98.8% | 5,286 | 96.4% |
| 접근도 | 1132 | 기울기 | 5,483 | 5,144 | 93.8% | 4,584 | 83.6%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5,483 | 2,856 | 52.1% | 2,416 | 44.1%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5,483 | 3,225 | 58.8% | 2,931 | 53.5% |
| | | 소계 | 38,381 | 32,736 | 85.3% | 30,508 | 79.5%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1,870 | 1,285 | 68.7% | 1,050 | 56.1% |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1,870 | 1,870 | 100.0% | 859 | 45.9% |
| | 1225 | 주차공간 확보 | 1,870 | 1,045 | 55.9% | 913 | 48.8% |
| 장애인주 차구역 | 1226 | 바닥마감 | 1,870 | 1,093 | 58.4% | 1,066 | 57.0% |
| ~ ~ ~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1,870 | 1,029 | 55.0% | 502 | 26.8% |
| | 1232 | 안전통행로 | 1,870 | 605 | 32.4% | 445 | 23.8% |
| | 소계 | | 11,220 | 6,927 | 61.7% | 4,835 | 43.1%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5,438 | 3,303 | 60.7% | 2,902 | 53.4%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5,438 | 3,327 | 61.2% | 3,142 | 57.8% |
| | 1323 | 휴식참 | 5,438 | 3,089 | 56.8% | 2,990 | 55.0%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5,438 | 3,270 | 60.1% | 3,184 | 58.6% |
|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5,438 | 3,204 | 58.9% | 3,071 | 56.5% |
| 높이차이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5,438 | 2,920 | 53.7% | 2,780 | 51.1% |
| 제거 | 1327 | 손잡이 높이 | 5,438 | 2,914 | 53.6% | 2,850 | 52.4% |
| | 1328 | 손잡이 굵기 | 5,438 | 2,919 | 53.7% | 2,806 | 51.6%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5,138 | 1,001 | 19.5% | 849 | 16.5%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5,138 | 987 | 19.2% | 845 | 16.4%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5,138 | 987 | 19.2% | 885 | 17.2% |
| | | 소계 | 58,918 | 27,921 | 47.4% | 26,304 | 44.6% |
| | | 계 | 108,519 | 67,584 | 62.3% | 61,647 | 56.8% |

<부표 2-3-49> 공장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세부항목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4,883 | 4,137 | 84.7% | 4,137 | 84.7% |
| | 2112 | 통과유효폭 | 4,883 | 4,632 | 94.9% | 4,632 | 94.9%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4,883 | 4,474 | 91.6% | 4,064 | 83.2% |
| ㅈᄎ이ᄆ | 2114 | 손잡이 설치위치 | 4,883 | 4,626 | 94.7% | 4,149 | 85.0% |
| 주출입문 | 2115 | 손잡이 형태 | 4,883 | 4,589 | 94.0% | 4,230 | 86.6%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4,886 | 870 | 17.8% | 684 | 14.0%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4,886 | 858 | 17.0% | | |

<부표 2-3-50> 공장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 | 세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4,436 | 1,808 | 40.8% | 1,378 | 31.1% |
| | 3112 | 시각적 설비 | 4,436 | 2,147 | 48.4% | 1,822 | 41.1%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회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4,436 | 2,973 | 67.0% | 2,361 | 53.2%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4,436 | 2,243 | 50.6% | 2,243 | 50.6% |
| 0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4,436 | 821 | 18.5% | 821 | 18.5%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4,403 | 779 | 17.7% | 589 | 13.4%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4,403 | 779 | 17.7% | 635 | 14.4% |
| | | 소계 | 30,986 | 11,550 | 37.3% | 9,849 | 31.8% |
| | 3221 | 출입문 형태 | 5,406 | 1,573 | 29.1% | 1,480 | 27.4% |
| | 3222 | 통과 유효폭 | 5,406 | 1,509 | 27.9% | 1,509 | 27.9%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4,312 | 797 | 18.5% | 658 | 15.3%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1,094 | 760 | 69.5% | 648 | 59.2% |
| - 비 버너 그 네 | 3231 | 좌대 높이 | 5,406 | 1,665 | 30.8% | 1,607 | 29.7% |
| 대변기 | 3232 | 수평손잡이 높이 | 5,406 | 1,453 | 26.9% | 1,289 | 23.8% |
| | 3233 | 수직손잡이 | 5,406 | 1,406 | 26.0% | 1,111 | 20.6% |
| | 3234 |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 5,406 | 1,415 | 26.2% | 1,001 | 18.5% |
| | 3235 | 세정장치 형태 | 5,406 | 1,267 | 23.4% | 669 | 12.4% |
| | | 소계 | 43,248 | 11,845 | 27.4% | 9,972 | 23.1% |
| | 3321 | 수평손잡이 높이 | 4,392 | 846 | 19.3% | 803 | 18.3% |
| | 3322 | 수평손잡이 길이 | 4,392 | 845 | 19.2% | 831 | 18.9% |
| | 3323 | 좌우 손잡이 간격 | 4,392 | 843 | 19.2% | 827 | 18.8% |
| 소변기 | 3324 | 수직손잡이 높이 | 4,392 | 842 | 19.2% | 800 | 18.2% |
| | 3325 | 수직손잡이 길이 | 4,392 | 840 | 19.1% | 819 | 18.6% |
| | | 소계 | 21,960 | 4,216 | 19.2% | 4,080 | 18.6% |
| | | 계 | 96,194 | 27,611 | 28.7% | 23,901 | 24.8% |

<부표 2-3-51> 공장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부표 2-3-52> 자동차관련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 보 2 3 322 지 8 부항목 | 설치기준항 목수 | 설치수 및 | | 적정설: 적정설: | |
|-------------|------|----------------------|-------------|--------|--------|--------------|-------|
| | | | <u> </u> | | | 작성설/ | 시귤(%)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1,501 | 1,481 | 98.7% | 1,432 | 95.4%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1,501 | 1,444 | 96.2% | 1,345 | 89.6%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1,501 | 1,426 | 95.0% | 1,319 | 87.9% |
| 주출입구 접근로 | 1131 | 접근로 유효폭 | 1,501 | 1,468 | 97.8% | 1,427 | 95.1% |
| | 1132 | 기울기 | 1,501 | 1,421 | 94.7% | 1,281 | 85.3%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1,501 | 984 | 65.6% | 893 | 59.5%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1,501 | 1,038 | 69.2% | 947 | 63.1% |
| | | 소계 | 10,507 | 9,262 | 88.2% | 8,644 | 82.3%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807 | 589 | 73.0% | 408 | 50.6% |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807 | 807 | 100.0% | 400 | 49.6% |
| | 1225 | 주차공간 확보 | 807 | 450 | 55.8% | 379 | 47.0% |
| 장애인주 차구역 | 1226 | 바닥마감 | 807 | 470 | 58.2% | 454 | 56.3% |
| ~ ~ ~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807 | 468 | 58.0% | 199 | 24.7% |
| | 1232 | 안전통행로 | 807 | 257 | 31.8% | 203 | 25.2% |
| | 소계 | | 4,842 | 3,041 | 62.8% | 2,043 | 42.2%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1,483 | 1,200 | 80.9% | 1,093 | 73.7%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1,483 | 1,207 | 81.4% | 1,157 | 78.0% |
| | 1323 | 휴식참 | 1,483 | 1,177 | 79.4% | 1,155 | 77.9%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1,483 | 1,203 | 81.1% | 1,180 | 79.6% |
|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1,483 | 1,197 | 80.7% | 1,156 | 78.0% |
| 높이차이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1,483 | 1,153 | 77.7% | 1,112 | 75.0% |
| 제거 | 1327 | 손잡이 높이 | 1,483 | 1,153 | 77.7% | 1,133 | 76.4% |
| | 1328 | 손잡이 굵기 | 1,483 | 1,153 | 77.7% | 1,123 | 75.7%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1,345 | 283 | 21.0% | 240 | 17.8%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345 | 281 | 20.9% | 226 | 16.8%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1,345 | 281 | 20.9% | 244 | 18.1% |
| | | 소계 | 15,899 | 10,288 | 64.7% | 9,819 | 61.8% |
| | | 계 | 31,248 | 22,591 | 72.3% | 20,506 | 65.6% |

| | | | 설치기준 | | | 적정설치 | 치수 미 |
|------|-------|-------------------|-------------|-------|--------|--------------|--------------|
| | 세부 | 부하목 | 실지기군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철/ 적정설: |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133 | 94 | 70.7% | <u>94</u> | <u>70.7%</u> |
| | 2112 | 통과유효폭 | 133 | 128 | 96.2% | 128 | 96.2%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133 | 117 | 88.0% | 97 | 72.9% |
| 고수하고 | 2114 | 손잡이 설치위치 | 133 | 128 | 96.2% | 102 | 76.7% |
| 주출입문 | 2115 | 손잡이 형태 | 133 | 130 | 97.7% | 111 | 83.5%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134 | 19 | 14.2% | 14 | 10.4%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34 | 18 | 13.4% | 14 | 10.4% |
| | | 소계 | 933 | 634 | 68.0% | 560 | 60.0% |
| | 2141 | 문턱 높이차이 | 131 | 113 | 86.3% | 76 | 58.0% |
| 일반 | 2142 | 통과유효폭 | 131 | 124 | 94.7% | 105 | 80.2% |
| | 2143 | 전·후면 유효거리 | 131 | 122 | 93.1% | 101 | 77.1% |
| 출입문 | 2144 | 손잡이 위치 | 131 | 108 | 82.4% | 75 | 57.3% |
| | 2145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131 | 26 | 19.8% | 21 | 16.0% |
| | | 소계 | 655 | 493 | 75.3% | 378 | 57.7% |
| | 2211 | 유효폭 | 126 | 115 | 91.3% | 107 | 84.9% |
| | 2212 | 단차 | 126 | 113 | 89.7% | 105 | 83.3% |
| 복도 | 2213 | 복도 통로상부의 유효높이 | 126 | 112 | 88.9% | 106 | 84.1% |
| | | 소계 | 378 | 340 | 89.9% | 318 | 84.1% |
| | 2421 | 유효폭 | 51 | 48 | 94.1% | 45 | 88.2% |
| | 2422 | 챌면 설치 여부 | 51 | 41 | 80.4% | 41 | 80.4% |
| | 2423 | 챌면의 높이, 디딤판 너비 | 51 | 45 | 88.2% | 35 | 68.6% |
| | 2424 | 손잡이 굵기 | 51 | 39 | 76.5% | 14 | 27.5% |
| 계단 | 2425 | 손잡이 연속설치 | 51 | 37 | 72.5% | 25 | 49.0% |
| | 2426 |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 51 | 17 | 33.3% | 4 | 7.8% |
| | 2427 | 점형블록 설치 | 51 | 6 | 11.8% | 3 | 5.9% |
| | 2428 | 손잡이 점자표기 | 51 | 4 | 7.8% | 2 | 3.9% |
| | | 소계 | 408 | 237 | 58.1% | 169 | 41.4% |
| | 2431 | 경사로 유효폭 | 6 | 4 | 66.7% | 4 | 66.7% |
| | 2432 | 휴식참 | 6 | 4 | 66.7% | 3 | 50.0% |
| | 2433 | 기울기 1/12 | 6 | 5 | 83.3% | 3 | 50.0% |
| | 2434 | 바닥면 재질 | 6 | 6 | 100.0% | 4 | 66.7% |
| 경사로 | 2435 | 휴식참 활동공간 | 6 | 6 | 100.0% | 4 | 66.7% |
| | 2436 | 손잡이 연속설치 | 6 | 6 | 100.0% | 3 | 50.0% |
| | 2437 | 손잡이 높이 | 6 | 6 | 100.0% | 4 | 66.7% |
| | 2438 | 손잡이 굵기 | 6 | 6 | 100.0% | 1 | 16.7% |
| | | 소계 | 48 | 43 | 89.6% | 26 | 54.2% |
| | 2441 | 승강기 활동공간확보 | 13 | 11 | 84.6% | 11 | 84.6% |
| | 2443 | 유효비닥면적(08'이전) | 9 | 8 | 88.9% | 7 | 77.8% |
| | 2444 | 유효비닥면적(08'이후) | 4 | 4 | 100.0% | 4 | 100.0% |
| | 2445 | 휠체어사용자용조작반 | 13 | 10 | 76.9% | 10 | 76.9% |
| | 2446 | 조작반 높이 | 13 | 10 | 76.9% | 9 | 69.2% |
| 승강기 | 2447 | 일반조작반 조작설비 | 13 | 13 | 100.0% | 11 | 84.6% |
| 001 | 2448 | 조작반 점자표지 | 13 | 11 | 84.6% | 11 | 84.6% |
| | 2449 | 점형블록 형태 | 13 | 10 | 76.9% | 7 | 53.8% |
| | 24410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3 | 10 | 76.9% | 10 | 76.9% |
| | 24411 | 도착여부 표시, 도착음 | 13 | 11 | 84.6% | 10 | 76.9% |
| | 24412 |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 13 | 11 | 84.6% | 9 | 69.2% |
| | | 소계 | 130 | 109 | 83.8% | 99 | 76.2% |
| | | 계 | 2,552 | 1,856 | 72.7% | 1,550 | 60.7% |

<부표 2-3-53> 자동차관련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부표 2-3-54> 자동차관련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 | 세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131 | 60 | 45.8% | 47 | 35.9% |
| | 3112 | 시각적 설비 | 131 | 46 | 35.1% | 32 | 24.4%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회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131 | 88 | 67.2% | 62 | 47.3%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131 | 60 | 45.8% | 60 | 45.8% |
|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131 | 21 | 16.0% | 21 | 16.0%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130 | 12 | 9.2% | 10 | 7.7%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30 | 12 | 9.2% | 9 | 6.9% |
| | | 소계 | 915 | 299 | 32.7% | 241 | 26.3% |
| | 3221 | 출입문 형태 | 152 | 44 | 28.9% | 36 | 23.7% |
| | 3222 | 통과 유효폭 | 152 | 41 | 27.0% | 41 | 27.0%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134 | 37 | 27.6% | 27 | 20.1%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18 | 8 | 44.4% | 7 | 38.9% |
| | 3231 | 좌대 높이 | 152 | 55 | 36.2% | 50 | 32.9% |
| 대변기 | 3232 | 수평손잡이 높이 | 152 | 46 | 30.3% | 32 | 21.1% |
| | 3233 | 수직손잡이 | 152 | 37 | 24.3% | 22 | 14.5% |
| | 3234 |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 152 | 43 | 28.3% | 18 | 11.8% |
| | 3235 | 세정장치 형태 | 152 | 30 | 19.7% | 11 | 7.2% |
| | | 소계 | 1,216 | 341 | 28.0% | 244 | 20.1% |
| | | 계 | 2,131 | 640 | 30.0% | 485 | 22.8% |

| | 세부 | 브하목 | 설치기준항 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205 | 203 | 99.0% | 199 | 97.1% |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205 | 200 | 97.6% | 179 | 87.3% |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205 | 195 | 95.1% | 174 | 84.9% | |
| 주출입구 접근로 | 1131 | 접근로 유효폭 | 205 | 203 | 99.0% | 198 | 96.6% | |
| | 1132 | 기울기 | 205 | 193 | 94.1% | 166 | 81.0% |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205 | 143 | 69.8% | 124 | 60.5% |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205 | 147 | 71.7% | 130 | 63.4% | |
| | | 소계 | 1,435 | 1,284 | 89.5% | 1,170 | 81.5% |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110 | 104 | 94.5% | 82 | 74.5% | |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110 | 110 | 100.0% | 64 | 58.2% | |
| | 1225 | 주차공간 확보 | 110 | 76 | 69.1% | 69 | 62.7% | |
| 장애인주 차구역 | 1226 | 바닥마감 | 110 | 78 | 70.9% | 75 | 68.2% | |
|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110 | 78 | 70.9% | 28 | 25.5% | |
| | 1232 | 안전통행로 | 110 | 46 | 41.8% | 33 | 30.0% | |
| | | 소계 | 660 | 492 | 74.5% | 351 | 53.2% |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196 | 160 | 81.6% | 127 | 64.8% |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196 | 160 | 81.6% | 147 | 75.0% | |
| | 1323 | 휴식참 | 196 | 143 | 73.0% | 136 | 69.4% |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196 | 159 | 81.1% | 149 | 76.0% | |
|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196 | 155 | 79.1% | 136 | 69.4% | |
| 높이차이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196 | 135 | 68.9% | 116 | 59.2% | |
| 제거 | 1327 | 손잡이 높이 | 196 | 134 | 68.4% | 122 | 62.2% | |
| | 1328 | 손잡이 굵기 | 196 | 134 | 68.4% | 121 | 61.7% |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192 | 62 | 32.3% | 47 | 24.5% |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92 | 61 | 31.8% | 46 | 24.0% |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192 | 62 | 32.3% | 52 | 27.1% | |
| | | 소계 | 2,144 | 1,365 | 63.7% | 1,199 | 55.9% | |
| | | 계 | 4,239 | 3,141 | 74.1% | 2,720 | 64.2% | |

<부표 2-3-55> 방송통신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부표 2-3-56> 방송통신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 | | | 설치기준 | | | 적정설치 | 치수 민 |
|------|-------|-------------------|-------|-------|---------|---|--------------|
| | 세부 | 부하목 |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173 | 161 | 93.1% | <u>– – – – – – – – – – – – – – – – – – – </u> | <u>93.1%</u> |
| | 2112 | 통과유효폭 | 173 | 169 | 97.7% | 169 | 97.7%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173 | 165 | 95.4% | 156 | 90.2% |
| | 2114 | 손잡이 설치위치 | 173 | 171 | 98.8% | 153 | 88.4% |
| 주출입문 | 2115 | 손잡이 형태 | 173 | 171 | 98.8% | 160 | 92.5%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180 | 71 | 39.4% | 43 | 23.9%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80 | 71 | 39.4% | 55 | 30.6% |
| | | 소계 | 1,225 | 979 | 79.9% | 897 | 73.2% |
| | 2141 | 문턱 높이차이 | 173 | 163 | 94.2% | 149 | 86.1% |
| | 2142 | 통과유효폭 | 173 | 169 | 97.7% | 161 | 93.1% |
| 일반 | 2143 | 전·후면 유효거리 | 173 | 168 | 97.1% | 153 | 88.4% |
| 출입문 | 2144 | 손잡이 위치 | 173 | 168 | 97.1% | 137 | 79.2% |
| | 2145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173 | 46 | 26.6% | 38 | 22.0% |
| | | 소계 | 865 | 714 | 82.5% | 638 | 73.8% |
| | 2211 | 유효폭 | 145 | 139 | 95.9% | 132 | 91.0% |
| | 2212 | 단차 | 145 | 136 | 93.8% | 135 | 93.1% |
| 복도 | 2213 | 복도 통로상부의 유효높이 | 145 | 136 | 93.8% | 134 | 92.4% |
| | | 소계 | 435 | 411 | 94.5% | 401 | 92.2% |
| | 2421 | 유효폭 | 11 | 11 | 100.0% | 10 | 90.9% |
| | 2422 | 챌면 설치 여부 | 11 | 11 | 100.0% | 11 | 100.0% |
| | 2423 | 챌면의 높이, 디딤판 너비 | 11 | 9 | 81.8% | 9 | 81.8% |
| | 2424 | 손잡이 굵기 | 11 | 9 | 81.8% | 5 | 45.5% |
| 계단 | 2425 | 손잡이 연속설치 | 11 | 9 | 81.8% | 8 | 72.7% |
| | 2426 |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 11 | 5 | 45.5% | 2 | 18.2% |
| | 2427 | 점형블록 설치 | 11 | 2 | 18.2% | 2 | 18.2% |
| | 2428 | 손잡이 점자표기 | 11 | 3 | 27.3% | 3 | 27.3% |
| | | 소계 | 88 | 59 | 67.0% | 50 | 56.8% |
| | 2441 | 승강기 활동공간확보 | 30 | 29 | 96.7% | 29 | 96.7% |
| | 2443 | 유효바닥면적(08'이전) | 27 | 27 | 100.0% | 25 | 92.6% |
| | 2444 | 유효바닥면적(08'이후) | 3 | 3 | 100.0% | 3 | 100.0% |
| | 2445 | 휠체어사용자용조작 반 | 30 | 25 | 83.3% | 25 | 83.3% |
| | 2446 | 조작반 높이 | 30 | 26 | 86.7% | 24 | 80.0% |
| 승강기 | 2447 | 일반조작반 조작설비 | 30 | 30 | 100.0% | 29 | 96.7% |
| | 2448 | 조작반 점자표지 | 30 | 27 | 90.0% | 27 | 90.0% |
| | 2449 | 점형블록 형태 | 30 | 22 | 73.3% | 13 | 43.3% |
| | 24410 | 점형블록 설치위치 | 30 | 22 | 73.3% | 18 | 60.0% |
| | 24411 | 도착여부 표시, 도착음 | 30 | 26 | 86.7% | 21 | 70.0% |
| | 24412 |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 30 | 27 | 90.0% | 22 | 73.3% |
| | | 소계 | 300 | 264 | 88.0% | 236 | 78.7% |
| | 2451 | 활동공간 확보 | 1 | 1 | 100.0% | 1 | 100.0% |
| | 2452 | 유효바닥면적 | 1 | 1 | 100.0% | 1 | 100.0% |
| 휠체어 | 2453 | 호출벨 등의 설치 상황 | 1 | 1 | 100.0% | 1 | 100.0% |
| | | 소계 | 3 | 3 | 100.0% | 3 | 100.0% |
| | | | | | 100.070 | | 100.070 |

| | 세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144 | 106 | 73.6% | 81 | 56.3% |
| | 3112 | 시각적 설비 | 144 | 98 | 68.1% | 83 | 57.6%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회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144 | 121 | 84.0% | 109 | 75.7%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144 | 119 | 82.6% | 119 | 82.6% |
| 22.0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144 | 43 | 29.9% | 43 | 29.9%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144 | 51 | 35.4% | 32 | 22.2%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44 | 51 | 35.4% | 38 | 26.4% |
| | | 소계 | 1,008 | 589 | 58.4% | 505 | 50.1% |
| | 3221 | 출입문 형태 | 200 | 138 | 69.0% | 133 | 66.5% |
| | 3222 | 통과 유효폭 | 200 | 141 | 70.5% | 141 | 70.5%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154 | 110 | 71.4% | 98 | 63.6%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46 | 36 | 78.3% | 29 | 63.0% |
| 대변기 | 3231 | 좌대 높이 | 200 | 146 | 73.0% | 143 | 71.5% |
| 대인기 | 3232 | 수평손잡이 높이 | 200 | 139 | 69.5% | 123 | 61.5% |
| | 3233 | 수직손잡이 | 200 | 133 | 66.5% | 93 | 46.5% |
| | 3234 |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 200 | 136 | 68.0% | 90 | 45.0% |
| | 3235 | 세정장치 형태 | 200 | 107 | 53.5% | 73 | 36.5% |
| | 소계 | | 1,600 | 1,086 | 67.9% | 923 | 57.7% |
| | | 계 | 2,608 | 1,675 | 64.2% | 1,428 | 54.8% |

<부표 2-3-57> 방송통신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부표 2-3-58> 교정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세부 | 브하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36 | 36 | 100.0% | 36 | 100.0%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36 | 36 | 100.0% | 36 | 100.0%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36 | 36 | 100.0% | 35 | 97.2% |
| 주출입구 접근로 | 1131 | 접근로 유효폭 | 36 | 36 | 100.0% | 35 | 97.2% |
| | 1132 | 기울기 | 36 | 31 | 86.1% | 29 | 80.6%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36 | 25 | 69.4% | 21 | 58.3%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36 | 26 | 72.2% | 21 | 58.3% |
| | | 소계 | 252 | 226 | 89.7% | 213 | 84.5%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23 | 23 | 100.0% | 17 | 73.9% |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23 | 23 | 100.0% | 18 | 78.3% |
| | 1225 | 주차공간 확보 | 23 | 20 | 87.0% | 17 | 73.9% |
| 장애인주 차구역 | 1226 | 바닥마감 | 23 | 22 | 95.7% | 22 | 95.7% |
|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23 | 22 | 95.7% | 9 | 39.1% |
| | 1232 | 안전통행로 | 23 | 10 | 43.5% | 8 | 34.8% |
| | | 소계 | 138 | 120 | 87.0% | 91 | 65.9%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35 | 33 | 94.3% | 21 | 60.0%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35 | 32 | 91.4% | 31 | 88.6% |
| | 1323 | 휴식참 | 35 | 30 | 85.7% | 29 | 82.9%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35 | 33 | 94.3% | 31 | 88.6% |
|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35 | 32 | 91.4% | 29 | 82.9% |
| 높이차이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35 | 29 | 82.9% | 28 | 80.0% |
| 제거 | 1327 | 손잡이 높이 | 35 | 29 | 82.9% | 28 | 80.0% |
| | 1328 | 손잡이 굵기 | 35 | 29 | 82.9% | 25 | 71.4%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34 | 10 | 29.4% | 8 | 23.5%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34 | 10 | 29.4% | 8 | 23.5%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34 | 10 | 29.4% | 8 | 23.5% |
| 소계 | | | 382 | 277 | 72.5% | 246 | 64.4% |
| | | 계 | 772 | 623 | 80.7% | 550 | 71.2% |

| 세부항목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0111 | | ÷ | | 07.00/ | |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33 | 32 | 97.0% | 32 | 97.0% |
| | 2112 | 통과유효폭 | 33 | 33 | 100.0% | 33 | 100.0%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손잡이 설치위치 | 33 | 33 | 100.0% | 30 | 90.9% |
| 주출입문 | 2114 | | 33 | 33 | 100.0% | 28 | 84.8% |
| | 2115 2131 | 손잡이 형태 점형블록 형태 | <u>33</u> 34 | <u>33</u> 10 | 100.0% 29.4% | <u> </u> | <u>90.9%</u> 14.7% |
| | 2131 | 점형블록 형네 점형블록 설치위치 | 34 | 10 | 29.4% | 8 | 23.5% |
| | 2152 | _ <u>김 항 글 두 글 지 뒤 지</u> | 233 | 184 | 79.0% | 166 | 71.2% |
| | 2141 | 문턱 높이차이 | 33 | 33 | 100.0% | 30 | 90.9% |
| | 2141 | 통과유효폭 | 33 | 33 | 100.0% | 30 | 90.9% |
| 일반 | 2142 | 전·후면 유효거리 | 33 | 32 | 97.0% | 29 | <u> </u> |
| 글 ⁻ | 2143 | | 33 | 30 | 97.0% | 18 | <u> </u> |
| 혼난군 | 2144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33 | 7 | 21.2% | 5 | 15.2% |
| | 214J | <u> 김지표지원 일지되지</u> 소계 | 165 | 135 | 81.8% | 112 | 67.9% |
| | 2211 | 유효폭 | 33 | 33 | 100.0% | 31 | 93.9% |
| | 2212 | <u> </u> | 33 | 33 | 100.0% | 33 | 100.0% |
| 복도 | | 복도 통로상부의 | | | | | 100.070 |
| 7- | 2213 | 두고 8고8구ㅋ 유효높이 | 33 | 31 | 93.9% | 29 | 87.9% |
| | | 소계 | 99 | 97 | 98.0% | 93 | 93.9% |
| | 2421 | 유효폭 | 9 | 9 | 100.0% | 9 | 100.0% |
| | 2422 | 챌면 설치 여부 | 9 | 9 | 100.0% | 9 | 100.0% |
| | 2423 | 챌면의 높이, 디딤판 너비 | 9 | 9 | 100.0% | 8 | 88.9% |
| 711 - 1 | 2424 | 손잡이 굵기 | 9 | 6 | 66.7% | 1 | 11.1% |
| 계단 | 2425 | 손잡이 연속설치 | 9 | 6 | 66.7% | 5 | 55.6% |
| | 2426 |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 9 | 2 | 22.2% | - | 0.0% |
| | 2427 | 점형블록 설치 | 9 | 2 | 22.2% | 1 | 11.1% |
| | 2428 | 손잡이 점자표기 | 9 | 2 | 22.2% | 2 | 22.2% |
| | | 소계 | 72 | 45 | 62.5% | 35 | 48.6% |
| | 2441 | 승강기 활동공간확보 | 2 | 2 | 100.0% | 2 | 100.0% |
| | 2443 | 유효바닥면적(08'이전) | 2 | 2 | 100.0% | 2 | 100.0% |
| | 2444 | 유효바닥면적(08'이후) | _ | _ | - | - | |
| | 2445 | 휠체어사용자용조작 반 | 2 | 2 | 100.0% | 2 | 100.0% |
| | 2446 | 조작반 높이 | 2 | 1 | 50.0% | 1 | 50.0% |
| | 2447 | 일반조작반 조작설비 | 2 | 2 | 100.0% | 2 | 100.0% |
| 승강기 | 2448 | 조작반 점자표지 | 2 | 2 | 100.0% | 2 | 100.0% |
| <u>2</u> 31 | 2449 | 점형블록 형태 | 2 | 1 | 50.0% | - | - |
| | 2441 0 | 점형블록 설치위치 | 2 | 1 | 50.0% | 1 | 50.0% |
| | 2441 1 | 도착여부 표시, 도착음 | 2 | 2 | 100.0% | 1 | 50.0% |
| | 2441 2 |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 2 | 2 | 100.0% | 1 | 50.0% |
| | - | 소계 | 20 | 17 | 85.0% | 14 | 70.0% |
| | 2451 | 활동공간 확보 | 1 | 1 | 100.0% | 1 | 100.0% |
| | 2452 | 유효바닥면적 | 1 | 1 | 100.0% | 1 | 100.0% |
| 휠체어 | 2453 | 호출벨 등의 설치 상황 | 1 | 1 | 100.0% | 1 | 100.0% |
| | | <u>- </u> 소계 | 3 | 3 | 100.0% | 3 | 100.0% |
| | | 계 | 592 | 481 | 81.3% | 423 | 71.5% |

<부표 2-3-59> 교정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 | 세·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34 | 31 | 91.2% | 20 | 58.8% |
| | 3112 | 시각적 설비 | 34 | 19 | 55.9% | 15 | 44.1%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34 | 30 | 88.2% | 23 | 67.6%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34 | 31 | 91.2% | 31 | 91.2% |
|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34 | 3 | 8.8% | 3 | 8.8%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34 | 6 | 17.6% | 4 | 11.8%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34 | 6 | 17.6% | 5 | 14.7% |
| | | 소계 | 238 | 126 | 52.9% | 101 | 42.4% |
| | 3221 | 출입문 형태 | 36 | 27 | 75.0% | 26 | 72.2% |
| | 3222 | 통과 유효폭 | 36 | 30 | 83.3% | 30 | 83.3% |
| | 3224 4 | 바닥면크기(05'이전) | 221 | 23 | 79.3% | 18 | 58.6%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7 | 6 | 76. 74.1 | | |

<부표 2-3-60> 교정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대변기

| | 세부 | 브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98 | 97 | 99.0% | 95 | 96.9% |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98 | 92 | 93.9% | 84 | 85.7% |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98 | 91 | 92.9% | 81 | 82.7% | |
| 주출입구 | 1131 | 접근로 유효폭 | 98 | 97 | 99.0% | 97 | 99.0% | |
| 접근로 | 1132 | 기울기 | 98 | 79 | 80.6% | 61 | 62.2% |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98 | 57 | 58.2% | 52 | 53.1% |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98 | 60 | 61.2% | 54 | 55.1% | |
| | | 소계 | 686 | 573 | 83.5% | 524 | 76.4% |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36 | 33 | 91.7% | 30 | 83.3% | |
| 장애인주 차구역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36 | 36 | 100.0% | 24 | 66.7% | |
| | 1225 | 주차공간 확보 | 36 | 31 | 86.1% | 28 | 77.8% | |
| | 1226 | 바닥마감 | 36 | 31 | 86.1% | 31 | 86.1% | |
| ~ ~ ~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36 | 30 | 83.3% | 13 | 36.1% | |
| | 1232 | 안전통행로 | 36 | 17 | 47.2% | 14 | 38.9% | |
| | | 소계 | 216 | 178 | 82.4% | 140 | 64.8% |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93 | 69 | 74.2% | 56 | 60.2% |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93 | 70 | 75.3% | 67 | 72.0% | |
| | 1323 | 휴식참 | 93 | 65 | 69.9% | 61 | 65.6% |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93 | 69 | 74.2% | 67 | 72.0% | |
|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93 | 69 | 74.2% | 66 | 71.0% | |
| 높이차이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93 | 59 | 63.4% | 53 | 57.0% | |
| 제거 | 1327 | 손잡이 높이 | 93 | 59 | 63.4% | 54 | 58.1% | |
| | 1328 | 손잡이 굵기 | 93 | 59 | 63.4% | 57 | 61.3% |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91 | 19 | 20.9% | 15 | 16.5% |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91 | 19 | 20.9% | 16 | 17.6% |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91 | 19 | 20.9% | 14 | 15.4% | |
| 소계 | | 1,017 | 576 | 56.6% | 526 | 51.7% | | |
| | | 계 | 1,919 | 1,327 | 69.2% | 1,190 | 62.0% | |

<부표 2-3-61> 묘지관련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세부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84 | 68 | 81.0% | 68 | 81.0% |
| | 2112 | 통과유효폭 | 84 | 79 | 94.0% | 79 | 94.0%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84 | 79 | 94.0% | 74 | 88.1% |
| ㅈᄎ이ㅁ | 2114 | 손잡이 설치위치 | 84 | 77 | 91.7% | 74 | 88.1% |
| 주출입문 | 2115 | 손잡이 형태 | 84 | 77 | 91.7% | 74 | 88.1%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85 | 24 | 28.2% | 15 | 17.6%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85 | 25 | 29.4% | 18 | 21.2% |
| | 소계 | | 590 | 429 | 72.7% | 402 | 68.1% |
| | 2141 | 문턱 높이차이 | 84 | 77 | 91.7% | 71 | 84.5% |
| | 2142 | 통과유효폭 | 84 | 79 | 94.0% | 73 | 86.9% |
| 일반 | 2143 | 전·후면 유효거리 | 84 | 79 | 94.0% | 74 | 88.1% |
| 출입문 | 2144 | 손잡이 위치 | 84 | 74 | 88.1% | 61 | 72.6% |
| | 2145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84 | 15 | 17.9% | 13 | 15.5% |
| 소계 | | 420 | 324 | 77.1% | 292 | 69.5% | |
| | | 계 | 1,010 | 753 | 74.6% | 694 | 68.7% |

<부표 2-3-63> 묘지관련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 | 서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76 | 54 | 71.1% | 38 | 50.0% |
| | 3112 | 시각적 설비 | 76 | 47 | 61.8% | 39 | 51.3%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회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76 | 60 | 78.9% | 55 | 72.4%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76 | 52 | 68.4% | 52 | 68.4% |
| 22.0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76 | 17 | 22.4% | 17 | 22.4%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77 | 13 | 16.9% | 8 | 10.4%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77 | 13 | 16.9% | 9 | 11.7% |
| | | 소계 | 534 | 256 | 47.9% | 218 | 40.8% |
| | 3221 | 출입문 형태 | 92 | 51 | 55.4% | 51 | 55.4% |
| | 3222 | 통과 유효폭 | 92 | 52 | 56.5% | 52 | 56.5%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58 | 22 | 37.9% | 21 | 36.2%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34 | 31 | 91.2% | 28 | 82.4% |
| | 3231 | 좌대 높이 | 92 | 54 | 58.7% | 52 | 56.5% |
| 대변기 | 3232 | 수평손잡이 높이 | 92 | 51 | 55.4% | 47 | 51.1% |
| | 3233 | 수직손잡이 | 92 | 50 | 54.3% | 27 | 29.3% |
| | 3234 |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 92 | 49 | 53.3% | 29 | 31.5% |
| | 3235 | 세정장치 형태 | 92 | 35 | 38.0% | 17 | 18.5% |
| | | 소계 | 736 | 395 | 53.7% | 324 | 44.0% |
| | | 계 | 1,270 | 651 | 51.3% | 542 | 42.7% |

| | 세부 | 부항목 | 설치기준항 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235 | 233 | 99.1% | 223 | 94.9%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235 | 233 | 99.1% | 213 | 90.6%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235 | 230 | 97.9% | 213 | 90.6% |
| 주출입구 접근로 | 1131 | 접근로 유효폭 | 235 | 235 | 100.0% | 229 | 97.4% |
| 접근도 | 1132 | 기울기 | 235 | 226 | 96.2% | 202 | 86.0%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235 | 163 | 69.4% | 138 | 58.7%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235 | 174 | 74.0% | 162 | 68.9% |
| | | 소계 | 1,645 | 1,494 | 90.8% | 1,380 | 83.9%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121 | 115 | 95.0% | 87 | 71.9% |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121 | 121 | 100.0% | 98 | 81.0% |
| 장애인주 | 1225 | 주차공간 확보 | 121 | 105 | 86.8% | 100 | 82.6% |
| 차구역 | 1226 | 바닥마감 | 121 | 106 | 87.6% | 98 | 81.0% |
|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121 | 105 | 86.8% | 48 | 39.7% |
| | 1232 | 안전통행로 | 121 | 81 | 66.9% | 57 | 47.1% |
| | | 소계 | 726 | 633 | 87.2% | 488 | 67.2%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227 | 201 | 88.5% | 176 | 77.5%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227 | 201 | 88.5% | 193 | 85.0% |
| | 1323 | 휴식참 | 227 | 186 | 81.9% | 183 | 80.6%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227 | 199 | 87.7% | 194 | 85.5% |
|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227 | 196 | 86.3% | 191 | 84.1% |
| 높이차이 제거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227 | 179 | 78.9% | 170 | 74.9% |
| ~!! /1 | 1327 | 손잡이 높이 | 227 | 179 | 78.9% | 169 | 74.4% |
| | 1328 | 손잡이 굵기 | 227 | 179 | 78.9% | 166 | 73.1%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224 | 94 | 42.0% | 72 | 32.1%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224 | 94 | 42.0% | 73 | 32.6%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224 | 94 | 42.0% | 76 | 33.9% |
| | | 소계 | 2,488 | 1,802 | 72.4% | 1,663 | 66.8% |
| | | 계 | 4,859 | 3,929 | 80.9% | 3,531 | 72.7% |

<부표 2-3-64> 관광휴게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세부항목 | | 세부항목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202 | 190 | 94.1% | 190 | 94.1% |
| | 2112 | 통과유효폭 | 202 | 201 | 99.5% | 201 | 99.5%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202 | 200 | 99.0% | 197 | 97.5% |
| ㅈᄎ이ᄆ | 2114 | 손잡이 설치위치 | 202 | 200 | 99.0% | 188 | 93.1% |
| 주출입문 | 2115 | 손잡이 형태 | 202 | 199 | 98.5% | 194 | 60% |
| | | | | | | | |

<부표 2-3-65> 관광휴게시설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 | 세부 | .항목 | 설치기준항 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298 | 295 | 99.0% | 290 | 97.3%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298 | 289 | 97.0% | 272 | 91.3%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298 | 286 | 96.0% | 265 | 88.9% |
| 주출입구 접근로 | 1131 | 접근로 유효폭 | 298 | 297 | 99.7% | 287 | 96.3% |
| | 1132 | 기울기 | 298 | 279 | 93.6% | 232 | 77.9%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298 | 117 | 39.3% | 95 | 31.9%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298 | 129 | 43.3% | 106 | 35.6% |
| | | 소계 | 2,086 | 1,692 | 81.1% | 1,547 | 74.2%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147 | 131 | 89.1% | 97 | 66.0% |
| | 1224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147 | 147 | 100.0% | 104 | 70.7% |
| | 1225 | 주차공간 확보 | 147 | 118 | 80.3% | 95 | 64.6% |
| 장애인주 차구역 | 1226 | 바닥마감 | 147 | 123 | 83.7% | 116 | 78.9% |
| | 1231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147 | 116 | 78.9% | 37 | 25.2% |
| | 1232 | 안전통행로 | 147 | 60 | 40.8% | 39 | 26.5% |
| | | 소계 | 882 | 695 | 78.8% | 488 | 55.3%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297 | 262 | 88.2% | 195 | 65.7% |
| | 1322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297 | 264 | 88.9% | 230 | 77.4% |
| | 1323 | 휴식참 | 297 | 235 | 79.1% | 227 | 76.4%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297 | 256 | 86.2% | 242 | 81.5% |
| | 1325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297 | 249 | 83.8% | 224 | 75.4% |
| 높이차이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297 | 203 | 68.4% | 179 | 60.3% |
| 제거 | 1327 | 손잡이 높이 | 297 | 202 | 68.0% | 180 | 60.6% |
| | 1328 | 손잡이 굵기 | 297 | 202 | 68.0% | 176 | 59.3%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291 | 76 | 26.1% | 56 | 19.2%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291 | 75 | 25.8% | 61 | 21.0%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291 | 75 | 25.8% | 56 | 19.2% |
| 소계 | | 3,249 | 2,099 | 64.6% | 1,826 | 56.2% | |
| | 7 | 쉐 | 6,217 | 4,486 | 72.2% | 3,861 | 62.1% |

<부표 2-3-67> 장례식장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부표 2-3-68> 장례식장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 | | | 설치기 | | | 고 고 서 : | |
|------------|--------------|----------------------|------------|------------|------------------|------------|------------------------------|
| | 세- | 부항목 | 준항목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계 | |
| | | | 수 | | | 적정설켜 | 시출(%)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277 | 266 | 96.0% | 266 | 96.0% |
| | 2112 | 통과유효폭 | 277 | 275 | 99.3% | 275 | 99.3%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277 | 266 | 96.0% | 248 | 89.5% |
| 주출입문 | 2114 | 손잡이 설치위치 | 277 | 275 | 99.3% | 261 | 94.2% |
| IEUC | 2115 | 손잡이 형태 | 277 | 273 | 98.6% | 268 | 96.8%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278 | 98 | 35.3% | 61 | 21.9%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278 | 98 | 35.3% | 63 | 22.7% |
| | 0141 | 소계 문턱 높이차이 | 1,941 | 1,551 | 79.9% | 1,442 | 74.3% |
| | 2141 2142 | 문덕 표이사이 통과유효폭 | 277 277 | 267 275 | 96.4% 99.3% | 239 258 | <u> </u> |
| 일반 | 2142 | 전·후면 유효거리 | 277 | 273 | 99.3% 98.2% | 250 | <u> </u> |
| 르 근 출입문 | 2143 | 손잡이 위치 | 277 | 255 | 90.2 % | 231 | <u>90.0 %</u> |
| 걸 님 고 | 2145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277 | 53 | 19.1% | 42 | 15.2% |
| | | 소계 | 1,385 | 1,122 | 81.0% | 1,011 | 73.0% |
| | 2211 | 유효폭 | 272 | 266 | 97.8% | 260 | 95.6% |
| | 2212 | 단차 | 272 | 264 | 97.1% | 256 | 94.1% |
| 복도 | 2213 | 복도 통로상부의 유효높이 | 272 | 255 | 93.8% | 247 | 90.8% |
| | | 소계 | 816 | 785 | 96.2% | 763 | 93.5% |
| | 2421 | 유효폭 | 114 | 113 | 99.1% | 107 | 93.9% |
| | 2422 | 챌면 설치 여부 | 114 | 111 | 97.4% | 111 | 97.4% |
| | 2423 | 챌면의 높이, 디딤판 너비 | 114 | 112 | 98.2% | 95 | 83.3% |
| | 2424 | 손잡이 굵기 | 114 | 97 | 85.1% | 26 | 22.8% |
| 계단 | 2425 | 손잡이 연속설치 | 114 | 94 | 82.5% | 66 | 57.9% |
| | 2426 |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 114 | 39 | 34.2% | 16 | 14.0% |
| | 2427 | 점형블록 설치 | 114 | 27 | 23.7% | 12 | 10.5% |
| | 2428 | 손잡이 점자표기 | 114 | 18 | 15.8% | 11 | 9.6% |
| | | 소계 | 912 | 611 | 67.0% | 444 | 48.7% |
| | 2431 | 경사로 유효폭 | 3 | 3 | 100.0% | 3 | 100.0% |
| | 2432 | 휴식참 | 3 | 3 | 100.0% | 3 | 100.0% |
| | 2433 | 기울기 1/12 | 3 | 3 | 100.0% | 3 | 100.0% |
| | 2434 | 바닥면 재질 휴식참 활동공간 | 3 | 3 | 100.0% | 3 | 100.0% |
| 경사로 | 2435 2436 | 유직점 활동동간 손잡이 연속설치 | 3 | 3 | 100.0% 100.0% | 3 | <u> 100.0% </u> 33.3% |
| | 2430 | 손잡이 높이 | 3 | 3 | 100.0% | 2 | <u> </u> |
| | 2438 | 손잡이 굵기 | 3 | 3 | 100.0% | 2 | 66.7% |
| | | 소계 | 24 | 24 | 100.0% | 20 | 83.3% |
| | 2441 | 승강기 활동공간확보 | 115 | 114 | 99.1% | 111 | 96.5% |
| | 2441 | 유효바닥면적(08'이전) | 81 | 80 | 98.8% | 78 | <u> </u> |
| | 2444 | 유효바닥면적(08'이후) | 34 | 34 | 100.0% | 30 | 88.2% |
| | 2445 | 휠체어사용자용조작반 | 115 | 106 | 92.2% | 106 | 92.2% |
| | 2446 | 조작반 높이 | 115 | 105 | 91.3% | 96 | 83.5% |
| A - 1 - 1 | 2447 | 일반조작반 조작설비 | 115 | 115 | 100.0% | 112 | 97.4% |
| 승강기 | 2448 | 조작반 점자표지 | 115 | 110 | 95.7% | 110 | 95.7% |
| | 2449 | 점형블록 형태 | 115 | 93 | 80.9% | 67 | 58.3% |
| | 24410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15 | 96 | 83.5% | 89 | 77.4% |
| | 24411 | 도착여부 표시, 도착음 | 115 | 110 | 95.7% | 97 | 84.3% |
| | 24412 |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 115 | 110 | 95.7% | 90 | 78.3% |
| | | 소계 | 1,150 | 1,073 | 93.3% | 986 | 85.7% |
| | | 계 | 6,228 | 5,166 | 82.9% | 4,666 | 74.9% |

| | 세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273 | 202 | 74.0% | 147 | 53.8% |
| | 3112 | 시각적 설비 | 273 | 155 | 56.8% | 119 | 43.6%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회장실 접근기능 통로 연결 여부 | 273 | 236 | 86.4% | 202 | 74.0%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273 | 201 | 73.6% | 201 | 73.6% |
|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273 | 47 | 17.2% | 47 | 17.2%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272 | 85 | 31.3% | 57 | 21.0%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272 | 85 | 31.3% | 56 | 20.6% |
| | | 소계 | 1,909 | 1,011 | 53.0% | 829 | 43.4% |
| | 3221 | 출입문 형태 | 298 | 178 | 59.7% | 165 | 55.4% |
| | 3222 | 통과 유효폭 | 298 | 186 | 62.4% | 186 | 62.4%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198 | 116 | 58.6% | 92 | 46.5%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 63.0% | | | |
| | 3231 | 좌대 높이 | 298 | 215 | 72.1% | 204 | 68.5% |
| 대변기 | 3232 | 수평손잡이 높이 | 높이 298 199 66. | 66.8% | 163 | 54.7% | |
| | 3233 | 수직손잡이 | 298 | 183 | 61.4% | 101 | 33.9% |
| | 3234 |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 298 | 188 | 63.1% | 79 | 26.5% |
| | 3235 | 세정장치 형태 | 298 | 137 | 46.0% | 54 | 18.1% |
| | | 소계 | 2,384 | 1,489 | 62.5% | 1,107 | 46.4% |
| | 3321 | 수평손잡이 높이 | 271 | 98 | 36.2% | 96 | 35.4% |
| | 3322 | 수평손잡이 길이 | 271 | 98 | 36.2% | 98 | 36.2% |
| | 3323 | 좌우 손잡이 간격 | 271 | 97 | 35.8% | 96 | 35.4% |
| 소변기 | 3324 | 수직손잡이 높이 | 271 | 96 | 35.4% | 90 | 33.2% |
| | 3325 | 수직손잡이 길이 | 271 | 95 | 35.1% | 93 | 34.3% |
| | | 소계 | 1,355 | 484 | 35.7% | 473 | 34.9% |
| | 3421 | 세면대 상·하단높이 | 297 | 247 | 83.2% | 207 | 69.7% |
| 세 미네 트네 | 3422 |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 297 | 244 | 82.2% | 189 | 63.6% |
| 세면대 | 3423 | 수도꼭지형태, 점자표시 | 297 | 242 | 81.5% | 39 | 13.1% |
| | | 소계 | 891 | 733 | 82.3% | 435 | 48.8% |
| | | 계 | 6,539 | 3,717 | 56.8% | 2,844 | 43.5% |

<부표 2-3-69> 장례식장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 | | - | | | | | | |
|------|------|-----------|-----|-------|--------|---------------------|-------|--|
| | 세부항목 | |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1161 | 점자블록 형태 | 295 | 44 | 14.9% | 31 | 10.5% | |
| 주출입구 | 116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295 | 43 | 14.6% | 32 | 10.8% | |
| 접근로 | 116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295 | 44 | 14.9% | 34 | 11.5% | |
| | | 소계 | 885 | 131 | 14.8% | 97 | 11.0% | |
| | | 계 | 885 | 131 | 14.8% | 97 | 11.0% | |

<부표 2-3-70> 장례식장의 세부항목 설치율 : 안내시설

<부표 2-3-71> 공원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세부 | 브항목 | 설치기준항 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 적정설: |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1,418 | 1,396 | 98.4% | 1,369 | 96.5% |
| | 1122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1,418 | 1,370 | 96.6% | 1,238 | 87.3% |
| | 1123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1,418 | 1,326 | 93.5% | 1,174 | 82.8% |
| 주출입구 접근로 | 1131 | 접근로 유효폭 | 1,418 | 1,394 | 98.3% | 1,356 | 95.6% |
| 집근도 | 1132 | 기울기 | 1,418 | 1,296 | 91.4% | 1,073 | 75.7% |
| | 1141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1,418 | 1,148 | 81.0% | 1,083 | 76.4%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1,418 | 1,156 | 81.5% | 1,086 | 76.6% |
| | 소계 | | 9,926 | 9,086 | 91.5% | 8,379 | 84.4% |
| | | 계 | 9,926 | 9,086 | 91.5% | 8,379 | 84.4% |

| | 세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970 | 570 | 58.8% | 445 | 45.9% |
| | 3112 | 시각적 설비 | 970 | 559 | 57.6% | 500 | 51.5%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회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970 | 657 | 67.7% | 587 | 60.5%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970 | 603 | 62.2% | 603 | 62.2% |
| 22.0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970 | 359 | 37.0% | 359 | 37.0%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960 | 169 | 17.6% | 120 | 12.5%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960 | 169 | 17.6% | 108 | 11.3% |
| | | 소계 | 6,770 | 3,086 | 45.6% | 2,722 | 40.2% |
| | 3221 | 출입문 형태 | 1,370 | 408 | 29.8% | 384 | 28.0% |
| | 3222 | 통과 유효폭 | 1,370 | 407 | 29.7% | 407 | 29.7%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797 | 262 | 32.9% | 233 | 29.2%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573 | 151 | 26.4% | 125 | 21.8% |
| | 3231 | 좌대 높이 | 1,370 | 435 | 31.8% | 412 | 30.1% |
| 대변기 | 3232 | 수평손잡이 높이 | 1,370 | 409 | 29.9% | 324 | 23.6% |
| | 3233 | 수직손잡이 | 1,370 | 388 | 28.3% | 227 | 16.6% |
| | 3234 |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 1,370 | 379 | 27.7% | 194 | 14.2% |
| | 3235 | 세정장치 형태 | 1,370 | 296 | 21.6% | 150 | 10.9% |
| | | 소계 | 10,960 | 3,135 | 28.6% | 2,456 | 22.4% |
| | | 계 | 17,730 | 6,221 | 35.1% | 5,178 | 29.2% |

<부표 2-3-72> 공원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부표 2-3-73> 공동주택의 세부항목 설치율 : 매개시설

| | | - | 서키기즈 | | | | 테스 미 |
|-------------|--|--------------|---------|---------|--------|---------|-------|
| | 세부 | 부하목 |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계 | |
| | 1121 | 바닥재질마감 | 34,099 | 33,646 | 98.7% | 32,549 | 95.5% |
| | I 1121 비덕재질미간 34,099 33,646 98,7% 32,549 1122 이음새 등,평단 미간 34,099 33,019 96,8% 29,626 1123 이음새높이, 금색0, 34,099 31,818 93,3% 28,179 1131 접근로 유효폭 34,099 31,818 93,3% 32,174 1132 기울기 34,099 31,685 92.9% 27,387 1141 차도와의 34,099 21,265 62,4% 18,656 1142 보행장애물 제거 34,099 22,674 66,5% 20,903 1142 호행장애물 제거 34,099 22,674 66,5% 20,903 1124 주차면수 확보 11,102 8,208 73,9% 5,951 1224 주차면수 확보 11,102 11,102 100,0% 5,229 1225 주차공간 확보 11,102 5,709 51,4% 4,596 1226 비닥마감 11,102 5,709 51,4% 4,596 1226 바닥마감 11,102 5,709 53,1% 2,437 1231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11,102 5,900 53,1% 2,437 1232 안전통행로 111,102 3,757 33,8% 3,015 124 높이차이제거 33,912 23,212 68,4% 20,384 1322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33,912 23,218 69,0% 21,626 1323 휴식참 33,912 22,196 65,5% 21,680 1324 경사로 바닥재질 33,912 22,841 67,4% 22,578 1325 휴식참 33,912 22,841 67,4% 22,578 1326 손잡이 연속설치 33,912 22,707 64,0% 22,941 1327 손잡이 도여 33,912 21,707 64,0% 21,130 | 86.9% | | | | | |
| | 1123 | | 34,099 | 31,818 | 93.3% | 28,179 | 82.6% |
| 주출입구 접근로 | 1131 | 접근로 유효폭 | 34,099 | 33,401 | 98.0% | 32,174 | 94.4% |
| 접근도 | 1132 | 기울기 | 34,099 | 31,685 | 92.9% | 27,387 | 80.3% |
| | 1141 | | 34,099 | 21,265 | 62.4% | 18,656 | 54.7% |
| | 1142 | 보행장애물 제거 | 34,099 | 22,674 | 66.5% | 20,903 | 61.3% |
| | | 소계 | 238,693 | 207,508 | 86.9% | 189,474 | 79.4% |
| | 1223 | 주차면수 확보 | 11,102 | 8,208 | 73.9% | 5,951 | 53.6% |
| | 1224 | | 11,102 | 11,102 | 100.0% | 5,229 | 47.1% |
| | 1225 | 주차공간 확보 | 11,102 | 5,709 | 51.4% | 4,596 | 41.4% |
| 장애인주 차구역 | 1226 | 바닥마감 | 11,102 | 6,121 | 55.1% | 5,881 | 53.0% |
| | 1231 | | 11,102 | 5,900 | 53.1% | 2,437 | 22.0% |
| | 1232 | 안전통행로 | 11,102 | 3,757 | 33.8% | 3,015 | 27.2% |
| | | 소계 | 66,612 | 40,797 | 61.2% | 27,109 | 40.7% |
| | 1321 | 높이차이제거 | 33,912 | 23,212 | 68.4% | 20,384 | 60.1% |
| | 1322 | | 33,912 | 23,398 | 69.0% | 21,626 | 63.8% |
| | 1323 | 휴식참 | 33,912 | 22,196 | 65.5% | 21,680 | 63.9% |
| | 1324 | 경사로 바닥재질 | 33,912 | 23,206 | 68.4% | 22,578 | 66.6% |
| | 1325 | | 33,912 | 22,841 | 67.4% | 21,587 | 63.7% |
| 높이차이 | 1326 | 손잡이 연속설치 | 33,912 | 21,707 | 64.0% | 20,941 | 61.8% |
| 제거 | 1327 | 손잡이 높이 | 33,912 | 21,700 | 64.0% | 21,130 | 62.3% |
| | 1328 | 손잡이 굵기 | 33,912 | 21,706 | 64.0% | 20,875 | 61.6% |
| | 1341 | 점자블록 형태 | 33,271 | 7,333 | 22.0% | 6,429 | 19.3% |
| | 134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33,271 | 7,290 | 21.9% | 6,228 | 18.7% |
| | 1343 | 점자블록 시공방법 | 33,271 | 7,366 | 22.1% | 6,605 | 19.9% |
| | | 소계 | 371,109 | 201,955 | 54.4% | 190,063 | 51.2% |
| | | 계 | 676,414 | 450,260 | 66.6% | 406,646 | 60.1% |

| 2111 출입구(문) 높이차이 31,812 25,762 81.0% 25,762 2112 통과유효폭 31,812 30,281 95.2% 30,283 2113 전·후면 유효거리 31,812 27,625 86.8% 22,346 2114 손잡이 설치위치 31,812 31,178 98.0% 27,000 2115 손잡이 형태 31,812 31,178 98.0% 27,000 2131 점형블록 형태 31,910 10,574 33.1% 8,764 2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31,910 10,493 32.9% 8,546 소계 222,880 167,070 75.0% 152,658 2141 문턱 높이차이 31,699 29,128 91.9% 26,817 2142 통과유효로록 31,699 30,448 96.1% | 95.2% 70.2% 84.9% 94.2% 27.5% 626.8% 668.5% |
|---|---|
| 우출입문 2112 통과유효폭 31,812 30,281 95.2% 30,283 2113 전·후면 유효거리 31,812 27,625 86.8% 22,346 2114 손잡이 설치위치 31,812 31,178 98.0% 27,000 2115 손잡이 형태 31,812 31,178 98.0% 27,000 2115 손잡이 형태 31,812 31,178 98.0% 27,000 2115 손잡이 형태 31,812 31,178 98.0% 27,000 2131 점형블록 형태 31,910 10,574 33.1% 8,764 2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31,910 10,493 32.9% 8,544 2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31,910 10,493 32.9% 8,544 2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31,910 10,493 32.9% 8,544 2141 문턱 높이차이 31,699 29,128 91.9% 26,817 2142 통과유효록 31,699 30,448 96.1% 29,463 일반 2143 전·후면 유효국리리 | 95.2% 70.2% 84.9% 94.2% 27.5% 626.8% 668.5% |
| 2113 전·후면 유효거리 31,812 27,625 86.8% 22,346 2114 손잡이 설치위치 31,812 31,178 98.0% 27,000 2115 손잡이 형태 31,812 31,178 98.0% 27,000 2115 손잡이 형태 31,812 31,178 98.0% 27,000 2115 손잡이 형태 31,812 31,157 97.9% 29,956 2131 점형블록 형태 31,910 10,574 33.1% 8,764 2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31,910 10,493 32.9% 8,546 소계 222,880 167,070 75.0% 152,656 2141 문턱 높이차이 31,699 29,128 91.9% 26,817 2142 통과유효폭 31,699 30,448 96.1% 29,466 일반 2143 전·후면 유효거리 31,699 29,484 93.0% 25,677 2144 소작이 위치 31,699 29,484 93.0% 25,677 | 70.2% 84.9% 94.2% 27.5% 26.8% 86.5% |
| 주출입문 2114 손잡이 설치위치 31,812 31,178 98.0% 27,000 2115 손잡이 형태 31,812 31,157 97.9% 29,956 2131 점형블록 형태 31,910 10,574 33.1% 8,764 2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31,910 10,493 32.9% 8,546 소계 222,880 167,070 75.0% 152,658 2141 문턱 높이차이 31,699 29,128 91.9% 26,817 2142 통과유효폭 31,699 30,448 96.1% 29,468 일반 2143 전·후면 유효거리 31,699 29,484 93.0% 25,677 | 84.9% 94.2% 27.5% 26.8% 6 68.5% |
| 수술입문 2115 손잡이 형태 31,812 31,157 97.9% 29,956 2131 점형블록 형태 31,910 10,574 33.1% 8,764 2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31,910 10,493 32.9% 8,546 소계 222,880 167,070 75.0% 152,658 2141 문턱 높이차이 31,699 29,128 91.9% 26,817 일반 2142 통과유효폭 31,699 30,448 96.1% 29,468 2143 전·후면 유효거리 31,699 29,484 93.0% 25,670 | 94.2% 27.5% 26.8% 6 68.5% |
| 2115 손잡이 형태 31,812 31,157 97.9% 229,956 2131 점형블록 형태 31,910 10,574 33.1% 8,764 2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31,910 10,493 32.9% 8,546 2141 문턱 높이차이 31,699 29,128 91.9% 26,817 일반 2141 문턱 높이차이 31,699 29,484 96.1% 29,465 2142 통과유효폭 31,699 29,484 93.0% 25,677 2143 전·후면 유효거리 31,699 29,484 93.0% 25,677 | 27.5% 26.8% 6 68.5% |
| 2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31,910 10,493 32.9% 8,546 ···································· | 26.8% 68.5% |
| 소계 222,880 167,070 75.0% 152,658 2141 문턱 높이차이 31,699 29,128 91.9% 26,817 2142 통과유효폭 31,699 30,448 96.1% 29,465 일반 2143 전·후면 유효거리 31,699 29,484 93.0% 25,673 일반 2144 소작이 위치 31,699 28,830 90.9% 25,000 | 68.5% |
| 2141 문턱 높이차이 31,699 29,128 91.9% 26,817 2142 통과유효폭 31,699 30,448 96.1% 29,465 일반 2143 전·후면 유효거리 31,699 29,484 93.0% 25,673 2144 속잡이 위치 31,699 28,830 90.9% 25,073 | |
| 2142 통과유효폭 31,699 30,448 96.1% 29,465 2143 전·후면 유효거리 31,699 29,484 93.0% 25,67 2144 속작이 위치 31,699 28,830 90.9% 25,00 | 84.6% |
| 일반 2143 전·후면 유효거리 31,699 29,484 93.0% 25,67 | 00.00/ |
| 일반 2144 소잔이 위치 31.609 28.830 90.9% 25.00 | |
| | |
| 출입문 전자표지판 이상 000 · · · · · · · · · · · · · · · · · | 10.9 % |
| <u>2145</u> 설치위치 <u>31,699</u> <u>13,706</u> <u>43.2%</u> <u>12,958</u> | |
| <u>소계</u> 158,495 131,596 83.0% 119,914 | |
| <u>2211</u> 유효폭 <u>938</u> 883 94.1% 844 | |
| <u>2212</u> 단차 <u>938</u> 857 <u>91.4%</u> 83 | 88.6% |
| 복도 2213 복도 통로상부의 938 861 91.8% 818 | 87.2% |
| 소계 2,814 2,601 92.4% 2,492 | 88.6% |
| 2421 유효폭 1,759 1,736 98.7% 1,44 | 82.0% |
| 2422 챌면 설치 여부 1,759 1,682 95.6% 1,682 | 95.6% |
| 2423 <mark>챌면의 높이, 디딤판</mark> 1,759 1,709 97.2% 1,394 | 79.2% |
| 2424 손잡이 굵기 1,759 1,506 85.6% 667 | 37.9% |
| 계단 2425 손잡이 연속설치 1,759 1,480 84.1% 1,086 | |
| 2426 수평손잡이 1,759 687 39.1% 34 | |
| 2427 점형블록 설치 1,759 292 16.6% 223 | 12.7% |
| 2428 손잡이 점자표기 1,759 240 13.6% 17 | |
| 소계 14,072 9,332 66.3% 7,007 | |
| 2441 승강기 활동공간확보 126 118 93.7% 112 | |
| 2443 유효비뚜면적(08'이전) 126 123 97.6% 104 | 82.5% |
| 2444 유효비단면적(08'이후) 126 124 98.4% 86 | |
| 2445 휠체어사용자용조작반 126 124 98.4% 107 | |
| 2446 조작반 높이 126 125 99.2% 95 | |
| 이바ㅈ자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
| 승강기 2447 조작설비 126 115 91.3% 52 | 41.3% |
| 2448 조작반 점자표지 126 115 91.3% 87 | 69.0% |
| 2449 점형블록 형태 126 113 89.7% 73 | 57.9% |
| 24410 점형블록 설치위치 1,008 957 94.9% 716 | 71.0% |
| 24411 도착여부 표시, 도착음 6,054 6,019 99.4% 5,830 | 96.3% |
| 24412점멸등, 음성신호장치4,7164,70099.7%4,445 | 94.3% |
| 소계 1,338 1,327 99.2% 1,23 | 92.2% |
| 2451 활동공간 확보 6,054 5,544 91.6% 5,54 | |
| 2452 유효바닥면적 6,054 5,612 92.7% 5,212 | |
| 휠체어 2453 호출벨 등의 설치 6,054 6,054 100.0% 5,973 | |
| · · · · · · · · · · · · · · · · · · · | 94.8% |
| 계 6,054 4,731 78.1% 3,388 | |

<부표 2-3-74> 공동주택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부표 2-3-75> 공동주택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 | 세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 적정설 |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977 | 599 | 61.3% | 491 | 50.3% |
| | 3112 | 시각적 설비 | 977 | 511 | 52.3% | 402 | 41.1%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977 | 733 | 75.0% | 627 | 64.2%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977 | 642 | 65.7% | 642 | 65.7% |
|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977 | 230 | 23.5% | 230 | 23.5%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977 | 251 | 25.7% | 178 | 18.2%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977 | 251 | 25.7% | 205 | 21.0% |
| | | 소계 | 6,839 | 3,217 | 48.5% 540 44.1% 50.9% 623 50.9% | 40.6% | |
| | 3221 | 출입문 형태 | 1,225 | 594 | 48.5% | 540 | 44.1% |
| | 3222 | 통과 유효폭 | 1,225 | 623 | 50.9% | 623 | 50.9%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804 | 302 | 37.6% | 265 | 33.0%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421 | 343 | 81.5% | 292 | 69.4% |
| 대변기 | 3231 | 좌대 높이 | 1,225 | 657 | 53.6% | 637 | 52.0% |
| 내번기 | 3232 수평손잡이 높이 1,225 614 50.1% | 547 | 44.7% | | | | |
| | 3233 | 수직손잡이 | 1,225 | 583 | 47.6% | 435 | 35.5% |
| | 3234 |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 1,225 | 589 | 48.1% | 331 | 27.0% |
| | 3235 | 세정장치 형태 | 1,225 | 469 | 38.3% | 274 | 22.4% |
| 대변기 3232 수평손잡이 높이 1,225 614 50.14 3233 수직손잡이 1,225 583 47.65 3234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 1,225 589 48.14 3235 세정장치 형태 1,225 469 38.35 ···································· | 48.7% | 3,944 | 40.2% | | | | |
| | 3321 | 수평손잡이 높이 | 938 | 305 | 32.5% | 284 | 30.3% |
| | 3322 | 수평손잡이 길이 | 938 | 305 | 32.5% | 299 | 31.9% |
| | 3323 | 좌우 손잡이 간격 | 938 | 302 | 32.2% | 299 | 31.9% |
| 소변기 | 3324 | 수직손잡이 높이 | 938 | 303 | 32.3% | 283 | 30.2% |
| | 3325 | 수직손잡이 길이 | 938 | 303 | 32.3% | 297 | 31.7% |
| | | 소계 | 4,690 | 1,518 | 32.4% | 1,462 | 31.2% |
| | 3421 | 세면대 상·하단높이 | 1,222 | 912 | 74.6% | 814 | 66.6% |
| | 3422 |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 1,222 | 912 | 74.6% | 805 | 65.9% |
| 세면대 | 3234 회전식 손잡이로 설치1,22558948.1%331 3235 세정장치 형태1,22546938.3%274 3235 세정장치 형태1,22546938.3%274 $\sqrt{2325}$ 소계9,8004,77448.7%3,944 322 수평손잡이 높이93830532.5%284 3322 수평손잡이 길이93830532.5%299 3323 좌우 손잡이 간격93830332.2%299 3324 수직손잡이 높이93830332.3%283 3325 수직손잡이 길이93830332.3%297 3325 수직손잡이 길이93830332.3%297 3325 수직손잡이 길이93830332.4%1,462 3325 수직손잡이 길이93830332.4%1,462 3421 세면대 상·하단높이1,22291274.6%805 3422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1,22291274.6%805 3423 속도꼴죄,형태, 감자표시1,22283868.6%182 | 14.9% | | | | | |
| | | 소계 | 3,666 | 2,662 | 72.6% | 1,801 | 49.1% |
| | | 계 | 24,995 | 12,171 | 48.7% | 9,982 | 39.9% |

• 216_



| | 세부 | 부하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 2111 | 출입구(문) 높이차이 | 388 | 325 | 83.8% | 325 | 83.8% |
| | 2112 | 통과유효폭 | 388 | 371 | 95.6% | 371 | 95.6% |
| | 2113 | 전·후면 유효거리 | 388 | 355 | 91.5% | 311 | 80.2% |
| 주출입문 | 2114 | 손잡이 설치위치 | 388 | 376 | 96.9% | 332 | 85.6% |
| | 2115 | 손잡이 형태 | 388 | 370 | 95.4% | 343 | 88.4% |
| | 2131 | 점형블록 형태 | 388 | 130 | 33.5% | 97 | 25.0% |
| | 2132 | 점형블록 설치위치 | 388 | 129 | 33.2% | 101 | 26.0% |
| | | 소계 | 2,716 | 2,056 | 75.7% | 1,880 | 69.2% |
| | 2141 | 문턱 높이차이 | 385 | 349 | 90.6% | 283 | 73.5% |
| | 2142 | 통과유효폭 | 385 | 370 | 96.1% | 342 | 88.8% |
| 일반 | 2143 | 전·후면 유효거리 | 385 | 368 | 95.6% | 324 | 84.2% |
| 걸 만 출입문 | 2144 | 손잡이 위치 | 385 | 344 | 89.4% | 257 | 66.8% |
| | 2145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385 | 87 | 22.6% | 71 | 18.4% |
| | | 소계 | 1,925 | 1,518 | 78.9% | 1,277 | 66.3% |
| | | 계 | 4,641 | 3,574 | 77.0% | 3,157 | 68.0% |

<부표 2-3-77> 기숙사의 세부항목 설치율 : 내부시설

<부표 2-3-78> 기숙사의 세부항목 설치율 : 위생시설

| | 세 | 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적정설치 | 1 20 |
|------|------|--------------------------------|-------------|-------|--------|--------------|-------|
| | 3111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335 | 153 | 45.7% | 116 | 34.6% |
| | 3112 | 시각적 설비 | 336 | 162 | 48.2% | 136 | 40.5% |
| | 3113 |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336 | 226 | 67.3% | 172 | 51.2% |
| 일반사항 | 3114 | 바닥 단차 | 336 | 175 | 52.1% | 175 | 52.1% |
| | 3115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336 | 67 | 19.9% | 67 | 19.9% |
| | 3131 | 점자블록 형태 | 331 | 64 | 19.3% | 53 | 16.0% |
| | 3132 | 점자블록 설치위치 | 331 | 64 | 19.3% | 50 | 15.1% |
| | | 소계 | 2,341 | 911 | 38.9% | 769 | 32.8% |
| | 3221 | 출입문 형태 | 408 | 154 | 37.7% | 148 | 36.3% |
| | 3222 | 통과 유효폭 | 408 | 158 | 38.7% | 158 | 38.7% |
| | 3224 | 바닥면크기(05'이전) | 301 | 77 | 25.6% | 66 | 21.9% |
| | 3225 | 바닥면크기(05'이후) | 107 | 78 | 72.9% | 69 | 64.5% |
| | 3231 | 좌대 높이 | 408 | 166 | 40.7% | 163 | 40.0% |
| 대변기 | 3232 | 수평손잡이 높이 | 408 | 150 | 36.8% | 144 | 35.3% |
| | 3233 | 수직손잡이 | 408 | 143 | 35.0% | 116 | 28.4% |
| | | | | | | | |

547

36.0% 15

| | | | 1.1.1.1.1.1 | OTE | | . – | |
|-----------|----------------|------------------|-------------|-------|--------|----------------------------|-------|
| | 세부항목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 [:] 적정설치· | |
| | 5141 | 바닥단차 | 403 | 310 | 76.9% | 310 | 76.9% |
| | 5142 | 대변기칸막이 출입문 형태 | 403 | 327 | 81.1% | 323 | 80.1% |
| | 5143 | 대변기칸막이 문 유효폭 | 403 | 320 | 79.4% | 320 | 79.4% |
| | 5145 | 바닥면크기(05'이전) | 295 | 275 | 93.2% | 200 | 67.8% |
| | 5146 | 바닥면크기(05'이후) | 108 | 102 | 94.4% | 50 | 46.3% |
| | 5147 | 대변기형태 및 높이 | 403 | 356 | 88.3% | 343 | 85.1% |
| | 5148 | 대변기 수평손잡이 위치 | 403 | 303 | 75.2% | 292 | 72.5% |
| | 5149 | 대변기 수직손잡이 | 403 | 302 | 74.9% | 285 | 70.7% |
| | 51410 | 회전식 손잡이 | 403 | 302 | 74.9% | 277 | 68.7% |
| 객실·침 실 | 6131 75 | | | | | | |

<부표 2-3-79> 기숙사의 세부항목 설치율 : 기타시설

[부록표 2] 시설주체별 세부항목별 설치율

| | | - | 공공시설 | | | 민간시설 | | | | |
|------------------|---------------------|--------|-------------|-------------|-------|-----------------|-----------------|-------|---------|-------|
| 세부항목 | 설치 기준 항목 수 | | 수 및 율(%) | 적정실 및 설키 |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 |
| 바닥재질마감 | 11,973 | 11,891 | 99.3% | 11,646 | 97.3% | 129,600 | 127,808 | 98.6% | 123,943 | 95.6% |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11,973 | 11,777 | 98.4% | 10,943 | 91.4% | 129,600 | 125,335 | 96.7% | 114,371 | 88.2% |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11,973 | 11,582 | 96.7% | 10,588 | 88.4% | 129,600 | 122,952 | 94.9% | 111,081 | 85.7% |
| 접근로 유효폭 | 11,973 | 11,811 | 98.6% | 11,390 | 95.1% | 129,600 | 127,363 | 98.3% | 122,837 | 94.8% |
| 기울기 | 11,973 | 11,327 | 94.6% | 9,879 | 82.5% | 129,600 | 120,992 | 93.4% | 104,803 | 80.9% |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11,973 | 7,160 | 59.8% | 6,252 | 52.2% | 129,600 | 84,271 | 65.0% | 75,784 | 58.5% |
| 보행장애물 제거 | 11,973 | 7,575 | 63.3% | 6,882 | 57.5% | 129,600 | 89,137 | 68.8% | 82,176 | 63.4% |
| 계 | 83,811 | 73,123 | 87.2% | 67,580 | 80.6% | 907,200 | 797,858 | 87.9% | 734,995 | 81.0% |

<부표 2-5-1>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주출입구 접근로

<부표 2-5-2>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공공시설 | | | | | | 민간시설 | | | | | |
|-----------------|---------------------|--------|-------------|-------------|-------|-----------------|------------------------------------|--------|--------------|-------|--|--|
| 세부항목 | 설치 기준 항목 수 | | 수 및 율(%) | 적정실 및 설키 |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 [:] 설치 [:]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
| 주차면수 확보 | 3,351 | 3,254 | 97.1% | 2,998 | 89.5% | 34,028 | 27,324 | 80.3% | 22,136 | 65.1% | | |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3,351 | 3,351 | 100.0% | 2,490 | 74.3% | 34,028 | 34,028 | 100.0% | 17,751 | 52.2% | | |
| 주차공간 확보 | 3,351 | 2,687 | 80.2% | 2,295 | 68.5% | 34,028 | 19,820 | 58.2% | 16,376 | 48.1% | | |
| 바닥마감 | 3,351 | 2,801 | 83.6% | 2,731 | 81.5% | 34,028 | 20,962 | 61.6% | 20,119 | 59.1% | | |
| 바닥 및 입식안내표시 | 3,351 | 2,756 | 82.2% | 1,406 | 42.0% | 34,028 | 20,265 | 59.6% | 9,164 | 26.9% | | |
| 안전통행로 | 3,351 | 1,669 | 49.8% | 1,292 | 38.6% | 34,028 | 12,640 | 37.1% | 10,016 | 29.4% | | |
| 계 | 20,106 | 16,518 | 82.2% | 13,212 | 65.7% | 204,168 | 135,039 | 66.1% | 95,562 | 46.8% | | |

| | | 0FI | 공시설 | | | 민간시설 |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 | | 널치수 치율(%)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 높이차이제거 | 11,867 | 10,422 | 87.8% | 7,082 | 59.7% | 126,685 | 90,917 | 71.8% | 76,170 | 60.1% | |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11,867 | 10,497 | 88.5% | 8,562 | 72.1% | 126,685 | 91,615 | 72.3% | 83,018 | 65.5% | |
| 휴식참 | 11,867 | 9,319 | 78.5% | 8,705 | 73.4% | 126,685 | 85,659 | 67.6% | 82,815 | 65.4% | |
| 경사로 바닥재질 | 11,867 | 10,347 | 87.2% | 9,613 | 81.0% | 126,685 | 90,656 | 71.6% | 87,233 | 68.9% | |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11,867 | 10,042 | 84.6% | 8,472 | 71.4% | 126,685 | 88,900 | 70.2% | 82,644 | 65.2% | |
| 손잡이연속설치 | 11,867 | 8,885 | 74.9% | 7,245 | 61.1% | 126,685 | 81,816 | 64.6% | 76,260 | 60.2% | |
| 손잡이 높이 | 11,867 | 8,864 | 74.7% | 7,929 | 66.8% | 126,685 | 81,708 | 64.5% | 78,178 | | |

<부표 2-5-3>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 | 이지 | 공시설 | | | 민간시설 |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일반출입문 단차제거 | 10,708 | 10,265 | 95.9% | 8,983 | 83.9% | 103,165 | 94,510 | 91.6% | 81,687 | 79.2% | |
| 통과유효폭 | 10,708 | 10,539 | 98.4% | 9,565 | 89.3% | 103,165 | 99,721 | 96.7% | 92,862 | 90.0% | |
| 전·후면 유효거리 | 10,708 | 10,449 | 97.6% | 9,279 | 86.7% | 103,165 | 98,011 | 95.0% | 86,256 | 83.6% | |
| 손잡이 설치 위치 | 10,708 | 10,017 | 93.5% | 7,887 | 73.7% | 103,165 | 92,540 | 89.7% | 75,902 | 73.6% | |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10,708 | 2,817 | 26.3% | 2,354 | 22.0% | 103,165 | 31,977 | 31.0% | 28,604 | 27.7% | |
| 계 | 53,540 | 44,087 | 82.3% | 38,068 | 71.1% | 515,825 | 416,759 | 80.8% | 365,311 | 70.8% | |

<부표 2-5-5>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일반출입문

<부표 2-5-6>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복도

| | | OF I | 공지설 | - | | 민간시설 |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설치율(%)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유효폭 | 9,681 | 9,376 | 96.8% | 8,817 | 91.1% | 37,338 | 35,880 | 96.1% | 34,236 | 91.7% | |
| 단차 | 9,681 | 9,287 | 95.9% | 9,001 | 93.0% | 37,338 | 34,903 | 93.5% | 33,514 | 89.8% | |
| 복도 통로상부의 유효높이 | 9,681 | 9,235 | 95.4% | 8,926 | 92.2% | 37,338 | 35,069 | 93.9% | 33,783 | 90.5% | |
| 손잡이 연속설치 | - | _ | _ | _ | _ | 1,710 | 1,427 | 83.5% | 1,335 | 78.1% | |
| 손잡이 굵기 | - | _ | _ | _ | _ | 1,710 | 1,427 | 83.5% | 1,332 | 77.9% | |
| 손잡이 설치높이 | - | _ | _ | _ | _ | 1,710 | 1,428 | 83.5% | 1,381 | 80.8% | |
| 계 | 29,043 | 27,898 | 96.1% | 26,744 | 92.1% | 117,144 | 110,134 | 94.0% | 105,581 | 90.1% | |

| | | 5 | 공공시설 | | | 민간시설 |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 설치수 및 설치율(%) | | 치수 및 율(%) | 설치기준 설치 [:] 항목수 설치 | | | | 치수 및 치율(%) | |
| 유효폭 | 4,015 | 3,898 | 97.1% | 3,445 | 85.8% | 15,263 | 14,971 | 98.1% | 13,330 | 87.3% | |
| 챌면 설치 여부 | 4,015 | 3,861 | 96.2% | 3,861 | 96.2% | 15,263 | 14,591 | 95.6% | 14,591 | 95.6% | |
| 챌면의 높이, 디딤판 너비 | 4,015 | 3,891 | 96.9% | 3,344 | 83.3% | 15,263 | 14,794 | 96.9% | 12,625 | 82.7% | |
| 손잡이 굵기 | 4,015 | 3,165 | 78.8% | 1,452 | 36.2% | 15,263 | 12,812 | 83.9% | 6,829 | 44.7% | |
| 손잡이 연속설치 | 4,015 | 3,111 | 77.5% | 2,296 | 57.2% | 15,263 | 12,605 | 82.6% | 9,630 | 63.1% | |
|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 4,015 | 1,557 | 38.8% | 885 | 22.0% | 15,263 | 6,606 | 43.3% | 3,930 | 25.7% | |
| 점형블록 설치 | 4,015 | 1,514 | 37.7% | 991 | 24.7% | 15,263 | 3,980 | 26.1% | 2,786 | 18.3% | |
| 손잡이 점자표기 | 4,015 | 961 | 23.9% | 714 | 17.8% | 15,263 | 3,172 | 20.8% | 2,415 | 15.8% | |
| 계 | 32,120 | 21,958 | 68.4% | | 239%. | ē. | | 68.4% | | 8, 531 : F | |

<부표 2-5-7>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계단

| | | 공시설 | | 민간시설 | |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설치율(%)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전면 활동공간 | 2,092 | 2,052 | 98.1% | 1,971 | 94.2% | 22,358 | 22,085 | 98.8% | 21,324 | 95.4% |
| 유효바닥면적(08' 이전) | 1,575 | 1,568 | 99.6% | 1,459 | 92.6% | 17,004 | 16,929 | 99.6% | 15,900 | 93.5% |
| 유효바닥면적(08' 이후) | 517 | 512 | 99.0% | 444 | 85.9% | 5,354 | 5,315 | 99.3% | € ∎ 71-4 | 85.9%3 |

<부표 2-5-9>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승강기



| | | 0-11 | 공공시설 | | | | | 민간시설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 설치= | | 적정설 적정설: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イ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9,836 | 7,152 | 72.7% | 4,153 | 42.2% | 47,595 | 27,582 | 58.0% | 19,568 | 41.1% |
| 시각적 설비 | 9,836 | 5,310 | 54.0% | 4,243 | 43.1% | 47,596 | 23,902 | 50.2% | 19,740 | 41.5% |
|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9,836 | 7,861 | 79.9% | 6,047 | 61.5% | 47,596 | 35,870 | 75.4% | 30,030 | 63.1% |
| 바닥 단차 | 9,836 | 6,891 | 70.1% | 6,891 | 70.1% | 47,596 | 29,280 | 61.5% | 29,280 | 61.5% |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9,836 | 2,273 | 23.1% | 2,273 | 23.1% | 47,596 | 10,052 | 21.1% | 10,052 | 21.1% |
| 점자블록 형태 | 9,802 | 3,992 | 40.7% | 2,534 | 25.9% | 47,449 | 12,359 | 26.0% | 9,034 | 19.0% |
| 점자블록 설치위치 | 9,802 | 3,992 | 40.7% | 2,433 | 24.8% | 47,449 | 12,359 | 26.0% | 8,914 | 18.8% |
| 계 | 68,784 | 37,471 | 54.5% | 28,574 | 41.5% | 332,877 | 151,404 | 45.5% | 126,618 | 38.0% |

<부표 2-5-11>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일반사항

<부표 2-5-12>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대변기

| | | OF1 | 공시설 | _ | | | | [간시설 | _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 설치율 | | 적정설: 설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출입문 형태 | 11,946 | 7,272 | 60.9% | 6,753 | 56.5% | 61,327 | 28,972 | 47.2% | 27,242 | 44.4% |
| 통과 유효폭 | 11,946 | 7,281 | 60.9% | 7,281 | 60.9% | 61,327 | 29,530 | 48.2% | 29,530 | 48.2% |
| 바닥면크기 (05'이전) | 8,898 | 5,422 | 60.9% | 4,126 | 46.4% | 44,989 | 18,523 | 41.2% | 15,742 | 35.0% |
| 바닥면크기 (05'이후) | 3,048 | 2,317 | 76.0% | 1,914 | 62.8% | 16,338 | 12,161 | 74.4% | 10,290 | 63.0% |
| 좌대 높이 | 11,946 | 8,256 | 69.1% | 8,049 | 67.4% | 61,327 | 31,933 | 52.1% | 31,038 | 50.6% |
| 수평손잡이 높이 | 11,946 | 7,845 | 65.7% | 6,333 | 53.0% | 61,327 | 29,843 | 48.7% | 25,468 | 41.5% |
| 수직손잡이 | 11,946 | 7,473 | 62.6% | 4,457 | 37.3% | 61,327 | 28,530 | 46.5% | 19,602 | 32.0% |
| 회전식 손잡이 설치 | 11,946 | 7,538 | 63.1% | 3,581 | 30.0% | 61,327 | 28,746 | 46.9% | 17,693 | 28.9% |
| 세정장치 형태 | 11,946 | 5,770 | 48.3% | 2,702 | 22.6% | 61,327 | 22,606 | 36.9% | 12,197 | 19.9% |
| 계 | 95,568 | 59,174 | 61.9% | 45,196 | 47.3% | 490,616 | 230,844 | 47.1% | 188,802 | 38.5% |

| | | 다 | 공시설 | | | 민간시설 |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 설치을 | | 적정설치수 및 설치율(%) | | 설치기준 항목수 | | | 적정설치수 ! 적정설치율(% | | |
| 수평손잡이 높이 | 2,227 | 1,373 | 61.7% | 1,266 | 56.8% | 37,549 | 12,199 | 32.5% | 11,230 | 29.9% | |
| 수평손잡이 길이 | 2,227 | 1,373 | 61.7% | 1,331 | 59.8% | 37,549 | 12,189 | 32.5% | 11,737 | 31.3% | |
| 좌우 손잡이 간격 | 2,227 | 1,369 | 0 7.9% " | 1,326 | 59.5% | 37,549 | 12,152 | 32.4% | 11,607 | 30.9% | |
| 수직손잡이 높이 | 2,227 | 1,365 | 61.3% | 1,249 | 56.1% | 37,549 | 12,086 | 32.2% | 11,015 | 29.3% | |
| 수직손잡이 길이 | 2,227 | 1,363 | 61.2% | | | | | | | | |

<부표 2-5-13>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소변기



<부표 2-5-16>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샤워실 및 탈의실

| | | | 민간시설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 서 키 으(야) | 적정설: | 치수 및 |
| | 절시기군 영국구 | 길지도 뭐 | '길시 뀰(/o) | 적정설: | 치율(%) |
| 휠체어사용자 출입가능 | 1,762 | 603 | 34.2% | 514 | 29.2% |
| 샤워실 유효바닥면적 | 1,762 | 637 | 36.2% | 603 | 34.2% |
| 샤워용 의자높이 | 1,762 | 371 | 21.1% | 321 | 18.2% |
| 샤워기 위치 | 1,762 | 633 | 35.9% | 455 | 25.8% |
| 수도꼭지 형태, 점자표시 | 1,762 | 604 | 34.3% | 138 | 7.8% |
|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 | 1,762 | 405 | 23.0% | 282 | 16.0% |
| 탈의실 수납장 하부공간 확보 | 1,762 | 294 | 16.7% | 215 | 12.2% |
| 계 | 12,334 | 3,547 | 28.8% | 2,528 | 20.5% |

<부표 2-5-17>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유도 및 안내설비

| | | 공 | 공시설 | | | | 민 | 간시설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 설치율 | | | 치수 및 율(%)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 설치율 | - | 적정설 적정설: | |
| 촉지도식 안내판 | 2,700 | 1,431 | 53.0% | 1,309 | 48.5% | 12,356 | 6,363 | 51.5% | 5,965 | 48.3% |
| 설치규격 | 2,700 | 1,373 | 50.9% | 1,315 | 48.7% | 12,356 | 6,295 | 50.9% | 6,001 | 48.6% |
| 점자표기방식 | 2,700 | 1,342 | 49.7% | 1,241 | 46.0% | 12,356 | 6,152 | 49.8% | 5,780 | 46.8% |
| 음성안내장치 | 174 | 97 | 55.7% | 54 | 31.0% | 1,007 | 632 | 62.8% | 392 | 38.9% |
|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 174 | 100 | 57.5% | 60 | 34.5% | 1,007 | 618 | 61.4% | 331 | 32.9% |
| 점자블록 형태 | 2,700 | 561 | 20.8% | 477 | 17.7% | 12,356 | 2,292 | 18.5% | 2,049 | 16.6% |
| 점자블록 설치위치 | 2,700 | 560 | 20.7% | 560 | 20.7% | 12,356 | 2,291 | 18.5% | 2,291 | 18.5% |
| 계 | 13,848 | 5,464 | 39.5% | 5,016 | 36.2% | 63,794 | 24,643 | 38.6% | 22,809 | 35.8% |

<부표 2-5-18>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경보 및 피난설비

| | | | 공공시설 | | | 민간시설 |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설치율(%) |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시각장애인설비 (청각경보시스템 | 2,881 | 2,400 | 83.3% | 1,815 | 63.0% | 13,399 | 11,052 | 82.5% | 8,703 | 65.0% | |
| 청각장애인설비 (시각경보시스템 | 2,877 | 2,186 | 76.0% | 1,611 | 56.0% | 13,407 | 9,884 | 73.7% | 7,711 | 57.5% | |
| 계 | 5,758 | 4,586 | 79.6% | 3,426 | 59.5% | 26,806 | 20,936 | 78.1% | 16,414 | 61.2% | |

| | | - | 공공시설 | | | 민간시설 |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항목수 | | | | 적정설치수 및 선 설치율(%) |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 적정설; | | |
| 점자블록 형태 | 11,821 | 4,232 | 35.8% | 3,365 | 28.5% | 16,687 | 4,800 | 28.8% | 4,094 | 24.5% | |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1,821 | 4,210 | 35.6% | 3,574 | 30.2% | 16,687 | 4,771 | 28.6% | 4,214 | 25.3% | |
| 점자블록 시공방법 | 11,821 | 4,230 | 35.8% | 3,585 | 30.3% | 16,687 | 4,771 | 28.6% | 4,214 | 25.3% | |
| 계 | 35,463 | 12,672 | 35.7% | 10,524 | 29.7% | 50,061 | 14,342 | 28.6% | 12,522 | 25.0% | |

<부표 2-5-19>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

<부표 2-5-20>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객실·침실

| | 민간시설 | | | | | |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 | 설치· | 수 및 | 적정설 | 치수 및 | | | | | | |
| | 항목수 | 설치· | 율(%) | 적정설 | 치율(%) | | | | | | |
| 객실·침실 설치비율 | 35 | 25 | 71.4% | 23 | 65.7% | | | | | | |
| 공용공간 접근성 | 35 | 30 | 85.7% | 26 | 74.3% | | | | | | |
| 출입문 유효폭 | 35 | 32 | 91.4% | 32 | 91.4% | | | | | | |
| 휠체어 활동공간 | 35 | 32 | 91.4% | 31 | 88.6% | | | | | | |
| 침대 높이 | 35 | 29 | 82.9% | 25 | 71.4% | | | | | | |
| 화장실 바닥단차 | 6,777 | 5,043 | 74.4% | 5,043 | 74.4% | | | | | | |
| 대변기칸막이 출입문 형태 | 6,777 | 5,505 | 81.2% | 5,430 | 80.1% | | | | | | |
| 대변기칸막이 문 유효폭 | 6,777 | 5,430 | 80.1% | 5,430 | 80.1% | | | | | | |
| 바닥면크기(05'이전) | 4,962 | 4,740 | 95.5% | 4,158 | 83.8% | | | | | | |
| 바닥면크기(05'이후) | 1,815 | 1,318 | 72.6% | 498 | 27.4% | | | | | | |
| 대변기형태 및 높이 | 6,777 | 6,021 | 88.8% | 5,816 | 85.8% | | | | | | |
| 대변기 수평손잡이 위치 | 6,777 | 4,945 | 73.0% | 4,653 | 68.7% | | | | | | |
| 대변기 수직손잡이 | 6,777 | 4,790 | 70.7% | 4,401 | 64.9% | | | | | | |
| 회전식 손잡이 | 6,777 | 4,772 | 70.4% | 4,238 | 62.5% | | | | | | |
| 대변기 세정장치 | 6,777 | 5,195 | 76.7% | 4,104 | 60.6% | | | | | | |
| 세면대 상·하단 높이 | 6,777 | 5,788 | 85.4% | 5,296 | 78.1% | | | | | | |
| 휠체어 발받이 공간 | 6,777 | 5,795 | 85.5% | 5,167 | 76.2% | | | | | | |
|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점자표시 | 6,777 | 5,858 | 86.4% | 4,014 | 59.2% | | | | | | |
| 샤워기 위치 | 6,777 | 5,827 | 86.0% | 5,047 | 74.5% | | | | | | |
| 비상용 벨 위치 | 6,777 | 4,315 | 63.7% | 3,988 | 58.8% | | | | | | |
| 샤워기 수도꼭지 형태 | 6,777 | 5,673 | 83.7% | 3,924 | 57.9% | | | | | | |
| 콘센트·스위치·옷걸이 높이 | 6,777 | 5,530 | 81.6% | 4,620 | 68.2% | | | | | | |
| 청각장애인용 초인등·경보설비 | 6,777 | 4,691 | 69.2% | 4,071 | 60.1% | | | | | | |
| 계 | 115,384 | 91,384 | 79.2% | 80,035 | 69.4% | | | | | | |

| | 민간시설 | | | |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준항목수 | 설치수 및 | 설치율(%) |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 | | | | |
| 출입구·피난통로의 접근성 | 2,455 | 2,400 | 97.8% | 2,294 | 93.4% | | | | |
| 유효바닥면적 | 2,455 | 2,372 | 96.6% | 2,310 | 94.1% | | | | |
| 열람석 하부공간 확보 | 2,455 | 26897 | 991 | S 2007 | <u>99</u> %) | | | | |

<부표 2-5-21> 시설주체별 세부항목 설치율 : 관람석·열람석

[부록표 3]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 | 2008년 5 | E 이전 | 건물 | | | 2008년도 | 이후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바닥재질마감 | 88,328 | 87,106 | 98.6% | 84,314 | 95.5% | 38,450 | 38,023 | 98.9% | 37,012 | 96.3% |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88,328 | 85,537 | 96.8% | 77,686 | 88.0% | 38,450 | 37,307 | 97.0% | 34,440 | 89.6% |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88,328 | 84,020 | 95.1% | 75,659 | 85.7% | 38,450 | 36,661 | 95.3% | 33,407 | 86.9% |
| 접근로 유효폭 | 88,328 | 86,754 | 98.2% | 83,353 | 94.4% | 38,450 | 37,927 | 98.6% | 36,836 | 95.8% |
| 기울기 | 88,328 | 82,580 | 93.5% | 71,236 | 80.6% | 38,450 | 36,111 | 93.9% | 31,828 | 82.8% |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88,328 | 56,543 | 64.0% | 50,582 | 57.3% | 38,450 | 25,321 | 65.9% | 22,800 | 59.3% |
| 보행장애물 제거 | 88,328 | 59,856 | 67.8% | 54,896 | 62.2% | 38,450 | 26,776 | 69.6% | 24,885 | 64.7% |
| 계 | 618,296 | 542,396 | 87.7% | 497,726 | 80.5% | 269,150 | 238,126 | 88.5% | 221,208 | 82.2% |

<부표 2-8-1>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주출입구 접근로

<부표 2-8-2>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2008년도 | 이전 | 건물 | | | 2008년도 | 이후 김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u>수</u> | 설치수 설치율 | (0/_) | 적정설 및 <u>적정설치</u>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주차면수 확보 | 22,893 | 18,234 | 79.6% | 14,459 | 63.2% | 10,392 | 8,954 | 86.2% | 7,867 | 75.7% |
|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 22,893 | 22,893 | 100.0% | 11,914 | 52.0% | 10,392 | 10,392 | 100.0% | 5,637 | 54.2% |
| 주차공간 확보 | 22,893 | 13,306 | 58.1% | 10,782 | 47.1% | 10,392 | 6,265 | 60.3% | 5,386 | 51.8% |
| 바닥마감 | 22,893 | 14,155 | 61.8% | 13,545 | 59.2% | | | | | |



<부표 2-8-3>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 | 2008년 5 | E 이전 | 건물 | | | 2008년도 | 이후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기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높이차이제거 | 87,220 | 62,039 | 71.1% | 50,040 | 57.4% | 38,045 | 29,217 | 76.8% | 24,962 | 65.6% |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 폭 | 87,220 | 62,495 | 71.7% | 55,400 | 63.5% | 38,045 | 29,456 | 77.4% | 26,986 | 70.9% |
| 휴식참 | 87,220 | 57,592 | 66.0% | 55,205 | 63.3% | 38,045 | 27,973 | 73.5% | 27,220 | 71.5% |
| 경사로 바닥재질 | 87,220 | 61,751 | 70.8% | 58,833 | 67.5% | 38,045 | 29,207 | 76.8% | 28,309 | 74.4% |
| 휴식참 활동공간확보 | 87,220 | 60,360 | 69.2% | 55,117 | 63.2% | 38,045 | 28,762 | 75.6% | 26,942 | 70.8% |
| 손잡이연속설치 | 87,220 | 54,724 | 62.7% | 50,013 | 57.3% | 38,045 | 27,054 | 71.1% | 25,262 | 66.4% |
| 손잡이 높이 | 87,220 | 54,642 | 62.6% | 51,859 | 59.5% | 38,045 | 27,020 | 71.0% | 26,051 | 68.5% |
| 손잡이 굵기 | 87,220 | 54,639 | 62.6% | 50,250 | 57.6% | 38,045 | 27,021 | 71.0% | 25,371 | 66.7% |
| 점자블록 형태 | 84,951 | 20,595 | 24.2% | 16,618 | 19.6% | 37,201 | 10,723 | 28.8% | 9,084 | 24.4% |
| 점자블록 설치위치 | 84,951 | 20,471 | 24.1% | 16,340 | 19.2% | 37,201 | 10,687 | 28.7% | 8,792 | 23.6% |
| 점자블록 시공방법 | 84,951 | 20,614 | 24.3% | 17,294 | 20.4% | 37,201 | 10,743 | 28.9% | 9,314 | 25.0% |
| 계 | 952,613 | 529,922 | 55.6% | 476,969 | 50.1% | 415,963 | 257,863 | 62.0% | 238,293 | 57.3% |

<부표 2-8-4>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주출입문

| | | 2008년 5 | E 이전 | 건물 | | | 2008년도 | - 이후 ·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기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출입구(문) 높이차이 | 70,016 | 58,128 | 83.0% | 58,128 | 83.0% | 31,816 | 27,234 | 85.6% | 27,234 | 85.6% |
| 통과유효폭 | 70,016 | 66,948 | 95.6% | 66,948 | 95.6% | 31,816 | 30,677 | 96.4% | 30,677 | 96.4% |
| 전·후면 유효거리 | 70,016 | 63,193 | 90.3% | 53,463 | 76.4% | 31,816 | 29,139 | 91.6% | 24,993 | 78.6% |
| 손잡이 설치위치 | 70,016 | 67,686 | 96.7% | 59,702 | 85.3% | 31,816 | 31,000 | 97.4% | 27,797 | 87.4% |
| 손잡이 형태 | 70,016 | 67,406 | 96.3% | 63,427 | 90.6% | 31,816 | 30,915 | 97.2% | 29,580 | 93.0% |
| 점형블록 형태 | 70,193 | 21,110 | 30.1% | 14,730 | 21.0% | 31,864 | 14,046 | 44.1% | 11,546 | 36.2% |
| 점자블록 설치위치 | 70,193 | 20,958 | 29.9% | 15,165 | 21.6% | 31,864 | 13,963 | 43.8% | 11,276 | 35.4% |
| 계 | 490,466 | 365,429 | 74.5% | 331,563 | 67.6% | 222,808 | 176,974 | 79.4% | 163,103 | 73.2% |

| | | 2008년 5 | 도 이전 | 건물 | | | 2008년 도 | 이후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 및 설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설치율 | |
| 일반출입문 단차제거 | 69,718 | 63,853 | 91.6% | 54,618 | 78.3% | 31,672 | 29,354 | 92.7% | 25,927 | 81.9% |
| 통과유효폭 | 69,718 | 67,345 | 96.6% | 62,099 | 89.1% | 31,672 | 30,796 | 97.2% | 29,151 | 92.0% |
| 전·후면 유효거리 | 69,718 | 66,180 | 94.9% | 57,639 | 82.7% | 31,672 | 30,299 | 95.7% | 27,193 | 85.9% |
| 손잡이 설치 위치 | 69,718 | 62,711 | 89.9% | 50,723 | 72.8% | 31,672 | 28,557 | 90.2% | 24,276 | 76.6% |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69,718 | 19,701 | 28.3% | 17,203 | 24.7% | 31,672 | 11,323 | 35.8% | 10,408 | 32.9% |
| 계 | 348,590 | 279,790 | 80.3% | 242,282 | 69.5% | 158,360 | 130,329 | 82.3% | 116,955 | 73.9% |

<부표 2-8-5>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일반출입문

<부표 2-8-6>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복도

| | | 2008년도 | 트 이전 | 건물 | | | 2008년도 | 이후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 |
| 유효폭 | 28,719 | 27,631 | 96.2% | 26,202 | 91.2% | 11,814 | 11,415 | 96.6% | 11,015 93 | .2% |
| 단차 | 28,719 | 27,014 | 94.1% | 25,926 | 90.3% | 11,814 | 11,287 | 05.5% | - 10,977 - 92 | .9% |
| 복도 통로 상부의 유효높이 | 28,719 | 27,032 | | | | | | | | |



2008년도 이전 건물 2008년도 이후 건물 설치기 세부항목 설치수 및 적정설치수 및 설치기준 설치수 및 적정설치수 및 준항목 설치율(%) 적정설치율(%) 항목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수 12,687 3,787 86.9% 유효폭 12,403 97.8% 10,962 86.4% 4,357 4,275 98.1% 챌면 설치 여부 12,687 12,087 95.3% 12,087 95.3% 4,357 4,190 96.2% 4,190 96.2% 챌면의 높이, 12.687 12,279 96.8% 10,406 82.0% 4,357 4,249 97.5% 3.724 85.5% 디딤판 너비 손잡이 굵기 12,687 10,368 81.7% 5,066 39.9% 4,357 3,765 86.4% 2,225 51.1% 손잡이 연속설치 12,687 10,193 80.3% 7,591 59.8% 4,357 3,698 84.9% 2,990 68.6% 수평손잡이 12,687 5,020 39.6% 2,823 22.3% 4,357 1,402 32.2% 2,094 48.1% 연장설치 점형블록 설치 12,687 3,185 25.1% 2,086 16.4% 4,357 1,576 36.2% 1,200 27.5% 1,073 24.6% 손잡이 점자표기 12,687 2,300 1,646 13.0% 4,357 1,285 29.5% 18.1% 67,835 20,591 59.1% 계 101,496 66.8% 52,667 51.9% 34,856 25,132 72.1%

<부표 2-8-7>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계단

<부표 2-8-8>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경사로

| | | 2008년 5 | 도 이전 | 건물 | | | 2008년도 | 이후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 <i>차</i> 적정설차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경사로 유효폭 | 876 | 781 | 89.2% | 619 | 70.7% | 402 | 381 | 94.8% | 336 | 83.6% |
| 휴식참 | 876 | 757 | 86.4% | 504 | 57.5% | 402 | 373 | 92.8% | 313 | 77.9% |
| 기울기 1/12 | 876 | 806 | 92.0% | 487 | 55.6% | 402 | 378 | 94.0% | 306 | 76.1% |
| 바닥면 재질 | 876 | 843 | 96.2% | 626 | 71.5% | 402 | 397 | 98.8% | 356 | 88.6% |
| 휴식참 활동공간 | 876 | 833 | 95.1% | 569 | 65.0% | 402 | 381 | 94.8% | 329 | 81.8% |
| 손잡이 연속설치 | 876 | 753 | 86.0% | 420 | 47.9% | 402 | 350 | 87.1% | 215 | 53.5% |
| 손잡이 높이 | 876 | 765 | 87.3% | 519 | 59.2% | 402 | 355 | 88.3% | 306 | 76.1% |
| 손잡이 굵기 | 876 | 756 | 86.3% | 427 | 48.7% | 402 | 352 | 87.6% | 247 | 61.4% |
| 계 | 7,008 | 6,294 | 89.8% | 4,171 | 59.5% | 3,216 | 2,967 | 92.3% | 2,408 | 74.9% |

| | | 2008년 - | 도 이전 | 건물 | | | 2008년도 | 이후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u>수</u> | 설치숙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전면 활동공간 | 15,750 | 15,592 | 99.0% | 15,029 | 95.4% | 6,093 | 6,043 | 99.2% | 5,841 | 95.9% |
| 유효바닥면적(08'이 전) | 13,473 | 13,421 | 99.6% | 12,629 | 93.7% | 3,168 | 3,144 | 99.2% | 2,919 | 92.1% |
| 유효바닥면적(08'이 후) | 2,277 | 2,260 | 99.3% | 1,983 | 87.1% | 2,925 | 2,905 | 99.3% | 2,633 | 90.0% |
| 가로형 조작반 | 15,750 | 14,390 | 91 4% | 14,390 | 91.4% | 6,093 | 5,641 | 92.6% | 5,641 | 92.6% |
| 조작반 높이 | 15,750 | 14,571 | 92.5% | 13,559 | 86.1% | 6,093 | 5,696 | 93.5% | 5,287 | 86.8% |
| 일반조작반 조작설비 | 15,750 | 15,Z5Q | 100.0% | 15,3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표 2-8-9>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승강기

| | | 2008년 도 | 이전 | 건물 | | | 2008년도 | 이후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u>수</u> | 설치수 설치율 | |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남녀 각 1개이상 설치 | 34,354 | 19,998 | 58.2% | 13,223 | 38.5% | 14,186 | 9,546 | 67.3% | 6,827 | 48.1% |
| 시각적 설비 | 34,355 | 16,718 | 48.7% | 13,323 | 38.8% | 14,786 | ,003X | | (865) | |

<부표 2-8-11>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일반사항

| | | 2008년 5 | E 이전 | 건물 | | | 2008년도 | - 이후 : | 건물 |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 수평손잡이 높이 | 22,923 | 7,251 | 31.6% | 6,638 | 29.0% | 10,309 | 4,006 | 38.9% | 3,701 | 35.9% | |
| 수평손잡이 길이 | 22,923 | 7,246 | 31.6% | 6,925 | 30.2% | 10,309 | 4,006 | 38.9% | 3,900 | 37.8% | |
| 좌우 손잡이 간격 | 22,923 | 7,223 | 31.5% | 6,849 | 29.9% | 10,309 | 3,989 | 38.7% | 3,850 | 37.3% | |
| 수직손잡이 높이 | 22,923 | 7,172 | 31.3% | 6,473 | 28.2% | 10,309 | 3,972 | 38.5% | 3,651 | 35.4% | |
| 수직손잡이 길이 | 22,923 | 7,151 | 31.2% | 6,793 | 29.6% | 10,309 | 3,960 | 38.4% | 3,825 | 37.1% | |
| 계 | 114,615 | 36,043 | 31.4% | 33,678 | 29.4% | 51,545 | 19,933 | 38.7% | 18,927 | 36.7% | |

<부표 2-8-13>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소변기

<부표 2-8-14>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세면대

| | | 2008년 5 | 도 이전 | 건물 | | 2008년도 이후 건물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イ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기 |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세면대 상·하단높이 | 7,452 | 6,130 | 82.3% | 5,340 | 71.7% | 3,372 | 2,877 | 85.3% | 2,605 | 77.3% |
|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 7,452 | 6,018 | 80.8% | 5,042 | 67.7% | 3,372 | 2,819 | 83.6% | 2,441 | 72.4% |
| 수도꼭지형태, 점자표시 | 7,452 | 5,868 | 78.7% | 1,367 | 18.3% | 3,372 | 2,780 | 82.4% | 889 | 26.4% |
| 계 | 22,356 | 18,016 | 80.6% | 11,749 | 52.6% | 10,116 | 8,476 | 83.8% | 5,935 | 58.7% |

<부표 2-8-15>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욕실

| | | 2008년 5 | 도 이전 | 건물 | | | 2008년 5 | E 이후 :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 적정설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휠체어사용자 출입가능 | 1,096 | 275 | 25.1% | 224 | 20.4% | 497 | 130 | 26.2% | 118 | 23.7% |
| 출입문 형태 | 1,096 | 388 | 35.4% | 388 | 35.4% | 497 | 177 | 35.6% | 177 | 35.6% |
| 전면 활동공간 | 1,096 | 275 | 25.1% | 232 | 21.2% | 497 | 126 | 25.4% | 117 | 23.5% |
| 바닥재질 마감 | 1,096 | 398 | 36.3% | 398 | 36.3% | 497 | 178 | 35.8% | 178 | 35.8% |
| 욕조 높이 | 1,096 | 244 | 22.3% | 174 | 15.9% | 497 | 121 | 24.3% | 101 | 20.3% |
| 샤워기 위치 | 1,096 | 288 | 26.3% | 212 | 19.3% | 497 | 137 | 27.6% | 121 | 24.3% |
| 비상용 벨 위치 | 1,096 | 126 | 11.5% | 81 | 7.4% | 497 | 70 | 14.1% | 61 | 12.3% |
| 수도꼭지 형태, 점자표시 | 1,096 | 259 | 23.6% | 59 | 5.4% | 497 | 123 | 24.7% | 53 | 10.7% |
| 계 | 8,768 | 2,253 | 25.7% | 1,768 | 20.2% | 3,976 | 1,062 | 26.7% | 926 | 23.3% |



<부표 2-8-16>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샤워실 및 탈의실

| | | 2008년 5 | 도 이전 | 건물 | | | 2008년 5 | E 이후 :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휠체어사용자 출입가능 | 1,103 | 367 | 33.3% | 308 | 27.9% | 496 | 183 | 36.9% | 161 | 32.5% |
| 샤워실 유효바닥면적 | 1,103 | 389 | 35.3% | 367 | 33.3% | 496 | 194 | 39.1% | 186 | 37.5% |
| 샤워용 의자높이 | 1,103 | 222 | 20.1% | 184 | 16.7% | 496 | 118 | 23.8% | 108 | 21.8% |
| 샤워기 위치 | 1,103 | 388 | 35.2% | 272 | 24.7% | 496 | 191 | 38.5% | 148 | 29.8% |
| 수도꼭지 형태, 점자표시 | 1,103 | 367 | 33.3% | 68 | 6.2% | 496 | 184 | 37.1% | 56 | 11.3% |
|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 | 1,103 | 241 | 21.8% | 161 | 14.6% | 496 | 134 | 27.0% | 101 | 20.4% |
| 탈의실 수납장 하부공간 확보 | 1,103 | 172 | 15.6% | 115 | 10.4% | 496 | 102 | 20.6% | 84 | 16.9% |
| 계 | 7,721 | 2,146 | 27.8% | 1,475 | 19.1% | 3,472 | 1,106 | 31.9% | 844 | 24.3% |

<부표 2-8-17>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유도 및 안내설비

| | | 2008년 5 | 도 이전 | 건물 | | | 2008년도 | - 이후 :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イ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촉지도식 안내판 | 9,303 | 4,671 | 50.2% | 4,313 | 46.4% | 3,656 | 2,049 | 56.0% | 1,942 | 53.1% |
| 설치규격 | 9,303 | 4,586 | 49.3% | 4,348 | 46.7% | 3,656 | 2,026 | 55.4% | 1,946 | 53.2% |
| 점자표기방식 | 9,303 | 4,468 | 48.0% | 4,163 | 44.7% | 3,656 | 1,981 | 54.2% | 1,870 | 51.1% |
| 음성안내장치 | 791 | 495 | 62.6% | 303 | 38.3% | 252 | 152 | 60.3% | 105 | 41.7% |
|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 791 | 467 | 59.0% | 253 | 32.0% | 252 | 165 | 65.5% | 94 | 37.3% |
| 점자블록 형태 | 9,303 | 1,577 | 17.0% | 1,362 | 14.6% | 3,656 | 812 | 22.2% | 756 | 20.7% |
| 점자블록 설치위치 | 9,303 | 1,577 | 17.0% | 1,577 | 17.0% | 3,656 | 810 | 22.2% | 810 | 22.2% |
| 계 | 48,097 | 17,841 | 37.1% | 16,319 | 33.9% | 18,784 | 7,995 | 42.6% | 7,523 | 40.1% |

| | | 2008년 5 | E 이전 | 건물 | | | 2008년도 | 이후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시각장애인설비 (청각경보시스템) | 10,112 | 8,205 | 81.1% | 6,214 | 61.5% | 3,916 | 3,401 | 86.8% | 2,778 | 70.9% |
| 청각장애인설비 (시각경보시스템) | 10,115 | 7,202 | 71.2% | 5,374 | 53.1% | 3,915 | 3,163 | 80.8% | 2,552 | 65.2% |
| 계 | 20,227 | 15,407 | 76.2% | 11,588 | 53.2% | | | | | |

<부표 2-8-18>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경보 및 피난설비



<부표 2-8-20>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객실·침실

| | | 2008년 5 | E 이전 | 건물 | | | 2008년도 | 이후 | 건물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치율(%)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객실·침실설치비율 | 29 | 20 | 69.0% | 19 | 65.5% | 6 | 5 | 83.3% | 4 | 66.7% |
| 공용공간 접근성 | 29 | 25 | 86.2% | 22 | 75.9% | 6 | 5 | 83.3% | 4 | 66.7% |
| 출입문 유효폭 | 29 | 27 | 93.1% | 27 | 93.1% | 6 | 5 | 83.3% | 5 | 83.3% |
| 휠체어 활동공간 | 29 | 27 | 93.1% | 26 | 89.7% | 6 | 5 | 83.3% | 5 | 83.3% |
| 침대 높이 | 29 | 24 | 82.8% | 21 | 72.4% | 6 | 5 | 83.3% | 4 | 66.7% |
| 화장실 바닥단차 | 4,487 | 3,253 | 72.5% | 3,253 | 72.5% | 1,630 | 1,322 | 81.1% | 1,322 | 81.1% |
| 대변기칸막이 출입문 형태 | 4,487 | 3,569 | 79.5% | 3,518 | 78.4% | 1,630 | 1,387 | 85.1% | 1,373 | 84.2% |
| 대변기칸막이 문 유효폭 | 4,487 | 3,505 | 78.1% | 3,505 | 78.1% | 1,630 | 1,405 | 86.2% | 1,405 | 86.2% |
| 바닥면크기(05이전) | 3,529 | 3,359 | 95.2% | 2,975 | 84.3% | 946 | 901 | 95.2% | 776 | 82.0% |
| 바닥면크기(05이후) | 958 | 613 | 64.0% | 181 | 18.9% | 684 | 604 | 88.3% | 275 | 40.2% |
| 대변기형태·높이 | 4,487 | 3,954 | 88.1% | 3,798 | 84.6% | 1,630 | 1,495 | 91.7% | 1,465 | 89.9% |
| 대변기 수평손잡이 위치 | 4,487 | 3,180 | 70.9% | 2,978 | 66.4% | 1,630 | 1,286 | 78.9% | 1,214 | 74.5% |
| 대변기 수직손잡이 | 4,487 | 3,081 | 68.7% | 2,796 | 62.3% | 1,630 | 1,246 | 76.4% | 1,168 | 71.7% |
| 회전식 손잡이 | 4,487 | 3,052 | 68.0% | 2,688 | 59.9% | 1,630 | 1,248 | 76.6% | 1,132 | 69.4% |
| 대변기 세정장치 | 4,487 | 3,347 | 74.6% | 2,651 | 59.1% | 1,630 | 1,351 | 82.9% | 1,055 | 64.7% |
| 세면대 상·하단 높이 | 4,487 | 3,782 | 84.3% | 3,457 | 77.0% | 1,630 | 1,458 | 89.4% | 1,358 | 83.3% |
| 휠체어 발받이 공간 | 4,487 | 3,783 | 84.3% | 3,375 | 75.2% | 1,630 | 1,457 | 89.4% | 1,316 | 80.7% |
|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점자표시 | 4,487 | 3,831 | 85.4% | 2,627 | 58.5% | 1,630 | 1,473 | 90.4% | 998 | 61.2% |
| 샤워기 위치 | 4,487 | 3,837 | 85.5% | 3,318 | 73.9% | 1,630 | 1,441 | 88.4% | 1,250 | 76.7% |
| 비상용 벨 위치 | 4,487 | 2,809 | 62.6% | 2,596 | 57.9% | 1,630 | 1,099 | 67.4% | 1,010 | 62.0% |
| 샤워기 수도꼭지 형태 | 4,487 | 3,688 | 82.2% | 2,555 | 56.9% | 1,630 | 1,441 | 88.4% | 990 | 60.7% |
| 콘센트·스위치·옷걸 이 높이 | 4,486 | 3,621 | 80.7% | 2,997 | 66.8% | 1,630 | 1,428 | 87.6% | 1,208 | 74.1% |
| 청각장애인용 초인등·경보설비 | 4,486 | 3,009 | 67.1% | 2,624 | 58.5% | 1,630 | 1,256 | 77.1% | 1,070 | 65.6% |
| 계 | 76,422 | 59,396 | 77.7% | 52,007 | 68.1% | 27,740 | 23,323 | 84.1% | 20,407 | 73.6% |

| | | 2008년 | 도 이전 | 건물 | | 2008년도 이후 건물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출입구·피난통로의 접근성 | 1,541 | 1,498 | 97.2% | 1,426 | 92.5% | 697 | 688 | 98.7% | 663 | 95.1% |
| 유효바닥면적 | 1,541 | 1,487 | 96.5% | 1,444 | 93.7% | 697 | 673 | 96.6% | 659 | 94.5% |
| 열람석 하부공간 확보 | 1,541 | 1,489 | 96.6% | 1,456 | 94.5% | 697 | 677 | 97.1% | 663 | 95.1% |
|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설치 비율 | 1,541 | 1,477 | 95.8% | 1,388 | 90.1% | 697 | 673 | 96.6% | 648 | 93.0% |
| 계 | 6,164 | 5,951 | 96.5% | 5,714 | 92.7% | 2,788 | 2,711 | 97.2% | 2,633 | 94.4% |

<부표 2-8-21>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관람석·열람석

<부표 2-8-22>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접수대·작업대

| | | 2008년 - | 도 이전 | 건물 | | 2008년도 이후 건물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설치수 및 설치율(%) |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휠체어사용자의 접근 가능 여부 | 9,336 | 8,775 | 94.0% | 8,775 | 94.0% | 3,004 | 2,792 | 92.9% | 2,792 | 92.9% |
| 작업대의 설치높이 | 9,336 | 7,871 | 84.3% | 7,871 | 84.3% | 3,004 | 2,489 | 82.9% | 2,489 | 82.9% |
| 작업대의 하부공간 높이 확보 | 9,336 | 7,999 | 85.7% | 7,423 | 79.5% | 3,004 | 2,546 | 84.8% | 2,380 | 79.2% |
| 작업대의 하부공간 깊이 확보 | 9,336 | 7,804 | 83.6% | 5,468 | 58.6% | 3,004 | 2,509 | 83.5% | 1,841 | 61.3% |
| 계 | 37,344 | 32,449 | 86.9% | 29,537 | 79.1% | 12,016 | 10,336 | 86.0% | 9,502 | 79.1% |



<부표 2-8-23> 2008년도 이전·이후 건물별 세부항목 설치율 : 매표소·판매대·음료대

| | | 2008년 5 | E 이전 | 건물 | | 2008년도 이후 건물 | | | | |
|------------------|-----------------|------------|-------|--------------|-------|--------------|------------|-------|--------------|-------|
| 세부항목 | 설치기 준항목 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차 적정설차 | | 설치기준 항목수 | 설치수 설치율 | | 적정설치 적정설치 | |
| 매표소의 높이 | 1,352 | 1,302 | 96.3% | 1,236 | 91.4% | 603 | 588 | 97.5% | 558 | 92.5% |
| 매표소 하부공간 높이 | 1,352 | 1,272 | 94.1% | 1,249 | 92.4% | 603 | 571 | 94.7% | 567 | 94.0% |
| 매표소 하부공간 깊이 | 1,352 | 1,252 | 92.6% | 1,199 | 88.7% | 603 | 565 | 93.7% | 547 | 90.7% |
| 동전투입구·조작버튼 위치 | 1,350 | 1,297 | 96.1% | 1,269 | 94.0% | 603 | 585 | 97.0% | 575 | 95.4% |
| 조작버튼 점자표시 | 1,350 | 1,176 | 87.1% | 1,176 | 87.1% | 603 | 541 | 89.7% | 541 | 89.7% |
| 누름버튼식 | 1,350 | 1,290 | 95.6% | 1,290 | 95.6% | 603 | 582 | 96.5% | 582 | 96.5% |
| 음료대 분출구높이 | 1,350 | 1,316 | 97.5% | 1,290 | 95.6% | 603 | 593 | 98.3% | 586 | 97.2% |
| 조작기 형태 | 1,350 | 1,316 | 97.5% | 1,316 | 97.5% | 603 | 591 | 98.0% | 591 | 98.0% |
| 점형블록 형태 | 1,351 | 16 | 1.2% | 13 | 1.0% | 603 | 4 | 0.7% | 4 | 0.7% |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351 | 15 | 1.1% | 15 | 1.1% | 603 | 4 | 0.7% | 4 | 0.7% |
| 계 | 13,508 | 10,252 | 75.9% | 10,053 | 74.4% | 6,030 | 4,624 | 76.7% | 4,555 | 75.5% |

[부록표 4] 전수조사결과와 모니터링 결과 비교

| | 전수조사 | | | 모니터링 | | | |
|---------------|-------|-----------|-----|-----------|-----------------|----------------------|--|
| 구 분 | 설치율 | 적정 설치율 | 대상수 | 편의 시설수 | 설치수 및 설치율(%) | 적정설치수 및 적정설치율 (%) | |
| 1종 근린생활시설 | 70.0% | <u> </u> | | | <u> </u> | | |

| | 편의시설 종류 | 설치율 전수조사 결과 | ^물 (%) 모니터링 결과 | 적정설치율(%) 전수조사결과 모니터링 결과 | | |
|----------|------------------|----------------|-----------------------------|----------------------------|-------|--|
| | 주출입구 접근로 | 87.9% | 89.0% | 81.0% | 83.1% | |
| 매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67.6% | 73.5% | 48.5% | 55.3% | |
| 시설 | 높이차이 제거 | 57.8% | 58.9% | 52.5% | 50.0% | |
| | 계 | 69.5% | 71.0% | 62.5% | 62.1% | |
| | 바닥재질마감 | 98.7% | 99.2% | 95.8% | 97.6% | |
| | 이음새 틈, 평탄 마감 | 96.8% | 97.5% | 88.5% | 90.9% | |
| | 이음새높이, 틈새간격 | 95.0% | 96.4% | 85.9% | 88.4% | |
| 주출 | 접근로 유효폭 | 98.3% | 98.8% | 94.8% | 95.8% | |
| 입구 접근 | 기울기 | 93.5% | 93.8% | 81.0% | 81.3% | |
| 로 | 차도와의 경계부분 공작물 | \$1494.bc | | | | |

| | | 설치율 | 울 (%) | 적정설기 | 치율 (%) |
|----------|----------------|---------|---------|--------|---------|
| | 세부항목 | 전수조사 결과 | 모니터링 결과 | 전수조사결과 | 모니터링 결과 |
| | 주출입문 | 76.2% | 77.4% | 69.4% | 69.7% |
| | 일반출입문 | 80.9% | 81.4% | 70.8% | 58.4% |
| | 복도 | 94.4% | 96.1% | 90.5% | 91.2% |
| 내부 | 계단 | 68.4% | 67.4% | 53.9% | 53.3% |
| 시설 | 경사로 | 90.3% | 88.6% | 64.5% | 66.2% |
| | 승강기 | 93.2% | 92.3% | 85.2% | 85.3% |
| | 휠체어리프트 | 96.0% | 94.4% | 81.7% | 77.8% |
| | 계 | 80.6% | 81.5% | 72.2% | 69.1% |
| | 출입구(문) 높이차이 | 84.3% | 86.3% | 84.3% | 86.3% |
| | 통과유효폭 | 95.9% | 96.8% | 95.9% | 96.8% |
| | 전·후면 유효거리 | 90.9% | 90.9% | 77.3% | 76.8% |
| 주출 | 손잡이 설치 위치 | 97.0% | 97.1% | 85.5% | 85.6% |
| 입문 | 손잡이 형태 | 96.6% | 96.8% | 91.2% | 91.5% |
| | 점형블록 형태 | 34.7% | 36.9% | 25.8% | 25.1% |
| | 점자블록 설치 위치 | 34.4% | 36.9% | 26.1% | 25.8% |
| | 소계 | 76.2% | 77.4% | 69.4% | 69.7% |
| | 일반출입문 단차제거 | 92.0% | 94.1% | 79.6% | 69.9% |
| | 통과유효폭 | 96.8% | 98.0% | 89.9% | 79.3% |
| 일반 출입 | 전·후면 유효거리 | 95.2% | 97.1% | 83.9% | 75.8% |
| 물집 문 | 손잡이 설치 위치 | 90.1% | 90.8% | 73.6% | 57.9% |
| |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 30.6% | 27.0% | 27.2% | 9.0% |
| | 소계 | 80.9% | 81.4% | 70.8% | 58.4% |
| | 유효폭 | 96.3% | 97.5% | 91.6% | 92.4% |
| | 단차 | 94.0% | 95.7% | 90.4% | 91.1% |
| | 복도 통로 상부의 유효높이 | 94.2% | 95.1% | 90.8% | 90.1% |
| 복도 | 손잡이 연속설치 | 83.5% | 95.1% | 78.1% | 87.8% |
| | 손잡이 굵기 | 83.5% | 95.1% | 77.9% | 92.7% |
| | 손잡이 설치높이 | 83.5% | 95.1% | 80.8% | 95.1% |
| | 소계 | 94.4% | 96.1% | 90.5% | 91.2% |
| | 유효폭 | 97.9% | 97.9% | 87.0% | 85.0% |
| | 챌면 설치 여부 | 95.7% | 96.5% | 95.7% | 96.5% |
| | 챌면의 높이, 디딤판 너비 | 96.9% | 97.7% | 82.8% | 84.7% |
| | 손잡이 굵기 | 82.9% | 79.4% | 43.0% | 38.5% |
| 계단 | 손잡이 연속설치 | 81.5% | 79.1% | 61.9% | 61.5% |
| |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 42.3% | 40.3% | 25.0% | 24.0% |
| | 점형블록 설치 | 28.5% | 28.1% | 19.6% | 19.2% |
| | 손잡이 점자표기 | 21.4% | 20.5% | 16.2% | 16.8% |
| | 소계 | 68.4% | 67.4% | 53.9% | 53.3% |

<부표 4-1-4> 전수조사결과와 모니터링 결과 비교 : 내부시설의 세부항목별

| 세부항목 | | ^{물 (%)} 모니터링 결과 | 적정설치율 (%) 전수조사결과 모니터링 결과 | | |
|---------|-------|-----------------------------|-----------------------------|--|--|
| 경사로 유효폭 | 90.4% | 94.1% | | | |
| 경사 로 | | | | | |

| | 세부항목 | 설치율 전수조사 결과 | ^울 (%) 모니터링 결과 | | 치율(%) 모니터링 결과 |
|----------|-----------------------------|-------------------------|-----------------------------|------------------------|-------------------------|
| | 일반사항 | <u>친구조자 결과</u> 47.0% | <u>포니더링 걸파</u> 43.9% | <u>친구조자결과</u> 38.6% | <u>포니더링 걸파</u> 35.3% |
| | 대변기 | 49.5% | 55.3% | 39.9% | 43.2% |
| | 소변기 | 33.9% | 34.1% | 32.0% | 32.4% |
| 위생 시설 | 세면대 | 81.9% | 85.8% | 54.4% | 54.1% |
| . – | 욕실 | 26.1% | 13.1% | 21.2% | 9.8% |
| | 샤워실 · 탈의실 | 28.8% | 23.7% | 20.5% | 12.5% |
| | 계 | 46.7% | 47.4% | 38.3% | 38.1% |
| | - | 60.5% | 59.4% | 41.3% | 40.4% |
| | 시각적 설비 | 50.9% | 45.0% | 41.8% | 38.3% |
| | 휠체어사용자 화장실 접근가능 통로 연결 여부 | 76.1% | 71.0% | 62.8% | 59.0% |
| 일반 사항 | 바닥 단차 | 63.0% | 60.0% | 63.0% | 58.2% |
| ~18 |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 21.5% | 10.3% | 21.5% | 9.4% |
| | 점형블록 형태 | 28.6% | 30.9% | 20.2% | 21.2% |
| | | | | | |

| | | | | | www.koddi.or.kr | |
|----------|-----------------|---------|---------|-----------|-----------------|--|
| | 세부항목 | 설치율 | | 적정설치율 (%) | | |
| | | 전수조사 결과 | 모니터링 결과 | 전수조사결과 | 모니터링 결과 | |
| | 세면대 높이 | 83.5% | 87.0% | 73.5% | 77.5% | |
| 세면 대 |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 82.1% | 85.3% | 69.6% | 70.5% | |
| 'n | 수도꼭지형태, 점자표시 | 80.0% | 85.3% | 20.1% | 14.5% | |
| | 소계 | 81.9% | 85.8% | 54.4% | 54.1% | |
| | 휠체어사용자 출입가능 | 25.6% | 14.6% | 21.6% | 14.6% | |
| - | 출입문 형태 | 35.6% | 12.2% | 35.6% | 12.2% | |
| | 전면 활동공간 | 25.1% | 14.6% | 21.8% | 12.2% | |
| | 바닥재질 마감 | 36.4% | 14.6% | 36.4% | 14.6% | |
| 욕실 | 욕조 높이 | 22.9% | 17.1% | 17.4% | 9.8% | |
| | 샤워기 위치 | 26.9% | 17.1% | 20.8% | 12.2% | |
| | 비상용 벨 위치 | 12.1% | 2.4% | 8.9% | 2.4% | |
| | 수도꼭지 형태, 점자표시 | 24.0% | 12.2% | 7.0% | 0.0% | |
| | 소계 | 26.1% | 13.1% | 21.2% | 9.8% | |
| | 휠체어사용자 출입가능 | 34.2% | 29.3% | 29.2% | 24.4% | |
| | 샤워실 유효바닥면적 | 36.2% | 31.7% | 34.2% | 26.8% | |
| | 샤워용 의자높이 | 21.1% | 7.3% | 18.2% | 4.9% | |
| 샤워 | 샤워기 위치 | 35.9% | 31.7% | 25.8% | 17.1% | |
| 실탈 의실 | 수도꼭지 형태, 점자표시 | 34.3% | 29.3% | 7.8% | 0.0% | |
| |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 | 23.0% | 22.0% | 16.0% | 7.3% | |
| | 탈의실 수납장 하부공간 확보 | 16.7% | 14.6% | 12.2% | 7.3% | |
| | 소계 | 28.8% | 23.7% | 20.5% | 12.5% | |

| | | 설치율 | 울 (%) | 적정설치 | 치율 (%) |
|----------|----------------------|---------|---------|--------|---------|
| | 세부항목 | 전수조사 결과 | 모니터링 결과 | 전수조사결과 | 모니터링 결과 |
| | 유도 및 안내설비 | 38.8% | 24.0% | 35.8% | 20.6% |
| 안내 | 경보 및 피난설비 | 78.4% | 72.6% | 60.9% | 53.5% |
| 시설 | 접근로 점자블록 | 31.6% | 13.4% | 26.9% | 10.6% |
| | 계 | 42.2% | 26.6% | 36.1% | 21.3% |
| | 촉지도식 안내판 | 51.8% | 31.7% | 48.3% | 29.7% |
| | 설치규격 | 50.9% | 31.7% | 48.6% | 28.9% |
| | 점자표기방식 | 49.8% | 31.7% | 46.6% | 26.2% |
| 유도 및 | 음성안내장치 | 61.7% | 19.5% | 37.8% | 14.4% |
| 안내 시설 |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 60.8% | 19.1% | 33.1% | 14.2% |
| 12 | 점자블록 형태 | 18.9% | 17.1% | 16.8% | 14.0% |
| | 점자블록 설치위치 | 18.9% | 17.1% | 18.9% | 17.1% |
| | 소계 | 38.8% | 24.0% | 35.8% | 20.6% |
| 경보 | 시각장애인 설비(청각경보시스템) | 82.6% | 77.4% | 64.6% | 58.5% |
| 및 피난 | 청각장애인 설비(시각경보시스템) | 74.1% | 67.9% | 57.2% | 48.6% |
| 설비 | 소계 | 78.4% | 72.6% | 60.9% | 53.5% |
| | 점자블록 형태 | 31.7% | 13.4% | 26.2% | 11.0% |
| 접근 로 | 점자블록 설치위치 | 31.5% | 13.4% | 27.3% | 10.2% |
| 점자 블록 | 점자블록 시공방법 | 31.6% | 13.4% | 27.4% | 10.5% |
| 27 | 소계 | 31.6% | 13.4% | 26.9% | 10.6% |

<부표 4-1-6> 전수조사결과와 모니터링 결과 비교 : 안내시설의 세부항목별

| | 개요의다 | | 설치을 | 율 (%) | 적정설계 | 치율 (%) |
|---|----------|-------------|-------|---------|-------|---------|
| | | 세부항목 | | 모니터링 결과 | | 모니터링 결과 |
| | | 객실·침실 | 79.2% | 76.6% | 69.4% | 62.6% |
| | -1-1 | 관람석·열람석 | 96.9% | 95.0% | 93.4% | 72.5% |
| | 기타 시설 | 접수대·작업대 | 86.6% | 80.8% | 79.0% | 69.0% |
| | | 매표소·판매대·음료대 | 76.2% | 22.1% | 74.8% | 19.1% |
| _ | | 계 | 81.7% | 76.6% | 73.7% | 63.9% |
| | | 객실·침실 설치비율 | | | | |
| | 객실·침실 | | | | | |

| | | 설치율 | 울 (%) | 적정설기 | 치율 (%) |
|-----------------|---------------------|---------|---------|--------|---------|
| | 세부항목 | 전수조사 결과 | 모니터링 결과 | 전수조사결과 | 모니터링 결과 |
| | 휠체어사용자의 접근 가능 여부 | 93.7% | 92.3% | 93.7% | 91.0% |
| | 작업대의 설치높이 | 83.9% | 75.8% | 83.9% | 73.0% |
| 접수 대·작 업대 | 작업대의 하부공간 높이 확보 | 85.3% | 79.2% | 79.2% | 71.0% |
| L | 작업대의 하부공간 깊이 확보 | 83.3% | 75.8% | 59.0% | 40.9% |
| | 소계 | 86.6% | 80.8% | 79.0% | 69.0% |
| | 매표소의 높이 | 96.8% | 100.0% | 91.9% | 60.0% |
| | 매표소 하부공간 높이 | 94.6% | 60.0% | 92.9% | 60.0% |
| | 매표소 하부공간 깊이 | 93.2% | 80.0% | 89.5% | 40.0% |
| | 동전투입구·조작버튼 위치 | 96.3% | 50.0% | 94.5% | 50.0% |
| 매표 소판 | 조작버튼 점자표시 | 88.2% | 50.0% | 88.2% | 50.0% |
| 매대 | 누름버튼식 | 95.9% | 75.0% | 95.9% | 75.0% |
| ·음료 대 | 음료대 분출구 높이 | 97.6% | 100.0% | 95.9% | 100.0% |
| | 조작기 형태 | 97.4% | 100.0% | 97.4% | 100.0% |
| | 점형블록 형태 | 1.1% | 0.0% | 1.0% | 0.0% |
| | 점형블록 설치위치 | 1.1% | 0.0% | 1.1% | 0.0% |
| | 소계 | 76.2% | 22.1% | 74.8% | 19.1% |



<부표 4-1-8> 전수조사결과와 모니터링 결과 비교 : 대상시설별 비치용품 비치율

| | | 전수 | 조사 결고 | 1 | 모니 | 터링 결과 | ŀ |
|---------------------|----|-------------|--------|-------|-------------|-------|-------|
| 대상시설 종류 | 구분 | 설치기준 항목수 | 비치수 | 비치율 | 설치기준 항목수 | 비치수 | 비치율 |
| | 의무 | 10,906 | 6,084 | 55.8% | 508 | 285 | 56.1% |
| 읍·면·동사무소 | 권장 | 2,725 | 657 | 24.1% | 127 | 42 | 33.1% |
| | 소계 | 13,631 | 6,741 | 49.5% | 635 | 327 | 51.5% |
| | 의무 | 5,179 | 3,163 | 61.1% | 183 | 117 | 63.9% |
| 우체국 | 권장 | 1,719 | 298 | 17.3% | 61 | 20 | 32.8% |
| | 소계 | 6,898 | 3,461 | 50.2% | 244 | 137 | 56.1% |
| | 의무 | 366 | 179 | 48.9% | - | - | - |
| 전신전화국 | 권장 | 122 | 43 | 35.2% | _ | - | _ |
| | 소계 | 488 | 222 | 45.5% | - | - | _ |
| | 의무 | 240 | 66 | 27.5% | - | - | _ |
| 공공도서관 | 권장 | 240 | 86 | 35.8% | - | - | _ |
| | 소계 | 480 | 152 | 31.7% | - | - | _ |
| | 의무 | 366 | 105 | 28.7% | 6 | 4 | 66.7% |
| 공연장 | 권장 | 365 | 88 | 24.1% | 6 | 3 | 50.0% |
| | 소계 | 731 | 193 | 26.4% | 12 | 7 | 58.3% |
| | 의무 | 39 | 14 | 35.9% | _ | | |
| 관람장 | 권장 | 39 | 13 | 33.3% | _ | | |
| | 소계 | 78 | 27 | 34.6% | _ | _ | _ |
| 전시장 | 권장 | 1,353 | 522 | 38.6% | 14 | 3 | 21.4% |
| 신시장 | 소계 | 1,353 | 522 | 38.6% | 14 | 3 | 21.4% |
| 동·식물원 | 권장 | 76 | 32 | 42.1% | _ | _ | _ |
| 승·역물권 | 소계 | 76 | 32 | 42.1% | - | _ | - |
| 도·소매점 | 권장 | 1,401 | 443 | 31.6% | 54 | 20 | 37.0% |
| 工工具 | 소계 | 1,401 | 443 | 31.6% | 54 | 20 | 37.0% |
| | 의무 | 929 | 458 | 49.3% | 6 | 5 | 83.3% |
| 도서관 | 권장 | 624 | 338 | 54.2% | 4 | 2 | 50.0% |
| | 소계 | 1,553 | 796 | 51.3% | 10 | 7 | 70.0%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의무 | 13,363 | 6,937 | 51.9% | 560 | 293 | 52.3% |
| 국가 또는 사용자자원세크 청사 | 권장 | 7,992 | 3,663 | 45.8% | 336 | 145 | 43.2% |
| | 소계 | 21,355 | 10,600 | 49.6% | 896 | 438 | 48.9% |
| 고과수비사서 | 권장 | 542 | 240 | 44.3% | 8 | 4 | 50.0% |
| 관광숙박시설 | 소계 | 542 | 240 | 44.3% | 8 | 4 | 50.0% |
| | 의무 | 31,388 | 17,006 | 54.2% | 1,263 | 704 | 55.7% |
| 계 | 권장 | 17,198 | 6,423 | 37.3% | 610 | 239 | 39.2% |
| | 소계 | 48,586 | 23,429 | 48.2% | 1,873 | 943 | 50.3% |

| | | 전 | 수조사 결 | 라 | 모니터링 결과 | | | |
|-----------|---------------------|-------------|--------|-------|-------------|-----|-----|--------|
| 세부항목 | | 설치기준 항목수 | 비치수 | 비치율 | 설치기준 항목수 | 비치수 | 비치율 | |
| | 점자업무안내최 | 백자 | 2,727 | 1,116 | 40.9% | 127 | 54 | 42.5% |
| | 8배율이상의 획 | 확대경 | 2,727 | 1,827 | 67.0% | 127 | 86 | 67.7% |
| | 공중모사전송7 | ' | 2,726 | 2,090 | 76.7% | 127 | 97 | 76.4% |
| 읍·면· | 보청기기 | | 2,726 | 1,051 | 38.6% | 127 | 48 | 37.8% |
| 동사무 소 | 편의시설안내지 | 티도(권장) | 2,725 | 657 | 24.1% | 127 | 42 | 33.1% |
| | | 의무 | 10,906 | 6,084 | 55.8% | 508 | 285 | 56.1% |
| | 계 | 권장 | 2,725 | 657 | 24.1% | 127 | 42 | 33.1% |
| | | 소계 | 13,631 | 6,741 | 49.5% | 635 | 327 | 51.5% |
| | 8배율이상의 | 확대경 | 1,728 | 1,116 | 64.6% | 61 | 38 | 62.3% |
| | 공중모사전송7 | ' | 1,726 | 1,208 | 70.0% | 61 | 47 | 77.0% |
| | 보청기기 | | 1,725 | 839 | 48.6% | 61 | 32 | 52.5% |
| 우체국 | 점자업무안내최 | 백자(권장) | 1,719 | 298 | 17.3% | 61 | 20 | 32.8% |
| | | 의무 | 5,179 | 3,163 | 61.1% | 183 | 117 | 63.9% |
| | 계 | 권장 | 1,719 | 298 | 17.3% | 61 | 20 | 32.8% |
| | | 소계 | 6,898 | 3,461 | 50.2% | 244 | 137 | 56.1% |
| | 보청기기 | | 366 | 105 | 28.7% | 6 | 4 | 66.7% |
| | 점자공연안내최 | 백자(권장) | 365 | 88 | 24.1% | 6 | 3 | 50.0% |
| 공연장 | | 의무 | 366 | 105 | 28.7% | 6 | 4 | 66.7% |
| | 계 | 권장 | 365 | 88 | 24.1% | 6 | 3 | 50.0% |
| | | 소계 | 731 | 193 | 26.4% | 12 | 7 | 58.3% |
| | 휠체어(권장) | | 677 | 327 | 48.3% | 7 | 2 | 28.6% |
| 전시장 | 점자전시안내최 | 백자(권장) | 676 | 195 | 28.8% | 7 | 1 | 14.3% |
| | 계 | | 1,353 | 522 | 38.6% | 14 | 3 | 21.4% |
| 도·소 매점 | 음성계산기(권 | 장) | 1,401 | 443 | 31.6% | 54 | 20 | 37.0% |
| | 저시력용 독서 | フ | 310 | 193 | 62.3% | 2 | 2 | 100.0% |
| | 음성지원 컴퓨 | 터 | 309 | 140 | 45.3% | 2 | 2 | 100.0% |
| | 보청기기 | | 310 | 125 | 40.3% | 2 | 1 | 50.0% |
| | 점자프린터(권 | 장) | 309 | 96 | 31.1% | 2 | 0 | 0.0% |
| 도서관 | 컴퓨터(정보통· 포함)(권장) | 신보조기기 | 315 | 242 | 76.8% | 2 | 2 | 100.0% |
| | | 의무 | 929 | 458 | 49.3% | 6 | 5 | 83.3% |
| | 계 | 권장 | 624 | 338 | 54.2% | 4 | 2 | 50.0% |
| | | 소계 | 1,553 | 796 | 51.3% | 10 | 7 | 70.0% |

<부표 4-1-9> 전수조사결과와 모니터링 결과 비교 : 대상시설별 세부비치용품별 비치율



| | | | 전 | 수조사 결 | 라 | 모 | 니터링 결: | 라 |
|------------|---------------------|-------------|--------|--------|-------------|-------|--------|-------|
| 세부항목 | | 설치기준 항목수 | 비치수 | 비치율 | 설치기준 항목수 | 비치수 | 비치율 | |
| | 점자업무안내최 구청에 한함) | 백자(시·군· | 2,660 | 1,143 | 43.0% | 112 | 55 | 49.1% |
| | 휠체어 | | 2,682 | 1,498 | 55.9% | 112 | 62 | 55.4% |
| | 8배율 이상의 | 확대경 | 2,680 | 1,567 | 58.5% | 112 | 63 | 56.3% |
| 국가 | 공중모사전송기 | 7 | 2,677 | 1,823 | 68.1% | 112 | 82 | 73.2% |
| 또는 | 보청기기 | | 2,664 | 906 | 34.0% | 112 | 31 | 27.7% |
| 지방자 | 점자업무안내최 | 백자(권장) | 2,660 | 872 | 32.8% | 112 | 34 | 30.4% |
| 치단체 의 | 편의시설안내지 | 지도(권장) | 2,661 | 1,008 | 37.9% | 112 | 37 | 33.0% |
| 청사 | 컴퓨터(정보통· 포함)(권장) | 신보조기기 | 2,671 | 1,783 | 66.8% | 112 | 74 | 66.1% |
| | | 의무 | 13,363 | 6,937 | 51.9% | 1,263 | 704 | 55.7% |
| | 계 | 권장 | 7,992 | 3,663 | 45.8% | 610 | 239 | 39.2% |
| | | 소계 | 21,355 | 10,600 | 49.6% | 1,873 | 943 | 50.3% |
| 관광숙 박시설 | 점자관광안내최 | 백자(권장) | 542 | 240 | 44.3% | 8 | 4 | 50.0% |

[부록표 5]





전수조사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 모든 이용자기 | ㅏ 해당시설물의 대지경계선에서 |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접근 |
|---------|--------------------|-------------------|
| 하는데 적합히 | ·여야 하며, 보행에 장애물이 될 |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1 | | | | | |
| ▶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대상시설 해당 여부 | 해당 (1) (→ 1.1.2 항목부터 시작) | 비해당 (2) (→ 1.2 주차구역 항목부터 시작) | | | | |

| 평가 번호 | |
|-------|--|
| | |

평가 내용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마감 |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으며 넘어질 염려 없음 | 미끄러우나 넘어질 염려 없음 | 미끄러운 재질로 마감 |
| ▶ 바닥면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 보도블럭, 아스팔트 등 2㎝이하로 틈새없이 평탄하게 마감 | 보도블록, 아스팔트 등 2㎝이하이며 평탄하지 않거나 2㎝초과하며 평탄하게 마감 | 자갈 및 모래 등으로 틈새가 2cm초과하고 평탄하지 않음 |
| ▶ 이음새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2cm이하 | 높이차 없으며, 격자구멍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 다만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적정으로 봄 | 높이차가 있거나 격자구멍 또는 틈새의 한 방향이 2cm초과 | 높이차 있으며, 격자구멍 또는 틈새의 양방향 2cm초과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이상 확보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 일부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미만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미만 |
| ▶ 보도 등의 진행방향 기울기는 18 분의 1이하 |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 이하 | 일부 구간 접근로 기울기가 1/12 ~ 1/18초과 |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2초과 |

전수조사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 평가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경계석·울타 리·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설치.(공작물 설치가 곤란 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분 설치) | 보행통로와 차도에 공작물 또는 경계석 등이 설치됨 ※ 이동식화분 설치시는 적정 | 보행통로용 안전선만 색상 표기 ※ 라바콘 설치시는 미흡 | 보행통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음 |
| ▶ 접근보행통로에 차량, 안내판, 가 로수, 화분 등의 보행 장애물이 없어야 함 | 대지경계선 내 모든 보 행통로에(폭 1.2m이상) 장애물이 없음 ※ 이동식 장애물인 경우 적정에 포함 | 대지경계선 내 일부 구간 보행통로(폭 1.2m미만)에 장애물이 있음 | 대지경계선 내 모든 구간에 안전보행통로 없이 차량과 같은 레벨에서 접근함 |

※ 보행자 접근시 차량과의 교차동선이 없는 경우는 안전보행통로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함.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 | | |
| ▶ 주출입구 접근로에 점자블록 설치여부 | 유 (1) (→ 1.1.6 항목부터 시작) | 무 (2) (→ 1.2 주차구역 항목부터 시작) | | |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평가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점자블록 형태 (주출입구와 대지경계선까지의 연계) |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 미설치 |
| ▶ 설치위치 | 전체구간 주출입구와 최단거리로 설치 | 설치는 되어 있으나 보행안전통로와 상관없이 차도 등에 설치 | 미설치 |
| ▶ 시공방법 | 바닥마감재와 동일하게 마감 |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 미설치 |



전수조사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평가 번호
 평가 내용

 응다 (1) (→ 1.2.2 항목부터 시작)
 무 (2) (→ 1.3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항목부터 시작)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 ▶ 대상시설 총 주차 (실제 설치된 주치 | | (|) 다 |
| ▶ 장애인전용주차구 대수 | 역 총 주차 | (|)다 |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 면수 확보 | 규정비율의 100%이상 | 규정비율의 100%미만 | 미설치 |
|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 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 | 주차 후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로 접근가능하 다는 표시(경사로 표시 등)가 있으나, 출입구로 부터 다소 거리가 있음 | |
| ▶ 크기는 폭 3.3m이상, 길이 5m이 상(평행주차인 경우 폭 2m이상, 길이 6m이상)의 주차공간의 확보 | 모든 주차면이 규정 크기 준수 | 일부 주차면이 규정 크기에 미달 | 모든 주차면이 규정 크기 미달 |
| ▶ 주차공간 바닥마감의 적정성 | 전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마감 |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또는 평탄하지 않은 마감 | 잔디블록 등 2㎝초과의 틈새로 인해 휠체어 이동 곤란 |

전수조사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 평가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장애인전용주차장 바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 바닥 및 입식표시 규격에 맞게 모두 적정 설치, 안내표지내용 적정 기재 | 바닥 또는 입식표시 중 한 가지만 적정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없음 |
| ▶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안전통행로 확보 | 모든 구간에 폭 1.2m이상 안전보행통로가 연속적으로 설치 | 안전보행통로 일부구간이 1.2m미만 | 모든 구간에 별도의 안전보행통로 없음 |

한국장애인개발원 Xi to ippoy www

전수조사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평가 내용

|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의 설치형태 | 단차 없음(1) (주출입문 앞까지 단차없음) | 계단+경사로(2) (주출입문 앞까지 계단과 경사로를 병행하여 설치) | 계단(3) (주출입문 앞까지 계단만 설치) |
|---------------------------|--------------------------------|--|-------------------------------|
|---------------------------|--------------------------------|--|-------------------------------|

| 평가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해당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접 근로의 높이차이는 2cm이하가 되고 주출입문까지의 휠체어 등 의 접근 가능여부 | 2cm이하의 단차, 또는 그 이상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12이하 설치 | 2cm이상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12초과 설치 | 2cm를 초과하는 단차만 있음 |
| ▶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이 1.2 m이상 설치 | 단차 없이 접근, 또는 경사로 참(1.5m×1.5m)과 출입구전면의 연결 접근 공간 폭이 1.2m이상 | 출입구 전면의 연결접근 공간 폭이 1.2m미만 또는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이면서 전·후면 활동공간이 1.5m×1.5m 미만인 경우 | - |
|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 높이 0.75m초과 휴식참 설치 | 미설치 |
| ▶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 며, 평탄함 |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며 평탄 하지 않거나, 또는 바닥이 미끄럽거나 평탄 하게 설치 | 바닥이 미끄럽고 평탄하지 않음 |
|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1.5m×1.5m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 모든공간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일부공간 1.5m×1.5m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 활동공간 미확보 |
| ▶ <u>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u> 양측 면에 손잡이의 연속 설치 | 손잡이 양측면에 연속 설치 | 손잡이 한쪽 면에 연속 설치 | 미설치 |
| ▶ <u>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u> 손잡 이의 높이 적정여부 | 높이는 0.8~0.9m | 높이는 0.8m미만 또는 0.9m초과 | 미설치 |
| ▶ <u>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u> 손잡 이의 굵기 적정여부 | 굵기는 0.032~0.038m | 굵기는 0.032m미만 또는 0.038m이상 | 미설치 |

※ 경사로이 길이가 1.8m미만이거나 높이가 0.15m미만인 경우에는 손잡이 해당항목(1.3.26부터 1.3.28까지) 모두 적정으로 표기

전수조사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에 점자블록이 설치여부 | 유 (1) (→ 1.3.4 항목부터 시작) | 무 (2) (→ 2.1 내부시설 항목부터 시작) | | |

※ 계단과 경사로가 함께 설치된 경우이면서 점자블록을 경사로쪽에만 설치한 경우에는 유(1)로 표기하고 1.3.4.1부터 1.3.4.3까지는 미설치로 표기하여야함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평기 평가세부내용 |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점자블록 형태 |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 미설치 |
| ▶ 설치위치 | 단차가 있는 전체구간에 점형블록을 설치 | 단차가 있는 일부구간에 점형블록 설치 | 미설치 |
| ▶ 시공방법 | 바닥마감재와 동일하게 마감 |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 미설치 |

※ 주출입문의 단차와 구별할 필요가 있음



모든 시설은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며, 수평 및 수직이동에 장애가 없 어야 한다.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주출입문으로 단차제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출입문으로 단차제거가 된 경우에는 부출입문을 주출입문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음. 다만, 지형 구조상 불가피하게나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인정함.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주출입문의 높이차이 여부 | 주출입문에 단차 없거나, 단차 2cm이하 | | 주출입문과 부출입문의 단차가 2cm 초과 |
| ▶ 주출입문 통과유효폭의 0.8m이상 확보 여부 | 주출입문의 유효폭이 0.8m이상 | | 주출입문의 유효폭이 0.8m미만 |
| ▶ 주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m이상 확보 | 주출입문을 연 후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 | 주출입문과 부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가 1.2m미만 (문이 닫힌 상태에서 1.5mx1.5m 이상 활동 공간 확보 정도) | 전·후면 유효거리 미확보 |
| ▶ 주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설치 | 높이 0.8~0.9m 사이에 손잡이 설치 (자동문 포함) | 높이 0.8m미만 또는 0.9m초과 위치에 손잡이 설치 | 수동문인 경우이면서 손잡이가 없음 |
| ▶ 주출입문 손잡이 형태 |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자동문포함) | 돌림형 손잡이 (둥근형 손잡이) | 수동인 경우면서 손잡이 없음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 | | | | |
| ▶ 주출입문에 점형블록이 설치여부 | 무 (2) (→ 2.1.4.1 항목부터 시작) | | | | | |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점형블록 형태 설치 주출입문을 닫은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0.3m 상태에서 앞뒤 0.3m 미설치 이격하지 않거나 또는 설치위치 이격해서 문폭만큼 문폭만큼 점형블록 점형블록 설치 설치하지 않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평가세부내용

| \blacktriangleright 출입문턱의 높이 차이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일부 문의 단차 2cm초과모든 문의 단차 2cm초과 \checkmark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이상 확 보 여부모든 문의 유효폭이 0.8m이상일부 문의 유효폭이 0.8m미만모든 문의 유효폭이 0.8m미만모든 문의 유효폭이 0.8m미만 \checkmark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m이상 확보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일부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미만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미만 \checkmark 적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이에 설치여부모든 순잡이(레버식)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일부 손잡이(레버식) 바닥면으로부터 0.8m미만 이거나, 0.9m초과하여 손잡이(레버식) 설치미설치 \checkmark 역면에 점자표지판 중심을 기준으로 1.2~1.5m 높이에 설치된 경우 * 목도순잡이 있는 경우 손잡이에 설치시 적정직정이 아닌 경우미설치 | 평가세부내용 | - | | |
|--|----------------------|---|------------------------------------|-----|
|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 이상 확 보 여부모든 문의 유효적이 $0.8m$ 이상일부 문의 유효적이 $0.8m$ 미만모든 문의 유효적이 $0.8m$ 미만 * 출입문의 전·후면 1.2m이상 확보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일부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미만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미만 * * * * * * 위치 * * | ▶ 출입문턱의 높이 차이 | | | |
|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m이상 확보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일두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미만모든 문의 전·후면 | 출입문 통과유효폭 0.8m이상 확 | | | |
| 의 손잡이는 중앙지 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 이에 설치여부 모든 손잡이(레버식) 바닥면으로부터 0.8m미만 이거나, 0.9m초과하여 손잡이(레버식) 설치 미설치 ************************************ |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 전·후면 유효거리 | | |
| ▶ ^벽 면에 점자표지판 중심을 기준으로 1.2~1.5m 높이에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설치된 경우 ※ 복도손잡이 있는 경우 | 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 | 바닥면으로부터 | 바닥면으로부터 0.8m미만 이거나, 0.9m초과하여 | 미설치 |
| | | 벽면에 점자표지판 중심을 기준으로 1.2~1.5m 높이에 설치된 경우 | 적정이 아닌 경우 | 미설치 |

※ _____ 사무실, 민원실 등이며 창고나 MDF실 등은 포함되지 않음

평가 내용

전수조사표

2(미흡)

비표준형 점형블록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3(미설치)

1(적정)

평가 번호

평가세부내용

평가

| | | I | 전수조사표 |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
|--|---------------------------------------|--|--|-------------------------|
| 평가 번호 | | Į | 평가 내용 | |
| 평가세부내용 |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복도의 유효폭은 1.2r 함 | n이상으로 | 모든 복도의 유효폭이 1.2m이상 | 일부 복도의 유효폭0 1.2m이상 | l 모든 복도의 유효폭이 1.2m미만 |
| ▶ 복도 바닥면의 단차는 로 확보. 다만, 부득이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 로 등 설치 | 사정으로 경 | 영사로를 1/12이하 설치 |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12초과 설 | |
| ▶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 2.1m이내 장애물 있는 또는 비호별 성치 여보 | 부터 2.1m - 여부 _년 경우 난간 |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6m이하에 보호벽, 산간 설치 또는 장애물 없음 |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에 재질 또는 색상을 달리하여 접근을 경고 | 이내에 지 가세- |

값 금 ※ 화분설치시나 바닥재질 및 색상을 달리한 경우 적정

또는 보호벽 설치 여부

| u | |
|---|------|
| " | |
| | |
| '!…\$ RrA•% #}\$,7Ò P P { P Wñ6™ ù™• | • Đ® |
| u D E'а | |
| () '! [×] (Rr•物 ``PP ⁴ { PWñ6™ ù™• '~p® | |
| u "Ò DÔö ● 264 ● | |
| 은 Hू)!9D^@ ^€D° ^ÊD° '!Bq%'Bq%—"H—" PP{PWñ6™ ù™ 평遊(제대 1997년)888 2s 2도 2도 문다 100 ₩ 01™• 은 602° á 평 a'@" | •&xá |

| 평가 번호 | 평 3-6 학 | (| 하 | (하 |
|-------|---------|---|---|----|
| | | | | |
| | | | | |

하여야 하며 만약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강기 모든 항목을 미설치로 표기하여야 함

| ▶ 대상시설에 설치된 수직이동 수단으로 설치된 설비는 모두 체크 | 계단 (1) (→ 2.4.2 계단) | 경사로 (2) (→ 2.4.3 경사로) | 승강기 (3) (→ 2.4.4 승강기) | 리프트 (4) (→ 2.4.5 승강기) | |
|---|------------------------|--------------------------|--------------------------|--------------------------|--|
| ※ 승강기가 의무인 대상시설은 계단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도 반드시 승강기도 함께 조사항목을 체크 | | | | | |

| _ | | | | |
|---|-------|---|-------|--|
| | 평가 번호 | | 평가 내용 | |
| | | | | |
| | | | | |
| _ | | 1 | |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 | | | | |
| ▶ 대상시설이 1층 이거나 2층 이상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직이동 설비의 조사 가능 여부 | 1층 (1) (→ 3.1 위생시설 항목부터 시작) | 2층 이상 (2) (→ 2.4.1 항목부터 시작) | | | | |

전수조사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한국장애인개발원 가 to ippoywww

전수조사표 201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경사로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 전체구간의 경사로 유효폭이 1.2m이상 | 일부구간의 경사로 유효폭이 0.9m~1.2m미 만 | 전체구간 경사로 유효폭이 0.9m미만 |

※ 1998년 4월 11일 이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경우 0.9m까지 경사로 유효폭 완화 (적 정으로 표기)

|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 높이 0.75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 높이 0.75m초과 휴식참 설치 | 미설치 |
|---|----------------------------------|--|---------------------|
| ▶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이하 설치 | 전체 1/12이하 | 1/8이하 ~ 1/12초과 | 전체 1/8초과 |
| ▶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 며, 평탄함 |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며 평탄하지 않거나, 또는 바닥이 미끄럽거나 평탄하게 설치 | 바닥이 미끄럽고 평탄하지 않음 |
|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1.5m×1.5m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 모든공간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일부공간 1.5m×1.5m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 활동공간 미확보 |
| ▶ <u>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u> <u>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u> 양측 면에 손잡이의 연속 설치 | 손잡이 양측면에 연속 설치 | 손잡이 한쪽 면에 연속 설치 | 미설치 |
| ▶ <u>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u> <u>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 손</u> 잡 이의 높이 적정여부 | 높이는 0.8~0.9m | 높이는 0.8m미만 또는 0.9m초과 | 미설치 |
| ▶ <u>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이상인 경우에</u> 손잡 이의 굵기 적정여부 | 굵기는 0.032~0.038m | 굵기는 0.032m미만 또는 0.038m이상 | 미설치 |

※ 경사로이 길이가 1.8m미만이거나 높이가 0.15m미만인 경우에는 손잡이 해당항목 (2.4.3.6부터 2.4.3.8까지) 모두 적정으로 표기함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 평가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 의 활동공간 확보 | 전면 1.4×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전면 1.2×1.2m~1.4×1.4m 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 전면 1.2×1.2m 미만의 활동공간 |
| ▶ 대상시설 신축연도 2008년 1월 1일 이후 여부 | 2008.1.1 이전 신축 (1) | 2008.1.1 이후 신축 (2) | |
| ▶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 | 폭 1.1m이상이며 깊이 1.35m이상 | 폭 1.1m미만이거나 또는 깊이 1.35m미만, | 폭 1.1m미만이며 깊이 1.35m미만, |
| ▶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 폭 1.6m이상이며 깊이 1.35m이상 | 폭 1.6m미만이거나 또는 깊이 1.35m미만 | 폭 1.6m미만이며 깊이 1.35m미만 |
| ▶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 로형으로 설치 | 우측면에 가로형 조작반 설치(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이상인 경우 좌·우측 구분안함) | | 미설치 |
|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 조작반의 높이는 바닥면 으로부터 0.85내외로 설치 | 0.8~0.9m에 설치 | 0.8m미만 또는 0.9m초과 | 미설치 |
| ▶ 승강기 내부의 조 작설비는 버튼식으로 설치 | 조작설비는 누름 버튼식 | 버튼식이 아닌 경우 | |
| ▶ 승강기 내부의 일반 조작반·층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 지 부착 | 일반조작반 점자표지부착 (병행포함) | | 일반조작반 점자표지 미부착 |
| 점형블록 형태 |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비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미설치 |
| 설치위치 | 승강기 호출버튼 전면 0.3m 이격하여 설치 | 승강기 출입문 전면에 설치 | 미설치 |
| ▶ 승강기 외부에 도착여부를 표시 하는 등, 엘리베이터 도착음 동 작 | 전체 설치(작동) 유 | 일부 설치(작동) | 전체 미설치(작동) |
| ▶ 승강기 내부에 도착층, 운행상황 을 표기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 장치, 토글(문개폐, 층정보, 운행 방향) 설치 | 전체 설치(작동) 유 | 일부 설치(작동) | 전체 미설치(작동) |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 ~ | | | |
|--|--|--|---|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m×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 간 확보 | 상부와 하부 모두에 1.4m× 1.4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 상부와 하부 1.2×1.2m ~ 1.4m×1.4m미만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 계단의 상부와 하부 모두에 1.2m× 1.2m미만의 승강장 확보 |
| ▶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0.76×길이1.05m이상 수직형 0.9×깊이 1.2m이상 | 경사형 또는 수직형 바닥면적 기준 이상 | 폭 또는 길이(또는 깊이)가 기준 미달 | 폭과 길이(또는 깊이) 모두 기준미달 |
| ▶ 호출벨, 작동설명서, 비상정지장 치, 과속제한장치, 내부잠금장치, 지정장소 보관의 경우 0.6m이내 돌출 | 모든 항목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 1개 이상 항목이 설치기준에 미달 | 모든 항목 기준 미달 |

위생시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 여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 설치 | 남·여 각 1개 이상 설치 ※층간으로 남녀구분된 것은 적정 | 남·여 공용으로 설치 | 설치되어 있지 않음 | |
| ▶ 일반화장실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설비 유무 | 색상 및 문자로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며 식별이 용이함 | 색상 또는 문자 사용여부를 표시하고 있으나 구분하기 어려움 | 설치되어 있지 않음 | |
| ▶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 접근통로 폭이 1.2m이상 | 접근 통로 폭이 0.9m ~ 1.2m미만 | 접근 통로 폭이 0.9m미만 | |
| ▶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 변기칸의 단차포함)가 2㎝이하 | 단차 2㎝이하 단차 | | 단차 2㎝초과 | |
| ▶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거치대 설 치 여부 | 영유아용거치대 1곳 이상설치 | | 미설치 | |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유 (1) | 무 (2) |
|----------------|-------------------|---------------------|
| 화장실에 점형블록 설치여부 | (→ 3.1.3 항목부터 시작) | (→ 3.2 대변기 항목부터 시작) |

| 평가 번호 | | Į | 평가 내용 | |
|---------|----|----------------------|--------------------------------------|--------|
| | | | | |
| 평가세부내용 |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점형블록 형태 | |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비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미설치 |
| | | 남·여 각각의 일반화장실 출입구 | 일반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나 입구를 찾기 어려운 | 미석치 |

옆에 점형블록을

0.3m전면에 설치

설치위치

경우 또는 장애인화장실 출입구에 점자블록 설치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휠체어사용자 이용가능 화장실 설치여부 | 유 (1) (→ 3.2.2 항목부터 시작) | 무 (2) (→ 3.3 소변기 항목부터 시작) |

| 평가 번호 | | 평가 내용 | | |
|--|------------|---|--------------------------|--|
| | | | | |
| 평가세부내용 |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대변기 칸막이의 · | 출입문 형태 | 자동문, 밖여닫이, 미닫이, 접이문 (안여닫인 경우 내부공간확보) | 잠금장치 있는 주름문 | 안여닫이 출입문 형태로 내부공간 미확보, 또는 잠금장치 없는 주름문 |
| ▶ 대변기 칸막이의 효폭 0.8m이상 확 | | 문의 유효폭이 0.8m이상 | | 문의 유효폭이 0.8m미만 |
| ▶ 대상시설 2005년 후 허가 신청된 신 | | 2005.12.29 이전 건축물 (1) | 2005.12.30 이후 건축물 (2) | |
| ▶ 바닥면 크기가 폭 1.8m이상 확보 | - 1m이상, 깊이 | 바닥면 크기가 폭 1m이상이며 깊이 1.8m이상 | 폭 또는 깊이중 하나만 적합 | 폭과 깊이 모두 부적합 |
| ▶ 화장실의 유효 바 폭 1.4m이상, 깊 변기 길이 방향) 3 | 이 1.8m이상(대 |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이며, 깊이 1.8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으로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가능함 | 폭 또는 깊이중 하나만 적합 | 폭과 깊이 모두 부적합 |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이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로 설치 | 양변기이고 좌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 양변기이고 좌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4m미만 또는 0.45m초과 | 양변기가 아님 |
| ▶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0.7m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 설치높이는 0.6~0.7m이며 벽측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이내 | 설치높이 및 중심위치 중 1개만 기준에 적합 | 수평손잡이가 없음 |
| ▶ 대변기의 한쪽옆에는 수직손잡이 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있으며 손잡이 길이는 0.9m이상 (ex: L자형 손잡이) | 길이는 0.9m미만 또는 바닥면에서 부터 고정되어 설치 | 수직손잡이가 없음 |
| ▶ 다른 쪽 손잡이의 회전식으로 설 치 여부 |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전식 (상·하 또는 좌·우) | 다른 쪽 손잡이는 고정식 | 다른 쪽 손잡이 없음 |
| ▶ 대변기세정장치는 광감지식·누름 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 광감지식 또는 바닥 및 벽누름버튼식 설치 | 측면 레버식 또는 버튼식 설치 (수조형) | 후면 레버식또는버튼식 설치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일반화장실 내부에 소변기 설치여부 | 유 (1) (→ 3.3.2 항목부터 시작) | 무 (2) (→ 3.4 세면대 항목부터 시작) |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 평가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소변기의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 닥면으로부터 0.8~0.9m | 높이는 0.8~0.9m | 높이는 0.8m미만 또는 0.9m초과 | 수평손잡이 미설치 |
| ▶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 길이 0.5~0.6m | 길이는 0.5m미만 또는 0.6m초과 | 수평손잡이 미설치 |
| ▶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내외 |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0.55~0.65m |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0.55m미만 또는 0.65m초과 | 수평손잡이 미설치 |
| ▶ 소변기의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 닥면으로부터 1.1~1.2m로 설치 | 높이는 1.1~1.2m | 높이는 1.1m미만 또는 1.2m초과 | 수직손잡이 미설치 |
| ▶ 소변기의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벽 면으로부터 0.25m내외 | 길이는 0.2~0.3m | 길이는 0.2m미만 또는 0.3m초과 | 수직손잡이 미설치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화장실 내부에 세면대 설치여부 | 유 (1) (→ 3.4.2 항목부터 시작) | 무 (2) (→ 3.5 욕실 항목부터 시작)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 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가 0.65m이상으로 설치 |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0.85m이 며 하단 높이는 0.65m이상 |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0.85m초 과 또는 하단높이가 0.65m미만 | 상단높이 0.85m초과이며 하단높이 0.65m미만 또는 하부 공간 없음 |
| ▶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 록 깊이 공간확보 | 깊이 0.25m~0.45m이상 공간 확보 | 깊이 0.25m미만 공간 확보 | 하부 공간 전혀 없음 |
| ▶ 모든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 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 태의 설치 및 점자표시 | 광감지식,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점자표기 함께 설치 |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점자표기 함께 설치하지 않음 | 다이얼식으로 점자표기 함께 설치하지 않음 |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 ▶ 대상시설 욕실 설치여부 | 유 (1) (→ 3.5.2 항목부터 시작) | 무 (2) (→ 3.6 샤워실 및 탈의실 항목부터 시작) |
|-------------------|----------------------------|---------------------------------------|
| | | |

| 평가 번호 |
|-------|
|-------|

평가 내용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 출입구 유효폭이 0.8m이상이며 단차가 2cm이하 | 유효폭과 단차중 1개만 기준에 적합 | 유효폭과 단차 모두 기준에 부적합 |
|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설치 | 출입문은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 | 안여닫이문 (내부공간 미확보) |
| ▶ 욕조의 전면에 휠체어 활동공간 (유효 바닥면의 크기) 확보 |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1.4m이상이며 깊이 1.8m이상 | 폭과 깊이중 1개만 기준에 적합 | 폭과 깊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 |
|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 감 | 바닥은 미끄럼방지타일로 마감 | | 바닥은 미끄러운 일반 타일로 마감 |
| ▶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이내로 설치 | 욕조 높이가 0.4~0.45m | 욕조 높이가 0.4m미만 또는 0.45m~0.65m이하 | 욕조 높이가 0.65m초과 |

| 평가 | 번호 | |
|----|----|--|
| | | |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 는 곳에 설치 | 이동샤워기 설치 ※높낮이 조절형 샤워기는 적정 | 고정형 입식샤워기만 설치 | 샤워기 미설치 |
| ▶ 욕실에는 비상용 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용 벨은 욕조로부터 사용가능한 위치 | | 비상용 벨 또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으나 욕조로부터 손이 닿는데 어려움 | 비상용 벨 미설치 |
|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설치 및 점자표시 | 광감지식,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점자표기 함께 설치 |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점자표기 함께 설치하지 않음 | 다이얼식으로 점자표기 함께 설치하지 않음 |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 대상시설 샤워실 및 탈의실 (→ 3.6.2 항목부터 시작) (→ 4.1 유도 및 안내설비 항목부터 실치여부 |
|---|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에 휠 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 유효폭이 0.8m이상이며 단차 2㎝이하 | 유효폭과 단차중 1개만 기준에 적합 | 유효폭과 단차 모두 기준에 부적합 |
| ▶ 샤워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 | 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1.3m | 가로, 세로중 한쪽이 0.9m 이상 | 가로, 세로 모두 0.9m 미만 |
| ▶ 샤워용 의자의 높이는 바닥면으 로부터 0.4~0.45m이내 | 의자 높이가 0.4~0.45m | 의자 높이가 0.4m미만 또는 0.45m초과 | 미설치 |
| ▶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 는 곳에 설치 | 이동샤워기 설치 ※높낮이 조절형 샤워기 설치시 적정 | 고정형 입식샤워기만 설치 | 샤워기 미설치 |
|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설치 및 점자표시 | 광감지식,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점자표기 함께 설치 |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점자표기 함께 설치하지 않음 | 다이얼식으로 점자표기 함께 설치하지 않음 |
| ▶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4~1.2m에 설치 | 높이는 0.4m~1.2m | 높이는 0.4m미만 또는 1.2m초과 | 수납공간 미설치 |
| ▶ 탈의실의 수납공간 하부에는 휠 체어 발판 공간 확보 | 깊이 0.25m~0.45m이상 공간 확보 | 깊이 0.25m미만 공간 확보 | 하부 공간 전혀 없음 또는 수납공간 미설치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시설접근 및 이용, 긴급시 피난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 한 유도 및 안내표시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 평가 번호 | | Ш | 령가 내용 | |
|--|------------------|--|--------------------------------|---------------------------|
| | | | | |
| ▶ 대상시설에 설치된 전 촉지도식 안내판, 음(설치된 설비는 모두 | 심사 및 ·성안내장치 중 |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 (1) (→ 4.1.2.1 항목으로) | 음성안내장치 (2) (→ 4.1.2.4 항목으로) | 모두미설치 (3) (→ 4.2 항목으로)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평가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 시각장애인이 해당시설의 방의 배 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점자 또 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점자를 병기(나란히)하여 표기하거나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 일반안내판만 설치 | 미설치 |
| ▶ 설치규격 | 점자안내판 중심점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또는 벽면형인 경우 1.0m~1.5m | 적정이 아닌 경우 | 미설치 |
| ▶ 점자표기방식 | 타공방식으로 제작 (부식형 제외) | 적정이 아닌 경우 | 미설치 |
| ▶ 시각장애인이 해당시설의 주요시 설, 방의 배치에 대해 알 수 있도 록 음성안내장치의 설치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있으며 특수신호장치로 작동 |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었으나 특수신호장치로 작동되지 않음 | 미설치 |
| ▶ 음성안내장치의 설치위치 | 주출입구 점자블록 동선상에 설치하며 설치 | 적정이 아닌 경우 | 미설치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 ▶ 점형블록 설치여부 | 유 (1) (→ 4.1.4 항목부터 시작) | 무 (2) (→ 4.2 경보 및 피난설비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 |
|-------|--|
| | |

| 평가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점형블록 형태 |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비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미설치 |
| 설치위치 |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에 점형블록을 0.3m전면에 설치 | | 미설치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을 위한 경보·피난설비 가 연속적으로 설치 | 비상시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 (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 | 비상시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나 연속성이 떨어짐 | 경보·피난설비 미설치 |
| ▶ 을 위한 경보·피난설 비가 연속적으로 설치 | 비상시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 (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 비상시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 (경광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연속성이 다소 떨어짐 | 경보·피난설비 미설치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 ▶ 객실·침실 해당여부 | 해당 (1) (→ 5.1.1 항목부터 시작) | 비해당 (2) (→ 5.2 관람석 및 열람석 항목부터 시작) | |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 평가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이 상 설치되었는지 | 1.0%이상 설치 | 1.0%미만으로 설치 | 미설치 |
|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식 당, 로비 등 공용공간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 | 일부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식당 등에 단차가 있어 접근시 도움이 필요 | 전체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식당 등의 모든 공용공간에 접근 불가능 |
|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의 출입 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 확보 | 출입문의 유효폭이 0.8m이상 | | 출입문의 유효폭이 0.8m미만 |
|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내부에 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활동 공간 이 1.2m 이상 확보 | 통로와 측면 공간 각1.2m 이상씩 모두 확보 | 통로 또는 측면 공간이 1.2m미만 | 통로 및 측면 공간 모두 1.2m미만 |
|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이하 | 장애인 객실의 모든 침대 높이가 0.4~0.45m | 장애인 객실 침대 중 1개 이상의 높이가 0.45m초과 | 장애인 객실 모든 침대높이가 0.45m초과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 | | | |
| ▶ 객실에 부설된 화장실 내부 설비 모두 체크 | 대변기 (1) | 세면대 (2) | 욕조 (3) |

평가 번호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화장 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 칸의 단차포함)가 2㎝이하 | 단차 2cm이하 단차 | | 단차 2㎝초과의 단차 있음 |
|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형태 | 자동문, 밖여닫이, 미닫이, 접이문 (안여닫인 경우 내부공간확보) | 잠금장치 있는 주름문 | 안여닫이 출입문 형태로 내부공간 미확보, 또는 잠금장치 없는 주름문 |
|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 효폭 0.8m이상 확보 | 문의 유효폭이 0.8m이상 | | 문의 유효폭이 0.8m미만 |



전수조사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2005.12.29 이전 건축물 2005.12.30 이후 건축물 대상시설 2005년 12월 30일 이 (1)(2) 후 허가 신청된 신축건축물 여부 바닥면 크기가 폭과 깊이중 1개만 폭과 깊이 모두 기준에 폭 1m이상이며 기준에 적합 부적합 바닥면 크기가 폭 1m이상, 깊이 깊이 1.8m이상 1.8m이상 확보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m이상이며, 깊이 폭과 깊이 모두 기준에 폭과 깊이중 1개만 1.8m이상(대변기 길이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부적합 기준에 적합 방향)으로 휠체어의 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대변 내부 회전이 가능함 기 길이제외) 확보 양변기이고 좌대 높이가 양변기이고 좌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이고 좌대의 바닥면으로부터 양변기가 아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m미만 또는 0.4~0.45m 0.45m이하로 설치 0.45m초과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높이는 0.6~0.7m, 설치높이 및 중심위치 중 1개만 기준에 적합 바닥면으로부터 0.6m~0.7m의 벽측 손잡이는 수평손잡이가 없음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0.4m이내 고정하여 설치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길이는 0.9m미만 또는 바닥면에서 부터 고정되어 설치 설치되어있으며 손잡이 대변기의 한쪽옆에는 수직손잡이 수직손잡이가 없음 길이는 0.9m이상 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ex: L자형 손잡이) 다른 쪽 손잡이는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전식 다른 쪽 손잡이 없음 다른 쪽 손잡이의 회전식으로 설치 고정식 (상·하 또는 좌·우) 여부 광감지식 또는 대변기세정장치는 광감지식·누름 측면 레버식 또는 후면 레버식또는버튼식 바닥 및 벽누름버튼식 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버튼식 설치 (수조형) 설치 설치 형태로 설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상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0.85m초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 바닥면으로부터0.85m이 0.85m초과이며 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며 하단 높이는 과 또는 하단높이가 하단높이 0.65m미만 높이가 0.65m이상으로 설치 0.65m미만 또는 하부 공간 없음 0.65m이상 깊이 0.25m~0.45m이상 하부 공간 깊이 0.25m미만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 전혀 없음 공간 확보 공간 확보 록 공간확보 광감지식, 레버식,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다이얼식으로 설치 모든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 누름버튼식으로 설치하거나 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 점자표기 없음 설치하며 점자표기 있음 또는 점자표기 없음 태의 설치 및 점자표시 고정형 입식샤워기만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 이동샤워기 설치 샤워기 미설치 설치 는 곳에 설치 버튼식 비상용 벨 등이 비상용 벨 또는 설치되어 있으며 인터폰이 설치되어 욕실에는 비상용 벨이 설치되어 비상용 벨 미설치 있으며 비상용 벨은 욕조로부터 욕조로부터 손이 닿는 있으나 욕조로부터 손이 사용가능한 위치 위치에 있음 닿는데 어려움 광감지식, 레버식,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 다이얼식으로 점자표기 누름버튼식으로 점자표기 함께 설치하지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함께 설치하지 않음

않음

점자표기 함께 설치

설치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에 설치 된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 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8~1.2m 로 설치 | 모든 항목이 바닥면으로부터 0.8~1.2m로 설치 | 일부 항목이 바닥면으로부터 0.8~1.2m초과 설치 | 모든 항목이 0.8~1.2m 외에 설치 |
|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화장 실 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 인용 초 인등이 설치, 장애인용 객실에는 건 축물 전체의 비상경 보시스템과 연결 된 청각장애인 용 경보설비 설치 | 객실과 화장실에 각각 초인종, 초인등, 경보설비 모두설치 | 초인종, 초인등, 경보설비 객실과 화장실 둘 중 한곳 만 설치 | 초인종, 초인등, 경보설비 객실과 화장실 모두 미설치된 경우 |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 관람석·열람석 | 해당여부 |
|---------|------|
| | |

해당 (1) (→ 5.2.2 항목부터 시작) 비해당 (2) (→ 5.3 접수대·작업대 항목부터 시작)

평가 번호

| 평가 평가세부내용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장애인 등 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출 입구 및 피난통로에 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 출입구 및 피난통로 옆에 설치 | 단차 없이 연결됨 | 단차 있어 연결 안됨 |
| 휠체어사용자용 관람석인 경우에 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이 0.9m 이상, 깊이 1.3m이상으로 설치 |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 0.9m이상이며 깊이 1.3m이상 | 폭과 깊이중 1개만 기준에 적합 | 폭과 깊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 |
|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은 높 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이 며, 하단은 높이가 0.65m이하이며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 록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 전체 높이는 0.7~0.9m, 하부에는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확보 (높낮이 조절형 포함) | 전체높이, 하부높이 및 깊이중 1~2개만 기준에 적합 | 전체높이, 하부높이 및 깊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 |
| 관람석, 열람석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설치비율 | 사용가능좌석 1%이상 설치 | 사용가능좌석 1%미만 설치 | 미설치 |

• 280 •

하부높이가 0.65m이상 하부높이가 0.65m미만 깊이 0.25m~0.45m이상 깊이 0.25m미만 공간 확보 공간 확보 평가 번호 평가 내용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 등 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2cm이하 2cm초과 있도록 설 치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 바닥면으로부터 바닥면으로부터 하도 록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상단높이까지 높이가 상단높이까지 높이가 높이는 바 닥면으로부터 0.7~0.9m 0.7m~0.9m 이외 0.7~0.9m로 설치 하부 공간 업음 하단은 높이가 0.65m이상 하부 공간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 전혀 없음 록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

1(적정) 2(미흡) 3(미설치) <u>평가세부내용</u>

평가 번호

전수조사표

평가 내용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 ▶ | 해당 (1) | 비해당 (2) |
|------------------|-------------------|----------------------|
| 매표소·판매대·음표대 해당여부 | (→ 5.4.2 항목부터 시작) | (→ 6.1 비치용품 항목부터 시작)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대상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매표소, 판매대, 음료대 모두 체크 | 매표소 (1) (→ 5.4.2.1 매표소) | 판매대 (2) (→ 5.4.2.4 판매대) | 음료대 (3) (→ 5.4.2.7 음료대)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평가세부내용 휠체어사용자가 바닥면으로부터 상부 바닥면으로부터 상부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 높이는 0.7m미만 사용가능한 매표소 데 편리하도록 매표소의 높 높이는 0.7~0.9m 또는 0.9m초과 없음 이는 0.7~0.9m이하에 설치 하부 공간 하부에는 높이 하부에는 높이 하부는 바닥면으로 부터 전혀 없음 0.65m이상 0.65m미만 0.65m이상에 설치 깊이 0.25m~0.45m이상 깊이 0.25m미만 또는 하부에는 휠체어발판이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0.45이상 공간 확보 들어갈 공간이 없음 공간 확보 확보

평가



※ 다만 2005년 12월 29일 이전 허가신청된 건물인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매표소 의 높이는 1.1m 이하에 설치하며, 하부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 보 할 수 있다.

| 평가세부내용 |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자동판매기 및 등은 동전투 입구, 조 출 구 등이 0.4~1 설치 | | 동전·조작·상품출구 모든 높이는 0.4~1.2m설치 | 동전·조작·상품출구 일부 높이는 0.4m미만이거나 또는 1.2m초과 설치 | 동전·조작·상품출구 모든 높이는 0.4m미만이거나 1.2m초과 설치 |
| 조작버튼은 시 알기 쉽도록 점 | | 점자표시 | | 점자표시 미설치 |
| 누름버튼식 등. | 으로 설치 | 누름버튼식 등 설치 | | 누름버튼식 등 미설치 |

|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0.8m로 설치 | 분출구의 높이는 0.7~0.8m 설치 | 분출구의 높이는 0.7m미만이거나 또는 0.8m초과 설치 | 분출구 휠체어 사용자 접근불가 |
|---------------------------------------|----------------------------|---------------------------------------|---------------------|
|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 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으 설치 | 광감지기식·누름버튼식· 레버식 조작기 설치 | | 다이얼식 조작기 설치 |

| 평가 번호 | 평가 내용 | | |
|----------------|----------------------------|-------------------------------|--|
| | | | |
| ▶ 점형블록 설치여부 | 유 (1) (→ 5.4.4 항목부터 시작) | 무 (2) (→ 6.1 비치용품 항목부터 시작) | |

평가 번호

| 평가세부내용 | 평가 | 1(적정) | 2(미흡) | 3(미설치) |
|---------|----|--|--------------|--------|
| 점형블록 형태 | |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비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미설치 |
| 설치위치 | |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에 점형블록을 0.3m전면 설치 | | 미설치 |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평가 번호

| 대상 | 시설 | 비치용품 | 설치(1) | 미설치(2) |
|----------|----------------------|---------------------------------------|-------|--------|
| | | 6.1.1.1.1 점자업무안내책자 | | |
| | | 6.1.1.1.2 8배율이상의 확대경 | | |
| | | 6.1.1.1.3 공중모사전송기 | | |
| | 읍·면·동사무소 | 6.1.1.1.4 보청기기 | | |
| | | 6.1.1.1.5 편의시설안내지도 | | |
| | | 6.1.1.2.1 8배율이상의 확대경 | | |
| | | 6.1.1.2.2 공중모사전송기 | | |
| 제1종근린생활시 | 우체국 | 6.1.1.2.3 보청기기 | | |
| 설 | | 6.1.1.2.4 점자업무안내책자 | | |
| | | 6.1.1.3.1 8배율이상의 확대경 | | |
| | | 6.1.1.3.2 공중모사전송기 | | |
| | 전신전화국 | 6.1.1.3.3 보청기기 | | |
| | | 6.1.1.3.4 점자업무안내책자 | | |
| | | 6.1.1.4.1 보청기기 | | |
| | 공공도서관 | 6.1.1.4.2 저시력용 독서기 | | |
| | | 6.1.1.5.1 보청기기 | | |
| | 공연장 | 6.1.1.5.2 점자공연안내책자 | | |
| | | 6.1.1.6.1 보청기기 | | |
| 문화 및 | 관람장 | 6.1.1.6.2 점자공연안내책자 | | |
| 집회시설 | | 6.1.1.7.1 휠체어 | | |
| | 전시장 | 6.1.1.7.2 점자전시안내책자 | | |
| | | 6.1.1.8.1 휠체어 | | |
| | 동·식물원 | 6.1.1.8.2 점자전시안내책자 | | |
| 판매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 6.1.1.9.1 음성계산기 | | |
| | 기 1천66 이성 인 도·소매점 | | | |
| | | 6.1.1.10.1 저시력용 독서기 | | |
| | | 6.1.1.10.2 음성지원 컴퓨터 | | |
| 교육연구시설 | | 6.1.1.10.3 보청기기 | | |
| | 도서관 | 6.1.1.10.4 점자프린터 | | |
| | | 6.1.1.10.5 컴퓨터 | | |
| |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 | | |
| | | 6.1.1.11.1 점자업무안내책자 | | |
| 업무시설 | | (시·군·구청에 한한다) | | |
| | 국가 또는 지방 | 6.1.1.11.2 휠체어 | | |
| | 자치단체의 청 | 6.1.1.11.3 8배율 이상의 확대 | | |
| | 사(공중이 직접 | | | |
| | | 6.1.1.11.4 등중모자신공기 6.1.1.11.5 보청기기 | | |
| | 제1종 근리생확 | 6.1.1.11.6 점자업무안내책자 | | |
| | ㅣ시섴에 해낭하 | 611117 편이나서아비지도 | | |
| | 지 아니하는 것 | 6.1.1.11.7 편의지절한대지도 6.1.1.11.8 컴퓨터 | | |
| | | 0.1.1.110 김규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 | | |
| | | | | |
|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6.1.1.12.1 점자관광안내책자 | | |





| 발 행 | 2013년 11월 |
|-------|---|
| 발 행 인 | 변용찬 |
|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전화 : 02) 3433-0600 팩스 : 02) 412-0463 http://koddi.or.kr |
| 인 쇄 처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031)421-8418 |
| 연구번호 | 수탁13-02 |
| ISBN | 978-89-97676-21-7 93330 |